議政白書

第8代 烏山市議會

2018. 7. 1 ~ 2022. 6. 30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2022년 7월 1일 개원한 제9대 오산시 의회는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구호로, 제9대 오산시의회 모든 의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에 힘써 “시민의 곁에서 늘~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산시의회는 1991년 4월 개원하여 지금까지 31년동안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중 지난 8대 의회의 4년의 노력을 기록으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의정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백서에는 제8대 오산시의회가 2018년 7월 1일 개원한 이후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방대한 양의 의정 성과와 발자취를 기록하였습니다.

제8대 오산시의회에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산시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두차례 원포인트 임시회를 집회하여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제8대 오산시의회와 의원분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자료수집과 편찬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정백서가 오산시의회의 선진 의정 구현과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정착의 밑거름이 되는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24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오산시의회 의장 **성 길 용**

시 기 상징마크 (Osan's Symbol Mark)

청색은 밝고 깨끗한 미래 지향적임을 표현

녹색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 자연과 기상을 표현

주황색은 시민의 평안과 희망찬 미래로 웅비함을 표현

시 목 은행나무 (Osan's Tree)

녹색은 밝고 명랑한 시민과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고 노란단풍은 따뜻한 인정과 화합, 꼿꼿한 줄기는 정직과 강직을 뜻하며 변함없는 은근과 끈기로 새롭게 전진하는 오산시를 상징함.

시 조 까마귀 (Osan's Bird)

오산시의 까마귀오(烏)자 지명에서 찾은 까마귀는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지혜와 용맹, 충효를 상징하며 고구려 시대에는 태양안에 삼족오를 그려 신성한 새로 상징함.

시 화 매 화 (Osan's Flower)

매화는 역사적으로 오산에 매화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다른 꽃보다 가장 먼저 핀다하여 꽃의 우두머리라 하였고, 화형(花兄)이라고 불린다.
불의에 굴하지 않는 고고한 선비정신의 표상이며 사군자의 하나로 절개와 지조를 상징함.

우리 오산은 충 · 효 · 신의 얼을
이어받아 날로 새롭게 뻗어가는
살기 좋은 터전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스러운 내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써 지켜나갑시다.

01 **예절**을 지키고 부지런히 일하는 모범시민이 됩시다.

02 **이웃을 사랑**하고 알뜰히 살아가는
복된 가정을 만듭시다.

03 **슬기모아 창조**하고 전통을 세워가는
문화도시를 이룹시다.

04 **스스로 참여**하고 믿음으로 결속하는
으뜸 고장을 세웁시다.

오산 해피 Song

윤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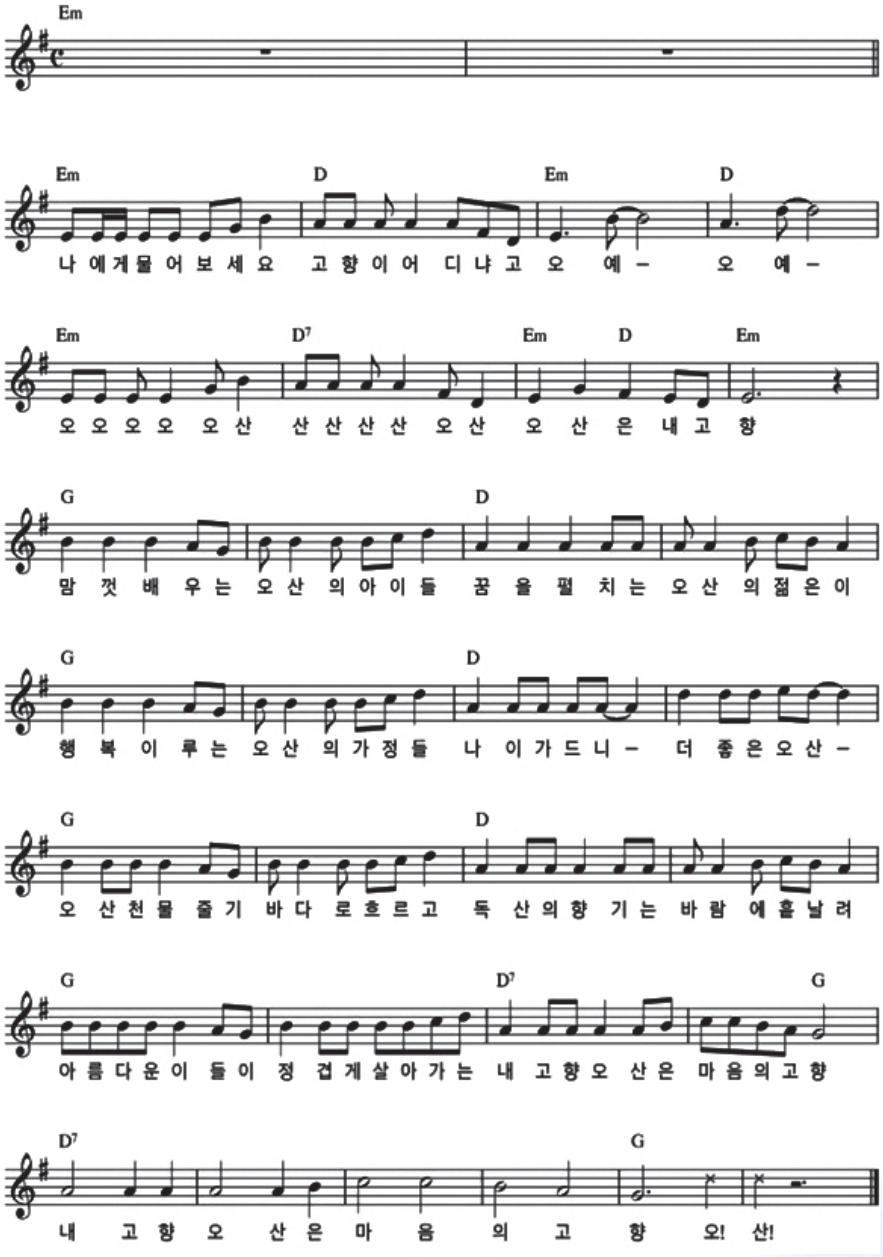
제8대 오산시의회 의장단 현황

제8대 오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2018. 7. 2. ~ 2022. 6. 30.)

의장 **장인수**

부의장 **김영희**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 현황

가선거구

성 명 **김영희** 비 고 전·후반기 부의장

학력 및 주요경력

- 공주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졸업
- (현)오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 (현)오산시 여성발전 심의위원
- (현)오산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전원유치원 원장
- (전)성균관 어린이집 원장

성 명 **이상복**

학력 및 주요경력

- (국)부산공업전문학교 토목과 졸업
  부산공업대학(현 :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3년 제적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오산시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연합회 오산지회장
- 현)오산시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자치분권협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혁신교육협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 전)오산시 동부대로 전구간 지하차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오산 발전포럼 운영위원장
- 전)오산 행정개혁시민연대 상임대표
- 전)오산시 4개지역(강원,영남,충청,호남)회장단협의회장
- 전)오산시 자율방범순찰대 중앙동대 운영위원장
- 전)화성·오산시 재향군인회 오산시연합회장
- 전)오산시 시각장애인 참사랑 후원회 고문
- 전)오산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분과장

성 명 **이성혁**

학력 및 주요경력

- 화성초/오산중 졸업
- 효명고등학교 졸업
- 국제사이버대학교 보건복지행정학전공(보건교육학사)
  – 부전공 : 사회복지학 전공(사회복지학사)
- 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 지역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15기 16기 17기 18기 19기(간사)
- 현)오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지역화폐운영협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 현)오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위원
- 전)화성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
- 전)오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 기획이사
- 전)오산문화원 운영위원
- 전)오산천살리기 집행위원
- 전)오산시 신장동 체육진흥회 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전)JCI 오산청년회의소 제30대 회장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 현황

나선거구

성 명 김 명 철

학력 및 주요경력

- 성호초/오산중/오산고 졸업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오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건강가정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
- 현)오산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유물수집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아름다운나무선정위원회 위원
- 전)오산시자활센터 운영위원
- 전)제7대 오산시의회 의원
- 전)제5대 오산시의회 의원(부의장)
- 전)오산시 애향장학회 이사
- 전)민주평통 오산시자문위원회 간사
- 전)오산원일초 1·2·3대 운영위원장

성 명 성 길 용

학력 및 주요경력

- 오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지역경제 경기도 특보단 공동 단장
- 전)오산문화원 운영위원
- 전)초평동 4·5대 주민자치위원장
- 전)제19대 대통령 오산지역위원회 공동 총괄부본부장
- 전)더불어민주당 초평동 지역협의회장
- 전)오산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 전)오산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오산초등학교 체육진흥회장
- 전)크리스토퍼 리더십 코스 36기 수료
- 전)오산시 새마을 10통 초평동협의회장

성 명 장 인 수

비 고 전·후반기 의장

학력 및 주요경력

- 성산초/오산중/오산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 육군 학사장교 40기(중위전역)
- 현)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5,16,17,18,19기 자문위원
- 현)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 현)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 현)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 현)오산시 보훈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전)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7대 오산시의회 의원(부의장)
- 전)안민석 국회의원 5급 비서관
- 전)민주당 오산시 청년위원장
- 전)오산교육희망포럼 사무국장
- 전)고현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 전)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광역/기초의원 위원장
- 전)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청년조직본부장
-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

성 명 한 은 경

학력 및 주요경력

- 성성호초/오산여중/영신여고 졸업
- 숭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현)오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현)오산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지원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혁신교육협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전통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 현)오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재)오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담당 대리
- 전)재외동포신문사 편집국 기자
- 전)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재외선거대책위원회 유럽 프랑스 본부장
- 전)여성가족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프랑스지역 본부 담당관
- 전)재불한인여성회(AFCF) 회장
- 전)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자문위원
- 전)ARIFEC(프랑스체류 · 경영 · 교육 · 인재양성) 컨설팅 대표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 및 의정활동

2018. 7. 3. 제7대 오산시의회 개원

2021. 1. 25. 7분 자유발언

2019. 2. 19. 시정에 관한 질문

2021. 10. 5. 의원간담회

주요사업 현장방문

2018. 8. 23. 재활용 선별장 현장방문

2019. 6. 14.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020. 2. 25. 죽미령평화공원 현장방문

2022. 1. 24. 유잡스 2호점 현장방문

의원 및 직원 연수

2019. 4. 15. ~ 17. 의원 및 직원연수

2019. 9. 25. ~ 27. 의원 및 직원연수

국 제 교 류

2018. 9. 14. 베트남 꽝남성 대표단 접견

2019. 9. 20. 핀란드 에스포 대표단 의회 방문

벤 치 마 킹

2018. 9. 27. 경주 버드파크 벤치마킹

2018. 11. 24. 울산안전체험관 벤치마킹

2019. 10. 8. 창원시 창동 예술촌 벤치마킹

2020. 11. 12. ~ 14 문화도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아 카 데 미

2018. 11. 15. 예산안 심사 기법 아카데미

2020. 4. 29. 스피치 능력향상 아카데미

2020. 10. 8. 공감소통 리더십 아카데미

2021. 3. 18.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 아카데미

자원봉사 활동

2019. 11. 20. 사랑의 연탄 나눔

2021 .8. 13.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업무지원

기타 의정활동

2019. 12. 26. 2019년 오산시의회
봉사활동 성과보고회

2020. 5. 28. 오산시 자전거도로 현장점검

목 차

Osan City Council
CONTENTS

화 보

발간사 / 2
오산시의 상징 / 3
오산시민헌장 / 4
오산시민의 노래 / 5
제7대 오산시의회 의장단 현황 / 6
제7대 오산시의회 의원 현황 / 6
의정활동 화보 / 8

제1편 일반현황

제1장 오산시 기본현황 / 17
제1절 연혁 / 19
제2절 기본현황 / 22

제2장 오산시의회 현황 / 25
제1절 연혁 / 27
제2절 의회구성 / 29
제3절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선거 / 31
제4절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 / 33

제2편 의정활동

제1장 주요의정활동 상황 / 37

제2장 회의운영 현황 / 43
제1절 2018년도 회의운영 현황 / 45
제2절 2019년도 회의운영 현황 / 191
제3절 2020년도 회의운영 현황 / 425
제4절 2021년도 회의운영 현황 / 630
제5절 2022년도 회의운영 현황 / 897

제3장 행정사무감사 / 975
제1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977
제2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1011
제3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 1053
제4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1101

제4장 시정질문 및 답변 / 1143
제1절 제239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1145
제2절 제241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1148
제3절 제252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1151

제 I 편 일 반 현 황

第8代 烏山市議會 議政白書 (2018. 7. 1. ~ 2022. 6. 30.)

제 1 장 오산시 기본현황

제1절 연혁

제2절 기본현황

제 2 장 오산시의회 현황

제1절 연혁

제2절 의회구성

제3절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선거

제4절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제1장 오산시 기본현황

제1절 연혁

제2절 기본현황

제1장 오산시 기본현황

제1절 연혁

오산시의 연혁은 오산시사에 근거하여 삼한시대 전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한시대 전후

현재 오산시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支石墓)군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상주하며 생활터전으로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오산연혁의 시원은 문헌상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한시대 마한, 진한, 변한 등의 15개 소국 가운데 일부였으며, 이중 마한은 약 54개 부족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의 오산시와 수원시, 화성군이 속해 있었던 소국은 모수(牟水)국, 원양(爰襄)국, 상외(桑外)국이었다. 이중 오산은 모수국(현재의 오산·태안·정남 ·동탄·양감·향남·봉담·매송면 일대)에 위치하였다고 추정된다.

2. 삼국시대

모수국은 삼국시대 백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고구려에 편입되어 상위국과 함께 매홀군(買忽郡)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삼국사기 권 제24 백제 본기 제2 고이왕 5년(AD 238년) 2월초에 의하면 '왕은 부산(釜山)에서 사냥을 하고 50일만에 서울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부산을 진위(振威) 부산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진위현전의 부산현은 오늘날의 오산시 부산동 부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 권 제23백제 본기 제1 시조 온조왕(溫祖王) 11년(기원전 8년) 7월초에 '독산책(禿山柵), 구천책(句川柵 : 현재의 용인)의 양책을 설치하고 낙랑의 침략을 막았다'는 기록과 삼국사기 권 제3 신라본기 제3 내물이사금 18년(373년)에 '백제의 독산성주(禿山城主)가 남녀 3백명을 거느리고 항복하여 왔으므로 왕은 이들을 받아들여 6부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 통일신라시대

오산지역은 삼국시대에는 격전지로 있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획일적·능률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경덕왕(景德王) 16년(757년)에 백제·고구려의 고토(故土)를 포함한 전국의 행정구역을 9주(州)로 통합하면서 매홀군은 한주(漢州)에 속하게 되었고

수성군(水城郡)으로 개칭되었다. 이때 현재의 오산시에 속해있는 진위일부(갈곶동, 청호동, 고현동)는 부산현(釜山縣)에서 진위현(振威縣)으로 함께 개칭되었다.

4. 고려시대

고려의 태조가 후백제를 치기 위해 수성으로 남진할 때 김칠·최승규 등 2백여명이 귀순하여 고려건국에 공로가 있었다하여 태조 17년(934년)에 수주(水州)로 승격되었고, 성종 14년(995년)에 지방관제를 개편할 때 수주의 별호를 한남(漢南)또는 수성(隋城)이라하고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년)에 혁파되었다. 그 후 현종 9년(1018년)에는 다시 수주로 승격되어 지수주사(知水州事)를 두었고, 원종 12년(1071년) 수주를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수원으로 개칭되었다가 그 뒤 다시 수주목(水州牧)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충선왕 2년(1310년)에 수주목은 수원부(水原府)로 되었다.

5. 조선시대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3년(1394년)에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양광도(楊廣道)에 속해 있던 수원부를 경기도로 편입하였고, 태종13년(1413년)에는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으며, 중종21년 (1526년)에 수원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35년(1602년)방어사(防禦使)를 겸하게 하여 국방상 요충지로 삼았다.

영조시대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온양으로 가던중 독산성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으며, 정조 13년(1789년)에 발간된 수원부읍지(水原府邑地)에 의하면 오산지역은 청호(靑好면)면, 시봉(市峰)면, 삼미(三美)면, 산성(山城)면, 초평(草坪)면의 5개면이 있었으며, 청호면에는 오매(烏梅)리, 부산(釜山)리, 시봉면에는 곡촌(谷村)리와 세교(細橋)리, 삼미면에는 중변(中邊)리와 자안(茨安)리, 금곡(金谷)리, 산성면에는 지곶(紙串)리와 양산(陽山)리, 초평면에는 가사(加士)리와 사오화(沙五火)리가 있었다. 1793년(정조17년)에 발행된 수원부읍지의 지도에는 청호(靑好)·초평(草坪)·삼미(三美)·산성(山城)과 어탄(魚呑:지금의 동탄면) 일부가 오늘날의 오산지역에 속했다.

고종 32년(1896년)에 지방제도를 23부로 개정할 때 수원과 남양부는 인천부에 속하게 되고, 고종33년(1896년) 8월4일에 23부제를 13도제로 바꿀 때 수원군은 2동, 남양군은 4동 되었으며, 광무(光武)3년(1899년)에는 4개면으로 청호면(晴湖面), 문시면(文市面), 산성면(山城面), 초평면(楚坪面)등이었다.

6. 일제시대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인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남양군은 수원군에 예속되었고 오산은 산성·문시·청호·초평등의 4개면과 어탄(漁灘)면 일부를 통합, 성호(城湖)면으로 수원군에 속했다. 오산시의 정식명칭은 1915년 조선총독부의 관보(官報) 제757호(2월 13일 발행)의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제4호 수원군 면내 동리의 명칭 변경구역 통보에서부터이며, 일제 말기인 1941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4427호, 지방청 공문 조선총독부 경기도령 제26호에 의하면 성호면(城湖面)이 오산면(烏山面)으로 개정되었다.

7. 정부수립 이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고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수원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오산은 수원군 오산면에서 화성군 오산면으로 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승격되었고, 1987년 1월 1일부로, 화성군 동탄면 금곡(金谷)3리가 오산읍으로 편입되어 은계(銀溪)리가 되었다. 1989년 1월 1일부로 오산시로 승격되어 중앙(中央)동, 역촌(驛村)동, 남촌(南村)동, 신장(新場)동, 세마(洗馬)동, 초평(楚坪)동 등 6개 행정동이었으나 역촌동의 동명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의사에 따라 1991년 8월 13일 시조례 제253호에 의하여 대원(大園)동으로 개칭되었다.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당시 평택군 진위면의 고현(高峴)리, 청호(淸湖)리, 갈곶(葛串)리가 오산시 대원동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절 기본현황

1. 위치 및 지리적 특성

□ 위 치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오산시는 동쪽으로 화성시 동탄면, 서쪽으로 화성시 정남면, 남쪽으로 평택시 진위면, 북쪽으로 화성시 태안읍과 접경하고 있음.

경도와 위도의 점			
극 단	지 명	북 위	동 경
최동단	원동 2지(園洞二池)	37° 08′ 24″	127° 06′ 21″
최서단	서랑이 마을의 황구지천	37° 10′ 24″	126° 59′ 07″
최남단	갈곶동 속 갈곶마을	37° 07′ 44″	127° 04′ 00″
최북단	양산동 작은 말의 동북쪽 논	37° 11′ 55″	127° 01′ 12″

□ 지리적 특징

오산시는 도·공·농 복합지역을 이루고 있으며, 지형은 북동과 서남으로 폭이 짧고 서북과 남동으로 폭이 길으며, 도청 소재지인 수원과 15㎞ 떨어져 있으며, 철도·전철·고속도로·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를 이루고 있음.

2. 가구 및 인구

(2022. 6. 30 현재)

구분 / 동	세대수	인구수 (단위 : 명)		
		계	남	여
오산시	**103,162**	**230,165**	**119,696**	**110,469**
중앙동	14313	35,396	17,766	17,630
대원동	28546	64,677	33,698	30,979
남촌동	13976	20,626	12,416	8,210
신장동	25625	60,935	30,835	30,100
세마동	13008	31,916	16,389	15,527
초평동	7694	16,615	8,592	8,023

3. 재정규모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202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의 합계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액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19,558,337**	**100**	
일 반 회 계	600,588,294	83.5	
특 별 회 계	118,970,043	16.5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00,414,417	13.9	
상 수 도 사 업	36,500,293	5.0	
하 수 도 사 업	63,914,124	8.9	
기 타 특 별 회 계	18,555,626	2.6	
교 통 사 업	16,469,104	2.3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1,694,578	0.2	
도 시 개 발	80,290	0.0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70,856	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0,798	0.1	

※ 재정자립도 : 33.08%(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 100)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제2장 오산시의회 현황

제1절 연혁

제2절 의회구성

제3절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선거

제4절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

제2장 오산시의회 현황

제1절 연혁

1961년 이후 30여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1988년 4월 6일 전문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오산시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의하여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1991년 4월 15일 초대 오산시의회를 개원한 후,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9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초대의회

○ 1991. 3. 26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1991. 4. 15 ····· 개원 및 전반기 원구성
○ 1993. 4. 9 ····· 후반기 원구성

□ 제2대 의회

○ 1995. 6. 27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3년)
○ 1995. 7. 20 ····· 개원 및 전반기 원구성
○ 1996. 10. 22 ····· 전반기 의장 보궐선거
○ 1996. 12. 19 ····· 의원(남촌동 선거구) 보궐선거
○ 1997. 1. 13 ····· 후반기 원구성
○ 1998. 4. 7 ·····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 제3대 의회

○ 1998. 6. 4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1998. 7. 10 ····· 개원 및 전반기 원 구성
○ 2000. 7. 10 ····· 후반기 원 구성

□ 제4대 의회

○ 2002. 6. 13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2002. 7. 9 ····· 개원 및 전반기 원 구성
○ 2004. 7. 9 ····· 후반기 원구성
○ 2006. 4. 28 ·····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 제5대 의회

○ 2006.05.31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2006. 7. 6 ····· 개원 및 전반기 원 구성
○ 2008. 7. 1 ····· 후반기 원구성

□ 제6대 의회

○ 2010. 6. 2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2010. 7. 2 ····· 개원 및 전반기 원 구성
○ 2012. 7. 1 ····· 후반기 원구성

□ 제7대 의회

○ 2014. 6. 4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2014. 7. 1 ····· 개원 및 전반기 원 구성
○ 2016. 7. 1 ····· 후반기 원구성

□ 제8대 의회

○ 2018. 6. 13 ····· 의원 선거(의원 7명, 임기 4년)
○ 2018. 7. 2 ····· 개원 및 전반기 원 구성
○ 2020. 7. 1 ····· 후반기 원구성

※ 역대 의장단 현황

구 분		의 장		부 의 장	
		성 명	재 임 기 간	성 명	재 임 기 간
초 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공호식	'91. 04. 15 ~ '93. 04. 14	조재웅	'91. 04. 15 ~ '93. 04. 14
	후반기	임영근	'93. 04. 15 ~ '95. 06. 30	안재영	'93. 04. 15 ~ '95. 06. 30
제2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유재일	'95. 07. 20 ~ '96. 10. 21	김진구	'95. 07. 20 ~ '97. 01. 19
		박명삼	'96. 10. 22 ~ '97. 01. 19		
	후반기	박명삼	'97. 01. 20 ~ '98. 06. 30	이용우	'97. 01. 20 ~ '98. 04. 03
				김주원	'98. 04. 04 ~ '98. 06. 30
제3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백승하	'98. 07. 01 ~ '00. 07. 09	이진수	'98. 07. 01 ~ '00. 07. 09
	후반기	문중배	'00. 07. 10 ~ '02. 06. 30	백대현	'00. 07. 10 ~ '02. 06. 30
제4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백대현	'02. 07. 09 ~ '04. 07. 08	한지훈	'02. 07. 09 ~ '04. 07. 08
	후반기	최원헌	'04. 07. 09 ~ '06. 06. 30	임찬섭	'04. 07. 09 ~ '06. 04. 17
				조문환	'06. 04. 28 ~ '06. 06. 30
제5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조문환	'06. 07. 06 ~ '08. 06. 30	이기흥	'06. 07. 06 ~ '08. 06. 30
	후반기	윤한섭	'08. 07. 01 ~ '10. 06. 30	김명철	'08. 07. 01 ~ '10. 03. 30
제6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김진원	'10. 07. 02 ~ '12. 06. 30	최인혜	'10. 07. 02 ~ '12. 06. 30
	후반기	최웅수	'12. 07. 01 ~ '14. 06. 30	김지혜	'12. 07. 01 ~ '14. 06. 30
제7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문영근	'14. 07. 01 ~ '16. 06. 30	이상수	'14. 07. 01 ~ '16. 06. 30
	후반기	손정환	'16. 07. 01 ~ '18. 06. 30	장인수	'16. 07. 01 ~ '18. 06. 30
제8대 오산시의회	전·후반기	장인수	'18. 07. 02 ~ '22. 06. 30	김영희	'18. 07. 02 ~ '22. 06. 30

제2절 의회구성

1. 구성개요

제8대 오산시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2005.08.04)에 따른 중선거구제에 따라 관내 2개 선거구(가지역: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나지역:대원동, 남촌동, 초평동)에서 선출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에는 제8대 의회 개원 및 7월 2일에는 임기 2년의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으며 2020년 7월 1일에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각각 선출하였다.

2. 사무기구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합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무과장과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과 의사팀의 정수를 18명으로 하였으며, 그 직급별 정원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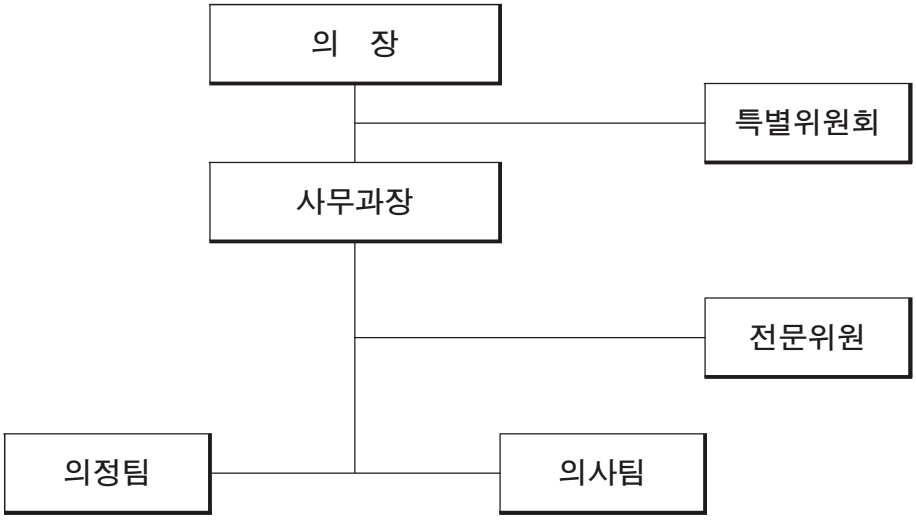

의회사무과 정/현원 현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18/16	2/2	3/4	5/7	5/1	3/2

3. 의회 청사 현황

○ 청사신축 ····· 2001. 8. 27

○ 연 면 적 ····· 1,233.78㎡
- 본 회 의 장 ····· 242.74㎡
- 회 의 실 ····· 197.64㎡(제1회의실 121.5, 제2회의실 76.14)
- 의 장 단 ····· 161.1㎡(의장 77.94, 부의장 48.6, 부속실 34.56)
- 의원사무실 ····· 172.97㎡
- 자 료 실 ····· 68.4㎡
- 의회사무과 ····· 105.98㎡
- 기 타 ····· 361.19㎡

○ 의석배치 ····· 71석
- 의장 및 의원석 ····· 8석
- 집행기관석 ····· 59석
- 과장·팀장 및 직원석 ····· 5석
- 기자 및 방청석 ····· 26석

제3절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 선거

1. 선거개요

지방의회 제7대 의원의 임기만료로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의하여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7명에 15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인구 및 선거인수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인수	투표수	유효투표수	무효	투표율	비고
가 지역구	3	88,108	49,525	47,582	1,943	56.2%	
나 지역구	3	81,530	40,494	38,823	1,671	49.7%	

□ 선거구별 의원정수

계	가 선거구(중앙·신장·세마동)	나 선거구(대원·남촌·초평동)	비례대표
7	3	3	1

2. 후보자별 득표현황

□ 가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명	정당	득표수	비율(%)	무효투표수	비고
88,108	49,525	김영희	더불어민주당	19,027	39.98	1,943	당선
		이성혁	더불어민주당	11,009	23.13		당선
		이상복	자유한국당	6,387	13.42		당선
		박천복	자유한국당	2,989	6.28		
		이연근	바른미래당	3,121	6.55		
		조문환	무소속	2,444	5.13		
		이상수	무소속	2,605	5.47		

□ 나 선거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명	정당	득표수	비율(%)	무효투표수	비고
81,530	40,494	성길용	더불어민주당	14,074	36.25	1,671	당선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11,996	30.29		당선
		김명철	자유한국당	5,246	13.51		당선
		김지혜	자유한국당	4,938	12.71		
		김용민	바른미래당	2,569	6.61		

□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정당	득표수	비율(%)	비고
169,638	90,015	더불어민주당	59,652	67.47	당선
		자유한국당	20,686	23.40	
		바른미래당	8,063	9.12	

3. 지방의회의원 선거결과

□ 연령별 현황

계	30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7	-	1	1	4	1	-

□ 최연소·최고령 당선자 현황

최 연 소			최 고 령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선거구	성명	생년월일
나 선거구	장인수	79.09.03	가 선거구	이상복	58.05.27

□ 최다·최소득표 당선자 현황

최다득표자				최소득표자			
선거구	성명	유효투표수	득표수	선거구	성명	유효투표수	득표수
가 선거구	김영희	47,582	19,027	나 선거구	김명철	38,823	5,246

제4절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

1. 개원준비 및 의원등록

2018년 6월 13일 2개 선거구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끝나고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 7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의원 당선자에게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등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당선자 전원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6월 20일 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하여 의회 시설안내 및 의회 운영 요령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으로써 개원 준비를 모두 마쳤다.

2. 최초 임시집회

지방의원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지방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무과장이 소집공고를 하여 7월 2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제8대 오산시의회 최초 임시회인 제233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집회보고에 이어 의장단 선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8대 의회의 최다선 의원인 김명철 의원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무기명 투표결과 장인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어서 장인수 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영희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으로서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마쳤다.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운영하며 회의장 질서 유지 및 의회사무를 감독하게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유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개원식

2018년 7월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마친후 다음날인 2018년 7월 3일 오후 14시에 각급 기관·단체장과 주민 및 곽상욱 시장과 간부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개원식에서 7명의 의원들은 장인수 의장의 선창으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개원식이자 제8대 오산시의회 의정 활동을 시작하였다.

장인수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출발을 하는 개원사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한 것은 비판과 시정을 통해 오산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개원사를 마쳤다.

제 2 편 의 정 활 동

第8代 烏山市議會 議政白書 (2018. 7. 1. ~ 2022. 6. 30.)

제 1 장 주요의정활동 상황

제 2 장 회의운영 현황

제 3 장 행정사무감사

제 4 장 시정질문 및 답변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제1장 주요의정활동 상황

제1장 주요의정활동 상황

1. 회기운영

회의구분 \ 연도별		계	2018년 (7.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30)
계	회수	34	6	8	8	8	4
	일수	366	67	93	91	91	24
정례회	회수	8	2	2	2	2	
	일수	191	46	46	50	49	
임시회	회수	26	4	6	6	6	4
	일수	175	21	47	41	42	24

2. 연도별 안건접수 현황

구분 \ 연도별	안건유형별														비고
	계	조례(규칙)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보고안	결의안	의견제시	건의안	청원	기타	
		소계	제정	개정	폐지										
계	682	385	124	249	12	29	159	8	18	8	19	0	0	56	
2018년 (7.1~)	88	40	11	28	1	4	29	2	2	1	2			8	
2019년	159	89	36	52	1	5	37	2	5	2	2			17	
2020년	185	121	36	81	4	8	27	2	5	2	6			14	
2021년	212	114	34	74	6	11	56	2	5	3	7			14	
2022년 (~6.30)	38	21	7	14		1	10		1		2			3	

3. 조례(규칙)안 의결내역

구분 / 연도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례(규칙)안 현황								
			안건유형			발의 및 제출자		의결			
			제정	개정	폐지	의원	시장	원안	수정	부결	철회
계	385	385	124	249	12	158	227	346	30	8	1
2018년	40	40	11	28	1	8	32	34	4	2	
2019년	89	89	36	52	1	41	48	75	12	2	
2020년	121	121	36	81	4	51	70	111	7	2	1
2021년	114	88	34	74	6	52	62	83	3	2	
2022년	21	47	7	14		6	15	43	4		

4. 특별위원회 활동

(횟수/일수)

연도별	계	조례심사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계	52 / 203	25 / 61	18 / 97	8 / 38	1 / 7
2018년	8 / 37	3 / 9	3 / 19	2 / 9	
2019년	14 / 57	7 / 17	4 / 24	2 / 9	1 / 7
2020년	13 / 48	6 / 14	5 / 25	2 / 9	
2021년	14 / 52	7 / 16	5 / 25	2 / 11	
2022년	3 / 9	2 / 5	1 / 4		

5. 7분(5분) 자유발언 및 시정에 관한 질문

구 분	7분(5분) 자유발언		시정에 관한 질문	
	발언 의원수	발언 건수	질문 의원수	질문 건수
계	20	20	3	11
2018년	3	3		
2019년	4	4	2	7
2020년	9	9	1	4
2021년	4	4		
2022년				

6. 회기별 의안접수 현황

구분	계	조례(규칙)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보고안	결의안	의견제시	건의안	청원	기타
		의원	시장									
계	682	158	227	29	159	8	18	8	19	0	0	56
제233회 임시회	0											
제234회 임시회	1	1										
제235회 임시회	11			1	8							2
제236회 임시회	32	2	17		11				1			1
제237회 정례회	14	1	2		5	2	1	1				2
제238회 정례회	30	4	13	3	5		1		1			3
제239회 임시회	13	3	6				2					2
제240회 임시회	16	9		1	2		1	1				2
제241회 임시회	19	5	6		5							3
제242회 임시회	2											2
제243회 정례회	28	3	9		11	2						3
제244회 임시회	31	11	11	1	5			1				2
제245회 임시회	21	2	9		8				1			1
제246회 정례회	29	8	7	3	6		2		1			2
제247회 임시회	13	6	2				3		1			1
제248회 임시회	19	2	6	1	5		1		2			2
제249회 임시회	3	1		1								1
제250회 임시회	1											1
제251회 정례회	42	9	20		7	2			1			3
제252회 임시회	42	14	15	2	5			1	2			3
제253회 임시회	29	9	10		8			1				1
제254회 정례회	36	10	17	4	2		1					2
제255회 임시회	11	3	4		1			1	1			1
제256회 임시회	3			2								1
제257회 임시회	14	5	4		2		1		1			1
제258회 임시회	32	5	13	2	5		1	1	2			3
제259회 정례회	32	8	13		4	2		1	1			3
제260회 임시회	56	5	11	3	32		1		2			2
제261회 임시회	14		3		10							1
제262회 정례회	24	5	9	4	2		2					2
제263회 임시회	26	21	5									
제264회 임시회	1		1									
제265회 임시회	15	1	3	1	5		1		2			2
제266회 임시회	22	5	11		5							1

7. 회기별 의안처리 현황

구분	계	가 결		부 결	보류	철회	비 고
		원 안	수 정				
계	687	629	37	13	5	3	
제233회 임시회	0						
제234회 임시회	1	1					
제235회 임시회	11	10	1				
제236회 임시회	32	30	1	1			
제237회 정례회	14	13	1				
제238회 정례회	30	24	4	2			
제239회 임시회	13	13					
제240회 임시회	16	13	1		2		
제241회 임시회	20	18	1	1			보류건처리
제242회 임시회	2	2					
제243회 정례회	28	25	3				
제244회 임시회	32	27	5				보류건처리
제245회 임시회	21	19	1		1		
제246회 정례회	30	24	4	2			보류건처리
제247회 임시회	13	13					
제248회 임시회	19	18			1		
제249회 임시회	3	3					
제250회 임시회	1	1					
제251회 정례회	43	39		3		1	보류건처리
제252회 임시회	42	38	3	1			
제253회 임시회	29	26	3				
제254회 정례회	36	35	1				
제255회 임시회	11	10	1				
제256회 임시회	3	3					
제257회 임시회	14	13		1			
제258회 임시회	32	29	2			1	
제259회 정례회	30	28	1	1			미상정
제260회 임시회	58	58					미상정처리
제261회 임시회	14	12		1	1		
제262회 정례회	25	25					보류건처리
제263회 임시회	26	26					
제264회 임시회	1	1					
제265회 임시회	15	15					
제266회 임시회	22	17	4			1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제2장 회의운영 현황

제1절 2018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절 2019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3절 2020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4절 2021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5절 2022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장 회의운영 현황

제1절 2018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3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소집요구 : 2018. 6. 26 의회사무과장
○ 집회공고 : 2018. 6. 26
○ 회 기 : 2018. 7. 2 (1일간)
○ 주요안건
1.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7. 2.(월) 10:00 본회의장	1.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 2.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23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23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3.(화) 14:00 본회의장	□ 개 원 식 (내빈소개) 1. 개 식 2. 국민의례 3. 의원선서 4. 의원윤리강령 낭독 5. 개 원 사 6. 축 사 7. 축 사 8. 폐 식	

3.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의장·부의장 선거

▷ 오산시의회 16대 의 장 : 장인수 의원 (총투표수 7표중 7표)

▷ 오산시의회 17대 부의장 : 김영희 의원 (총투표수 7표중 5표)

4. 개원사 [의장 : 장인수]

안녕하십니까?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장인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의정동우회 임명재 회장님을 비롯한 오산시의회 역대 선배 의원님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식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매우 고맙고 반갑게 생각을 하며 오산시의회 전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시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 당당하게 당선되어 제8대 의회의 첫발을 내딛는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거과정에서 보내준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 당선되시어 앞으로 4년간 오산시를 이끌어 나가실 곽상욱 시장님께도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7월 1일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어제 임기 2년의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데 이어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정식으로 알리는 뜻깊은 개원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1991년 초대 오산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오늘 제8대 의회 개원식이 있기까지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신 역대 의회 선배의원님 여러분! 곽상욱 시장님과 역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8대 오산시 의원 일동은 28년 된 청년 오산시의회 위상에 걸맞게 더욱 활기차고 더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당선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절박했던 초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부족한 저를 7명의 전의원이 정당을 떠나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해준 화합하라는 고맙고 깊은 뜻을 헤아려 오산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으로서 젊음과 열정으로 매사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의원 간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범적인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시정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잘한 것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잘못한 것은 비판과 시정을 통해 오산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고 의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소통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제8대 오산시의회 의원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역대 선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귀한 시간을 내주신 임명재 의정동우회장님, 임영근 의장님, 백승하 의장님, 문중배 의장님, 조재웅 부의장님, 한지훈 부의장님, 이기흥 부의장님, 불과 3일 전까지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내신 손정환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에 즈음한 개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축사 [오산시장 : 곽상욱]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하는 것을 23만 오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개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조재웅 오산노인회지회장 및 오산시 의정동우회 임명재 회장님과 전 손정환 의장님, 전 임영근 의장님 및 역대 시의회 의장님 한분 한분과 또 전의원, 의장님 의원 여러분의 참석에 특별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로운 당선의 영광과 함께 의회를 이끌어 갈 장인수 의장님과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와 의원 여러분 모두 이제 우리 모두가 새 출발의 선에 섰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지난 8년의 연속선상에서 30년 청년 오산을 완결하고 민선 5기, 6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백년 오산의 미래 토대를 탄탄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산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지만 최악의 공포적인 아파트 빌딩 숲 동탄2 쓰나미 개발 등 주위에 수원, 화성, 용인, 평택시 등 100만 도시들이 즐비하고 도전받는 상황에서 앞으로 오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미래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낼 것인가!

오산에 꼭 필요한 오산만의 도시 발전전략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도시에 대한 철학과 발전전략에 대한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 전략과 철학, 비전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께 우리 오산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골자만 간략히 제안,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8년간 전국 도시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교육주도 도시발전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글로벌 교육도시로써 전 세계의 혁신교육도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산 교육을 글로벌스탠다드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고히 높여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민원서비스 등 직접적인 행정부문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교육을 선도분야로 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써, 출산보육 여성친화도시로써,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하는 어우러져 어울림이 있는 복지의 도시로써,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이 시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성취해 낼 것입니다.

셋째로,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산업단지개발이나 도시생태환경 기반시설 구축 과 관광지개발 등 산업경제와 일자리 핵심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기간 중에 오산을 살릴 5대 먹거리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언했습니다.

첫째로, 오산천 전체 수계 생태하천복원 완성과 둘째로, 역사적인 한반도 남북평화와 번영 속에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과 셋째로, 내삼미동 공유부지를 수도권 남부 최고의 교육과 한류, 관광 복합단지로 구축해 내고 넷째로, 독산 산성을 원형 복원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대·등재를 목표로 하고 다섯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산 뷰티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이 모두 중요합니다.

오산의 미래 발전전략은 산업경제 일자리와 매력적인 도시생태환경 조성과 교육, 보육,

복지 병진정책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일자리 5만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모두 129개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오산 발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청사진을 꼼꼼하게 그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공약 내용 또한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저는 시정 내용과 함께 적극 검토해 드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행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오산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30년 청년오산을 완성하고 백년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산의 백년 미래는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오산 시민들이 함께 그리는 오산의 미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참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로 더 나은 오산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오로지 시민우선, 시민만 바라보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고락을 함께 하고 대의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적 기초인 제8대 오산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주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며 오산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23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영희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8. 7. 11
○ 회 기 : 2018. 7. 16 ~ 7. 20 (5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제8대 오산시의회 사실상 첫 번째인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선출되고 제8대 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이래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시정업무를 파악해온 의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산시 최초 3선시장으로서 앞으로 4년간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계획을 꼼꼼히 설계하고 추진기틀 마련에 여념이 없으신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8대 오산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선거당시 지역주민에게 한 표를 호소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시민과 함께 하는 가운데 소통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의원간담회를 자주 열고 의원 여러분의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아카데미, 의원연수를 활성화 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훌륭한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칭찬과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민의에 어긋난 행정에 대하여는 견제와 감시, 시정을 통해 행정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유엔초전기념평화공원 등 6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시정업무보고는 제8대 오산시의회 들어 처음으로 오산시의 시정방향과 계획을 보고 받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의원님들께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6, 7, 8월은 장마와 태풍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각종 재해위험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재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9월과 10월에는 제30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 제9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제15회 오산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 대회 등 매우 중요한 행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오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한 청년 오산시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7.16.(월) 11:00 본회의장	□ **개회식**	○ 휴회 : 7.17.~ 7.19. (3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5분 자유발언** 1. 제234회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제234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 휴회의 건	
7.16.(월) 14:00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유엔초전기념평화공원 2. 복합안전체험관 3. 미니어처테마파크 4. 복합문화체육센터 5. 오산역환승센터 6. 음식물자원화시설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7.17.(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1. 안전행정국(6과)－(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2. 복지교육국(5과)－(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3. 오산교육재단	
7.18.(수)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1. 경제문화국(5과)－(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문화체육관광과) 2. 오산문화재단 3. 미래도시국(6과)－(도시과, 미래사업과, 건설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차량등록과)	
7.19.(목)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1. 사업소(7과)－(보건소(2), 환경사업소(4), 중앙도서관) 2. 관(2과)－(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3. 오산시시설관리공단	
7.20.(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김영희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제1조에 있는 목적 규정의 약칭을 생략하고, 약칭의 용어 사용이 처음 규정된 제2조에 두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의 직무대행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 목적규정에 있는 약칭규정을 삭제 하고, 약칭의 용어 사용이 처음 규정된 제2조에 약칭규정 삽입(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위원장 선출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순서 조정(안 제3조제2항).

・연장위원 → 최다선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위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7.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소집요구 : 김명철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8. 8. 14.
○ 회 기 : 2018. 8. 22. ~ 8. 31. (10일간)
○ 주요안건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오산시 중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기부채납(안)]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안)]
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운천 공영주차장 조성(안)]
8.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궐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안)]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내일 앞으로 다가온 초가을의 문턱에 선 오늘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참으로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에다 극심한 가뭄으로 밤잠을 설칠 만큼 일상생활이 버거웠고 자연은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여름을 이긴다고 합니다. 다가

올 가을의 신선함과 풍요로움의 결실을 상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막바지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제8대 오산시의회는 출범 후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를 비롯한 시정업무 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방문, 의원간담회 개최, 유관기관방문, 속초자매도시 방문, 각종 행사 및 회의개최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및 견제기관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공익우선의 의무를 제대로 실천했는지 되돌아보며 임기 내내 초심을 간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공정한 잣대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들을 발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사업 등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 내실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수립에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제30회 오산시민의 날 행사, 제9회 독산성문화제, 제15회 오산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 대회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산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5번째 열리는 전통 있는 대회인 만큼 명실 공히 전국대회에 걸맞게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오산시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의결 즉시 조속한 집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0월중 제1차 정례회의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즐겁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생활안전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도 다함께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합동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 사이 우리시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취약지역 사전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제3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8.22.(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8.23. ~8.30. (8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1. 제23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8.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오산시 중앙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1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기부채납(안)] 1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안)] 13.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운천 공영주차장 조성(안)] 1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궐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안)] 15.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안)]	
	16. 휴회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8.23.(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30 제2회의실	□ **안건 협의(행정사무감사계획)**	
8.24.(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8.25.(토) ~ 8.26.(일)	□ **휴 일**	
8.27.(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사항별 설명, 질의·답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8.28.(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질의·답변**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미래도시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8.29.(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30.(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31.(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94,984,164 천원

나. 일반회계 ····· 542,606,111 천원

다. 특별회계 ····· 152,378,053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6,315,542 천원

○ 기타특별회계 ····· 46,062,511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24,689,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1,128,057 천원

○ 지방교부세 ····· 84,069,417 천원

○ 조정교부금 ····· 48,550,000 천원

○ 보 조 금 ····· 153,962,778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202,584,912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24,689,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7,999,078 천원

○ 지방교부세 ····· 840,69,417 천원

○ 조정교부금 ····· 48,550,000 천원

○ 보 조 금 ····· 150,871,127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06,427,489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3,128,979 천원

○ 보 조 금 ····· 3,091,651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96,157,423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93,908,801 천원
○ 재 무 활 동 ····· 42,562,44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8,512,921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46,835,913 천원
○ 재 무 활 동 ····· 42,049,629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3,720,569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47,072,888 천원
○ 재 무 활 동 ····· 512,813 천원
○ 행정운영경비 ····· 4,792,352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50건 ····· 440,742,537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8. 30.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694,984,164	613,233,730	81,750,434	13.33
일반회계	소 계		542,606,111	496,796,795	45,809,316	9.22
	지방세수입		124,689,000	130,385,000	△5,696,000	△4.37
	세외수입		27,999,078	27,007,238	991,840	3.67
	지방교부세		84,069,417	77,433,200	6,636,217	8.57
	조정교부금등		48,550,000	48,550,000	0	0
	보조금		150,871,127	150,352,613	518,514	0.3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6,427,489	63,068,744	43,358,745	68.75
특별회계	소 계		152,378,053	116,436,935	35,941,118	30.86
	공기업	소 계	106,315,542	84,131,917	22,183,625	26.36
		상수도 소 계	40,437,029	40,437,029	0	0
		상수도 사업수익	18,290,228	18,290,228	0	0
		상수도 자본적수입	22,146,801	22,146,801	0	0
		하수도 소 계	65,878,513	43,694,888	22,183,625	50.76
		하수도 사업수익	23,621,148	23,620,711	437	0.002
		하수도 자본적수입	42,257,365	20,074,177	22,183,188	110.51
	기타	소 계	46,062,511	32,305,018	13,757,493	42.58
		세외수입	9,022,553	7,475,653	1,546,900	20.69
		보조금	1,390,241	390,241	1,000,000	256.2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649,717	24,439,124	11,210,593	45.87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 감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10종)	694,984,164	△3,819,025	3,819,025	694,984,164
일반회계 (1 종)	542,606,111	△3,819,025	3,819,025	542,606,111
특별회계 (9 종)	152,378,053	-	-	152,378,053
공기업특별회계(2종)	106,315,542	-	-	106,315,542
상수도특별회계	40,437,029	-	-	40,437,029
하수도특별회계	65,878,513	-	-	65,878,513
기타특별회계 (7종)	46,062,511	-	-	46,062,511
교통사업특별회계	41,442,289	-	-	41,442,28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82,132	-	-	1,082,132
대지보상특별회계	36,750	-	-	36,75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71,211	-	-	471,211
도시개발특별회계	76,683	-	-	76,683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51,526	-	-	51,52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2,901,920	-	-	2,901,920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 감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542,606,111**	**△3,819,025**	**3,819,025**	**542,606,111**
의회사무과	2,031,593	-	-	2,031,593
홍보감사관	3,541,106	△224,360	3,819,025	7,135,771
기획예산관	21,166,169	△40,000	-	21,126,169
자치행정과	54,823,795	-	-	54,823,795
안전총괄과	3,319,923	-	-	3,319,923
세정과	503,183	-	-	503,183
징수과	487,293	-	-	487,293
회계과	23,031,204	△30,000	-	23,001,204
정보통신과	5,886,809	-	-	5,886,809
희망복지과	18,480,127	△20,000	-	18,460,127
노인장애인과	57,485,125	-	-	57,485,125
가족보육과	103,770,458	-	-	103,770,458
민원여권과	384,581	-	-	384,581
평생교육과	28,656,682	-	-	28,656,682
일자리정책과	5,346,897	-	-	5,346,897
지역경제과	2,408,953	△30,000	-	2,378,953
문화체육관광과	16,797,106	-	-	16,797,106
농식품위생과	7,805,968	△81,595	-	7,724,373
토지정보과	545,711	-	-	545,711
도시과	159,708	-	-	159,708
미래사업과	19,586,853	-	-	19,586,853
건설도로과	32,063,374	△100,000	-	31,963,374
교통과	48,568,790	△740,480	-	47,828,310
건축과	10,339,991	-	-	10,339,991
차량등록과	125,985	-	-	125,985
보건행정과	5,577,575	-	-	5,577,575
건강증진과	6,707,876	-	-	6,707,876
환경과	29,339,918	△1,467,590	-	27,872,328
수도과	2,174,500	-	-	2,174,500
하수과	838,737	-	-	838,737
하천공원과	19,349,504	△85,000	-	19,264,504
중앙도서관	7,988,889	△1,000,000	-	6,988,889
중앙동행정복지센터	641,344	-	-	641,344
대원동행정복지센터	780,076	-	-	780,076
남촌동행정복지센터	381,690	-	-	381,690
신장동행정복지센터	698,960	-	-	698,960
세마동주민센터	503,266	-	-	503,266
초평동주민센터	306,392	-	-	306,392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 세 입 : 해당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액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9,401,920	△3,819,025	3,819,025	9,401,920
홍 보 감사관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행정홍보 사업비	650,000	△130,000	-	520,000
〃	〃	〃	◎ 간행물 구독	29,760	△9,360	-	20,400
〃	〃	〃	◎ 주요시책홍보	130,000	△30,000	-	100,000
〃	〃	〃	◎ 중앙언론매체 시정홍보	130,000	△22,000	-	108,000
〃	〃	〃	◎ 서울도심 지하철 액자 광고 홍보	33,000	△33,000	-	0
기 획 예산관	법제및소송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소송비용 등 (행정,민사)	190,000	△40,000	-	150,000
회계과	시청사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75,000	△30,000	-	45,000
희 망 복지과	오산시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설치 임대 보증금 등	20,000	△20,000	-	0
지 역 경제과	전통시장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홍보비 등)	30,000	△15,000	-	15,000
〃	전통시장 운영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야시장 및 야맥 축제 지원 - 야맥축제	75,000	△15,000	-	60,000
농식품 위생과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 인건비	190,080	△42,240	-	147,840
〃	〃	201-01 사무관리비	◎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 장비 임차료(포크레인)	24,000	△12,000	-	12,000
〃	〃	〃	◎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 장비임차료 (트렉터)	12,000	△12,000	-	0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액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농식품 위생과	국도변 꽃 단지 조성 사업	206-01 재료비	◎ 코스모스 모종비	6,325	△5,475	-	850
〃	〃	〃	◎ 비료, 거름 구입비	5,000	△1,080	-	3,920
〃	〃	〃	◎ 유채종자 구입비	8,800	△8,800	-	0
건 설 도로과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401-01 시설비	◎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100,000	△100,000	-	0
교통과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버스운전자 양성 과정 운영(자체)	40,480	△40,480	-	0
〃	오산역 환승 센터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오산역환승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2,130,000	△700,000	-	1,430,000
환경과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라돈측정기	1,000	△1,000	-	0
〃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307-05 민간위탁금	◎ 불연성폐기물 대행처리비	86,625	△18,650	-	67,975
〃	〃	〃	◎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소각 폐기물 대행처리비	1,000,800	△172,320	-	828,480
〃	〃	〃	◎ 재활용품 선별 대행처리비	2,049,050	△375,620	-	1,673,430
〃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 기계설비 개선공사 (선별파쇄기 교체)	1,300,000	△900,000	-	400,000
하 천 공원과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사업	401-01 시설비	◎ 세교지구 공원등 커버 교체	85,000	△85,000	-	0
중 앙 도서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소리울도서관 물품 및 악기 구입	1,000,000	△1,000,000	-	0
기 획 예산관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 유보금	0	-	3,819,025	3,819,025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12.31. 만료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현황

위 치	오산시 오산로 278번길 3(오산동)			
설 치 일	1991. 3. 12.			
면 적	355.1㎡ (지하1층, 지상 3층)			
층별용도	지하(228.45㎡)	1층(228.45㎡)	2층(221.83㎡)	3층(211.83㎡)
	– 주차장 – 창고 – 기계실	– 오색경로당	– 사무실 – 상담실(3개)	– 회의실, – 집단상담실 – 미술치료실 등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879,849	567,998	617,844	694,007

○ 현 위탁체 현황

위 탁 자	오산청년회의소 (회장 원종윤)
위탁기간	2016. 1. 1. ~ 2018.12.31

○ 종사자 현황 : 18명 (학교상담전담 14명 별도관리)

구분	총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규직)						청소년동반자 (계약직)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계약직)	학교상담 프로그램 (계약직)
		계	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팀장	팀원	팀장	팀원	계	전일제	시간제	팀 원	상담사
정원	18 (32)	6	1	1	2	1	1	10	2	8	2	14
현원	18 (32)	6	1	1	2	1	1	10	2	8	2	14

2. 위탁운영 계획

○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청소년활동 진흥법」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처분을 받은 단체

○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전반 및 시 자체 지원사업 등
–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및 수탁자 자부담
– 수탁자는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대, 담보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 회계관리
⇨ 회계는 법인 또는 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 청소년사업안내, 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또한,「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제13조(위탁의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정

⇨ 개최일시 : 2018. 11월

⇨ 장　　소 : 시청 상황실

○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위탁운영체들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고,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운영체 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통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중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18.12.31. 만료로「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위탁시설 개요

○ 위탁시설 현황

<table>
<tr><td>위　　치</td><td colspan="9">오산시 경기대로307(오산동)</td></tr>
<tr><td>설 치 일</td><td colspan="9">2013. 8. 21.</td></tr>
<tr><td>면　　적</td><td colspan="9">505.86㎡ (중앙동주민센터 4층)</td></tr>
<tr><td rowspan="2">구분</td><td>사무실</td><td>나래터</td><td>도담터</td><td>play&
cafe</td><td>동아리</td><td>음악
연습실</td><td>댄스
연습실</td><td>화장실
2</td><td>복도등</td></tr>
<tr><td>32,76㎡</td><td>32,76㎡</td><td>32,76㎡</td><td>37,8㎡</td><td>24,57㎡</td><td>24,57㎡</td><td>49,14㎡</td><td>93,6㎡</td><td>177,9㎡</td></tr>
<tr><td rowspan="2">운영보조금
지원현황</td><td colspan="3">계</td><td colspan="2">2016년도</td><td colspan="2">2017년도</td><td colspan="2">2018년도</td></tr>
<tr><td colspan="3">602,005</td><td colspan="2">121,548</td><td colspan="2">197,902</td><td colspan="2">282,555</td></tr>
</table>

○ 현 위탁체 현황

위 탁 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조창석)
위탁기간	2016. 10. 23. ~ 2018.12.31

○ 종사자 현황 : 4명 (관장,팀장,청소년지도자,기간제)

구분 / 정원	총계	중앙청소년문화의집(정규직)				
		계	관장	팀장	직원	청소년배치지도사
정원	4	4	1	1	1	1
현원	4	4	1	1	1	1

○ 2018년 사업비 지원: 368.617천원(국 70,812/도 15,250/시 282,555)

구분	예 산 액(천원)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68,617	70,812	15,250	282,555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지원	173,583	–	–	173,583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사업비 지원	66,016	–	–	66,016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21,912	10,956	–	10,956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	2,000	1,000	–	1,00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7,356	57,356	–	–
2018 오산시 청소년종합예술제	17,500	–	5,250	12,250
2018 차세대위원회 연찬회	6,500	–	–	6,500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3개)	3,750	1,500	–	2,250
한울타리 토요학교	10,000	–	–	10,000
경기도 공모사업 메이커 교육	10,000	–	10,000	–

2. 위탁운영 계획

○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청소년활동 진흥법」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 처분을 받은 단체

○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청소년문화의집 및 시 자체 지원사업 등

–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및 수탁자 자부담

– 수탁자는 직접 중앙청소년문화의집를 운영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대, 담보할 수 없음.

–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 회계관리

⇨ 회계는 단체와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수탁자는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 청소년사업안내, 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또한,「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제13조(위탁의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방법 :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정

⇨ 개최일시 : 2018. 10월

⇨ 장　　소 : 시청 상황실

○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의거 위탁운영체들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고,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운영체 순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통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조직과 시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세교2택지개발 등 여건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 및 현 초평동 주민센터 부지의 세교2택지개발지 편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설계공모 실시 후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추진과정 중 시민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하여 건립 예정토지를 변경(동측 200m 이동)함에 따라 토지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실시에 따른 의견 반영을 위하여 연면적이 증가하였기에 당초 수립된 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 건 물 : 1건(신축)
· 변경 전 : 벌음동 236-4 일원, 2,500㎡, 추정가액 7,260,000천원
· 변경 후 : 벌음동 277 일원, 4,499㎡, 추정가액 8,960,000천원
- 토 지 : 1건
· 변경 전 : 벌음동 236-4 일원, 3,187㎡, 추정가액 6,237,080천원
· 변경 후 : 벌음동 277 일원, 4,473㎡, 추정가액 8,754,000천원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4,473 (당초 3,187)	8,754,000 (당초 6,237,080)	○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 부지매입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4,499 (당초 2,500)	8,960,000 (당초 7,260,000)	○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신축)
처분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종류	소재지	면적				
총계				17,714,000			
1	건물	벌음동 277번지 일원	4,499	8,960,000	2020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 (신축)	회계과
2	토지	벌음동 277번지 일원	4,473	8,754,000	2020	초평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회계과
		-- 이	하	여		백 --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기부채납(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기부채납(안)은 오산동 881-1번지의 "자동차 정류장 용도폐지"에 대하여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 하도록 조건을 부여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오산동 881-1번지에 주상복합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와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 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조성

○ 기부자 : 양 재 곤 [(구)터미널부지(오산동 881-1)번지 소유주]

○ 추정금액 : 3,060,000천원

가. 복합휴게광장 (2,220,000천원)

- 위　　치 : 오산시 오산동 903-1번지 일원
- 부 지 면 적 : 5,700㎡
- 기부할 물건

1) 시설물 : 광장포장, 야외무대, 바닥분수, 아트월, 경계휀스, 앉음벽 조형쉘터, 어울림테이블, 등의자, 자전거보관대 등

2) 수　목 : 교목, 관목, 지피 등

나. 노외주차장 (840,000천원)

- 위　　치 : 오산시 오산동 603-14번지 일원
- 부 지 면 적 : 2,022㎡
- 주 자 대 수 : 54면
- 기부할 물건

1) 부　지 : 245㎡

・오산동 603-14(198㎡), 오산동 603-104(19㎡), 오산동 603-106(21㎡), 오산동 603-108(7㎡)

2) 물　건 : 주차관제설비 1식 및 주차장 조성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2 2		3,060,000 3,060,000	
	1.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2		3,060,000	오산역 복합휴게광장 및 노외주차장 조성
처분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종류	위치	내 용	규 모				
총계		**2건**			**3,060,000**			
1	시설물	오산동 903-1 번지	야외무대	A=332㎡	2,220,000	2018	오산역 환승센터 교통광장으로 활용	
			바닥분수	L=116㎡				
			조형파고라A	1개소				
			조형파고라B	1개소				
			어울림테이블	1개소				
			등의자	8개소				
			플랜터	L=38.7m				
			앉음벽	L=16m				
			아트월	L=52m				
			경계휀스	L=53m				
			자전거보관대	1개소				
			인조화강석 블럭포장	2,930㎡				
			화강석 판석포장	1,105㎡				
			교목식재	129주				
			관목식재	9,010주				
			지피식재	2,880본				
			소로3-559호선	108m				
2	토지	오산동 603-14	기부채납	198㎡	840,000	2018	철도변 노외 주차장으로 활용	
	토지	오산동 603-104	기부채납	19㎡				
	토지	오산동 603-106	기부채납	21㎡				
	토지	오산동 603-108	기부채납	7㎡				
	시설물	오산동 603-14 일원	주차관제시설	1 set				
			아스콘 포장	1,204㎡				
			보차도경계석	294m				
			교목식재	5주				
			관목식재	300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대원동 주민센터는 행정관청 방문자 및 문화강좌 이용자들로 주차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 원동 404-9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이 부족하여 이용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주민센터 인근에 상가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외에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요도 상당한 바, 인접한 공원 부지를 일부 활용함으로써 주차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원동 404-9(1,001.3㎡, 시유지), 원동 404-7(330.5㎡, 시유지)
- 면　　적 : 총 1,331.8㎡
- 내　　용 : 4층 5단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60면
- 총사업비 : 3,450백만원
  (실시설계 200백만원, 감리 50백만원, 시설비 3,200백만원)

※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원동 404-7번지의 330.5㎡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절차를 이행(공원→주차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운천 공영주차장 조성(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운천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운암 2단지 주변 원룸단지 일대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시비 및 불법 주정차 민원 사례가 빈번한 지역으로, 여유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거주민의 불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암 2단지 주변(오산동 914번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 일부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절차를 밟아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폭발하는 주차수요를 일부 해소하고, 주차민원 등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 운천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오산동 914 (2,067.4㎡, 시유지)

· 내　　용 : 3층 4단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190면

· 총사업비 : 4,100백만원

(실시설계 200백만원, 감리 50백만원, 시설비 3,850백만원)

※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오산동 914번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중복결정) 절차를 이행(공원→공원·주차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궐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안)은 궐동지역의 주차문제가 전 지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오산대학교 주변 원룸단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불법주정차 및 주차불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도심형 생활주택이 오래 전부터 밀집하여 여유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오산대학교 후문 주변(궐동 656)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일부 면적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 만성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사안이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 궐동 제2 공영주차장 조성

・위　　치 : 궐동 656 (4,606.4㎡, 시유지)

・내　　용 : 2층 3단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200면

・총사업비 : 4,250백만원

(실시설계 200백만원, 감리 50백만원, 시설비 4,000백만원)

※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궐동 656번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중복결정) 절차를 이행(공원→공원·주차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청학동 일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조성 시기가 오래되어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특히 오산정보고등학교 앞 불법주차로 인해 학생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간 주차시비가 빈번하여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실정으로, 현재 쌍용제지㈜ 소유의 부지(청학동 188-5)를 임차하여 51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향후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해당 부지의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 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 토지 : 1건(매입)

・청학동 188-5, 1,921㎡, 추정가액 1,837백만원(공시지가 956,300원 기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1** **3**	**9,926.6** **1,921** **8,005.6**	**13,637** **1,837** **11,800**	
	1.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1	1,921	1,837	· 청학동 공영 주차장 조성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8,005.6	11,800	·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 운천 공영주차장 조성 · 궐동 제2 공영 주차장 조성
처분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종류	소재지	면적				
총계			9,926.6	13,637			
1	기타	원동 404-9	1,001.3	3,450	2020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교통과
		원동 404-7	330.5				
2	기타	오산동 914	2,067.4	4,100	2018	운천 공영주차장 조성	
3	기타	궐동 656	4,606.4	4,250	2018	궐동 제2 공영주차장 조성	
4	토지	청학동 188-5	1,921	1,837	2018	청학동 공영주차장 조성(매입)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승인

▷ 감사기간·대상부서 및 감사방법 확정

▷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증인출석범위 확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소집요구 : 이상복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8. 9. 7.

○ 회　　기 : 2018. 9. 17. ~ 9. 21. (5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4.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17. 오산시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오산세교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0. 오산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오산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25.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6.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7.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8.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9.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온 누리가 파란 하늘, 황금 들녘, 붉은 단풍으로 짙어가는 완연한 가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월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자 각종 행사와 행락객이 넘치는 축제와 낭만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직자에게는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며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사례 벤치마킹, 의원간담회, 현안사항 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해결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거쳐 제30회 오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행사는 지난해에 비해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성숙된 프로그램도 많았지만 아쉬웠던 부분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평가를 통해 내년에도 더욱 세련되고 내실 있는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9회 독산성문화제와 제15회 오산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개최하게 될 크고 작은 많은 행사준비와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느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더욱 분발하시어 행사에 대한 모든 준비사항 등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꼼꼼히 점검하고, 준비를 잘 하셔서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금번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2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경제 활동,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안건이 많은 만큼 의원님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출로 부의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결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고, 추석맞이 환경정비와 함께 추석연휴 시민불편 해소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통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 또한 9월은 다음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명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예산편성과 의원님들이 의원간담회, 주요업무보고, 부의안건심사, 선진사례 벤치마킹, 현장방문 등 각종 의정활동 과정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반영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7.(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9.18.~ 9.20. (3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6.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오산세교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8. 오산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오산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3.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5.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17.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8. 휴회의 건	
9.17.(월) 14:00 제2회의실	**-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17.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9.18.(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8.(화) 10:00 제1회의실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16.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조례안 19. 오산시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9.(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9.20.(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9.21.(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3.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에 지역방위작전의 지원 대책으로 작전시 급식·수송·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향토방위작전”을 “지역방위작전”으로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가목4))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에 지역방위작전간 급식·수송·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제7호).

가. 상황발생시 방위지원본부 급식 지원

나. 병력 및 무기·탄약·급식 수송 지원

다.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 지원

라. 급수 제한 시 정수차량 등 지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동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시장 권한의 위임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에 따라 사무 내용을 재정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조)

○ 시장 권한의 동 위임 사무 정비(안 별표)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다세대 주택 등의 신설, 기존 지역 세대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통·반 경계를 조정하고,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번 부여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중앙동 법정동 명칭 정정 및 지번 변경(안 별표1, 별표2)

(1) 중앙동 34통 3반 일부 오기 정정 : 부산동→오산동

(2) 부산동지구에 대한 지적공부 확정·시행에 따른 지번 변경
시티자이 1단지 : 부산동 495→800 / 2단지 : 부산동 661→801

○ 대원동 통·반 신설 및 조정(안 별표1, 별표2)

(1)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신축 등에 따라 인구과밀화된 지역(통)의 일부를 다른 통으로 편입

(2)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4개 통 신설(88~91통)

○ 신장동 통·반 신설 및 조정(안 별표1, 별표2)
인구밀집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조정 : 75통(신설), 5통(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직소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등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소통 및 토론문화를 확산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임기, 운영, 해촉,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 시민소통위원회 수당지급 및 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14조부터~제15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심 의 결 과 : 부결

– 조례안의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자문기구로서, 기능에 비해 조직과 규모가 크고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정 각 분야별 위원회와 관련 단체 등에서 동일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규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없음.

□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오산오산 민간·공공 공동주택사업지구' '지적 확정 측량 관련 행정구역변경 요청 건'과 관련하여,

○ 사업지역(오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내 2개 이상의 법정동이 걸쳐 있어,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법정동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조정하고자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 **주요골자**

○ 부산동 관할구역 란에 오산동 및 은계동의 일부 편입(안 별표)

⇒ 오산동 83필지, 은계동 3필지를 부산동으로 법정동 변경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전문가 참여 방안 등 미비한 사항들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방재단 단장 및 부단장 선출 절차 변경(안 제4조)

○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항목 일부 변경(안 제7조)
○ 자율방재협의회 기능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 방재단 소집 주체 내용 변경(안 제9조)
○ 금지행위 조항 명칭 변경 및 삭제(안 제12조)
○ 방재단 교육 및 훈련 조항 일부 변경(안 제14조,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세액공제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변경(안 제4조)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지방세의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자동이체 방식 및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7조)
(1) 자동이체방식: 계좌 자동이체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추가
(2) 세액공제대상: 전자송달 방식 납부 추가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장난감대여점 운영이 포함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 조례 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며,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오산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조)

(1) 평생학습관은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목적에 부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제②항)

(2)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교육경비 등 재정적 지원 및 필요한 인력지원 가능(제④항)

○ 평생학습관의 사업 중 ‘시민대학 운영 및 관리’, ‘민주시민 함양교육’ 신설(안 제14조)

○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근거 조항 신설(안 제21조)

○ 시민대학의 명칭 및 구성 조항 신설(안 제22조, 제23조)

○ 시민대학의 운영 조항 신설(안 제24조)

(1)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임하며, 시민대학장 명의로 수료증 발급(제①항)

(2)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오산시청 평생교육 주무부서에서 역할담당(제②항)

(3) 지정 학습공간의 최소한의 경비지원과 이용 학습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제④항, 제⑤항)

(4) 시민대학 운영에 필요한 활동가 모집 및 활동비 지급과 선진 학습 기관과의 학습 교류목적을 위한 경비 지원(제⑥항, 제⑦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평생학습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관련 지원 경비의 사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직위에서 시민대학의 학장을 겸임하는 사항은 모순이 있기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평생학습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시민대학의 학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정한 사항 등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3조(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나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삭 제>
④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교육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개정안 제4항과 같음)
제24조 (시민대학의 운영 등) ① 시민대학의 학장은 시장이 겸임하며, 시민대학장명으로 수료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민대학의 운영 등) ① <삭 제>
② ~ ⑦ (생 략)	①~⑥ (개정안 제2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 및 공청회 개최방법 개정(안 제4조~제5조)

○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개정(안 제26조)

(1) 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2) 임야에서 50m이상의 진입도로를 포함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대상 으로 규정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
(안 제30조, 별표 1~별표 17)

○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지구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31조~안 제40조)

○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 정비(안 제41조)

○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와 특정 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로 세분화하여 건축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제44조)

○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허용
건폐율 20퍼센트→30퍼센트로 완화(안 제45조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반영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신설(안 제45조제8항, 안 제51조제8항)

(1)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내 시장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3)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학교 기숙사 부지 또는 재해 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51조제3항~제6항)

(1) 임대주택: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추가건설

(2) 학교 기숙사: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3)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해당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개정되는「근로기준법」시행('18. 7. 1.)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운전자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버스운전자 확보체계(버스운전자 양성교육 근거마련) 구축을 통해, 운전자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운수업체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목적 보완(안 제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던 것을 "승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하여 보완함

○ 운수종사자 양성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

(1)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버스교육연수 등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실시(제1항)

(2) 대형면허·버스운전자 자격증 취득, 교육연수 등 예산지원(제2항)

(3) 전문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의 위탁운영(제3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는 2018년도 정비 대상 과제에 대한 확정통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관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한 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 개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상위법 규정에 일치시키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요건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도록 “간이화장실” 추가(안 제2조)

○ 관광지 지정 및 승인 관련 인용 조문을 「관광진흥법」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안 제3조제2항)

○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완화(안 제12 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자연보호운동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험가입 규정(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性) 비율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제3항)

○ 상위법령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의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21조제4항)

○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 및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행위를 기속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개정(안 제28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5조 및 제2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의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상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화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골자**

	해당 자치법규	부처명칭 변경
1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2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3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4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5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6	오산시 건축 조례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9. 20.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현시점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장 수 및 성비율 규정 변경(안 제3조제1항)
위원장 2인(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을 실무에 맞게 위원장 1인(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성비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

○ 당연직위원의 구성 변경(안 제3조제3항)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세정과장, 지역경제과장
⇒ 경제문화국장, 미래도시국장, 기획예산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8.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전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오산시 오산로 132번길 28-5(원동)			
건물연면적	부지면적 3,005㎡, 건물연면적 7,563.77㎡ (지하1층, 지상4층)			
개 소	2007. 8. 27.			
직 원 수	15명 (관장 1, 부장 1, 과장 2, 직원 11)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위탁기간	2016. 7. 1. ~ 2018. 12. 31.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371백만원	709백만원	800백만원	862백만원
병설기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 병설기관 현황

구 분	합 계	노인주간 보호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위 치	오산시 오산로 132번길 28-5(원동)			
면 적	934.98㎡	211.1㎡	505.08㎡	218.8㎡
직원수	12명	4명 (과장1,직원3)	3명 (직원3)	5명 (과장1,직원4)
예산액	401,720천원	없음	163,810천원	237,910천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2) 수탁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방 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관련근거	○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4) 신청자격 제외 대상

(가)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자)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다)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지관 및 기타 복지관련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바)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사)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오산시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나) 복지관 예산편성, 조직구성, 담당사업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산시와 성실히 협의하여 수행

(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 보장

(라) 세부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며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함

(마)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증권 제출

(바) 시설장은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며 상근 원칙

(6)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위탁체 모집 및 접수	⇒	◈ 방 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시 까지 ◈ 접 수: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사기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결정방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결정(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법인에 선정결과서 통보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공증 (18.12.31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처리 완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세교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8.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세교복지타운 조직을 총괄관장 체제 방식에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각각의 개별관장 체제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전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위탁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실버케어센터포함)	노인주간 보호센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위 치	오산시 수청로 192(금암동)					
개 소	2016.9.27.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위탁기간	2016.6.1. ~ 2018.12.31.					
면 적	5,875.18㎡	1581.41㎡	2219.36㎡	90.20㎡	1,769.52㎡	214.69㎡
직 원 수	55명	11명 (관장1,부장1, 과장2,직원7)	17명 (부장1,과장1, 팀장1,직원14)	1명 (직원1)	21명 (국장1,팀장6, 직원14)	5명 (팀장1,직원4)
예 산 액 (운영비)	3,418,332천원	952,693천원	1,142,887천원	-	1,069,600천원	253,152천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기간: 2019. 1. 1. ~ 2023. 12. 31.(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2) 수탁자 선정방법

구 분	내 용
방 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관련근거	○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7조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신청자격: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가)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자부담 할 수 있는 법인

(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기술, 재정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4) 신청자격 제외 대상

(가)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운영체(자)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법인

(다)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복지관 및 기타 복지관련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운영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영체(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3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거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바)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사)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5)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오산시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 준수

(나) 복지관 예산편성, 조직구성, 담당사업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산시와 성실히 협의하여 수행

(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 보장

(라) 세부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하며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함

(마) 선정된 법인은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보험증권 제출

(바) 시설장은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며 상근 원칙

(6) 수탁자 결정방법 및 통지

위탁체 모집 및 접수	⇒	◈ 방 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시 까지 ◈ 접 수: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사기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결정방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결정(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법인에 선정결과서 통보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공증 (18.12.31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처리 완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8년 하반기에 신축되는 오산세교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내 (가칭)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577, 오산세교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관리동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 371.99㎡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18.03.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2018.08.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및 결정통보
2018.0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3) 정원 및 반 편성 계획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5세	비 고
80	6	10	14	30	20	취약보육

(4) 인력투입 계획 (단위 : 명)

계	원장	교사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비 고
15	1	13	1	-	-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정원 100명이상 ② 조리사 : 상시급식인원 1회 40명이상 ③ 영양사 : 현원 100명이상

(5)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271,179,000
2. 과년도 수입	
3. 잡수입	
4. 수익자부담금 수입	108,622,000
5. 보조금 수입	254,508,000
6. 전입금	
7. 이월금	0
합 계	634,309,0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77,315,000
2. 운영비	55,380,000
3. 보육활동비	88,992,000
4. 수익자부담 경비	108,622,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4,000,000
7. 잡지출	
8. 예비비	
합 계	634,309,00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2019.01.01. ~ 2023.12.31. (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마)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가)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나)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다) 영유아보육법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마)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 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7)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심사주체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신규·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보건복지부 고시)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등으로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속한 근로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계획

(1) 민간위탁: 공개모집

근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공개모집)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탁관리)

(2) 위탁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

근거: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3) 신청자격: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가)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노동관련 단체나 노동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행

(나) 근로복지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위탁자 선정절차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시 홈페이지 게시** · 내 용: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기타 구비서류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심 사	**· 심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심사기준	**·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공신력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전문성 ④ 복지관 운영계획 ⑤ 법인의 재정능력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개별위원 배점결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높은 법인으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위탁계약	

○ 운영현황(2018)

(1) 소요인원 (단위 : 명)

계	관 장	사무국장	상근직원
6	1(비상근)	1(비상근)	4

(2) 운영현황

운영방법	**민간위탁**
근무인원	6명: 상근직원 4, 비상근 2 (관장, 사무국장)
인건비	159,404천원
운영비	461,771천원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8.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시설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건에 대한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고객지원센터 운영 현황

(1) 현 위탁현황

(가) 위탁기간: 2016.12. 1. ~ 2018.12.31.(2년1월)

(나) 위탁단체: (사)오산오색시장상인회

(다) 운영인력: 3명(상근직원)

(2) 고객지원센터 현황

층별	시 설 내 용	면적	비고
	계	3,733㎡	
광장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 편익시설 등	2,983㎡	
1층	· 고객 안내실(22.5㎡) – 물품보관실, 쇼핑카트 대여 등 시장이용 편의제공 · 남녀 장애인 화장실(22.5㎡) · 시립 어린이집(160㎡) · 공용면적(45㎡)	250㎡	
2층	· 상인회 사무실, 소비자 상담실, 소회의실, 방송실, 탕비실, 화장실	250㎡	
3층	· 대 회의실(교육장), 소회의실, 방송실, 준비실	25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경쟁

(2) 계약기간: 2019. 1. 1. ~ 2021.12.31.(3년)

(3) 심사기준: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 선정

(4) 수탁자의 자격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5조]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①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이설립한 법인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① 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②「민법」이나「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④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5)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운영자는「전통시장 관련법」및「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신청서 일건의 내용(사업계획서, 법인현황, 사업자등록증 등) 중 변경 및 허위기재 등이 발견 시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라) 수탁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 운영 불가(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6) 수탁자 선정방법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계약만료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간: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2019년 고객지원센터 위탁운영비(안)

총 소요예산액 : 147,620천원

・인 건 비 : 109,220천원

・일반운영비 : 28,720천원

・시설유지비 : 9,680천원

・산출내역

과목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비고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계			**147,620**		
오산오색시장운영	**소 계**		**109,220**	**109,220,930**	
	인건비	기본급	75,600	**■ 기본급** **75,600,000** ・고객안내실 근무 및 가로환경정비 － 66,800원×25일×3명×12월 = 60,120,000 ・시설관리 및 주정차 관리 － 60,000원×6일×3명×11월 = 11,880,000 ・식대 － 5,000원×20일×3명×12월 = 3,600,000	
		제수당	19,739	**■ 제수당** **19,739,400** ・고객안내실 근무 및 가로환경정비 － 주휴수당 66,800원×53일×3명 = 10,621,200 － 휴일근무수당 66,800원×27일×3명×1.5 = 8,116,200 － 연차수당 66,800원×5일×3명 = 1,002,000	
		사회보험	7,310	**■ 사회보험** **7,310,080** ・건강보험 78,857,400원×3.12% = 2,460,350 ・국민연금 78,857,400원×4.5% = 3,548,583 ・고용보험 78,857,400원×0.65% = 512,573 ・산재보험 78,857,400원×1.0% = 788,574	
		퇴직적립금	6,571	**■ 퇴직 적립금** **6,571,450** ・퇴직적립금 78,857,400원×1/12 = 6,571,450	
	소 계		**28,720**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20,300	**■ 공공요금 및 제세** **20,300,000** ・전기요금 1,000,000원×12월 = 12,000,000 ・상하수도요금 300,000원×12월 = 3,600,000 ・전화요금 100,000원×12월 = 1,200,000 ・화재보험료 500,000원×1회 = 500,000 ・시유재산 사용료 3,000,000원×1회 = 3,000,000	
		수용비 및 수수료	6,020	**■ 수용비 및 수수료** **6,020,000** ・정수기 임대료 60,000원×1대×12월 = 720,000 ・정화조 청소비 500,00원×1회 = 500,000 ・청소.화장실용품 300,000원×12월 = 3,600,000 ・기타 사무관리비 100,000원×12월 = 1,200,000	
		사무실 운영비	2,400	**■ 사무실 운영경비 200,000원×12월 = 2,400,000**	
	소 계		**9,680**		
	시설유지비	유지관리비	9,680	**■ 유지관리비** **9,680,000** ・무인경비 임대료 200,000원×12월 = 2,400,000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90,000원×12월 = 1,080,000 ・시설관리 유지비 350,000원×12월 = 4,200,000 ・광장 조경관리비 200,000원×10월 = 2,000,000	

※ 위탁 운영비 산정 기준

- 인건비 적용기준:「2019년도 최저 시급제 단가 조정표」적용
- 고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산정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유지비 등을 산정하였음
- 장날 주정차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실비를 반영하였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신주에 공중선로로 연결되어 있는 송·배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각 기관(오산시·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본 업무협약은 오산시 공유지의 도로점용료 감액과 배전선로 및 도로복구 공사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협약 체결 전「오산시 의무부담 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 1항 규정에 근거하여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업무협약 내용

㉠ 체결 주체 : 오산시, 한국전력공사
㉡ 체결 시기 : 2018. 9월 예정
㉢ 목적 : 한전주 지중화의 안정적 사업 추진
㉣ 내용
 · 오산시·한국전력공사
  - 사업비 부담 : (오산시 : 한국전력공사) = (50% : 50%)
  - 기타시설물(CCTV,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등) 선로 지중화·이설 비용 포함
  - 배전설비 운영기간동안 점용료 1/2 감면
 ·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 및 정보제공에 최대한 노력
㉤ 업무협약서(안) : 붙임참조

○ 추진 계획

㉠ 사업개요
・사업위치 : 성호대로(시청앞교차로~GS자이아파트)
・총사업비 : 13.3억(통신설비 이설비용 미포함,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시 변동)
・일　　정 : 오산시·한전MOU체결(9월) ↦ 한전 실시설계(9월) ↦ 사업비 반영(2019년 본예산) ↦ 착공(2019년 상반기) ↦ 준공(2019년 하반기)
㉡ 비용부담 및 개발형태
・市 : 설치장소 제공, 한전 :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시행

○ 기대 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안전사고예방
㉡ 시 이미지 개선효과
・지중화 연결성 (시청·운암지구 및 동부권도로)

○ 실무부서 의견

㉠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사업 추진시 50% : 50% 부담률로 사업 가능한 사항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로의 본래 기능 확보 및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경험을 갖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수막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공개경쟁

(2)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 (3년)

(3) 수탁기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단체 또는 법인)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대행료 수입범위 내에서 이행

(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

○ 위탁대상자 선정절차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기 간: 7일 이상**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심 사	**· 오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공신력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전문성 ④ 위탁관리 방안 ⑤ 법인의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심사 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탁계약	**· 협약서 작성 후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간판 등) 설치시 낙하위험 및 고정상태 등 안전점점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하고자 위탁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인 안전점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공개경쟁

(2)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3년)

(3) 수탁기관 자격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 기술자격을 분야별 1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 범위 내에서 이행

(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

○ 위탁대상자 선정절차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기 간: 7일 이상**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심 사	**· 오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신인도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전문성 ④ 위탁관리 방안 ⑤ 법인의 검사인력 및 장비 확보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심사 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탁계약	**· 협약서 작성 후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공개경쟁

(2) 위탁기간: 2019. 01. 01. ~ 2021. 12. 31. (3년)

(3) 수탁기관 자격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40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한 단체 또는 법인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비 범위내에서 이행

(나) 교육 강사 및 직원은 수탁자가 임명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

○ 위탁대상자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기 간: 7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심 사	**· 오산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신인도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강사확보 여부 ④ 위탁관리 방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사 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탁계약	**· 협약서 작성 후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산업체등에 저렴한 용수공급과 하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보호를 위해「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구 분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소 재 지	오산시 오산천로 72
시설규모	부지면적 5,035㎡
시설내용	처리용량 15,000㎥/일(공급관로 L=2.31㎞)
업무현황	시설, 설비, 수질관리
근무인원	5명

○ 위탁계획

(1)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근 거:「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조례」제28조

(2)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입찰

(3)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수탁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금지함

(나) 수탁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하수도법」,「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과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 수질이상 등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요처의 손해배상은 민간위탁 운영처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4) 수탁자 선정절차

(가) 관련근거: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조례」 제28조

(나) 선정방법: 조달청의뢰 공개입찰

(다) 신청자격: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

(라) 선정결과: 공개입찰결과 낙찰자와 위·수탁 계약체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오산시 외삼미동 88-1번지 일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입안 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해제입안 신청제는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연도 내에 실시계획인가(집행) 고시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해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 대로3-7호선의 단계별집행계획은 2017년~2019년이나, 2017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재정 및 도로 구조상의 문제로 사업부서에서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시설 개요

(1) 위　　치 : 오산시 외삼미동 88-1번지

(2) 규　　모 : 폭원 25m, 연장 509m

(3) 최초결정일 : 2003년 6월 9일

(4) 실 효 일 : 2023년 6월 9일

(5)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연번	사업·시설부문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2016~2025)															실효시기
					집행방식별 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사업명	기타주요내용	총사업비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민간투자	공공기여	'16	'17	'18	'19	'20	'21년 이후	
							계	도비	시군비											
1	도로	대로2-4	연장 30m, 폭원 996m	11,154	11,154	-	11,154	-	11,154	-	-	-	-	-	-	-	-	-	11,154	2023
2	도로	대로2-7	연장 30m, 폭원 487m	4,610	4,610	-	4,610	-	4,610	-	-	-	-	-	-	-	-	4,610	-	2020
3	도로	대로2-11	연장: 30~34m, 폭원 3,310m	38,295	38,295	-	38,295	-	38,295	-	-	-	-	-	-	-	-	-	38,295	2023
4	도로	대로2-14	연장 30m, 폭원 495m	13,727	13,727	-	13,727	-	13,727	-	-	-	-	-	-	-	-	-	13,727	2023
5	도로	대로2-15	연장: 30m, 폭원 1,774m	16,991	16,991	-	16,991	-	16,991	-	-	-	-	-	-	-	-	-	16,991	2023
6	도로	대로2-17	연장: 21~36m, 폭원 1,195m	56,066	56,066	-	56,066	-	56,066	-	-	-	-	-	-	-	-	56,066	-	2020
7	도로	대로2-26	연장 31m, 폭원 187m	4,660	4,660	-	4,660	-	4,660	-	-	-	-	-	-	-	-	-	4,660	2023
8	도로	대로3-4	연장: 25m, 폭원 1,180m	11,472	11,472	-	11,472	-	11,472	-	-	-	-	-	-	-	-	-	11,472	2023
9	**도로**	**대로3-7**	**연장: 25m, 폭원: 509m**	**16,000**	**16,000**	**-**	**16,000**	**-**	**16,000**	**-**	**-**	**-**	**-**	**-**	**22**	**10,000**	**5,978**	**-**	**-**	**2023**

(6)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조서

- 도로 결정(폐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7	25	국지도로	509	대로3-14	외삼미구역	일반도로	-	경고제2003-129호 (2003.06.09.)	
폐지	대로	3	7	25	국지도로	509	대로3-14	외삼미구역	일반도로	-	-	

- 도로 결정(폐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폐지사유
대로 3-7호선	-	• 도로 폐지 (폭원 = 25m, 연장 = 50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폐지

(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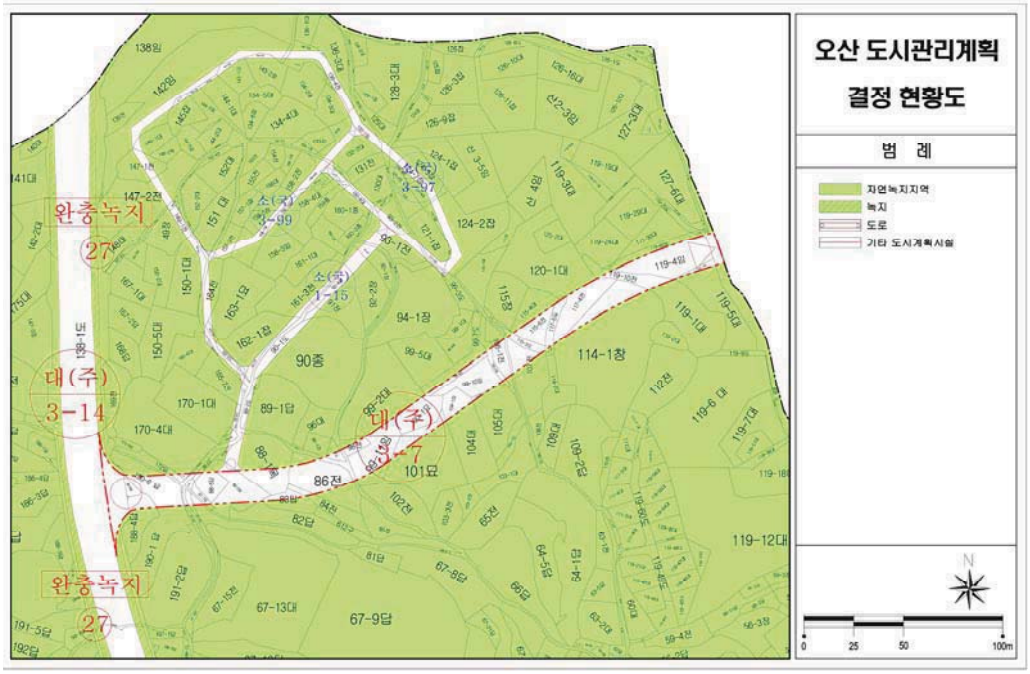

(8) 도시관리계획 결정도(폐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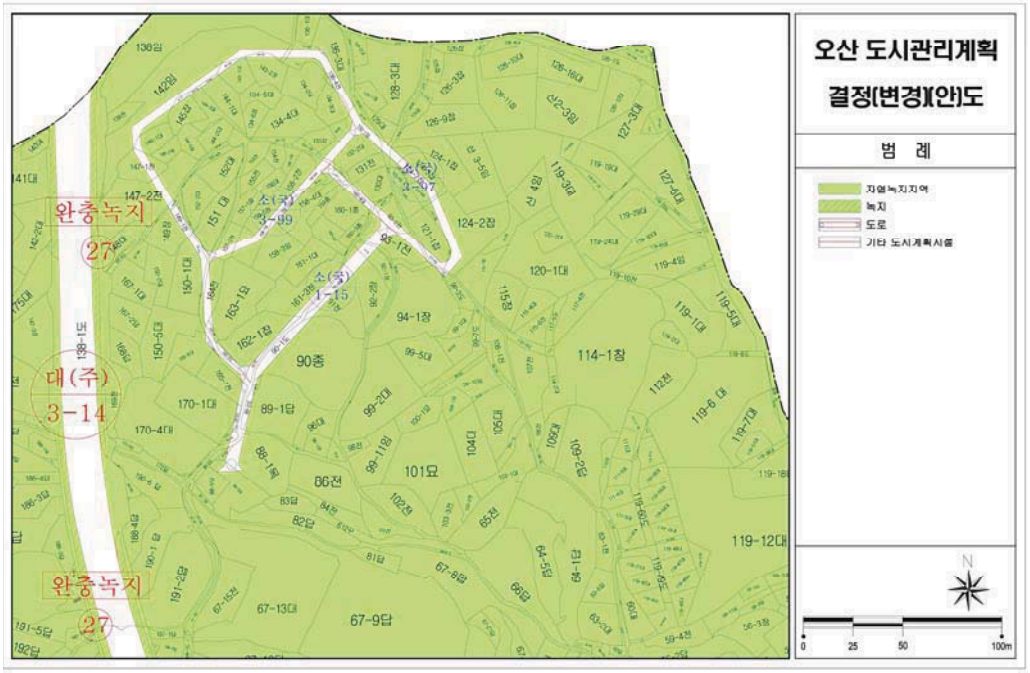

○ 주민공람공고

(1) 공람기간: 2018. 08. 28 ~ 09. 11 (14일)

(2) 공고방법: 홈페이지, 시 게시판, 지방일간신문(매일일보, 중도일보)

(3) 공람장소: 오산시청 도시과

▶ 매일일보

오산시 공고 제2018-1133호

오산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폐지)(안) 공람 · 공고

오산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7호선)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8일

오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폐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7	25	국지 도로	509	대로3-14	외삼미구역	일반 도로	-	경고제2003-129호 (2003.06.09.)	
폐지	대로	3	7	25	국지 도로	509	대로3-14	외삼미구역	일반 도로	-	-	

2) 도로 결정(폐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폐지사유
대로3-7호선	-	• 도로 폐지 (폭원 = 25m, 연장 = 50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폐지

2.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8. 08. 28. ~ 2018. 09. 11(14일간)

3. **공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73)

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 사항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조서 및 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중도일보

오산시 공고 제2018-1133호

오산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폐지)(안) 공람 · 공고

오산 도시관리계획(도로 : 대로3-7호선)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8일

오 산 시 장

❶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폐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7	25	국지도로	509	대로3-14	외삼미구역	일반도로	-	공고 제2003-129호 (2003.06.09.)	
폐지	대로	3	7	25	국지도로	509	대로3-14	외삼미구역	일반도로	-	-	

2) 도로 결정(폐지)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내용	폐지사유
대로3-7호선	-	• 도로 폐지 (폭원 = 25m, 연장 = 509m)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폐지

❷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 2018. 08. 28. ~ 2018. 09. 11(14일간)

❸ 공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과(031-8036-7673)

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 사항이 있을 시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❺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조서 및 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9. 21.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를 하더라도 해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있을 것인 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이해 당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반대의견에 대하여 설득과 이해 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18. 10. 4
○ 회 기 : 2018. 10. 11 ~ 10. 29 (19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7.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9.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0. 오산시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촉구 결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 장인수입니다.

최근 우리가 크게 염려했던 콩레이 대형 태풍이 부산 북동쪽으로 진로방향을 틀어 우리시에는 큰 피해 없이 한반도를 통과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결실의 계절 10월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들녘에는 풍년을 알리듯 황금물결을 이루고, 농부들은 풍성한 가을걷이로 손길이 바쁘고, 산천은 고운 오색 빛 단풍 물결로 많은 인파가 넘치는 수확의 계절이자 사색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폐회 중에도 변함없이 활기찬 시정추진을 독려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관련부서장 및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 해결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말도 없이 밤낮 없는 업무연찬과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각종문화, 예술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비롯한 우리시 대표급 행사인 제9회 독산성문화제와 제15회 오산독산성전국하프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시정을 활기차고 올바르게 이끌어 오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하는 행사로 오산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며, 또한 우리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리울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 드라마세트장,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청사 서측광장 어린이 시설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짧은 일정 중에 현장 방문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을 감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바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집행을 마친 2017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내용 숙지와 성실한 수감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시작한 무술년 한해도 어느덧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업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추진 상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곧 있으면 몸과 마음이 추워지는 동절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금년 겨울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미리미리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지난 6일 한반도에 진입한 콩레이 대형태풍에 이어 7일에는 고양시 소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과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 없는 안전도시 오산을 만드는 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오산시의회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민여러분! 매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1.(목)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0.12.~ 10.28. (17일간)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37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7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6.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7.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2.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3.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4. 오산시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 제안설명, 의결 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촉구 결의안	
	16. 휴회의 건	
10.12.(금) 09:00 주요사업장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소리울도서관 2.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3. 드라마세트장 4. 복합안전체험관 5. 미니어처테마파크 6.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7. 청사 서측 광장 어린이시설	
10.13.(토)~ 10.14.(일)	□ **휴 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5.(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16.(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17.(수) 10:00 제2회의실	□ **안건협의(본회의 부의안건)**	
10.18.(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0.19.(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10.20.(토)~ 10.21.(일)	□ **휴 일**	
10.22.(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10.23.(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도시국**(도시과, 미래사업과, 건설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차량등록과)]	
10.24.(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하천공원과)]	
10.25.(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0.26.(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문화국**(문화체육관광과), **오산문화재단**] **- 의결**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27.(토)~ 10.28.(일)	□ **휴 일**	
10.29(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2.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3.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4.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출연계획안 4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의 기쁨과 다자녀가정의 출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안 제2조)

(1) 2019. 1. 1.부터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신생(입양)아 중 첫째아: 10만원 ⇒ 20만원, 셋째아: 120만원 ⇒ 150만원

○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원 관련 조항 삭제

(1)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제6항, 제5조제5항 삭제

(2) 2018. 2. 9. 오산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의결

□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생태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온종일 돌봄' 등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및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안 제3조~제5조)
○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관련 사항(안 제6조~제7조)
○ 비용의 징수 및 면제 기준(안 제8조~제9조)
○ 돌봄 시설 및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안 제10조~제15조)
○ 위탁 및 보험(안 제16조~제17조)
○ 포상, 교육훈련, 지도·감독 등 관련 사항(안 제18조~제2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여 돌봄 지원시설 위탁 운영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우선 지원과 비용의 면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재량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함(안 제1조).
○ 우선 지원과 비용의 면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재량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2조제2항제8호 삭제).
○ 학부모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하도록 정한 사항을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하도록 수정함(안 제8조제1항).
○ 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 협의체 위원의 해촉을 위촉과 동일하게 시장이 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수당과 여비 지급 대상에서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제외함(안 제15조).
○ 돌봄 지원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오산시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에 ---.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생 략)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비용의 징수) ①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청구) ① -------------------------------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
1.·2. (생 략)	1.·2. (제정안과 같음)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면제 등) ①---.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②·③ (생 략)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생 략)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협의체 위원은 시장, 교육장, 돌봄 지원 관련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제정안과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1회에 한하여 연임-----. ----------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시장----------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수당 등) ----- 회의----------. ------ ----------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온종일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② ---------- 「사회복지사업법」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8조(포상) 시장은 초등 온종일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 온종일 ----------

□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7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7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액(최종) : 70,956,793천원

・지출결정액 : 56,184천원

・지 출 액 : 16,480천원

・불 용 액 : 39,704천원

○ 예비비 잔액 : 70,900,609천원

1.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노점상 정비

○ 예 산 과 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건설도로과	도로	노점상 정비	시설비

○ 지출결정액 : 56,184천원

○ 지 출 액 : 16,480천원

○ 불 용 액 : 39,704천원

○ 지 출 사 유 :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시 도로의 차량 및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세입 결산액 : 798,304,008,592원

○ 세출 결산액 : 456,343,467,688원

○ 세계 잉여금 : 341,960,540,904원

(2)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 645,261,605,081원

○ 세출 결산액 : 399,119,835,554원

○ 세계 잉여금 : 246,141,769,527원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39,839,069,05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943,954,815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358,745,662원임.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입 결산액 : 153,042,403,511원

○ 세출 결산액 : 57,223,632,134원

○ 세계 잉여금 : 95,818,771,377원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29,119,536,02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98,680,7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300,554,657원임.

나.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

(1)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39,839,069,05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0건 17,338,118,700원

사고이월액은 10건 2,860,258,230원

계속비이월액은 60건 119,640,692,120원임.

(2)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9,119,536,02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건 6,897,359,900원

사고이월액은 1건 52,806,280원

계속비이월액은 6건 22,169,369,840원임.

다. 기금 결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2017년도말 26,135,305,633원으로

조성액은 2,567,144,793원

사용액은 758,740,870원임.

라.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2017년도말 채권액은 4,239,719,029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2,970,514,500원

전화선예치금 14,860,000원

기타 779,266,200원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468,884,969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부당금 6,193,360원

(2) 채 무

2017년도말 채무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재산현재액은 2017년도말 2,799,550,276,116원으로

토지 5,582,020㎡ 1,726,595,763,016원

건물 204,776㎡ 453,967,277,339원

기타 395,870건 618,987,235,761원임.

바. 물품 결산

2017년도말 물품현재액은 7,983,004,030원으로

취득은 1,893,226,053원

처분은 166,238,922원임.

사. 금고 결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8. 1. 23일 현재

세입총액은 798,304,008,592원

세출총액은 456,343,467,688원

차인잔액은 341,960,540,904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액이 지출액 증명과 상이없음.

아. 재무회계 결산

201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915,890,711,434원으로

부채는 12,315,866,316원

순자산은 2,903,574,845,118원임.

2017.1.1부터 12.31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405,415,985,749원으로

총수익은 546,735,261,079원

운영차액은 141,319,275,330원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10.29.

○ 심 의 결 과 : 원안의결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은 오산시청 주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층 옥상정원 미니 동·식물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 시설 확대 및 전문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사업의 확대 및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위해 기부채납을 통한 민간투자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을 시행하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승인조건 부여 : AI 방역 이중시스템 완비, 개관시기를 주차장 증축 (사용가능) 시 까지 시범운영.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 1건(건물)

■ 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증축)

- 건 물 : 1건(증축)

・성호대로 141, 지상 1,2층 온실 건축 및 내부시설 설치

・건축면적 : 678㎡,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1,012㎡

・추정가액 4,500,000천원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계**	1	678	4,500,000	
		토 지				
		건 물	1	678	4,500,000	
		기 타				
	1.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취득	토 지				
		건 물	1	678	4,500,000	○ 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증축)
		기 타				
처분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종류	소재지	면적				
총계	1건			4,500,000			
1	건물	오산동 915번지 일원	678	4,500,000	2018	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증축)	회계과
		– 이	하	여		백 –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 19,500천원

(1) 출연대상

(가)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주요사업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2) 출연 내역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2019 오산교육재단 출연(안): 3,471,639천원

총 예 산 액	운영비	사업비
3,471,639천원	1,011,639천원	2,460,000천원

(1) 출연목적

- 관내 학생들의 장학사업 운영 및 혁신교육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

(2) 출연내역: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실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의결내용: 오산교육재단 출연 3,471,639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우리 시에 출연금 요청에 의해 2019년 본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함.

▷ 주요골자

《경기신용보증재단》 - 550,000천원

○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300,000천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 200,000천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50,000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 8,250천원

○ 출연금 기준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화재단 출연: 5,922,183천원

총 예 산 액	출 연 금	기타 수입액
6,695,857천원	**5,922,183천원**	773,674천원

(1) 출연목적

-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축제기획 및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2) 출연내역: 오산문화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의결내용: 오산문화재단 출연 5,922,183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오산시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오산시 제4기(2019~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 기반구축 및 사회 문제를 완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음.

○ 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 작성주체: 오 산 시 장

○ 작성기준: 4년

○ 주요내용

(1) 지역사회보장 주민욕구 조사 및 여건 분석

(2)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석

(3) 제4기 계획 영역별(돌봄아동, 돌봄성인 : 노인·장애인, 보호·안전, 건강·의료, 고용, 교육, 주거, 환경, 문화·여가, 총괄 : 삶의 질 및 인프라) 세부사업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11.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 **제 안 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이 수행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껏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 감사, 중앙부처 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체 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감수해 온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이에 오산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주요골자**

○ 정부는 기초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오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 원칙과 기초의회의 감사권한을 심각하게 침해 하는 바, 자치분권의 대전제인 보충성의 원칙을 정면 거스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이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도의 이유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시행령 개정이 아닌 지방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권한을 삭제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11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0.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18. 11. 19
○ 회　　기 : 2018. 11. 26 ~ 12. 20 (25일간)
○ 주요안건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3.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4.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6.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7.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1.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2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가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설치 계획(안)]
2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신년계획을 세운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옷깃을 여미는 11월도 다 지나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小雪)도 지난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곧 다가올 새해의 밑그림을 그리는 2018년도 마지막 일정인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첫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오산시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23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폐회 중에도 내년도 예산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오산시 예산이 어떤 규모로, 어느 부분에 무게를 두고 편성했는지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적해야 할 쟁점은 어떤 것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6,4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 및 사업추진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여 해결점을 찾기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분야의 전문가이신 강사를 초빙하여 2019년도 본예산 심사대비 오산시의회 예산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말도 없이 밤낮 없는 업무연찬과 주민불편사항에 있어서는 주민, 관련부서장 및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 해결하는 등 열정적인 의지와 신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이 시민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빛나고 더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기타안 5건 등 총 2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중요한 회기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오산시 살림살이 6,4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다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숙지와 자료준비로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분량의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신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의결될 수 있도록 성숙된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을 싣고 달려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믿고 협력하며 소통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시정현안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과 대화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도 3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다가오는 금년 겨울에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모두 지역사회의 온정 속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또한 예기치 못한 폭설과 강추위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재해예방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가치는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유지해가며 의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미워하는 마음은 물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물처럼 흘려보내시고 감사하는 마음은 깊이 간직하시어 멋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오산시의회를 변함없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민여러분! 매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보다 크고 보다 넓은 꿈을 펼치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6.(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1.27. ~12.4. (8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5분 자유발언** 1. 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8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오산시장 시정연설, 기획예산관 예산안개요 설명)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1.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1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가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설치 계획(안)] 1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제안설명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8.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보고종료**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7.(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5.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6.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28.(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11.29.(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11.30.(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1.(토)~ 12.2.(일)	**토요일, 일요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3.(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4.(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5.(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3.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5. 휴회의 건	○ 휴회 : 12.6. ~12.19. (14일간)
12.6.(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제안설명, 검토보고**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안전행정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8.(토)~ 12.9.(일)	**토요일, 일요일**	
12.10.(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1.(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2.(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미래도시국, 환경사업소]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13.(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4.(금)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미래도시국, 오산교육재단]	
12.15.(토)~ 12.16.(일)	**토요일, 일요일**	
12.17.(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문화국, 사업소,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12.18.(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12.19.(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20.(목) 11:00 본회의장	☐ **제3차 본회의** - **의결**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의결에 따른 오산시장 인사말씀) ☐ **2018년도 의정활동지원 유공공무원 시상**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27,259,971 천원

나. 일반회계 ····· 569,572,838 천원

다. 특별회계 ····· 157,687,133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8,267,246 천원

○ 기타특별회계 ····· 49,419,887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25,996,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5,090,186 천원

○ 지방교부세 ····· 84,919,417 천원

○ 조정교부금등 ····· 64,297,798 천원

○ 보 조 금 ····· 157,787,963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209,168,607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25,996,000 천원

○ 세 외 수 입 ····· 30,300,553 천원

○ 지방교부세 ····· 84,919,417 천원

○ 조정교부금등 ····· 64,297,798 천원

○ 보 조 금 ····· 154,687,627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09,371,443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4,789,633 천원

○ 보 조 금 ····· 3,100,336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99,797,164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24,760,506 천원

○ 재 무 활 동 ····· 43,950,757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8,548,708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72,658,165 천원

○ 재 무 활 동 ····· 43,409,674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3,504,999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52,102,341 천원

○ 재 무 활 동 ····· 541,083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043,709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61건 ····· 503,321,952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45,000,754 천원

나. 일반회계 ····· 540,434,810 천원

다. 특별회계 ····· 104,565,944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87,451,067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7,114,877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34,6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6,113,776 천원
○ 지 방 교 부 세 ····· 80,000,000 천원
○ 조 정 교 부 금 ····· 60,000,000 천원
○ 보　　조　　금 ····· 169,063,662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5,182,316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34,6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5,490,604 천원
○ 지 방 교 부 세 ····· 80,000,000 천원
○ 조 정 교 부 금 ····· 60,000,000 천원
○ 보　　조　　금 ····· 168,198,213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72,104,993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0,623,172 천원
○ 보　　조　　금 ····· 865,449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3,077,323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67,690,823 천원
○ 재 무 활 동 ····· 11,472,699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5,837,232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68,607,672 천원
○ 재 무 활 동 ····· 11,417,699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0,409,439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99,083,151 천원
○ 재 무 활 동 ····· 55,00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427,793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주민센터 신축 등 53건 ····· 501,575,952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12. 19.

○ 본회의 심의 : 2018. 12. 20.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감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645,000,754**	**–**	**–**	**645,000,754**
일반회계	소 계			540,434,810	–	–	540,434,810
	지방세수입			134,641,000	–	–	134,641,000
	세외수입			25,490,604	–	–	25,490,604
	지방교부세			80,000,000	–	–	80,000,000
	조정교부금등			60,000,000	–	–	60,000,000
	보조금			168,198,213	–	–	168,198,2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104,993	–	–	72,104,993
특별회계	소 계			104,565,944	–	–	104,565,944
	공기업	소 계		87,451,067	–	–	87,451,067
		상수도	소 계	31,947,521	–	–	31,947,521
			사업수익	17,667,521	–	–	17,667,521
			자본적수입	14,280,000	–	–	14,280,000
		하수도	소 계	55,503,546	–	–	55,503,546
			사업수익	23,883,367	–	–	23,883,367
			자본적수입	31,620,179	–	–	31,620,179
	기타	소 계		17,114,877	–	–	17,114,877
		세외수입		7,872,102	–	–	7,872,102
		보조금		418,240	–	–	418,24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824,535	–	–	8,824,535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 감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계(10종)	645,000,754	△13,443,635	13,443,635	645,000,754
일 반 회 계 (1 종)	540,434,810	△12,143,235	12,143,235	540,434,810
특 별 회 계 (9 종)	104,565,944	△1,300,400	1,300,400	104,565,944
공기업특별회계(2종)	87,451,067	△1,300,400	1,300,400	87,451,067
상 수 도 특 별 회 계	31,947,521	△450,000	450,000	31,947,521
하 수 도 특 별 회 계	55,503,546	△850,400	850,400	55,503,546
기타특별회계 (7종)	17,114,877	-	-	17,114,877
교통사업특별회계	15,017,191	-	-	15,017,191
의료급여기금운영 특 별 회 계	1,214,241	-	-	1,214,241
대지보상특별회계	37,250	-	-	37,250
기반시설부담금 특 별 회 계	476,903	-	-	476,903
도시개발특별회계	77,498	-	-	77,498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특별회계	53,094	-	-	53,09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38,700	-	-	238,700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수 정 안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540,434,810**	**△12,143,235**	**12,143,235**	**540,434,810**
의회사무과	2,135,730	-	-	2,135,730
홍보감사관	3,794,471	△145,000	-	3,649,471
기획예산관	19,272,319	-	11,783,868	31,056,187
자치행정과	62,068,153	△540,055	-	61,528,098
안전총괄과	3,370,166	△37,800	-	3,332,366
세정과	490,256	-	-	490,256
징수과	1,146,435	-	-	1,146,435
회계과	18,837,325	△188,550	-	18,648,775
정보통신과	6,822,476	△78,000	-	6,744,476
희망복지과	21,636,487	△147,000	-	21,489,487
노인장애인과	71,989,630	-	-	71,989,630
가족보육과	117,885,883	△5,000	-	117,880,883
민원여권과	427,581	-	-	427,581
평생교육과	26,525,958	△389,600	359,367	26,495,725
일자리정책과	5,390,244	△24,000	-	5,366,244
지역경제과	4,790,046	△970,000	-	3,820,046
문화체육관광과	19,602,839	△1,075,460	-	18,527,379
농식품위생과	7,786,864	△470,263	-	7,316,601
토지정보과	806,321	-	-	806,321
도시과	768,650	-	-	768,650
미래사업과	11,156,280	-	-	11,156,280
건설도로과	23,238,402	△1,952,244	-	21,286,158
교통과	22,614,706	△70,000	-	22,544,706
건축과	12,942,131	△562,000	-	12,380,131
차량등록과	128,625	-	-	128,625
보건행정과	5,511,786	-	-	5,511,786
건강증진과	9,562,333	-	-	9,562,333
환경과	33,956,363	△3,865,893	-	30,090,470
수도과	1,675,830	-	-	1,675,830
하수과	838,737	-	-	838,737
하천공원과	11,731,458	△805,000	-	10,926,458
중앙도서관	8,078,683	△767,370	-	7,311,313
중앙동행정복지센터	685,393	-	-	685,393
대원동행정복지센터	772,568	-	-	772,568
남촌동행정복지센터	434,952	-	-	434,952
신장동행정복지센터	683,766	-	-	683,766
세마동행정복지센터	525,624	-	-	525,624
초평동행정복지센터	349,339	△50,000	-	299,339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 감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특 별 회 계 (9 종)	104,565,944	△1,300,400	1,300,400	104,565,944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 종)	87,451,067	△1,300,400	1,300,400	87,451,067
상 수 도 특 별 회 계	31,947,521	△450,000	450,000	31,947,521
하 수 도 특 별 회 계	55,503,546	△850,400	850,400	55,503,546
기 타 특 별 회 계 (7 종)	17,114,877	-	-	17,114,877
교통사업특별회계 교 통 과	14,795,319	-	-	14,795,319
교통사업특별회계 차 량 등 록 과	221,872	-	-	221,872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특 별 회 계	1,214,241	-	-	1,214,241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37,250	-	-	37,250
기 반 시 설 부 담 금 특 별 회 계	476,903	-	-	476,903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7,498	-	-	77,498
폐 기 물 처 리 시 설 부 담 금 특 별 회 계	53,094	-	-	53,094
발 전 소 주 변 지 역 특 별 회 계	238,700	-	-	238,700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 세 입 : 해당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27,941,167**	**12,143,235**	**12,143,235**	**27,941,167**
기 획 예산관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 유보금	0	-	11,783,868	11,783,868
홍 보 감사관	각종매체를 통한시정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도심 지하철 액자 광고 홍보	66,000	33,000	-	33,000
〃	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오산시 분야별 홍보영상물 제작	45,000	45,000	-	0
〃	〃	〃	◎ 오산시민의날 음원 및 영상 제작	45,000	45,000	-	0
〃	〃	〃	◎ 시민 솔직 토크 프로그램	22,000	22,000	-	0
자 치 행정과	사회단체 육성 지원	307-02 민 간 경 상 사업보조	◎ 다문화 이주민 여성과 명절송편 만들기(신규)	4,055	4,055	-	0
〃	직원 복지 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직원 기숙사 관련 - 임차료 - 임차계약 및 등기 수수료	501,000	501,000	-	0
〃	〃	201-02 공공운영비	◎ 직원 기숙사 도배 및 장판	5,000	5,000	-	0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직원 기숙사 비품 (냉장고, 세탁기, 침대 등)	30,000	30,000	-	0
안 전 총괄과	안전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체험교육	21,000	21,000	-	0
〃	〃	〃	◎ 찾아가는 시민 안전체험 교육	9,000	9,000	-	0
〃	〃	〃	◎ 어린이 안전뮤지컬 공연	15,000	7,800	-	7,200
회계과	시청사 유지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 공원 및 가로 환경개선 초화류 구입	30,000	15,000	-	15,000
〃	〃	〃	◎ 청사내 수목 보식 및 이식	40,000	40,000	-	0
〃	〃	401-01 시설비	◎ 임시주차장 조성	180,000	30,000	-	150,000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초평동행정복지 센터 이전비품	103,550	103,550	-	0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정 보 통신과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확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어린이집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신규)	78,000	78,000	-	0
희 망 복지과	오산시지역 사회보장 협의체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44,542	35,000	-	109,542
〃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급	31,500	21,000	-	10,500
〃	저소득층 상해보장 지원	307-06 보험금	◎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	41,000	41,000	-	0
〃	유엔군초전 기념관 운영	401-01 시설비	◎ 구 초전비 이전	150,000	50,000	-	100,000
가 족 보육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출연자 및 참가자 사례금	10,000	5,000	-	5,000
평 생 교육과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오산혁신교육 아카이브 구축 (신규)	50,000	50,000	-	0
〃	〃	201-03 행사운영비	◎ 오산시 전국학생 토론캠프(신규)	50,000	50,000	-	0
〃	〃	308-08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 물향기학교 지원	1,221,500	80,500	-	1,141,000
〃	창의인성 및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오찾교 진로진학 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신규)	198,000	18,000	-	180,000
〃	〃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동물매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규)	34,800	34,800	-	0
〃	〃	406-01 기타자본 이전	◎ 오찾교 진로진학 상담센터 임차보증금(신규)	30,000	30,000	-	0
평 생 교육과	오산교육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출연금)	3,471,639	-	359,367	3,831,006
〃	오산백년시민 대학 운영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 백년시민대학 활동가 운영	259,420	106,300	-	153,120
〃	오산백년시민 대학 운영 (느낌표 학교)	201-03 행사운영비	◎ 느낌표학교 운영 (부모과정)	20,000	20,000	-	0
일자리 정책과	따뜻한 오산 네트워크만들기	201-03 행사운영비	◎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마을 활동 공유회	12,000	12,000	-	0
〃	〃	〃	◎ 혁신 활동가 네트워크 및 혁신 주간	12,000	12,000	-	0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지 역 경제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201-01 사무관리비	◎ 브루펍 임차비	70,000	70,000	-	0
〃	〃	401-01 시설비	◎ 수제맥주 브루펍 조성	900,000	900,000	-	0
문화체육 관광과	독산성서문주차장 공원조성 및 역사주제관 건립	207-01 연구용역비	◎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00,000	300,000	-	200,000
〃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디지털 사진 전시회	9,200	4,200	-	5,000
〃	〃	〃	◎ 제4회 오산 까마귀 복면가요제 전국대회	33,000	3,000	-	30,000
〃	오산문화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오산문화재단 운영	5,922,183	474,360	-	5,447,823
〃	공립박물관 건립	401-01 시설비	◎ 박물관 건립 현상변경 설계 용역비(신규)	22,000	22,000	-	0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오산이야기꾼 관광 안내자 운영 지원	41,400	41,400	-	0
〃	직장운동부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합숙소 운영 경비	11,000	5,500	-	5,500
〃	〃	〃	◎ 롤러스포츠팀 합숙소 임차	143,000	143,000	-	0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롤러스포츠팀 합숙소 임차에 따른 집기비품	4,000	4,000	-	0
문화체육 관광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 독산성배 아마추어 스크린골프대회(신규)	6,000	6,000	-	0
〃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가장동 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50,000	50,000	-	0
〃	스포츠종합타운 건립	207-01 연구용역비	◎ 스포츠종합타운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22,000	22,000	-	0
농식품 위생과	도시농업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농업 체험교육 강사비	156,000	52,000	-	104,000
〃	〃	206-01 재료비	◎ 공동체, 옥상, 거리텃밭 조성 및 운영 재료비	100,000	10,000	-	90,000
〃	〃	〃	◎ 학교텃밭, 원예체험활동, 도시, 토요농부학교 등 체험교육 재료비	150,000	50,000	-	100,000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농식품 위생과	세마사거리 꽃단지 조성사업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 세마사거리 꽃단지 조성 사업 노인일자리 인건비	163,968	163,968	-	0
〃	〃	201-01 사무관리비	◎ 세마사거리 꽃단지 조성 사업 장비 임차료	24,000	24,000	-	0
〃	〃	〃	◎ 개화기 이벤트	10,000	10,000	-	0
〃	〃	206-01 재료비	◎ 종자 구입비(유채, 꽃양귀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10,000	10,000	-	0
〃	〃	〃	◎ 비료, 거름 및 자재 구입비	3,000	3,000	-	0
〃	자매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 농장관리 인부임	20,301	20,301	-	0
〃	〃	201-01 사무관리비	◎ 텃밭 임차료	6,345	6,345		
〃	〃	〃	◎ 교육장 임차료	280	280		
〃	〃	〃	◎ 부지정리 농기계 임차료	1,800	1,800		
〃	〃	〃	◎ 프로그램 강사수당	46,500	46,500		
농식품 위생과	자매도시 연계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운영비 (명찰, 현수막 제작 등)	6,994	6,994		
〃	〃	〃	◎ 차량 임차료	10,570	10,570		
〃	〃	206-01 재료비	◎ 공간 조성 및 운영 재료비	10,225	10,225		
〃	〃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 농업체험교육 참석자 급식비	13,860	13,860		
〃	〃	〃	◎ 참석자 보험료 지급	2,200	2,200		
〃	〃	〃	◎ 도시농부학교 체험료 지급(과수분양)	4,500	4,500		
〃	〃	〃	◎ 참석자 숙박비	3,720	3,720		
〃	〃	401-01 시설비	◎ 콘테이너, 하우스 설치	20,000	20,000		
건 설 도로과	차선도색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 차선도색 정비공사	600,000	200,000	-	400,000
〃	교량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	◎ 교량하부 환경개선	1,500,000	1,500,000	-	0
〃	〃	〃	◎ 남촌대교 경관개선	100,000	100,000	-	0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건 설 도로과	노점상 정비	401-01 시설비	◎ 노점상 정비 용역 (평시) 인부임	184,944	92,472	-	92,472
〃	〃	〃	◎ 노점상 정비 용역비 (행정대집행시)	112,545	56,272	-	56,273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무전기 구입	2,000	2,000	-	0
〃	〃	〃	◎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0	1,500	-	0
교통과	오산역 환승 센터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교통광장 유지관리	70,000	70,000	-	0
건축과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	401-01 시설비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96,000	216,000	-	180,000
〃	〃	〃	◎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42,000	42,000	-	0
〃	간판개선 정비사업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 간판정비사업 주민 협의체 회의 참석자 실비	1,000	1,000	-	0
〃	〃	401-01 시설비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73,000	273,000	-	0
〃	주거환경 관리사업	201-01 사무관리비	◎ 총괄계획전문가(MP) 수당	30,000	30,000	-	0
환경과	환경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자연보호 워크샵 (신규)	2,250	2,250	-	0
〃	낚시금지구역 관리	101-04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 서랑저수지 관리 인부임	34,356	34,356		
〃	〃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물 제작	350	350		
〃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 그린버스정류장 조성 미세 먼지 저감 벤치 임차료	20,000	20,000	-	0
〃	〃	401-01 시설비	◎ 그린 버스정류장 (쉘터) 조성	20,000	20,000	-	0
〃	〃	〃	◎ 쿨링포그시스템 설치	20,000	20,000	-	0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영	630,000	511,200	-	118,800
〃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307-05 민간위탁금	◎ RFID기기 및 전용 수거용기 세척용역	170,000	170,000	-	0
〃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	2,359,800	347,737	-	2,012,063
〃	〃	401-01 시설비	◎ 기계설비개선공사	1,740,000	1,740,000	-	0
〃	〃	〃	◎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2차)	1,000,000	1,000,000	-	0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하 천 공원과	오산천 유지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오산천유지관리 예취기 구입(신규)	3,000	3,000	-	0
〃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	201-03 행사운영비	◎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신규)	42,000	42,000	-	0
〃	〃	206-01 재료비	◎손바닥 정원만들기 프로젝트(신규)	30,000	30,000	-	0
〃	〃	401-01 시설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900,000	500,000	-	400,000
〃	〃	〃	◎공원화장실 안심 시설 설치(신규)	30,000	30,000	-	0
〃	〃	〃	◎시승격 30주년 기념 공원 조성사업(신규)	200,000	200,000	-	0
중 앙 도서관	다양한 장서구입	405-02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	915,000	415,000	-	500,000
〃	도서관 서비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7,500	7,500	-	0
〃	〃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휴먼북 급량비	4,800	4,800	-	0
〃	환경 및 시설 개선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휴먼라이브러리 물품 구입	3,070	3,070	-	0
〃	도서관운영 활성화 추진	401-01 시설비	◎소리울도서관 사인몰, 간판 등 제작	95,000	45,000	-	50,000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소리울도서관 악기구입	900,000	270,000	-	630,000
〃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휴먼라이브러리 홈페이지 구축	22,000	22,000	-	0
초평동	초평동 청사관리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집기류	50,000	50,000	-	0

○ 기타특별회계 : 해당없음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 입 : 해당없음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관)	세항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750,000**	**450,000**	**450,000**	**750,000**
사 업 비 용	예비비	801 예비비	◎ 사업예산 예비비	0	–	450,000	450,000
〃	배·급수비	214-5 수선유지비	◎ 누수복구비	750,000	450,000	–	300,000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 입 : 해당없음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관)	세항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2,260,000**	**850,400**	**850,400**	**2,260,000**
사 업 비 용	예비비	801 예비비	◎ 예비비	0	–	850,400	850,400
〃	관거비	214-5 수선유지비	◎ 동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100,000	40,000	–	60,000
〃	〃	〃	◎ 중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100,000	40,000	–	60,000
〃	〃	〃	◎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100,000	40,000	–	60,000
〃	〃	〃	◎ 동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유지보수	500,000	200,000	–	300,000
〃	〃	〃	◎ 중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유지보수	500,000	200,000	–	300,000
〃	〃	〃	◎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도유지보수	300,000	100,000	–	200,000
사 업 비 용	관거비	214-5 수선유지비	◎ 하수박스 준설	100,000	50,000	–	50,000
〃	펌프장비	214-5 수선유지비	◎ 인버터설비 유지보수	50,000	10,000	–	40,000
〃	〃	〃	◎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50,000	10,000	–	40,000
〃	〃	〃	◎ 각종펌프 및 밸브 유지관리	40,000	5,000	–	35,000
〃	처리장비	201-1 사무관리비	◎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폐업보상 산정용역	10,000	10,000	–	0
〃	〃	〃	◎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폐업보상금	60,000	60,000	–	0
〃	〃	206-2 약품비	◎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약품	50,000	20,000	–	30,000
〃	〃	〃	◎ 무기 응집제	300,000	65,400	–	234,600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해당없음

○ 오산문화재단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감 액	증 액	
오산시 출연금			오산문화재단 운영 (문화체육관광과)	5,922,183	474,360	-	5,447,823
합 계				**1,259,360**	**474,360**		**785,000**
인력운영비	인 력 운영비	101-01 보수	◎ 계약직3급(정책실장) 연봉	51,360	51,360	-	0
축제사업	시민참여형 축제	201-03 행사운영비	◎ 오산천두바퀴축제	250,000	100,000	-	150,000
〃	〃	〃	◎ 오산독산성문화제	650,000	100,000	-	550,000
축제사 업	시민참여형 축제	201-03 행사운영비	◎ 오산독산성문화제 학술 심포지엄	10,000	10,000	-	0
전 시 사 업	시각예술 접근성 강화	201-03 행사운영비	◎ 전시기획 - 야외컨테이너전	20,000	8,000	-	12,000
〃	〃	〃	◎ 전시기획 - 야외조각전	30,000	30,000	-	0
〃	〃	〃	◎ 전시기획 - 아트마켓	30,000	15,000	-	15,000
오산창작 예술촌사업	오산장터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 공간임차료	42,000	12,000	-	30,000
〃	〃	201-03 행사운영비	◎ 예술촌 시민 프로젝트	60,000	60,000	-	0
〃	〃	〃	◎ 어울림 한마당	56,000	28,000	-	28,000
〃	〃	401-01 시설비	◎ 공간조성비	60,000	60,000	-	0

○ 오산교육재단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감 액	증 액	
오산시 출연금			오산교육재단 운영 지원 (평생교육과)	3,471,639	–	359,367	3,831,006
합 계				**44,800**	**40,633**	**400,000**	**404,167**
기본경비	오산교육 재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임차료 – 중앙동주민센터 임차료	25,000	20,833	–	4,167
〃	〃	〃	◎ 임차료 – 강의실 임차료	19,800	19,800	–	0
〃	〃	〃	◎ 임차료 – 신 사무실 임차료	–	–	23,100	23,100
〃	〃	〃	◎ 임차료 – 주차장 사용료	–	–	2,000	2,000
기본경비	오산교육 재단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렌탈료 – 정수기 렌탈료	–	–	1,200	1,200
〃	〃	〃	◎ 통신료 및 회선사용료 – ADT캡스(보안) 월 사용료	–	–	1,000	1,000
〃	〃	〃	◎ 사무실 이사비용	–	–	6,000	6,000
〃	〃	〃	◎ 사무실 관리비 – 사무실 월 관리비	–	–	18,000	18,000
〃	〃	201-02 공공운영비	◎ 전산장비유지보수 – 서버이전비용	–	–	2,200	2,200
〃	〃	〃	◎ 시설유지비 –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공사	–	–	2,000	2,000
〃	〃	401-04 시설비	◎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	–	22,000	22,000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자산취득비 – 시스템에어컨설치	–	–	15,000	15,000
〃	〃	〃	◎ 자산취득비 – 사무용가구	–	–	5,500	5,500
〃	〃	〃	◎ 자산취득비 – 중량렉	–	–	2,000	2,000
〃	〃	406-03 무형고정 자산	◎ 사무실 임대 보증금	–	–	300,000	300,000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총 괄

가. 운용규모 ····· 12,321,094 천원

나. 수 입

○ 전 입 금 ····· 1,732,155 천원

○ 예 치 금 회 수 ····· 9,967,563 천원

○ 이 자 수 입 ····· 388,340 천원

○ 보 조 금 ····· 117,216 천원

○ 기타(과징금 및 융자금회수) ····· 115,820 천원

다. 지 출

○ 비융자성 사업비(고유목적사업) ····· 1,323,526 천원

○ 융 자 금 ····· 65,820 천원

○ 예 치 금 ····· 9,727,370 천원

○ 예 탁 금 ····· 1,112,000 천원

○ 기타(반환금, 인력운영비) ····· 92,378 천원

2. 기 금 별(11종)

가. 재 난 관 리 기 금 ····· 9,640,556 천원

나. 보 훈 복 지 기 금 ····· 251,494 천원

다. 자 활 기 금 ····· 666,272 천원

라. 노 인 복 지 기 금 ····· 262,559 천원

마. 장애인복지기금 ····· 68,344 천원

바. 양 성 평 등 기 금 ····· 86,700 천원

사. 체 육 진 흥 기 금 ····· 263,440 천원

아. 농 업 발 전 기 금 ····· 86,392 천원

자. 식 품 진 흥 기 금 ····· 732,668 천원

차. 옥외광고발전기금 ····· 262,669 천원

카. 통합관리기금 ····· 2,508,556 천원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8. 30.

○ 본회의 심의 : 2018. 8. 3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시제출예산액	증 감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14,829,650**	**0**	**0**	**14,829,650**
통합관리기금	2,508,556	-	-	2,508,556
재난관리기금	9,640,556	-	-	9,640,556
보훈복지기금	251,494	-	-	251,494
자 활 기 금	666,272	-	-	666,272
노인복지기금	262,559	-	-	262,559
장애인복지기금	68,344	-	-	68,344
양성평등기금	86,700	-	-	86,700
체육진흥기금	263,440	-	-	263,440
농업발전기금	86,392	-	-	86,392
식품진흥기금	732,668	-	-	732,668
옥외광고발전기금	262,669	-	-	262,669

□ **기금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5,000**	**5,000**	**5,000**	**5,000**
체육진흥기금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가맹단체 활성화 육성 - 여자 축구부 육성지원	5,000	5,000	-	0
〃	〃	◎ 가맹단체 활성화 육성 -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0	-	5,000	5,000

□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오산시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신고센터의 장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함.

○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방법과 자료보완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기간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

○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 사례의 공개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경우 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성과금 지급은「오산시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기준을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 변동없음(월 1,100,000원)

○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안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 2019년 : 월 2,480,690원 (= 2018년 월 2,417,830원 × 2.6%)

– 2020년~2022년 : 전년도 월정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안 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 2018.1.9.

◦별표 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개정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별표 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삭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화를 위해 센터장 선임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장 채용 조건을 마련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현행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조직 및 운영 규정 통합(안 제7조)

○ 임원 무보수 규정 변경

(1) 임원 무보수 ⇒ 이사장 무보수(안 제11조제1항)

(2) 센터장 보수 규정 추가(안 제11조제2항)

○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리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18. 11. 29.

○ 심의결과 : 부결

–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함.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인구 및 세대수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중앙동 3개통 19개반 신설(안 별표2)

- 53통(1~6반), 54통(1~7반), 55통(1~6반)

○ 대원동 2개통 4개반 신설(안 별표2)

- 92통(1~2반), 93통(1~2반)

○ 초평동 3개통 26개반 신설(안 별표2)

- 31통(1~8반), 32통(1~8반), 33통(1~10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행정구역 변경 신청 건에 따라 법정동(지곶동, 세교동)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적 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세교동 관할구역 란에 “지곶동 일부” 편입내용 추가(안 제2조 별표)

- 지곶동 9필지를 세교동으로 법정동 변경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중견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행정수요 반영 및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안)임.

▷ **주요골자**

○ 기구조정

(1) 신설: 감사담당관(안 제4조), 아동청소년과(안 제8조), 주택과(안 제10조)

(2) 명칭 및 직제변경

(가) 명칭변경 : 미래도시국 → 도시주택국(안 제4조 및 제10조)
홍보감사관 → 홍보담당관(안 제4조)
기획예산관 → 기획예산담당관(안 제4조)
안전총괄과 → 안전정책과(안 제7조)
도 시 과 → 도시정책과(안 제10조)
건설도로과 → 도 로 과(안 제10조)
차량등록과 → 차량등록사업소(안 제16조)
(나) 직제변경 : 홍보담당관 → 시장보좌기관(안 제5조)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소(안 제16조제3항)

○ 주요사무 조정 및 신설
(1) 감사 및 비위예방 관련 사항: 홍보감사관 → 감사담당관(신설)
(2) 드림스타트 관련 사항: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신설)
(3) 여성 일자리 사업(새일센터) 관련 사항: 가족보육과 → 일자리정책과
(4) 아동친화 및 청년·청소년 사항: 가족보육과 → 아동청소년과(신설)
(5) 국공유재산 관련 사항: 토지정보과 → 회계과
(6) 주택행정 및 도시재생 관련 사항: 건축과 → 주택과(신설)
(7) 산림녹지 관련 사항: 농식품위생과 → 하천공원과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0조)
(1) 674명 → 715명(증 41명)
(가) 집행기관: 656명 → 699명(증 43명)
(나) 의회사무기구: 18명 → 16명(감 2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보훈수당 지원액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며 자긍심 고취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근거법령 보완 명시

(1)「국가보훈 기본법」외 국가보훈관계 법령 추가 규정(안 제1조)
(2) 보훈단체 용어 정의에 나열된 개별 법령 정비(안 제2조제4호)
○ 보훈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변경(안 제8조의2)
(1) 보훈수당 인상(제1항제1호)
· 만65세 미만 월 2만원 → 월 3만원
· 만65세 이상 월 5만원 → 월 6만원
· 만80세 이상 월 8만원 → 월 10만원
(2) 보훈수당 지급일 변경 및 소급적용 불가 규정 추가(제3항)
지급일: 신청한 날이 속한 달 ⇒ 신청한 다음 달
○ 신청사항 변경 절차 신설(안 제8조의5)
○ 보훈수당 지급신청서 등 서식 보완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장난감대여점 운영이 포함됨에 따라,
○ 장난감대여점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기 위해「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고유사무에 속하여 인용법률 삭제(안 제1조)
○ 공공시설(대여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필수적 사항임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안 제4조)
○ 장난감의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센터의 기능)에 따른 “장난감대여점의 운영”과 충돌하는 “위탁” 관련 조항 삭제 및 관리운영 조항 신설(안 제1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전통시장 매출감소, 골목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지역화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전자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그 밖의 지역화폐 운영사항 등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와 시상금 등에 따른 경비 지원을 추가하고, 각종 수당의 지역화폐로 지급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역화폐 시책 추진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5조제2항).

○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항목 중 “수당”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보완 수정함(안 제18조).

–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름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재정적 지원) (생 략)	제5조(재정적 지원)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역화폐 촉진 및 시민참여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등 지역화폐 시책추진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생 략)	제12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18조(준용)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실비보상)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 뷰티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시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재정 지원 및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그 밖의 운영사항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령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고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나, 안 제4조에서 정한 지원사업 중 위탁할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안 제5조에서 정한 위탁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또한 적용할 수 없음.

○ 향후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도록 제출안의 위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위탁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6조 (생 략)	제5조 (제정안 제6조와 같음)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 제7조 ---------- ----------.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8조 ~ 제15조 (생 략)	제7조~제14조 (제정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탈원전·탈화석연료 등 정부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는 지역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전을 추가하고,

○ 시민참여 및 행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목적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에너지전환내용 추가(안 제1조)

○ 기본원칙에 지역에너지 전환내용 신설(안 제2조제8호)

○ 지역에너지 전환 정의 규정(안 제3조제5호)

○ 시민참여 및 민간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사항 신설(안 제4조제6항)

○ 공유재산 대부료율 설정 및 재정지원사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18.01.18.)됨에 따라 오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 규정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 등 운영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저소득계층이 LH 장기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지원의 범위, 대상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임대보증금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공급주체 및 입주자의 의무 규정(안 제7조부터 8조까지)

○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 7월 소리울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개정하고 악기 대여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악기대여에 따른 사용료 부과(안 제4조 및 별표 3)

○ 소리울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별표 1)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5개의 해당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의 연장 규정 신설

(1)「오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2)「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2조)

(3)「오산시 도시개발조례」(안 제3조)

(4)「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제4조)

(5)「오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현재 운영 상황

(1) 운영주체: 사)지체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 (지회장: 김미정)

(2) 사 업 비: 41,344천원(시비 40,084천원, 자부담 1,260천원)

(3) 사업대상: 관내 장애인(약 800여명)

(4) 사업내용: 소모품교체(타이어, 튜브, 모터 등), 수리, 점검

(5) 운영실적 (단위 : 건, 명)

년도	수리내역 (단위:건)				교육실적	비고
	계	소모품지원	무상수리 및 점검	출장방문		
2017년	1,293	206	637	450	100명	
2018년(9월)	903	187	406	310	50명	

○ 수탁기관 선정계획
· 모집공고: 2019. 3월중
· 위탁심사 등 수탁자 선정: 2019.4 ~ 5월중
· 위탁기간 결정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2019.5 ~ 6월중
· 위탁기간: 2019. 하반기 ~ 2021. 12.31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수리가능 기술자를 1명 이상 확보 가능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수탁자선정: 오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명: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 참가현황: 44개 지방자치단체(2018. 10월 현재)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서울(22)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경기(8)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강원(1)	원주시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부산(1)	북구	충북(1)	보은군
인천(1)	미추홀구	충남(3)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광주(1)	서구	전북(1)	익산시
대전(1)	대덕구	전남(4)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 기능(안 제2조)

(1)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및 임원 (안 제3조 ~ 제5조)

(1) 구 성: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3) 임 기: 1년, 1회 연임

○ 실무협의회 등 (안 제11조)

(1)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2)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 경비부담 (안 제12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납부

(1) 19년도 출연금 납부 예정금액: 10,000천원

(2)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납부' 공문 시달
(도·농 복합 시 및 군: 50,000천원, 일반시: 10,000천원)

○ 근거

(1)「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2)「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발전기금 운용 현황

(1)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전년도 자금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융)자금 배정액 시달

(2) 농어업경영자금 지원

(가) 18년도 배정액: 20백만원

(나) 융자조건: 연리 1%,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특작·과수 수도작·축산업·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등

(라) 지원범위: 농업인(개별농가) 60백만원
영농조합법인·축산단지·영어조합법인은 개소당 2억원

(마) 지원방법: 오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경기도와 융자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에 통보

○ 필요성 :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저리의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농어민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고취 및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 확보를 위한 출연금 납부 필요.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재가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설치 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재가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설치 계획(안)은 성인 장애인의 낮 돌봄 시설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대기인원 증가와 보호자들의 지속적인 시설 확대 설치 요구 및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배움의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의욕구에 맞는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보호작업장 확대 설치를 통해 재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 마련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 대상재산: 3건(토지 2, 건물 1)

(1) 재가성인장애인 이용시설 설치확대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가) 토 지: 2건(매입)

・서동 492번지, 1,547㎡, 추정가액 582,600천원

・서동 492-1번지, 2,573㎡, 추정가액 968,992천원

(나) 건 물: 1건(매입)

・서동 492번지 외 1필지, 연면적 2,131.13㎡, 추정가액 510,104천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득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3 2 1	6,251.13 4,120.00 2,131.13	2,061,696 1,551,592 510,104	
	1.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1	4,120.00 2,131.13	1,551,592 510,104	○ 재가성인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 설치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	이하	여백	-
	3. 기타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으로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3건		6,251.13	2,061,696			
1	토지	서동 492번지	대지	1,547.00	582,600	2019	재가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용시설 확대설치	노인 장애인과
2	토지	서동 492-1번지	대지	2,573.00	968,992	2019		
3	건물	서동 492번지 외 1필지		2,131.13	510,104	2019		
		-	이	하	여	백	-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구성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설립에 따라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고시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

▷ 주요골자

○ 협의회 명칭(제1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목적 명시(제2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 기여

○ 협의회 기능(제3조)

(1) 주민체감·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사례 공유, 조사, 연구

(2)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3)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 협의회 구성(제4조) “별표”

○ 임원 및 임기(제5조 ~ 제6조)

○ 회의 및 의결(제7조 ~ 제12조)

○ 사무국 설치 및 업무(제13조 ~ 제14조)

○ 재원·부담금, 예산·결산, 감사(제16조 ~ 제2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한 해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 보고주체 및 대상

(1) 보고주체: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2) 보고대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 보고절차

(1) 매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 지방의회에 보고자료 제출

(2)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매년 나누어 보고 가능

○ 해제권고 후 조치

-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연번	시 설	10년 이상(장기미집행시설)			비 고
		개 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44	**796,747**	**460,168**	**-**
1	도 로	27	322,956	143,754	-
2	공 원	1	210,912	179,275	-
3	녹 지	10	238,987	117,867	-
4	광 장	4	21,675	10,172	-
5	주 차 장	1	563	100	-
6	공공청사	1	1,654	9,000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

연번	시설	사 업 명		위 치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연도)	최초결정일	미집행 사 유
				기 점	종 점					
1	도로	대로	2-007	대로1-5 궐동 산60임	광로2-2 가장동 17-2	10,260	4,610	2020	1995.04.22.	예산확보 불명확
2	도로	대로	2-011	17호광장 금암동 332-8	양산동548-1	96,690	8,200	2019~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	도로	대로	2-014	18호광장 양산동530-5	중로2-139 양산동 608	14,850	13,727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4	도로	대로	2-015	15호광장 양산동 450-2	18호광장 양산동525-4	53,760	16,991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5	도로	대로	2-026	소로1-16 가수동326-11	소로2-2 오산동621-5	5,797	13,900	2023	2003.11.18.	예산확보 불명확

연번	시설	사 업 명		위치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연도)	최초결정일	미집행 사 유
				기 점	종 점					
6	도로	대로	3-004	22호광장 부산동산26-1	중로1-45 원동 산42-1	33,175	11,472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7	도로	중로	1-030	중로1-111 가수동 14-4	광로2-2 서동 122-4	12,000	7,500	2020	1995.5.6	예산확보 불명확
8	도로	중로	1-045	6호광장 부산동 19	부산구역계 부산동 2	59,274	29,572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9	도로	중로	1-052	대로3-4 원동 산15-1	중로1-45 원동 715-1	5,312	1,559	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10	도로	중로	2-044	대로3-13 부산동 535-2	중로2-45 부산동122-3	2,716	3,843	2019~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11	도로	중로	3-019	중로1-2 누읍동 54전	중로3-20 가수동196-1	3,826	1,900	2020	1987.7.13	예산확보 불명확
12	도로	소로	1-015	대로3-7 외삼미동88-1	소로3-97 외삼미93-1	2,270	2,169	2020	1988.6.22	예산확보 불명확
13	도로	소로	1-322	소로1-329 지곶동 256-5	소로1-322 지곶동290-7	4,320	3,500	2020~2022	2003.11.24	
14	도로	소로	2-038	중로2-3 궐동 73-5	소로3-35 궐동 74	544	800	2020	1997.10.28	예산확보 불명확
15	도로	소로	2-187	소로1-322 지곶동 256-6	소로3-324 지곶동243-2	1,208	1,100	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16	도로	소로	2-188	소로1-322 지곶동 311-9	소로3-325 지곶동534-20	2,592	1,036	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17	도로	소로	2-189	소로1-329 지곶동290-7	소로1-322 지곶동286-3	544	515	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18	도로	소로	3-016	중로2-3호선	중로2-4호선	348	500	2020	1978.4.10	예산확보 불명확
19	도로	소로	3-041	대로1-1	중로2-4	1,116	800	2020~2021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20	도로	소로	3-097	소로1-15 외삼미동609	소로3-99 외삼미158-1	4,152	5,800	2020	1995.10.9.	예산확보 불명확
21	도로	소로	3-099	소로3-97 외삼미164	소로3-97 외삼미동132	936	560	2020	1995.10.9	예산확보 불명확
22	도로	소로	3-118	대로1-1 내삼미482-20	소로3-119 내삼미동427	2,268	3,100	2020	1995.10.9.	예산확보 불명확
23	도로	소로	3-119	소로3-118 내삼미508-4	내삼미동 516-2	918	600	2020	1995.10.9.	예산확보 불명확
24	도로	소로	3-257	중로1-4 청학동40-7	소로3-8 가수동615-3	240	1,500	2020	1995.10.9.	예산확보 불명확
25	도로	소로	3-325	소로1-322 지곶동238-3	소로2-188 지곶동산127	2,400	5,000	2019~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연번	시설	사 업 명		위 치		미집행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집행계획(연도)	최초결정일	미집행 사 유
				기 점	종 점					
26	도로	소로	3-348	소로1-327 갈곶동159-15	소로1-327 갈곶동155-1	1,308	3,000	2019~2020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27	도로	소로	3-349	소로2-230 갈곶동270-8	소로3-348 갈곶159-24	132	500	2020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28	광장	광장-15		양산동 450답 일원		8,042	4,150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29	광장	광장-18		양산동 526-2답 일원		8,010	2,022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0	광장	광장-19		서랑동 산24-1임 일원		3,962	2,500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1	광장	광장-22		부산동 736답 일원		1,661	1,500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2	주차장	주차장-014		오산 382-1 일원		563	100	2023	2003.11.24.	예산확보 불명확
33	근린공원	공원-017		내삼미산70-6번지일원		210,912	179,275	2020	1995.04.22	예산확보 불명확
34	완충녹지	녹지-001		광로 2-1호선변		188,363	94,182	2020	1976.12.7	예산확보 불명확
35	완충녹지	녹지-003		대로 2-1호선		3,038	1,519	2020	1976.12.7	예산확보 불명확
36	완충녹지	녹지-022		대로 2-12호선변		17,230	8,615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7	완충녹지	녹지-023		갈곶동 290-2번지 일원		115	58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8	완충녹지	녹지-026		대로 3-5호선변		4,331	2,166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39	완충녹지	녹지-027		대로 3-14호선변		17,220	6,069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40	완충녹지	녹지-031		대로 2-4호선변		7,461	3,731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41	완충녹지	녹지-033		대로 2-18호선변		1,915	958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42	완충녹지	녹지-036		광로 3-1호선변		577	289	2023	2003.6.9	예산확보 불명확
43	완충녹지	녹지-162		중로1-79호선변		566	283	2024	2006.9.4	예산확보 불명확
44	공공청사	공공청사 -019		양산동 175-2답 일원		1,654	9,000	2022~2023	2007.1.8	예산확보 불명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1. 26.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에 의견제시를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의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 대　　상: 오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62개소

(2) 규　　모: 약1,958,693㎡

(3) 수립기간: 2019년~2024년(5년)

→ 1단계(2019년~2021년), 2단계(2022년~2023년), 2-1단계(2024년 이후)

(4) 추정사업비: 1,320,340 백만원

(5)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전 체		1단계 (2019~2021년)	2-1단계 (2022~2023년)	2-2단계 (2024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합 계		**62**	**1,320,340**	**430,520**	**146,947**	**742,874**
도로	소 계	35	168,304	81,189	83,865	3,250
	대 로	6	68,900	10,810	58,090	-
	중 로	9	59,274	40,150	19,124	-
	소 로	21	40,130	30,229	6,651	3,250
공 원		5	926,443	185,275	8,000	733,168
녹 지		11	124,039	103,992	13,592	6,456
광 장		4	10,172	-	10,172	-
주 차 장		2	10,700	10,600	100	-
학 교		3	71,135	48,917	22,218	-
공공청사		2	9,547	547	9,000	-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세부현황

연번	사업·시설 부문	사업개요				2019년~2023년						실효
		사업명		미집행 면 적	총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1	도로	대로	2-007	10,260	4,610		4,610					2020
2	도로	대로	2-011	96,690	8,200	200	3,000	3,000	1,000	1,000		2023
3	도로	대로	2-014	14,850	13,727					13,727		2023
4	도로	대로	2-015	53,760	16,991					16,991		2023
5	도로	대로	2-026	5,797	13,900					13,900		2023
6	도로	대로	3-004	33,175	11,472					11,472		2023
7	도로	중로	1-030	12,000	7,500		7,500					2020
8	도로	중로	1-045	59,274	29,572		29,572					2020
9	도로	중로	1-052	5,312	1,559					1,559		2023
10	도로	중로	1-105	7,760	5,200					5,200		2034
11	도로	중로	2-044	2,716	3,843	500	678			2,665		2023
12	도로	중로	2-123	2,754	2,500					2,500		2034
13	도로	중로	2-139	47,160	7,200				2,000	5,200		2036
14	도로	중로	3-019	3,826	1,900		1,900					2020
15	도로	소로	1-015	2,270	2,169		2,169					2020
16	도로	소로	1-322	4,320	3,500		1,700	1,800				2023
17	도로	소로	2-038	746	800		800					2020
18	도로	소로	2-187	1,208	1,100					1,100		2023
19	도로	소로	2-188	2,592	1,036					1,036		2023
20	도로	소로	2-189	544	515					515		2023
21	도로	소로	2-291	416	650						650	2034
22	도로	소로	2-292	1,134	700						700	2034
23	도로	소로	3-016	348	500		500					2020
24	도로	소로	3-041	1116	800		800					2020
25	도로	소로	3-097	4,152	5,800		5,800					2020
26	도로	소로	3-099	936	560		560					2020
27	도로	소로	3-118	2,268	3,100		3,100					2020
28	도로	소로	3-119	918	600		600					2020
29	도로	소로	3-257	240	1,500		1,500					2020
30	도로	소로	3-325	2,400	5,000	1,000				4,000		2023
31	도로	소로	3-348	1,308	3,000	2,500	500					2023
32	도로	소로	3-349	132	500		500					2023
33	도로	소로	3-459	744	1,900						1,900	2029

연번	사업·시설 부문	사업개요			2019년~2023년						실효
		사업명	미집행 면 적	총사업비	단계별 사업비 (단위:백만원)						
					1단계			2-1단계		2-2단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이후	
34	도로	소로 3-491	6,960	3,500	2,900	600					2036
35	도로	소로 3-495	3,060	2,900	2,900						2036
36	광장	광장-15	8,042	4,150					4,150		2023
37	광장	광장-18	8,010	2,022					2,022		2023
38	광장	광장-19	3,962	2,500					2,500		2023
39	광장	광장-22	1,661	1,500					1,500		2023
40	주차장	주차장-014	563	100					100		2023
41	주차장	주차장-81	975	10,600	10,600						2036
42	근린공원	공원-017	210,912	179,275		179,275					2020
43	역사공원	공원-118	770,470	654,900						654,900	2029
44	어린이공원	공원-122	5,490	2,436						2,436	2034
45	문화공원	공원-144	89,215	75,833						75,833	2036
46	문화공원	공원-146	158,515	14,000			6,000		8,000		2036
47	완충녹지	녹지-001	188,363	94,182		94,182					2020
48	완충녹지	녹지-003	3,038	1,519		1,519					2020
49	완충녹지	녹지-022	17,230	8,615					8,615		2023
50	완충녹지	녹지-023	115	58					58		2023
51	완충녹지	녹지-026	4,331	2,166					2,166		2023
52	완충녹지	녹지-027	17,220	6,069					6,069		2023
53	완충녹지	녹지-031	7,461	3,731					3,731		2023
54	완충녹지	녹지-033	1,915	958					958		2023
55	완충녹지	녹지-036	577	289					289		2023
56	완충녹지	녹지-162	566	283						283	2026
57	연결녹지	녹지-299	12,345	6,173						6,173	2034
58	초등학교	학교-80	12,037	23,379					23,379		2034
59	중학교	학교-81	14,000	22,218						22,218	2034
60	초등학교	학교-82	12,002	25,538					25,538		2035
61	공공청사	공공청사-030	680	547	547						2036
62	공공청사	공공청사-019	1,654	9,000				4,000	5,000		2027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8. 12. 5.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제2절 2019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3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성길용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9. 1. 30
○ 회 기 : 2019. 2. 11 ~ 2. 19 (9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오산시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무술년의 한해가 저물고,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은지 어느덧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돼지를 매우 길한 동물로 여겨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넘치고 먹을 복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시민여러분 모두가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큰 부자 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이루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의회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8대 오산시의회가 출범한지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도 한해를 봉사의 해로 정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 기치로 한 달에 한 번은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시민들과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으며 눈앞의 성과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은 시민들 삶의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고 오산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원 여러분 모두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현안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을 챙기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금년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의 투명한 감시자로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오산시가 여러 분야에서 2018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 독산성문화제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선정, 경기도 과태료징수 최우수기관 선정, 재정운영 최우수기관 선정, 사업장 환경관리 우수기관 선정, 복지정책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로 살기 좋은 사람이 빛나고 더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매진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청년 오산시 위상에 걸맞게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준비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책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투운동, 밀양세종병원 화재, 평창올림픽 개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강서구 PC방 사건, 쌍둥이자매 시험지 유출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지만 우리 시에서는 모두가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대처를 잘해주어 큰 사건 없이 한해를 보낸 더욱 의미 있는 해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우리 선현들은 옛 것을 배워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익혔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가르친바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아 감격에 겨워하는 것 이상으로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아 오늘을 사는 지혜로 삼아야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지난 한해를 거울삼아 활짝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참뜻을 바르게 대변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반가운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통해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엄정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로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하는 한편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기 보다는 시민이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든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상호 존중해가며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39회 임시회는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와 9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임시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시정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칭찬과 함께 격려도 해주시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의례적인 계획수립과 단순보고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속도감 있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특히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고양시 온수배관파열사고와 금년 2월에 발생한 천안 다세대 주택화재참사 등 예고 없이 닥쳐오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 점검과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 없는 안전도시 오산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함께 가정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2.11.(월) 11:00 본회의장	□ **개회식**	○ 휴회 : 2.12. ~2.18. (7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1. 제23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3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7.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8. 오산시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2.12.(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2.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13.(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2.14.(목)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2.15.(금)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오산문화재단	
2.16.(토)~ 2.17.(일)	**토요일, 일요일**	
2.18.(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19.(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노인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과 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함.

○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과「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직접적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의 형식으로 조례의 목적에서 근거 법명을 삭제함(안 제1조).

○ “장애인등”, “보조기기”, “전동기기”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장애인등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간 25만원 이내
-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등 : 연간 15만원 이내
- 보조기기 수리센터 또는 지정수리업체에서의 수리비용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기기 수리 신청과 결정, 의뢰 등의 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와 업무 및 조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수리센터 위탁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하여 전문 수리업체 지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수리비용의 환수에 대하여 정함(안 제11조).
○ 수리센터와 지정수리업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직장어린이집 명칭은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위치는 대동아파트로 함(안 제3조 및 별표).
○ 직장어린이집은 시장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2조).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정함(안 제13조).

○ 아동의 안전관리을 위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함(안 제14조).
○ 수탁자의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함(안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향토유적의 발굴과 보존·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실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형성시기에 관계없이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향토유적의 정의를 보완하고, 문화재 지정 관련 법규에「문화재보호법」이외에「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추가함(안 제2조).
○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전문가로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
○ 1945년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형성시기에 대한 조건과 제2조(정의)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적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 시 법적근거가 없는 도지사 승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삭제).
○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인구 및 세대수가 대폭 증가되는 지역에 대해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 통의 삭제되는 지번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남촌동 14통 일부지번 삭제 : 청학동 70, 70-1, 71 (안 별표2)

○ 남촌동 1개통 5개반 신설 : 43통(1~5반) (안 별표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대한 심의 시 현행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으나,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있는 사용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체적 규정(안 제10조제2항)

(1)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위촉

(2) 위촉직위원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안 제10조제6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표준안 반영(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그 밖의 용어 정비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의견청취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불필요하게 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동생활가정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1조)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정비계획에 따라 대관 신청 취소 시 불합리한 환불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용허가 취소 시 일정기간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안 제9조제3호)

(1) 사용일로부터 60일 전: 납부금액의 전액 반환

(2) 사용일로부터 30일 전: 납부금액의 50% 반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수립목적

○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음.

2.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3.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5. 계획기간 : 2019 ~ 2023년(5년간)

○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

6.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및 기준인건비 현황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1.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오산시 제7기(2019~202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오산시 건강정책운영 실태와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수립목적

○ 오산시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

2. 근　　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3.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작성기준 : 매년 1월 1일

5.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 분석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

○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1.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성혁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9. 3. 4
○ 회 기 : 2019. 3. 11 ~ 3. 20 (10일간)
○ 주요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4.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
5.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6.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온맘행복'경기아이드림센터오산센터 건립 등 2건]
13.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어느 새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곧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성큼 다가오는 시점에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금년 한해를 봉사의 해로 정하고 매월 1회 이상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봉사활동 예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오산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비회기 중에도 시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업무보고와 조례심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달 세교노인복지회관 떡국 나눔 첫 봉사활동에 이어 2월 28일에는 4개 방범순찰대 40여명과 함께 관내 우범지역을 구석구석 돌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방범순찰을 마치고 이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범순찰대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 청취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늦은 시간까지 소중한 개인시간을 할애해가며 행복나눔 야간방범 순찰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개동 주민과의 시정설명회, 정월대보름 행사 등 계획한대로 차질 없는 준비와 추진 그리고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늘 수고하시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사람이 빛나고 더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넉넉한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앞으로 다가올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산적해 있어 상당히 바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모두가 행복하여야 할 시기에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알찬 행사준비를 위해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중요한 행사나 시책사업 등이 지연 및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시정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조례안 9건,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 동안 심의·의결해야 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 적정성, 건전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칭찬과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부의안건 하나하나가 시정발전과 시민경제활동, 일상생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온갖 열정을 갖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로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회기기간 중 상정안건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 준비 및 제공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과 특히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 의결 시에도 신속한 대책과 추진으로 소기의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철저한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예찰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오산, 틈새 소외계층까지 보듬어 감싸는 따듯한 오산, 시민과 함께 하는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활동으로 도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오산건설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따듯해지긴 했지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린 잦은 황사와 미세먼지의 발생으로 건강이 매우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따스한 봄바람과 같은 훈훈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11.(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3.12. ~3.19. (8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1. 제24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조례안 9건 9.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온맘행복'경기아이드림센터오산센터 건립 등 2건]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2.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 휴회의 건	
3.12.(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3.(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도시주택국, 사업소(3), 관(3), 동(3) 소관]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4.(목)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15.(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6.(토)~ 3.17.(일)	□ **휴 일**	
3.18.(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5.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 6.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7.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9.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조례안 9건	
3.19.(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조례안 9건	
3.20.(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조례안 9건 3.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온맘행복'경기아이드림센터오산센터 건립 등 2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94,984,164 천원
나. 일반회계 ····· 542,606,111 천원
다. 특별회계 ····· 152,378,053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6,315,542 천원
○ 기타특별회계 ····· 46,062,511 천원

2.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48,391,011 천원
나. 일반회계 ····· 541,968,905 천원
다. 특별회계 ····· 106,422,106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87,812,822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8,609,284 천원

3.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34,6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5,734,026 천원
○ 지방교부세 ····· 80,059,000 천원
○ 조정교부금 ····· 60,000,000 천원
○ 보 조 금 ····· 170,918,507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7,038,478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34,6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5,110,854 천원
○ 지방교부세 ····· 80,059,000 천원

○ 조 정 교 부 금 ····· 60,000,000 천원
○ 보 조 금 ····· 170,053,058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72,104,993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0,623,172 천원
○ 보 조 금 ····· 865,449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4,933,485 천원

4.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69,910,698 천원
○ 재 무 활 동 ····· 12,585,69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5,894,621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68,997,437 천원
○ 재 무 활 동 ····· 12,510,64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0,460,828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00,913,261 천원
○ 재 무 활 동 ····· 75,05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433,793 천원

5. 계속사업

가.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53건 ····· 513,572,499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9. 3. 15.
○ 본회의 심의 : 2018. 3. 20.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감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648,391,011**	**-**	**-**	**648,391,011**
일반회계	소 계			541,968,905	-	-	541,968,905
	지 방 세 수 입			134,641,000	-	-	134,641,000
	세 외 수 입			25,110,854	-	-	25,110,854
	지 방 교 부 세			80,059,000	-	-	80,059,000
	조 정 교 부 금 등			60,000,000	-	-	60,000,000
	보 조 금			170,053,058	-	-	170,053,0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104,993	-	-	72,104,993
특별회계	소 계			106,422,106	-	-	106,422,106
	공기업	소 계		87,812,822	-	-	87,812,822
		상수도	소 계	32,309,276	-	-	32,309,276
			사 업 수 익	17,667,521	-	-	17,667,521
			자 본 적 수 입	14,641,755	-	-	14,641,755
		하수도	소 계	55,503,546	-	-	55,503,546
			사 업 수 익	23,883,367	-	-	23,883,367
			자 본 적 수 입	31,620,179	-	-	31,620,179
	기타	소 계		18,609,284	-	-	18,609,284
		세 외 수 입		7,872,102	-	-	7,872,102
		보 조 금		418,240	-	-	418,24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318,942	-	-	10,318,942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증감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10종)	**648,391,011**	**△1,941,776**	**1,941,776**	**648,391,011**
일반회계(1종)	541,968,905	△1,941,776	1,941,776	541,968,905
특별회계(9종)	106,422,106	-	-	106,422,106
공기업특별회계(2종)	87,812,822	-	-	87,812,822
상수도특별회계	32,309,276	-	-	32,309,276
하수도특별회계	55,503,546	-	-	55,503,546
기타특별회계 (7종)	18,609,284	-	-	18,609,284
교통사업특별회계	16,079,531	-	-	16,079,531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14,241	-	-	1,214,241
대지보상특별회계	37,250	-	-	37,25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76,903	-	-	476,903
도시개발특별회계	77,498	-	-	77,498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53,094	-	-	53,094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670,767	-	-	670,767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 정 안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541,968,905**	**1,534,095**	**△1,941,776**	**1,941,776**	**541,968,905**
의회사무과	2,141,011	5,281	-	-	2,141,011
홍보담당관	3,673,854	138,100	-	-	3,673,854
감사담당관	208,593	94,876	△58,776	-	149,817
기획예산담당관	20,884,689	△10,617,122	-	1,941,776	22,826,465
자치행정과	61,431,495	△96,603	△3,000	-	61,428,495
안전정책과	3,397,646	67,800	-	-	3,397,646
세정과	591,161	8,220	-	-	591,161
징수과	1,321,235	174,800	-	-	1,321,235
회계과	18,751,907	1,604	-	-	18,751,907
정보통신과	6,424,628	125,776	-	-	6,424,628
희망복지과	21,587,931	95,924	-	-	21,587,931
노인장애인과	72,220,518	608,090	-	-	72,220,518
가족보육과	85,655,807	△3,333,895	-	-	85,655,807
아동청소년과	31,673,496	2,804,247	-	-	31,673,496
민원여권과	468,317	40,736	-	-	468,317
평생교육과	26,731,905	236,180	-	-	26,731,905
일자리정책과	6,380,423	615,045	-	-	6,380,423
지역경제과	4,224,949	404,903	-	-	4,224,949
문화체육관광과	20,711,649	2,184,270	-	-	20,711,649
농식품위생과	4,851,763	379,533	-	-	4,851,763
토지정보과	713,793	0	-	-	713,793
도시정책과	799,750	0	-	-	799,750
미래사업과	11,116,180	0	-	-	11,116,180
도로과	23,016,158	1,730,000	△100,000	-	22,916,158
교통과	24,532,452	1,987,746	-	-	24,532,452
건축과	931,531	105,600	-	-	931,531
주택과	11,568,600	14,400	-	-	11,568,600
보건행정과	5,567,297	55,511	-	-	5,567,297
건강증진과	9,618,279	55,946	-	-	9,618,279
환경과	33,415,575	3,325,105	△1,780,000	-	31,635,575
수도과	1,675,830	0	-	-	1,675,830
하수과	838,737	0	-	-	838,737
하천공원과	13,970,629	199,800	-	-	13,970,629
중앙도서관	7,438,190	126,877	-	-	7,438,190
차량등록사업소	36,460	520	-	-	36,460
중앙동행정복지센터	685,393	0	-	-	685,393
대원동행정복지센터	773,868	1,300	-	-	773,868
남촌동행정복지센터	434,952	0	-	-	434,952
신장동행정복지센터	683,766	0	-	-	683,766
세마동행정복지센터	517,424	△8,200	-	-	517,424
초평동행정복지센터	301,064	1,725	-	-	301,064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증감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특별회계(9종)	**106,422,106**	**1,856,162**	**-**	**-**	**106,422,106**
공기업 특별회계(2종)	87,812,822	361,755	-	-	87,812,822
상수도 특별회계	32,309,276	361,755	-	-	32,309,276
하수도 특별회계	55,503,546	0	-	-	55,503,546
기타 특별회계 (7종)	18,609,284	1,494,407	-	-	18,609,284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과	15,832,999	1,037,680	-	-	15,832,999
교통사업 특별회계 차량등록과	246,532	24,660	-	-	246,532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1,214,241	0	-	-	1,214,241
대지보상 특별회계	37,250	0	-	-	37,25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76,903	0	-	-	476,903
도시개발 특별회계	77,498	0	-	-	77,498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특별회계	53,094	0	-	-	53,094
발전소주변 지역특별회계	670,767	432,067	-	-	670,767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 입 : 해당없음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액	추 경 요 구 액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1,941,776**	**1,941,776**	**△1,941,776**	**1,941,776**	**1,941,776**
기 획 예 산 담당관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내부 유보금	0	-	-	1,941,776	1,941,776
감 사 담당관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등	55,800	55,800	△55,800		0
〃	〃	301-09 행사실비 보상금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운영 급식비 등	2,976	2,976	△2,976		0
자 치 행정과	사회단체 육성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새마을의 날 기념식	3,000	3,000	△3,000		0
도로과	교량시설물 관리	401-01 시설비	◎남촌대교 경관 개선사업	100,000	100,000	△100,000		0
환경과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그린 버스 정류장(쉘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벤치 임차료	20,000	20,000	△20,000		0
〃	〃	401-01 시설비	◎그린 버스 정류장(쉘터) 조성	20,000	20,000	△20,000		0
〃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401-01 시설비	◎기계설비 개선공사 - 자숙기 보수 공사	1,000,000	1,000,000	△1,000,000		0
〃	〃	〃	◎기계설비 개선공사 - 전처리 선별시설 신설공사	740,000	740,000	△740,000		0

○ 기타특별회계 : 해당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오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명).

○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조).

○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내지 제11조).

-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함.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함(안 별표).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제1항).

-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가능

○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

-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국외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오산지역화폐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과 오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분기별로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 청년배당은 본인이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지급대상자의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 배당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권익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대상을 오산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함(안 제3조).

○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함(안 제4조).

○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성친화도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9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19. 3. 19.
○ 심 의 결 과 : 보류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 장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등록기관 지정과 접수창구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3) 오산시립 미술관 관람료의 100분의 30

4)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100분의 50
5)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
6) 시티버스 이용료의 100분의 50
7)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100분의 10
8)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9) 장난감대여점 연회비의 100분의 50

○ 업무담당자의 비밀 유지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

○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중요한 사항으로써 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므로「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함(안 제10조제4항).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 위탁"에 관한 내용과 수탁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한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10조제1항단서 및 제11조 삭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오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내지 제9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6조).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협의체 지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23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함(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19. 3. 19.

○ 심 의 결 과 : 보류

→ 고령운전자의 연령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함.

□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안 제1조 ~ 안 제4조)

(1) 협의회명 :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2) 구성 : 지방자치단체(별표)

(3) 조직 : 회장(1명), 부회장(복수 가능), 임기1년(연임가능)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안 제5조 ~ 안 제9조)

(1) 총회 : 정기회(상하반기 각1회), 수시회의(수시)

(2) 협의사항

(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등의 교류와 협력

(나) 남북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라)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의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의원(안 제10조 ~ 안 제11조)

(1) 실무협의회 분과(7개)

(가) 환경, 농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보건·복지, 기업유치

(나) 각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 업무 담당 국장(급)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안 제12조 ~안 제15조)

(1) 사무국 설치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결정

(2) 업무관련 자문위원 및 출석 관계전문가에게 실비 지급 가능

(3) 회계연도에 따른 회계보고 및 협의회 승인

○ 협의회의 운영세칙(안 제16조)

(1)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등 2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 총 2건(취득 2건)

○ 취득재산 현황

번호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1	취득	신축	건물	☐ **'온맘행복'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ㅇ추진배경: 저출산극복과 영유아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사업기간: 2019. ~ 2021. ㅇ위 치: 양산동 670-1, 670-2 ㅇ규 모: 지상 4층(연면적 4,000㎡) ㅇ사 업 비: 10,700,000천원	가 족 보 육 과
2	취득	신축	건물	☐ **국민체육센터 건립** ㅇ추진배경: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실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사업기간: 2019. ~ 2021. ㅇ위 치: 궐동 산 48-3 ㅇ규 모: 지상2층, 지하1층(부지면적 7,747㎡, 연면적 3,600㎡) ㅇ사 업 비: 10,000,000천원	문화체육 관 광 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 제1차 수시분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분			당초			수시분			합계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계	**토지**	**1**	**4,120**	**1,551,592**				**1**	**4,120**	**1,551,592**	
		건물	**1**	**2,131.13**	**510,104**	**2**	**5,200**	**20,700,000**	**3**	**7,331.13**	**21,210,104**	
		기타										
취	1. 매입	토지	1	4,120	1,551,592				1	4,120	1,551,592	
		건물	1	2,131.13	510,104				1	2,131.13	510,104	
		기타										
득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2	5,200	20,700,000	2	5,200	20,700,000	신축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201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단위 : ㎡, 천원)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비 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4건			11,451.13	22,761,696			
1	토지	서동 492	대	1,547	582,600	2018~ 2020	재가성인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 (매입)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의결
		서동 492-1	대	2,573	968,992			
	건물	서동 492외 1필지	대	2,131.13	510,104			
2	건물	양산동 670-1, 670-2	대	4,000	10,700,000	2018~ 2021	'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 오산센터 건립 (신축)	신규 수시분
3	건물	궐동 산48-3 일원	임야	1,200	10,000,000	2019~ 2021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축)	신규 수시분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87개 단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제4기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 작성주체: 오산시장

○ 작성기준: 매년

○ 주요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 지원계획

(3)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3. 11.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소집요구 : 한은경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9. 4. 18.
○ 회 기 : 2019. 4. 25. ~ 5. 3. (9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2.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7.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8.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멸실]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1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15.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개회사에 앞서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과 자매도시인 속초시 일대 화재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오산시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산시가 지난 4월 15일에 자매도시 속초시의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속초시에서 요청한 기초화장품 세트와 헤어드라이어를 지원하여 자매도시로서 어려움을 나눠주신 점에 대하여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지고 반짝이는 봄 햇살과 함께 예쁜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는 완연한 4월의 봄을 맞이하여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하게 된 것을 매우 향기롭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오산천 일원에서 진행된 제5회 오산천 두바퀴 축제는 시민 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되어 건강과 함께 시민모두가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어준 뜻깊은 봄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그간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 시정현안사항 보고회 개최는 물론 수시로 의원들과 공무원이 소통하여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오산시의회에서는 청소년선도캠페인 등 시민과 약속한 매월 1회 봉사활동을 변함없이 실시해 왔습니다. 의원 봉사활동을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회계연도 오산시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애써주신 이상복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곽상욱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오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1회 다산목민 대상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23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면서 우리 오산시가 시승격 30주년이 된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오산시의회는 청사 측면에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리는 대형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나라에 바친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희생위에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기억을 살리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 오산시도 그동안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정책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오산의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맡은 정책과 제정된 조례는 시민에게 영향을 주므로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소임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상욱 오산시장님! 시장님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8일 평택시청에서 경기도 및 경기 남부지역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6개시와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을 위한 단체장 사전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오산시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제일 먼저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가재난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열한 건,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 행정사무감사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기타안 세 건등 총 열아홉 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시정운영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안건이 의결 즉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있어 이월되는 사업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산시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이월잔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음을 반드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4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집행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집행부로 이송되면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을 통하여 시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성숙된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근간이자 시민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고 주변의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보살피고 아우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 25.(목)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1. 제2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9.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멸실] 10.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12.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휴회의 건	○ 휴회 : 4.26. ~5.2. (7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 26.(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 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9.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10.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계속)	
4. 27.(토)~ 4. 28.(일)	□ **휴 일**	
4. 29.(월)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4. 30.(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5. 1.(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30 제2회의실	□ **안건 협의**(행정사무감사계획)	
5. 2.(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3.(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멸실] 등 동의안 5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급식 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 밖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 등으로 정함(안 제2조).

○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과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 음식점, 도시락, 식재료 지원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함 (안 제3조).

○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공무원이 동장에게 신청하고, 그 지원여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4조).

※「오산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조례 제정 후 폐지

○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를 현행 초·중·고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오산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 오산시생활체육회가 오산시체육회로 통합되었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오산시체육회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 기금 조성 목표를 50억원으로 정하고,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 기금은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등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

○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함(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4조).

○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으로 정함(안 제15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량을 향상하고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육성과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 소속으로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전통무용단을 설치하고 어린이 전통무용단과 청소년 전통무용단을 각각 두도록 함(안 제2조).

○ 어린이무용단은 초등학생으로, 청소년무용단은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각각 예술감독, 지도자, 반주자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 지도자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함(안 제6조).

○ 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공개모집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함(안 제8조 및 제9조).

○ 무용단의 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각종 경연대회 시상금과 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에 세입조치 하도록 함(안 제1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용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자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 무용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19. 4. 30.

○ 심 의 결 과 : 부결

→ 필요성에 이견은 없지만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보다 협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홍보,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이 약화되고,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인하여 소기업의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청년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고용촉진과 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구직난 해소를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청년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청년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규정(안 제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 조성 등 우리시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 예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그에 따른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관광기념품 개발 및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 및 지원방안 수립(안 제3조)
○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까지)
○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입상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까지)
○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오류 내용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정비(안 제21조)
○ 그 밖의 용어정비 등(안 제8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이「주택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 및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 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옴부즈만의 기능(안 제3조)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신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전문가 자문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옴부즈만의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이첩 등(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고충민원의 조사 및 방법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안 제2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함(안 제2조).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9. 3. 13.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70세로 정한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변경하고 사업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및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중 “교통사고 예방”을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과 “시민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명, 제1조, 제3조).

○ 고령운전자의 정의 중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함(안 제2조).

○ 교통비 지원 신청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

○ 지급액은 10만원 이내로 하고, 재원은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시행일인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오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65세 -------------------.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자신과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홍보해야 한다.
제5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 ①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신 설>	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고령운전자 지원)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비는 최초 1회만 지원하며 오산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6조(지급액 및 방법) ①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10만원 이내로 하되,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재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교통비를 시 지역화폐로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처음 한 차례에 한정한다.
<신 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제5조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 후 교통비를 지급한다.
<신 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멸실]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및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 노후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1) 위　　치 : 내삼미동 496-2 (시유지)

(2) 신축규모 : 지상 4층(연면적 760㎡)

(3) 주요시설

(가) 1층 : 공동작업장1, 휴게실, 노인생산품 판매장

(나) 2층 : 교육실1, 공동작업장2

(다) 3층 :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2

(라) 4층 : 회의실

(4) 추정가액 : 2,120백만원

※ 총사업비 : 2,300백만원(도비15, 시비 2,285)

- 철거비 30, 설계감리비 120, 건축비 2,000, 기자재구입 150

(5) 사업기간 : 2019. 9. ~ 2021. 2.(취득시기 : 2021년 2월)

【(구)오산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건물처분】

❍ 시설현황
- 위　　치 : 내삼미동 496-2 부지내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84.04㎡
- 준공일자 : 1997. 8. 13.
- 용　　도 : 장애인 자립작업장

❍ 대장가액 : 65,000천원(건물 시가표준액)
❍ 처분시기 : 2020. 12.
❍ 처분방법 : 멸실
❍ 처분사유 :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 **기대효과**

(1) 노인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2)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3)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익형, 시장형 사업단 사업 발굴 및 수행
(4) 노인들이 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전문교육, 직업훈련 실시

○ **위치도 및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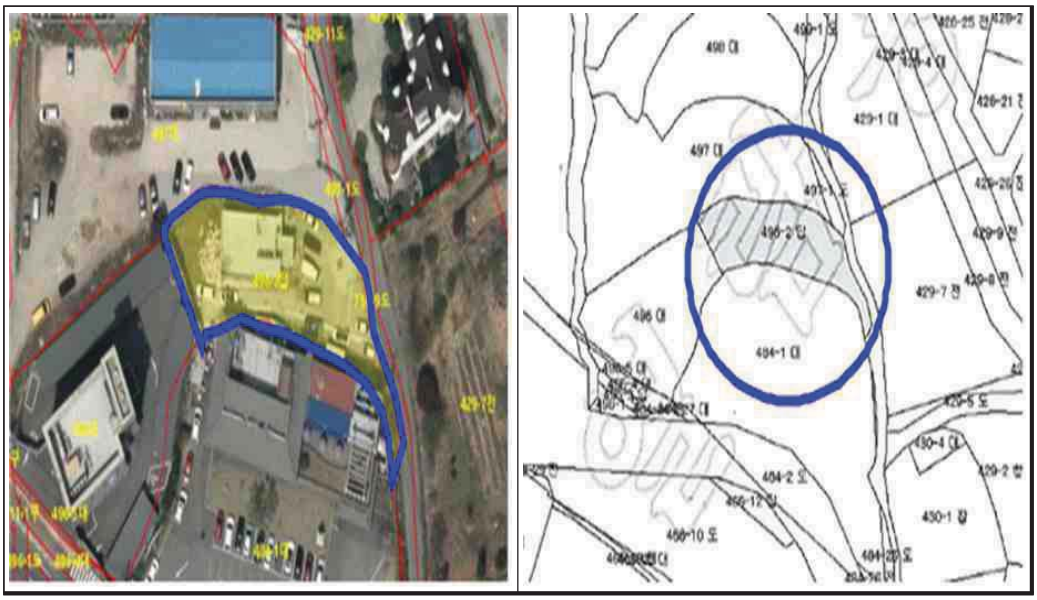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회계명 :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760**	**2,120,000**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760	2,12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	**284.04**	**65,000**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284.04	65,000	멸실

※ 관리계획서상 금액은 기준금액으로 총사업비(2,300백만원)와 차액이 발생됨.

회계명 : 일반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수량(면적)				
1	건물	내삼미동 496-2	대	760	2,120,000	2021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축	노인장애인과

※ 추정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시설비등 산정금액으로 함.

회계명 : 일반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방법	비 고(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수량(면적)				
1	건물	내삼미동 496-2	대	284.04	65,000	2020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축에 따른 (구)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철거	노인장애인과

※ 추정가액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민간 '아동학대'발생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후 재개원 사례(인천 연수구 송도동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 구립어린이집 전환 / 2015.2.12. 인천 연합뉴스)와 같이 사실상 운영중단에 있는 우리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 민원이 쇄도하고

○ 보육서비스가 취약한 초평동지역에 장난감대여점, 아이러브맘카페 설치로 주민욕구 해소 및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향상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1) 위　　치 : 서동 129-10(사유지)

(2) 매입규모 : 토지(대) 1,704㎡, 건물 2동(지상 2층, 지상 1층) 1,125.77㎡

(3) 주요시설

(가) 가동 : 1층, 2층 어린이집

(나) 나동 : 1층 수영장

(4) 추정가액 : 2,628백만원

※ 총사업비 : 3,800백만원(국비 521, 도비 261, 시비 3,018)

- 건물 및 토지매입비 3,300, 리모델링비 280, 감정평가수수료등 50, 기자재구입 170

(5) 사업기간 : 2019. 3. ~ 2020. 9.

- 취득시기 : 2021년 2월

○ 기대효과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군 부담비율 감소 및 예산절약

(2) 영유아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기대부응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 향상

(4) 출산·보육도시 및 공보육 선도도시로써 자리매김

(5)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급 과잉 예방

(6) 보육서비스 질 향상 기여

○ 위치도 및 현황도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회계명 :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금액	비고
	계	**토지**	**1**	**1,704**	**1,824,984**	
		건물	**1**	**1,125.77**	**803,310**	
		기타				
취득	1. 매입	토지	1	1,704	1,824,984	
		건물	1	1,125.77	803,31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관리계획서상 금액은 기준금액으로 총사업비(3,800백만원)와 차액이 발생됨.

회계명 : 일반회계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수량(면적)				
1	토지	서동 129-10	대	1,704	1,824,984	2019~2020	보육TOWN 조성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가족보육과
2	건물			1,125.77	803,310			

※ 추정가액산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신 궐동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인근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불가하며 지역주민 간 주차시비 또한 빈번한 실정으로

○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 매입 및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성·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1) 위　　치 : 궐동 613-2(사유지)

(2) 규　　모 : 토지(주차장) 1,526㎡, 주차타워 2층3단 60면

(3) 추정가액 : 5,361백만원

※ 총사업비 : 7,000백만원(시비 100%)

- 토지매입비 4,000백만원, 시설비 3,000백만원

(4) 사업기간 : 2019. 1. ~ 2020. 10.

- 취득시기 : 2020년 10월

○ 기대효과

(1)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주차난 해소

(2) 주차난 해소에 따른 지역주민 간 주차시비 해소

○ 위치도 및 현황도

○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회계명 :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1**	**1,526**	**2,360,722**	
		건물				
		기타	**1**	**2층3단**	**3,000,000**	
	1. 매입	토지	1	1,526	2,360,722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2층3단	3,0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관리계획서상 금액은 기준금액으로 총사업비(7,000백만원)와 차액이 발생됨.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수량(면적)				
1	토지	궐동 613-2	주차장	1,526	2,360,722	2019 ~2020	궐동 제3공영 주차장 조성	교통과
2	기타			2층 3단	3,000,000			

※ 추정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타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 하반기에 신축되는 더샵포스코외삼미동아파트 내 (가칭)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 일원,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아파트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 459.0028㎡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19. 03. 13.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2019. 04. 0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2019. 04. 0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수립

(3) 정원 및 반 편성 계획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5세	비 고
101	9	15	14	30	33	취약보육

(4) 인력투입 계획 (단위 : 명)

계	원장	교사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비 고
17	1	13	1	1	1	-	[의무 배치 기준] ①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조리사 : 현원 40명 이상 ③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5)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293,952,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91,853,600
3. 보조금및지원금	311,479,100
4. 전입금	
5. 기부금	
6. 과년도수입	
7. 잡수입	
8. 전년도이월액	
합 계	**697,284,7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470,436,000
2. 운영비	55,498,000
3. 보육활동비	85,816,400
4. 수익자부담경비	85,534,300
5. 과년도지출	
6. 재산조성비	
7. 잡지출	
8. 예비비	
합 계	**697,284,70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2019.10.01. ~ 2023.12.31. (4년 3월)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심사주체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신규·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고시)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 하반기에 신축되는 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아파트 내 (가칭)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698번지 일원, 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아파트 내 관리동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 372.1㎡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17. 05. 01.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2017. 05. 15.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
2019. 04. 0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수립

(3) 정원 및 반 편성 계획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5세	비 고
67	-	5	7	15	40	취약보육

(4) 인력투입 계획 (단위 : 명)

계	원장	교사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비 고
9	1	7	1	-	-	-	[의무 배치 기준] ①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조리사 : 현원 40명 이상 ③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5)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98,528,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80,205,000
3. 보조금 및 지원금	205,957,000
4. 전입금	
5. 기부금	
6. 과년도전입금	
7. 잡수임	
8. 전년도이월액	
합 계	**484,690,0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75,652,000
2. 운영비	43,233,000
3. 보육활동비	86,736,000
4. 수익자부담경비	77,853,000
5. 재산조성비	1,216,000
6. 과년도지출	
7. 잡지출	
8. 예비비	
합 계	**484,690,00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2019.10.01. ~ 2023.12.31. (4년 3월)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심사주체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 심사기준 : 신규·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고시)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승인

▷ 감사기간·대상부서 및 감사방법 확정

▷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증인출석범위 확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소집요구 : 김영희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9. 5. 20.
○ 회 기 : 2019. 5. 22. ~ 5. 23. (2일간)
○ 주요안건
1.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환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개최하는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회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23일 세교 신도시에 16실 140병상을 갖춘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의 불신과 허가취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 이 모든 진실과 오해가 없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 시기를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시간을 내어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5. 22.(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4.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작성의 건	
	- 의결 4.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5. 23.(목)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 오산시에서는 2019년 4월 10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오산시 수목원로 606 CL타워 6층에 소재한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에 대하여 2019년 4월 23일 허가를 내어준 바 있으나,

○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14개 일반병상과 126개의 정신과 병상을 갖춘 폐쇄 병동으로 운영하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이라며 허가 반대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와 국민청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산시의 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어준 의혹이 제기되는 바,

○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오산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5.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19. 6. 5.
○ 회 기 : 2019. 6. 13. ~ 7. 2. (20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9.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승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으로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본보기가 되고자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을 맞아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8대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참된 지방자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집행부와 의원간담회, 시정현안사항 보고회, 의원아카데미교육, 의원봉사활동은 물론 수시로 공무원과 소통하며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개설허가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신과 허가 취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느라 고생하신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8회 의정활동에 있어 의정연구발전분야 우수의원으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으신 김명철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작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로 제8대 오산시의회가 힘차게 출범한지 1년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가 오직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1년보다 앞으로의 3년 동안 제8대 오산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1년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민의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는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오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이 비상하여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키움으로써 경청과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한발 앞서 읽어내고 실천하여 시정의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제8대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기타안 4건 등 총 2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하며, 또한 우리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LH사업본부, 소리울 도서관, 음식물자원화 시설,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짧은 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현장방문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례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곽상욱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오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 및 조사에 이어 실시하는 만큼 가장 힘들고 고된 일정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분량을 감사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오산시가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마친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도 당초에 계획된 목적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잘못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 숙지와 성실한 수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과 지금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지역의 많은 보훈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고 유공자와 가족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시책발굴 및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면 오산시의 7월 정기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칫 여름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속한 업무인수인계로 업무를 추진하여 시정공백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같은 무더위와 가뭄이 지속되면 비가 한없이 기다려지지만 막상 장마철에 비가내리면 피해가 엄청난 만큼 피해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작은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라는 제궤의혈(提潰蟻穴)이라는 고사 성어를 교훈삼아 작은 부분일지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 하여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함께 대비책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13.(목)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6.14. ~7.1. (18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43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3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시립승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휴회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14.(금) 10:00 주요사업장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오산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2.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3. 복합안전체험관 4. 미니어처테마파크 5. LH사업본부 6. 소리울도서관 7. 음식물 자원화 시설	
6.15.(토)~ 6.16.(일)	□ **휴 일**	
6.17.(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11.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6.18.(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6.19.(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결산검사대표위원설명, 제안설명,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4.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20.(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6.21.(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6.22.(토)~ 6.23.(일)	☐ **휴 일**	
6.24.(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 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6.25.(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오산문화재단**]	
6.26.(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 미래사업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6.27.(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앙도서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6.28.(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환경과, 수도과, 하수과, 하천공원과)]	
6.29.(토)~ 6.30.(일)	☐ **휴 일**	
7.1.(월) 11: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2.(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3.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1건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이 2018.12.18. 이루어짐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조항 삭제

(1) 출장공무원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2) 휴가의 종류 및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및 제19조)

(3) 연가보상비 및 연가 당겨쓰기에 관한 규정 (안 제20조제5항 및 제6항)

(4) 연가 일수의 공제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5) 특별휴가에 관한 규정 (안 제24조제2항·제11항·제12항·제14항 및 제16항)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 등의 기준 신설(안 제24조17항)

○ 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5일” → “10일”) 확대 (안 별표 3)

○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명시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규정 변경(안 제2조)

(1)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시각장애(4급)인에 대한 현행수준 지원

(2) 감면 기간 변경: “2018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 변경(안 제3조)
(1) “2018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개정법령의 미적용 사항 반영,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 및 불명확한 용어 등의 정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미적용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
(1)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제4호)
(2) 공유재산심의회 규정을 위원회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4조 및 안 제4조의2부터 안 제4조의7까지)
(3)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 신설(안 제7조)
(4)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안 제17조)
(5)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19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시 법인 또는 단체(기업체 제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콜센터 시스템의 보안 관리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콜센터 기능 관련 조항 정비 (안 제5조)

–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 걸려온 상담전화 중 오산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위탁운영 관련 조항 정비 (안 제7조)

– 콜센터 위탁운영 시 법인 또는 단체(기업체 제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변경

○ 보안관리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조)

– 콜센터 시스템 보안관리 대책 관련 조항 신설.

○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 등(안 제2조, 안 제7조의2, 안 제9조,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용어의 정의와 수탁자의 의무, 비밀준수에 대한 조항을 현행대로 신설하고, 콜센터 수탁자의 자격을「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안에서 삭제한 용어의 정의를 현행대로 신설함(안 제2조).

○ 콜센터 수탁자의 자격을「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과 일치하도록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함(안 제7조).

○ 개정안에서 삭제한 수탁자의 의무를 현행대로 신설함(안 제7조의2).

○ 개정안에서 삭제한 비밀준수에 관한 조문(제9조의2)을 현행 그대로 보안관리에 관한 조에 신설함(안 제8조제2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및 FAX 등으로 요청받는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 ----------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 .
<신 설>	제7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관리) (생 략)	제8조(보안관리) ① (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19.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업무처리 시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변경

(1) 장애등급 → 정애정도

(2)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4급~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정비대상 조례 5건

(1)「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2)「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3)「오산시 주차장 조례」
(4)「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5)「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함
(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안 제4조제1항제1호)
(가) 장애등급 1급 ~ 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등급 4급 및 5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안 제4조제1항제2호)
(가) 장애등급 1급 및 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등급 3급 및 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적인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 규정(안 제4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선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기반시설 이용과 우리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5조)
○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 등의 규정(안 제6조)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오산시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문 중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함(안 제8조).
○ 자문위원 중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정함
(안 제9조제4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오산시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오산시----------.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제정안과 같음)

□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 7월 소리울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악기대여관의 악기를 시민에게 대여함에 있어 대여의 자격·절차, 대여료 등 악기대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악기대여를 위한 운영 규정 신설(안 제21조)

(1) 악기대여자의 자격과 신청방법 규정

(2) 악기대여료는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3)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대여료의 감면과 반환에 관한 조건 및 절차 규정(안 제22조, 제23조)

○ 연체료의 조건 및 금액 규정(안 제2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더 많은 시민들이 악기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악기 대여기간을 최장 10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해서 악기 회전율을 제고하고, 대여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악기대여료의 상한 기준을 1개월에 3만원으로 명확하게 보완하여 수정함(안 제21조제4항).

○ 악기 대여기간을 매 1개월씩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한 번만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1조제5항).

– 최장 대여기간 : 10개월 ⇒ 5개월

○ 대여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함(안 제23조).

– 대여료 반환 : 전부 또는 일부 ⇒ 전부

○ 자구수정

–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수정함(안 제21조제2항).

– “반환”을 “환불”로 수정함(안 제2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1조(악기의 대여 등) ① (생 략)	제21조(악기의 대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악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대여를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리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여야 한다.	② ----- 대여받고자 ----------.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1악기당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1회 3악기 이내로 한다.	④ ---------- 1악기당 1개월에 ----------.

개 정 안	수 정 안
⑤ 대여자가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부터 5개월까지로 하며, 한 번만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 매 1개월씩 ----------.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23조(대여료의 반환) 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대여료의 환불) ---------- 환불하지 ------. ---------- 전부를 환불----------.
1.·2. (생 략)	1.·2. (개정안과 같음)

□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인 오산시청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 이에 영유아 보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운영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안정적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개소일	정원
오산시청 어린이집	운암로 64, 109동 101호 (오산동, 대동아파트)	지상 1층 (129.52㎡)	2012.03.02.	20명

○ 종사자 현황

구 분	계	시설장(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비고
현 원	7명	1명	5명 (시간연장반 1명)	1	시간연장반 운영

○ 수탁자 선정계획

(1)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2) 위탁대상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3)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에 의한 심사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 범위 : 오산시청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 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민간위탁금 외) 및 아동 보육료 수입, 법인부담금 등 자체수입

(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라)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마)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및 도 보육사업안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바)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음

(사)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아)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승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기존 공동주택 내 관리동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무)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운천로16-22 운암주공6단지 복지관내(원동)
시설 규모	지상 1층, 연면적 159.41㎡

(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19. 04. 22.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2019. 05. 0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2019. 05. 24.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수립

(3)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21	9	5	7	-	-	-	

(4)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7	1	5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50명이상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5)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90,504,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21,048,000
3. 보조금 및 지원금	162,631,000
4. 전입금	
5. 기부금	
6. 과년도수입	
7. 잡수입	275,000
8. 전년도이월액	
합 계	**274,458,0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03,400,000
2. 운영비	23,481,000
3. 보육활동비	20,890,000
4. 수익자부담경비	20,928,000
5. 과년도지출	
6. 재산조성비	5,100,000
7. 잡지출	300,000
8. 예비비	359,000
합 계	**274,458,00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방식 : 심사를 통해 기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거,「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자는 공개경쟁 대상 아님

※ 2019년 보육사업안내 P.20 영유아보육법의거,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기존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의 경우) 공개경쟁에 의하거나 재위탁에 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가능

(2) 위탁기간 : 2019.10.01. ~ 2023.12.31. (4년 3월)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계약기간 및 위탁기간)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함.

(3) 심사기준 :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에 의한 70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6) 신규위탁(국공립전환)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신규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시 위탁 결정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0.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미래클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22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61.98㎡
위 탁 기 간	2015.03.01.~2019.10.31.(4년 8월)
현 수 탁 자	이옥경(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34	-	5	14	15	-	-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8	1	6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10,115,570
2. 수익자부담금수입	20,694,000
3. 보조금및지원금	198,672,818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8. 잡수입	242,000
9. 전년도이월액	17,000,000
합 계	**346,724,388**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40,655,656
2. 운영비	31,510,000
3. 보육활동비	39,316,000
4. 수익자부담경비	20,694,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8,100,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9. 예비비	6,448,732
합 계	**346,724,388**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19.11.01. ~ 2021.12.31. (2년 2월)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계약기간 및 위탁기간)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0.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은여울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오산대역로 222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60㎡
위 탁 기 간	2015. 02. 01. ~ 2019. 10. 31. (4년 9월)
현 수 탁 자	박원희(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43	-	10	18	15	-	-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9	1	7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47,904,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32,700,000
3. 보조금및지원금	217,661,000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8. 잡수입	1,060,000
9. 전년도이월액	13,895,000
합 계	**413,220,0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64,558,000
2. 운영비	41,687,000
3. 보육활동비	56,949,000
4. 수익자부담경비	32,700,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15,950,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70,000
9. 예비비	1,306,000
합 계	**413,220,000**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19.11.01. ~ 2021.12.31. (2년 2월)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계약기간 및 위탁기간)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0.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호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23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98.32㎡
위 탁 기 간	2015. 01. 01. ~ 2019. 10. 31. (4년 10월)
현 수 탁 자	김혜선(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54	6	10	14	24	-	-	장애아통합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11	1	9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90,776,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40,512,000
3. 보조금및지원금	279,746,592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8. 잡수입	210,000
9. 전년도이월액	12,818,472
합 계	**524,063,064**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67,475,867
2. 운영비	58,860,000
3. 보육활동비	52,675,000
4. 수익자부담경비	40,512,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3,700,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9. 예비비	840,197
합 계	**524,063,064**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19.11.01. ~ 2021.12.31. (2년 2월)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계약기간 및 위탁기간)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가온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51
시 설 규 모	연면적 106㎡
위 탁 기 간	2017. 11. 01. ~ 2019. 12. 31. (2년 2월)
현 수 탁 자	신정숙(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40	-	10	14	16	-	-	시간연장형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8	1	6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24,626,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33,976,000
3. 보조금및지원금	205,453,000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8. 잡수입	2,032,000
9. 전년도이월액	25,000,000
합 계	**391,087,0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50,137,000
2. 운영비	39,072,000
3. 보육활동비	50,685,000
4. 수익자부담경비	32,746,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12,400,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47,000
9. 예비비	6,000,000
합 계	**391,087,00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 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남부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132번길 28-5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621.07㎡
위 탁 기 간	2017. 11. 01. ~ 2019. 12. 31. (2년 2월)
현 수 탁 자	원정숙(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5세	취약보육
107	-	10	14	15	68	장애아통합 휴일보육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기타	비 고
계	17	1	13	-	1 (1)	-	1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297,834,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89,200,400
3. 보조금및지원금	349,795,688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4,633,039
8. 잡수입	750,000
9. 전년도이월액	10,076,653
합 계	**752,289,78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512,223,694
2. 운영비	55,936,000
3. 보육활동비	86,148,400
4. 수익자부담경비	89,200,4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8,440,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9. 예비비	341,286
합 계	**752,289,78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 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은빛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220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64.78㎡
위 탁 기 간	2017. 11. 01. ~ 2019. 12. 31. (2년 2월)
현 수 탁 자	유미영(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38	-	10	14	14	-	-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9	1	7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36,686,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42,372,000
3. 보조금및지원금	214,124,766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1,117,698
8. 잡수입	890,000
9. 전년도이월액	16,221,552
합 계	**411,412,016**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65,708,312
2. 운영비	36,028,390
3. 보육활동비	55,807,000
4. 수익자부담경비	42,372,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10,557,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50,000
9. 예비비	889,314
합 계	**411,412,016**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 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죽미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42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26.6㎡
위 탁 기 간	2017. 11. 01. ~ 2019. 12. 31. (2년 2월)
현 수 탁 자	김영신(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취약보육
32	-	5	14	13	-	-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7	1	5	-	1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19,618,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29,932,700
3. 보조금및지원금	198,661,082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2,400,000
8. 잡수입	550,000
9. 전년도이월액	14,000,000
합 계	**365,161,782**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41,063,349
2. 운영비	36,152,000
3. 보육활동비	46,601,400
4. 수익자부담경비	29,932,7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8,440,000
7. 과년도지출	2,250,000
8. 잡지출	
9. 예비비	722,333
합 계	**365,161,782**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 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푸른숲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291-26
시 설 규 모	지상2층,지하1층, 867.15㎡
위 탁 기 간	2017. 11. 01. ~ 2019. 12. 31. (2년 2월)
현 수 탁 자	이기영(개인)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	취약보육
150	6	15	21	28	80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비 고
계	27	1	22	1	1 (1)	1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471,966,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155,888,000
3. 보조금및지원금	488,880,000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8. 잡수입	2,930,000
9. 전년도이월액	35,000,000
합 계	**1,154,664,00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721,412,000
2. 운영비	95,160,000
3. 보육활동비	129,322,600
4. 수익자부담경비	155,888,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50,372,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109,400
9. 예비비	2,400,000
합 계	**1,154,664,000**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 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0. 01. 01. ~ 2024. 12. 31.(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한신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시 설 규 모	지상1층, 연면적 927.27㎡
위 탁 기 간	2017. 11. 01. ~ 2019. 12. 31. (2년 2월)
현 수 탁 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2) 보육아동 정원 (단위 : 명)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	취약보육
154	-	10	28	30	86	장애아통합 휴일보육

(3)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비 고
계	26	1	21	1	1 (1)	1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원 : 현원 40명 이상 - 상시1회 50명이상 식사제공시 : 조리사 면허 소지한 조리원 배치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4) 연간 소요예산 (단위 : 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483,090,000
2. 수익자부담금수입	161,572,000
3. 보조금및지원금	416,166,369
4. 전입금	
5. 기부금	
6. 적립금	
7. 과년도수입	
8. 잡수입	520,000
9. 전년도이월액	
합 계	**1,061,348,369**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672,996,904
2. 운영비	76,321,800
3. 보육활동비	135,427,200
4. 수익자부담경비	161,572,000
5. 적립금	
6. 재산조성비	14,324,000
7. 과년도지출	
8. 잡지출	
9. 예비비	706,465
합 계	**1,061,348,369**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

※ 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0.01.01. ~ 2024.12.31.(5년)

(3) 선정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8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9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액(최종) 32,517,959천원

- 지출결정액 : 353,779천원
- 지 출 액 : 253,779천원
- 불 용 액 : 100,000천원

○ 예비비 잔액 32,164,180천원

1. 원동초등학교 석면오염 기자재 긴급 지원

○ 예 산 과 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평생교육과	유아 및 초중등 교육	교육경비지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 지출결정액 : 196,800천원

○ 지 출 액 : 196,800천원

○ 불 용 액 : 0천원

○ 지 출 사 유 : 2018. 1월 원동초등학교 교사동 석면 교체 시공 후 석면 오염된 기자재가 검출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긴급 폐기 및 교체 지원

2. 공동주택 무가(無價)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 예 산 과 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환경과	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대행	민간위탁금

○ 지출결정액 : 56,979천원

○ 지 출 액 : 56,979천원

○ 불 용 액 : 0천원

○ 지 출 사 유 : 2018년 4월부터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플라스틱 등 유가성이 낮은 용품 수거 중단을 통지하면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지원

3.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경계 옹벽 기움 보강 공사

○ 예 산 과 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희망복지과	사회복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설비

○ 지출결정액 : 100,000천원

○ 지 출 액 : 0천원

○ 불 용 액 : 100,000천원

○ 지 출 사 유 :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와 롯데슈퍼 경계에 위치한 옹벽(담벼락) 기움 현상으로 붕괴 시 전기박스 손상과 시민안전 위협이 우려되어 조경석 제거 및 보강공사 실시

《공기업특별회계》

○ 예비비 예산액(최종) 1,000,000천원

- 지출결정액 : 51,659천원
- 지 출 액 : 51,659천원
- 불 용 액 : 0천원

○ 예비비 잔액 948,341천원

1. 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조기 반환

○ 예 산 과 목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조 직	부 문(관)	세 부 사 업(항)	통계목(세항)
하수과	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기타자본적지출

○ 지출결정액 : 51,659천원

○ 지 출 액 : 51,659천원

○ 불 용 액 : 0천원

○ 지 출 사 유 :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세입처리 후 환부사유가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항으로 추가 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신속히 반환한 사항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세입 결산액 : 928,177,622,669원

○ 세출 결산액 : 567,313,977,871원

○ 세계 잉여금 : 360,863,644,798원

(2)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 727,507,594,953원

○ 세출 결산액 : 489,459,350,708원

○ 세계 잉여금 : 238,048,244,245원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68,765,948,71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500,253,01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782,042,522원임.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입 결산액 : 200,670,027,716원

○ 세출 결산액 : 77,854,627,163원

○ 세계 잉여금 : 122,815,400,553원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이월액 58,214,729,72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37,584,3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63,086,473원임.

나.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

(1)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68,765,948,71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0건 16,293,853,500원
사고이월액은 8건 2,427,944,910원
계속비이월액은 68건 150,044,150,300원임.

(2)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58,214,729,72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건 1,804,514,590원
사고이월액은 4건 6,826,053,360원
계속비이월액은 17건 49,584,161,770원임.

다. 기금 결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2018년도말 29,683,149,117원으로
조성액은 4,530,674,102원
사용액은 982,830,618원임.

라.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2018년도말 채권액은 5,386,697,329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2,970,514,500원
전화선예치금 14,860,000원
기타 819,266,200원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486,412,969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당금 1,095,643,660원

(2) 채 무
2018년도말 채무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재산현재액은 2018년도말 2,869,771,129,176원으로
토지 5,793,512㎡ 1,788,710,801,446원
건물 220,294㎡ 459,741,523,139원
기타 696,008건 621,318,804,591원임.

바. 물품 결산

2018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280,748,985원으로
취득은 1,210,144,835원
처분은 26,198,990원임.

사. 금고 결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9. 1. 20일 현재

세입총액은 928,177,622,669원

세출총액은 567,313,977,871원

차인잔액은 360,863,644,798원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액이 지출액 증명과 상이없음.

아. 재무회계 결산

201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004,752,983,728원으로

부채는 17,298,271,735원

순자산은 2,987,454,711,993원임.

2018.1.1부터 12.31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472,367,323,955원으로

총수익은 530,701,420,893원

운영차액은 58,334,096,938원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7.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영희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9. 8. 23
○ 회 기 : 2019. 9. 2 ~ 9. 11 (10일간)
○ 주요안건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 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3.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9.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오산시 장애인 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22.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6.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여름 내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폭염도 이제는 세력을 잃고,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오산시가 시로 승격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국가적으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로, 새로운 100년의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렇듯 지난 8월 15일은 제74주년 광복절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맞이한 광복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더니 이제는 수출심사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조치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명분 없는 7.4 경제보복 조치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7월 24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으로 인해 지금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 수출규제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문제 등으로 작금의 상황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에 맞서 온 국민은 단결된 협심으로 똘똘 뭉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강력히 응징하고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활로 재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도 오산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작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관내기업의 피해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났는데도 지난 24일 새벽에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쏴 올려 우리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국에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대대적인 오산시 조직개편 계획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로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 질 수도 있습니다.

전 공직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비롯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례안 등은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례가 아닌지, 행정능률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절차상, 진행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잘 살펴야겠습니다.

특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선심성, 중복성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시고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심의되는 오산시 조직개편안은 이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돌출되어 난항이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께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이나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신과 허가취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산버드파크 조성사업,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허가, 벌음동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은 시민들과 소통 없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민 불편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이 추진된다면 훗날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열흘후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 주시고, 다 함께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추석날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풍요롭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긴 연휴 동안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민생활의 설계사이기도 합니다.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의회,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머무는 한가위, 좋은 사람과 넉넉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2.(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9.3.~ 9.10. (8일간)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4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9.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의결** 1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15. 휴회의 건	
9.3.(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안전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소관] 3.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4.(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소관] 3.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5.(목)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6.(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토)~ 9.8.(일)	☐ **휴 일**	
9.9.(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4.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10.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오산시 장애인 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9.9.(월)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0.(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9.11.(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3.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1) 총 액 ····· 682,048,925 천원
(2) 일반회계 ····· 556,937,947 천원
(3) 특별회계 ····· 125,110,978 천원
(가) 공기업특별회계 ····· 103,451,630 천원
(나) 기타특별회계 ····· 21,659,348 천원

나. 세 입

(1) 일반 및 특별회계
(가) 지 방 세 ····· 134,641,000 천원
(나) 세 외 수 입 ····· 77,122,024 천원
(다) 지 방 교 부 세 ····· 79,729,834 천원
(라) 조 정 교 부 금 ····· 67,560,851 천원
(마) 보 조 금 ····· 179,632,162 천원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43,363,054 천원

(2) 일반회계
(가) 지 방 세 ····· 134,641,000 천원
(나) 세 외 수 입 ····· 26,084,354 천원
(다) 지 방 교 부 세 ····· 79,706,234 천원
(라) 조 정 교 부 금 ····· 67,560,851 천원
(마) 보 조 금 ····· 177,418,713 천원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71,526,795 천원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가) 세 외 수 입 ····· 51,037,670 천원
(나) 지 방 교 부 세 ····· 23,600 천원
(다) 보 조 금 ····· 2,213,449 천원
(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71,836,259 천원

다. 세 출
(1) 일반 및 특별회계
(가) 정 책 사 업 ····· 599,028,366 천원
(나) 재 무 활 동 ····· 17,065,131 천원
(다) 행정운영경비 ····· 65,955,428 천원
(2) 일반회계
(가) 정 책 사 업 ····· 480,601,330 천원
(나) 재 무 활 동 ····· 15,942,693 천원
(다) 행정운영경비 ····· 60,393,924 천원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1) 정 책 사 업 ····· 118,427,036 천원
(2) 재 무 활 동 ····· 1,122,438 천원
(3) 행정운영경비 ····· 5,561,504 천원

라. 계속사업
(1)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60건 ····· 554,279,499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9. 9. 6.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액	증액	
총 계				**682,048,925**	**33,657,914**	–	–	**682,048,925**
일반회계	소 계			556,937,947	14,969,042	–	–	556,937,947
	지방세수입			134,641,000	0	–	–	134,641,000
	세외수입			26,084,354	973,500	–	–	26,084,354
	지방교부세			79,706,234	△352,766	–	–	79,706,234
	조정교부금등			67,560,851	7,560,851	–	–	67,560,851
	보조금			177,418,713	7,365,655	–	–	177,418,7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526,795	△578,198	–	–	71,526,795
특별회계	소 계			125,110,978	18,688,872	–	–	125,110,978
	공기업	소 계		103,451,630	15,638,808	–	–	103,451,630
		상수도	소 계	32,369,276	60,000	–	–	32,369,276
			사업수익	17,727,521	60,000	–	–	17,727,521
			자본적수입	14,641,755	0	–	–	14,641,755
		하수도	소 계	71,082,354	15,578,808	–	–	71,082,354
			사업수익	23,883,393	26	–	–	23,883,393
			자본적수입	47,198,961	15,578,782	–	–	47,198,961
	기타	소 계		21,659,348	3,050,064	–	–	21,659,348
		세외수입		8,286,574	414,472	–	–	8,286,574
		지방교부세		23,600	23,600	–	–	23,600
		보조금		1,706,240	1,288,000	–	–	1,706,24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642,934	1,323,992	–	–	11,642,934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 제 출 예 산 액	추경요구액	수 정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계(10종)	**682,048,925**	**33,657,914**	**△816,700**	**816,700**	**682,048,925**
일반회계(1종)	556,937,947	14,969,042	△816,700	816,700	556,937,947
특별회계(9종)	125,110,978	18,688,872	-	-	125,110,978
공기업특별회계 (2종)	103,451,630	15,638,808	-	-	103,451,630
상수도특별회계	32,369,276	60,000	-	-	32,369,276
하수도특별회계	71,082,354	15,578,808	-	-	71,082,354
기타특별회계 (7종)	21,659,348	3,050,064	-	-	21,659,348
교통사업 특별회계	19,086,389	3,006,858	-	-	19,086,389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1,257,447	43,206	-	-	1,257,447
대지보상 특별회계	37,250	0	-	-	37,25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76,903	0	-	-	476,903
도시개발 특별회계	77,498	0	-	-	77,498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특별회계	53,094	0	-	-	53,094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670,767	0	-	-	670,767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556,937,947**	**14,969,042**	**△816,700**	**816,700**	**556,937,947**
의회사무과	2,154,669	13,658	-	-	2,154,669
홍보담당관	3,673,854	0	-	-	3,673,854
감사담당관	167,967	18,150	-	-	167,967
기획예산담당관	19,146,984	△3,679,481	-	816,700	19,963,684
자치행정과	61,578,647	150,152	△170,000	-	61,408,647
안전정책과	3,490,522	92,876	-	-	3,490,522
세정과	685,106	93,945	-	-	685,106
징수과	1,386,936	65,701	-	-	1,386,936
회계과	19,199,657	447,750	△410,300	-	18,789,357
정보통신과	6,567,305	142,677	△19,400	-	6,547,905
희망복지과	22,188,981	601,050	-	-	22,188,981
노인장애인과	73,105,424	884,906	△217,000	-	72,888,424
가족보육과	87,222,067	1,566,260	-	-	87,222,067
아동청소년과	31,926,845	253,349	-	-	31,926,845
민원여권과	451,142	△17,175	-	-	451,142
평생교육과	27,191,682	459,777	-	-	27,191,682
일자리정책과	7,617,876	1,237,453	-	-	7,617,876
지역경제과	5,366,503	1,141,554	-	-	5,366,503
문화체육관광과	20,860,058	148,409	-	-	20,860,058
농식품위생과	5,492,098	640,335	-	-	5,492,098
토지정보과	739,078	25,285	-	-	739,078
도시정책과	799,750	0	-	-	799,750
미래사업과	11,207,511	91,331	-	-	11,207,511
도로과	21,803,716	△1,112,442	-	-	21,803,716
교통과	25,940,510	1,408,058	-	-	25,940,510
건축과	904,681	△26,850	-	-	904,681
주택과	12,497,062	928,462	-	-	12,497,062
보건행정과	5,592,675	25,378	-	-	5,592,675
건강증진과	9,647,173	28,894	-	-	9,647,173
환경과	39,867,001	8,231,426	-	-	39,867,001
수도과	1,675,830	0	-	-	1,675,830
하수과	838,737	0	-	-	838,737
하천공원과	14,444,591	473,962	-	-	14,444,591
중앙도서관	7,968,190	530,000	-	-	7,968,190
차량등록사업소	36,460	0	-	-	36,460
중앙동행정복지센터	711,393	26,000	-	-	711,393
대원동행정복지센터	787,868	14,000	-	-	787,868
남촌동행정복지센터	448,952	14,000	-	-	448,952
신장동행정복지센터	700,266	16,500	-	-	700,266
세마동행정복지센터	547,424	30,000	-	-	547,424
초평동행정복지센터	304,756	3,692	-	-	304,756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특별회계(9종)	**125,110,978**	**18,688,872**	**-**	**-**	**125,110,978**
공기업 특별회계(2종)	103,451,630	15,638,808	-	-	103,451,630
상수도 특별회계	32,369,276	60,000	-	-	32,369,276
하수도 특별회계	71,082,354	15,578,808	-	-	71,082,354
기타 특별회계 (7종)	21,659,348	3,050,064	-	-	21,659,348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과	18,810,557	2,977,558	-	-	18,810,557
교통사업 특별회계 차량등록과	275,832	29,300	-	-	275,832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1,257,447	43,206	-	-	1,257,447
대지보상 특별회계	37,250	0	-	-	37,25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76,903	0	-	-	476,903
도시개발 특별회계	77,498	0	-	-	77,498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특별회계	53,094	0	-	-	53,094
발전소주변 지역특별회계	670,767	0	-	-	670,767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 입 : 해당없음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액	추 경 요 구 액	수 정 액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1,231,950**	**870,200**	**△ 816,700**	**816,700**	**1,231,950**
기 획 예 산 담당관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 유보금	0	0	-	816,700	816,700
자 치 행정과	시정지원	401-01 시설비	◎ 시민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개보수	170,000	170,000	△ 170,000	-	0
회계과	시청사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사무실 임차료	15,000	15,000	△15,000	-	0
〃	〃	201-02 공공운영비	◎ 청사내 잔디 및 조경 시설 유지관리비	115,000	35,000	△35,000	-	80,000
〃	〃	401-01 시설비	◎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	300,000	300,000	△ 300,000	-	0
〃	〃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신규채용 및 부서 신설 등	128,050	60,300	△60,300	-	67,750
정 보 통신과	컴퓨터구입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컴퓨터 본체	202,800	46,800	△7,800	-	195,000
〃	〃	〃	◎ 액정 모니터	84,100	26,100	△11,600	-	72,500
노 인 장애인과	노인복지 시설 운영·지원	402-01 민간자본 이전	◎ 양산동 경로당 증축	217,000	217,000	△ 217,000	-	0

○ 기타특별회계 : 해당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4조).

(1)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고정된 관람석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되,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적당한 크기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 및 산하 기관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

○ 한국수어 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이 조례 시행 시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공공시설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부칙제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6조).

○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6조 삭제).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 제12조 (생 략)	제6조 ~ 제11조 (제정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제정안 제13조와 같음)

□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체결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관련 기관 등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법령 또는 조례,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운영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수정·보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할인판매 외 추가포인트 지급을 신설하여 명시함(안 제5조제1항).
○ 전자지역화폐에 대한 가맹점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 개인의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 시 할인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 한도를 월 1천만원에서 월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1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고문변호사 모집방법과 위촉기준, 연임제한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 방지,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실적을 감안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항).

○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5항).

○ 변호사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 소송 수행능력이 부진한 사람 등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제1항).

○ 고문변호사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를 규정함(안 제2조의2제2항).

○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

○ 보호시설의 업무를 정함(안 제3조).

○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보호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보호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을 설치 및 보호·관리함으로서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보호·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대행기관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공공시설 이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장학금 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급을 방지하고 형평성 있는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 **주요골자**

○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장학금 운영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규정 (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을 위한 규정 정비 (안 제2조 및 제4조)

○ 장학금의 범위 구체적 규정 (안 제6조)

○ 장학금 지급의 시기를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수정하고 지급제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7조)

○ 장학금 지급의 중지 규정 정비 (안 제8조)

○ 잘못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규정 신설 (안 제8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기구조정(안 제4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안 제10조의2, 안 제14조)

(1) 신설: 1국(시민안전국), 3과(체육관광과, 청소자원과, 공원녹지과)

(2) 명칭 및 직제변경

명칭 변경	‣안전행정국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예술과 ‣미래사업과 → 미래도시개발과 ‣하천공원과 → 생태하천과
직제 변경	‣민원여권과 → 자치행정국 ‣토지정보과 → 도시주택국 ‣안전정책과 → 시민안전국 ‣교통과 → 시민안전국 ‣도로과 → 시민안전국 ‣정보통신과 → 시민안전국

○ 주요사무 조정

(1) 공공사업 시설 건립 등 업무 : 미래사업과 → 회계과

(2) 인구정책 기능 : 기획예산담당관 → 가족보육과

(3) 반려동물테마파크 : 하천공원과 → 농식품위생과

(4) 도시개발 업무 : 도시정책과 → 미래도시개발과

(5) 오염총량 업무 : 환경과 → 생태하천과

(6) 지하수 관련 업무 : 하수과 → 생태하천과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0조)

(1) 715명 → 766명(증 51명)

(가) 집행기관: 699명 → 749명(증 50명)

(나) 의회사무기구: 16명 → 17명(증 1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기존 통·반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세마동 통·반 조정 및 신설(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1) 외삼미동: 1통 일부지역을 분리하고 29통 및 31통~36통 신설

- 31통~36통: 더샵파크시티아파트(2,400세대)

(2) 양산동: 5통 일부지역 분리 및 30통 신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법령해석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2018. 12. 31.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 내용 삭제(안 제5조제3호 및 별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및 공동체 중심의 촘촘한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탁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돌봄 시설”의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4호)

○「아동복지법」의 신설 규정 중 돌봄 시설의 위탁 근거 추가 및 조문정비 (안 제16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4조의2제2항에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돌봄 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 법령 중「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삭제하고,「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을 근거로 함(안 제16조제1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돌봄 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돌봄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돌봄 시설 운영의 위탁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1)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근거 삭제 (안 제8조)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오산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준용 규정 삭제 (안 제45조)

○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1)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규정 (안 제10조의2)

(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 (안 제14조의2)

(3)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규정 (안 제25조의2)

(4)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규정 (안 제31조의2)

(5)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 (안 제39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 신설 및 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등 향후 추진될 관광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관광정보센터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제3호 및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관광정보센터” ⇒ “관광안내소”

○ 시티투어 운영 이용료 면제사항 정비 (안 제12조제2호 및 제6호)

(1) 그 밖의 전액 면제 대상의 범위 구체화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시장이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면제 범위 확대

・장애인 1급~3급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은 현 상황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의2 삭제).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관광진흥업무의 위탁) 시장은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5. 드라마세트장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규정(안 제3조)
○ 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이행 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캐릭터인 “까산이”를 상징물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및 안제3조)

○ 상징물의 종류별 규격과 모양 및 사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상징물의 변경, 사용 및 관련사업 등의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여성친화도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9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7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
(안 제28조 내지 제3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오산시에서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성의 다수가 갑작스런 생리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여성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여성의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① (제정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여성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유엔군초전기념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일 전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사무 :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 유물 수집 및 전시, 교육 및 홍보 등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유엔군초전기념관 (개관 2013.4.23.)
위치/연면적	오산시 경기대로 742, 1,176.73㎡ (지상3층) ※'19.12월말 기준
종사자수	8명 (비상근 관장1, 사무국장1, 행정담당1, 에듀케이터1, 기간제1, 해설사3)
현 수탁자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오산시지회 (회장 이규준)
위탁현황	2018. 1. 1 ~ 2019. 12. 31 (2년)
주요시설	기념관, 주차장, 신초전비, 구초전비, 야외광장, 참전국 국기게양대
관람객수	208,613명 (2019.6월말 기준)

○ 위탁계획

(1) 위탁사무 : 유엔군초전기념관 운영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2년)

(3)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4) 신청자격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

(5) 위탁조건

(가) 사업수행

– 수탁자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기념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오산시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및 단체에서 자부담 할 수 있음
-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은 승계를 원칙으로 함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적용

(나) 기 타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함
-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음

○ 향후계획

(1)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19. 9월
(2) 수탁기관 공개모집 '19. 10 ~ 11월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19. 11월
(4) 수탁기관 결정 '19. 12월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자 접수 → 심사 및 결정 → 위탁계약, 인계인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시립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위탁시설 현황

(가)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시설현황

현수탁자	수탁기간	위치	규모	정원(현원)
행복한이주민센터 (대표 : 장영배)	17.1.1.~19.12.31. (3년)	성호대로 83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6.25㎡ (지상 2층)	45명 (45명)

(나)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404,764	114,807	132,799	157,158	

○ 위탁운영계획

(1) 세부운영계획

(가)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시설의 위탁)

(나)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선정

(다) 위탁범위 : 시립지역아동센터 업무전반 및 시 자체 지원 사업 등

(라) 신청자격

-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
- 2017년 이전에 5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마)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재정능력, 공신력)
  - 법인의 유형 및 설립목적, 법인·개인의 보유자산 및 적합성
  - 최근 법인의 재무제표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지역아동센터운영 적정성, 사업추진 실적 전문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 계획,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위탁기관 사업 추진 의지 등

(2)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아동복지법」,「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아동복지시설의 인사·복무·보수규정에 의거 합당한 직급과 직위 등을 부여, 보수도 현재 근무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보수지급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탁자는 시립지역아동센터 본연의 기능수행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탁운영 개시 일부터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정규 직제 및 정원을 책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 위탁자의 승인 없이 수탁자 임의로 시설의 변경 또는 신·개축을 할 수 없으며, 승인되어 신·개축될 시는 준공과 동시에 관계서류와 함께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마)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매·전대·재위탁 할 수 없다.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선정 ※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름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19. 12. 31.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현황

(1) 시 설 명 :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2) 위　　치 : 오산로 366 2층(궐동 39-5)

(3) 면　　적 : 167.96㎡(약50평)

(4) 시설구성 : 침실 2개, 단체활동실, 조리실(식당), 상담실, 사무실, 화장실, 욕실 2개

(5) 현 수탁단체

(가) 수탁단체 : 평택 YMCA (대표자 : 정재우)

(나) 수탁기간 : 2017. 8. 1. ~ 2019. 12. 31.

(다) 시설분류 : 청소년복지시설

- 종사자 현황 : 8명

시설장	보호상담요원	야간 근무자	행정원
1명	3명	3명	1명

- 2019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내용	예산액	지원 기간	비고
계	**362,191**		
1)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도·시비)	290,402	분기별 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야간근무자 1명 지원
2)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도·시비)	59,189	분기별 지원	야간근무자 2명 지원
3) 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	4,200	매달 지급	
4) 종사자특수근무수당(도비, 시비)	8,400	매달 지급	

○ 청소년쉼터의 주요업무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5)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정망)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

○ 위탁운영 계획
(1)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까지(3년간)
(3) 신청자격 :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
*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및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 수탁자 선정 방법
(1) 심의기구 :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 근거 : 오산시 청소년기본조례 제8조(위탁운영)
(2)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위탁 운영체들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고,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비중이 큰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운영체 순으로 결정
(3)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통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의거 설치한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9. 12. 31 만료됨에 따라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법적근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2)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3)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4)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5)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 및 위탁)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설현황

(1) 시 설 명 :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7 (자원봉사센터 4층)

(3) 연 면 적 : 66㎡

(4) 조　　직 : 9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6명)

(5) 사업규모 : 400,000천원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2019년 예산편성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고교부액)

○ 수탁자 선정계획

(1) 위탁기간 : 2020. 1. 1 ~ 2024. 12. 31 (5년)

(2)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3) 수탁기관 자격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나)「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4)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수행 (타인에게 운영 및 관리 양도 불가)

(나)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 성과 평가·분석, 사업비 정산보고 및 잔액 반납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양도 및 전대 금지

(나) 수탁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1) 영유아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2) 가정과 연계한 영양, 위생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어린이 급식에 관한 학부모 신뢰도 향상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맑음터공원 체육시설(인라인트랙, 배드민턴장)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설현황

구 분		인라인트랙	배드민턴장	비고
시설 현황	준공년도	2009년	2009년	
	관 람 석	230석(계단식)	280석(계단식)	
	시설규모	트랙 200m(국제규격)	코트 6면	
	편의시설	화장실 2, 유도시설 1	화장실 2, 유도시설 1	

◯ 예산현황 : 79,600천원(2022년)

용 도 (항목별)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합 계		**79,599,825원**	
인건비	- 인 건 비(지도자) 1,800,000원*1명*12개월 = 21,600,000원 - 인 건 비(파트타임) 500,000원*4명*12개월 = 24,000,000원 평일야간 1명, 주말주간 2명, 주말 및 공휴일야간 1명 - 상 여 금 900,000원*1명*2회 =1,800,000원 - 퇴 직 금 1,800,000원*1명 =1,800,000원	49,200,000원	
사회 보험	- 후생복리비(보험료) 국민연금 49,200,000원*4.5% = 2,214,000원 건강보험 49,200,000원*3.23% = 1,589,160원 요양보험 1,589,160원*8.51% = 135,238원 고용보험 49,200,000원*1.5% = 738,000원 산재보험 49,200,000원*0.99% = 487,080원	5,163,478원	
운영비	- 제세공과금 전기요금, 정수기요금 등 1,500,000원*12개월 =18,000,000원	18,000,000원	
이 윤 (위탁 수수료)	- 인건비+사회보험+운영비*10%이내 72,363,470원*10%=7,236,347원	7,236,347원	

○ 사업내용

(1)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시설이용 운영

(2)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3) 그 밖에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 운영

○ 위탁계획

(1) 위탁공고 및 접수 : 2019. 10월경

(2) 위탁운영체 선정심사 : 2019. 11월경

(3)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간)

(4) 신청자격 : 오산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 체육시설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그 밖에 체육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수탁자 선정방법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0조 및 제11조

·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행

·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7) 위탁운영체 선정절차

· 공개모집 공고 ⇒ 신청자 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결정 ⇒ 위탁계약서 작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이 해마다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 사업이라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주고 있음.

○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를 결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과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

○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조정할 것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매칭사업을 실시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9.6%로서 경기도 시군 평균재정자립도 36.3%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 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오산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 9. 2.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9.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명철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19. 10. 10
○ 회　　기 : 2019. 10. 17 ~ 10. 23 (7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오산시 함께자람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협약 동의안
14.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5. 2020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6.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7. 2020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8.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19.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돼지콜레라라고 불릴 만큼 무서운 전염병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원도에서 발병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는 돼지축산농가가 한 농가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 및 차량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10월중에 개최 예정이었던 야맥축제, 오산장터 창작예술촌 뻔뻔한 예술상점, 오산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 평생학습박람회, 노인의 날 행사, 오산독산성문화제, 전국오산까마귀복면가요제 등 굵직한 행사들을 신속하고 발 빠른 행정으로 취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취소는 우리 오산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는 것을 23만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종식될 때까지 돼지열병이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오산시에서는 방역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전면 취소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확한 정산으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사취소들로 인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었던 행사관계자들의 피해도 없는지 적절히 잘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통을 함께 나누고 멀리 보는 안목으로 현재의 역경을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로 “때로는 곧장 가는 것보다 우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라는 옛말처럼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자세를 마음에 새겨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모색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시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이번

위기 또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등 총 20건의 부의안건을 짧은 회기동안 심의·의결해야하는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안건인 만큼 포용의 자세를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답변 및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에서 주문한 각종 지적사항과 요구사항 그리고 지난 제24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심의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여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10월 하순경 1국 3과 신설 및 정원 51명을 증원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대규모 승진인사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에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대시민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본청 내 부서 일부 팀은 본청이 아닌 종합운동장 스탠드 하단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매우 미흡한 행정시행을 보이며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을 가게 되는 부서장은 11월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교육기간 중 의회와 소통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산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본청 공무원 중식 교대근무시간이 폐지된데 이어서 모니터링 후 사업소, 동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에는 좋겠으나 점심시간을 할애하여 민원창구를 방문한 직장인들은 갑작스러운 변경에 시청을 방문했다가 헛걸음을 치는 등 많은 혼선과 불만을 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사전에 대시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지금이라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곽상욱 시장님의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중식교대근무폐지 시행은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심이 어떤지 가슴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 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배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오산시도 더욱 성숙된 지방자치 실현과 보다 발전된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항상 시민중심의 행복증진과 새로운 오산 발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금년도도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활기차게 시작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둔 보람된 시기이면서 돼지열병으로 각종 문화 및 예술축제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되어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는 수학능력 시험일이 28일 밖에 남지 않은 긴장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인 만큼 일손 부족 해소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하여 각종 대규모 공사장 등 안전시설에도 문제점들이 없는지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꼼꼼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우리 오산시의회는 초심을 잊지 않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 모두는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화합과 소통으로 시민의 힘이 되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23만 오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7.(목)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0.18. ~10.22. (5일간)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17.(목)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7.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협약 동의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 2020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2.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13. 2020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4.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 제안설명 15.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6. 휴회의 건	
10.17.(목) 14:00 제2회의실	**-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15.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8.(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19.(토)~ 10.20.(일)	□ **휴 일**	
10.21.(월)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10.22.(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10.23.(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2.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3.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 **제안이유**

○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문의 시기,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외부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을 추가함 (안 제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설계변경 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0% 이상인 공사를 자문대상으로 추가 함(안 제9조).

○ 기술자문을 설계가 완료된 후 받지 않도록 자문시기를 설계용역 기간 중 중간단계로 정함(안 제9조의2).

○ 복잡한 공정이나 특수 기술을 요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행화하여, 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 주차거부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시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행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UN군 초전기념관에 추가 개관하는 '평화관'과 관련하여 평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함께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평화관 추가 설치에 따른 제명 개정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 평화관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휴관일 규정 개정 (안 제4조)
 ·"설날 및 추석 연휴" ⇒ "설날 및 추석 당일"
○ 체험시설 이용료 및 감면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및 별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평화관의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이용료 중 학생 및 군인·경찰과 20인 이상 단체의 이용료를 각각 하향 조정하고, 오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오산시민에게는 이용료 감경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평화관의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이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1) 초·중·고 학생 및 군인·경찰의 이용료 하향 조정

구분	1종 이용권		자유이용권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만 5세 이상 학생(초·중·고) 군인·경찰	4,000원	3,000원	14,000원	10,000원

2) 20인 이상 단체를 어른과 학생 등으로 구분하고, 이용료를 하향 조정

구분		1종 이용권		자유이용권	
		원안	수정안	원안	수정안
20인 이상 단체	어른일반	4,000원	4,000원	12,000원	12,000원
	학생(초·중·고) 군인·경찰		2,000원		7,000원

3)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오산시민과 오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도록 함.

구분	어른일반	만 5세 이상 학생(초·중·고) 군인·경찰	20인 이상 단체	
			어른일반	만 5세 이상 학생(초·중·고) 군인·경찰
1종 이용권	2,500원	1,500원	2,000원	1,000원
자유이용권	7,500원	5,000원	6,000원	3,500원

□ 오산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의 운영에 맞추어 관계법령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오산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오산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오산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진로교육' 규정 추가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1조 부터 안 제5조까지)

○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역보건법」개정으로 근거조항 조문수정(안 제1조 및 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 정비(안 제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성 없는 조문 삭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 등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 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8조, 안 제14조 및 별표 1)

○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임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목적 및 용어규정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기재 조문 삭제 및 용어정비(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규정 삭제 (안 제1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19. 10. 22.

○ 심의결과 : 보류

→ 조례안의 목적과 삭제한 조항의 적법성, 전용수거용기 유지보수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함.

□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재처리수 사용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재처리수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므로, 지방세징수의 예를 따르도록 한 조항에서 과태료 문구 삭제 (안 제29조)

○ 일원화된 재처리수 요금 체계를 사용량에 따라 변경 (안 별표 1)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량	요금	⇨	사용량 (㎥/일)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
㎥당	1,014원		요금 (원/㎥)	1,000	950	900	850	800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조례 상 법령에 어긋나는 과태료 관련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타 법규를 우선하는 과태료 규정 개정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계리" → "회계처리"

○ 정비대상조례 6건(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1)「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2)「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3)「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4)「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오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6)「오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시됨으로써 최근 제정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오산시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안 제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내·국외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책의 개발·공유 및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 목적 및 기능(안 제1~3조)

(1) 협의회명 :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2) 목적 :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 도모

(3) 기능 : 국내외적 민주주의 네크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 및 정책교류

○ 구성, 임원 및 임원 임기(안 제4~6조)

(1) 구성 : 협의회 구성에 찬성하는 지방정부 [별표]

(2) 임원 : 회장(1명), 부회장(복수 가능), 임원 임기는 1년(1회 연임가능)

○ 회의 및 의결(안 제7조~8조)

(1) 회의 및 의결

(가) 정기회의(연1회), 임시회의(회장이 인정시, 위원1/3이상 동의시)

(나)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시 의결

(다)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특별한 사유인 경우 서면회의 가능

(2) 회장단 회의 : 회장이 인정하거나 부회장 1/3이상 동의하는 경우

○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결과 조치(안 제9~12조)

(1)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가)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상정의안 제출 통보

(나) 의안 제출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

(다) 부의안건은 회의개최 전 의원에게 송부(불가피한 경우 당일배부)

(2) 의견의 청취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능

(3)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 회의록 통보 및 차기회의 시 추진상황 보고

○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안 제13조~14조)

(1) 실무협의회

(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가능

(나) 위원(협의회소속 지방정부 담당 부서장), 운영(회장소속 지방정부)

(2)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가) 협의사항 자문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가능
(나)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의견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위촉 가능
(다)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은 협의회 승인 얻어 회장이 위촉

○ 사무국, 경비부담,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안 제15~18조)
(1) 사무국장(회장소속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 간사(담당주사)
(2) 경비부담 : 필요경비는 참여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3) 수당 등 :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가능
(4) 회계보고 및 결산
(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 회계는 사무국장이 관장,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집행상황 보고

○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안 제19~20조)
(1) 규약 개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
(2) 운영세칙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1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운영	비고
오산시함께 자람센터 1호점	'18.11.1	수청로 107 관리동 지하 1층 (죽미마을 12단지)	77㎡	28명	3명	직영 (현재)	※무상임대 (LH)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호점 운영 현황

(1) 시 설 명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호점

(2)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3) 운영시간 : 상시돌봄(시간제, 종일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4)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5) 아동 현황 ('19. 9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 나이별	정원	성별		학년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인원	28	19	9	8	8	7	4	1

(6)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가) 자격요건 및 급여(대우)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10:00 ~ 19:00)	· 월 급여액 : 2,138천원 – 월지급액(1,811,400원) +[4대보험사업자 부담금 + 퇴직적립금]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학기중 : 13시 ~ 19시 – 방학중 : 09시 ~ 19시	· 월 급여액 : 1,030천원 – 월지급액(873,000원) +[4대보험사업자 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19 보건복지부 내시액) :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수준

(7) 2019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국·시비)	기타
예산액	74,376	24,000 (월 2,000천원)	50,376 (월 4,198천원)	

(8)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경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3명), 운영비(※ 운영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138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030천원
- 운영비 : 월 2,0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강사비, 기타 종사자 여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협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동 166번지 일원 사업 대상지에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과 본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본 협약은 오산시의 역할 및 책임, 출자금 회수 및 이익 배당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협약 체결 전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1) 사업명 :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2) 위치 : 오산동 166번지 일원

(3) 면적 : 686,932m²

(4) 사업기간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일로부터 청산(예정)일(2020~2024)

(5) 총사업비 : 약 7,540억원

(6) 사업주체 : 민·관합동 (오산시 등 공공부문 + 민간 컨소시엄)

· 출자비율(계획) : 오산시 등 공공부문 50.1% / 민간 컨소시엄 49.9%

○ 사업협약 내용

(1) 체결주체 : 오산시, 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 (8개사)

		구 분	역 할	협 약 참여자
공 공 부 문		**오 산 시**	○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설립 업무 협력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이행 및 행정지원	오산시장
민간 부문	건 설 (대표사)	**현대엔지니어링(주)**	○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설립 업무 협력 ○ 공사시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개발계획 수립, 테넌트 확보 등	대표이사
	재 무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전 략	㈜ 케 이 알 산 업		
		새천년종합건설(주)		
		이엠종합건설(주)		
		이 에 스 개 발 (주)		
		㈜ 에 코 앤 스 마 트		

(2) 협약효력 : 민간사업자 지위 부여

(3) 협약내용

· 출자자 구성 및 개별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사항

· 인허가 추진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 사업방식,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 제반사항

· 조성토지 관리처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주총회 등 법인 운영관련은 세부내용은 주주협약에서 결정

(4) 체결 시기 : 2019. 11월 예정

(5) 협약서(안) : 붙임

○ 추진계획

· '19. 10. : 사업협약(안) 의회 동의 (제245회 임시회)

· '19. 11. : 사업협약 체결 (오산시-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

· '20. 01. : 출자기관 설립협의 (경기도)

· '20. 02. : 조례 제정·시행 * 의회 동의

· '20. 03. : 주주협약 및 정관 작성

· '20. 08. :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자본금 출자, 이사회 등) * 의회 동의

○ 기대효과

·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민간사업자 유치 및 지정 완료로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계획적 개발을 통한 질 높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과 인근 도시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낙후된 오산 도시 이미지 제고

· 지식산업 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고용 및 재정 증대효과 등 오산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충 가능

· 동부생활권 새로운 경제 활력 기능 부여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 19,756천원

(1) 출연대상

(가)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주요사업

-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재정 불균형해소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2) 출연내역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도 오산교육재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2020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안) : 3,734,026천원

- 출연금 구성내역

총 예 산 액	운영비	사업비
3,902,026천원	**2,322,026천원**	1,580,000천원

- 출연금 반영내역

총 예 산 액	2020년 출연금	2020년 순세계잉여금
3,902,026천원	**3,734,026천원**	168,000천원

(1) 출연목적

관내 학생 대상 장학사업 운영 및 혁신교육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2) 출연내역 :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장학금 지원을 통한 관내 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을 수행을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실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의결내용 : 오산교육재단 출연 3,734,026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요청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 출연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다)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2)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3) 2020년도 출연규모 : 700,000천원

(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200,000천원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500,000천원

(4)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 지원

(5) 출연요청 사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기 위함

○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2) 출연기관 : 경기도

(3) 2020년도 출연규모 : 58,000천원

(4) 출연요청 사유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의 기금출연 필요

(5) 출연금 산출근거 : 최근 5년간('14 ~ '18)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억원)

구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 평균
지원실적	82,459	14,789	17,235	16,240	15,872	18,322	16,492

(6) 지원한도

자금명	운전자금	시설투자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인
융자한도(업체당)	5억원	30억원	15억원	5억원	5천만원

※ 경기도 조례에 의거하여 유흥업, 경마업 등 사치·향락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1) 출연근거

(가)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나)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2) 출연기관 : 한국지역진흥재단

(3) 2020년도 출연규모 : 8,250천원

(4) 출연요청 사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시·도 및 시·군 자치구 공동출연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
- 기초 자치단체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 출연금 배정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반영이 필요함

(5)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

- 배정기준

〈광역 자치단체〉

○ 서울(264백만원) ~ 세종(29.7백만원)

※ 2007년 배정액 기준 : 공무원수(50%)+재정력지수(50%)

〈기초 자치단체〉

○ 인구 30만명 이상 시 : 13.75백만원

○ 인구 30만명 이상 자치구 : 11백만원

○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시·군·구 : 8.25백만원

○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 5.5백만원

– 기초 자치단체별 배정내역

시·도별	금 액 (단체수)	배 정 액
경 기	313.5 (31)	○ **13.75백만원(13개) : 178.75백만원**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 ○ **8.25백만원(13개) : 107.25백만원**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 **5.5백만원(5개) : 27.5백만원** 동두천시,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화재단 출연금 :

총 예 산 액	출 연 금	기타 수입액
7,538,012천원	**5,989,788천원**	1,548,224천원

(1) 출연목적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2) 출연내역 : 오산문화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의결내용 : 오산문화재단 출연 5,989,788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납부

(1) 2020년도 출연금 납부 예정금액 : 10,000천원

(2)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출연금 납부'공문 시달

(도·농복합시 및 군 : 50,000천원, 일반시 : 10,000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제안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본 지역은 2020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18년 / 2023년

(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오산시 원동 675번지 일원
- 면 적 : 134,958㎡(40,825평)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개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0. 23.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역말저수지 수변공원은 원동 3구역, 5구역과 연계해서 계획·개발하고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도록 조성
2. 고속도로변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 대책 수립 및 시행 철저
3. 원동 3·5·7구역 개발 완료 후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만으로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변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 계획을 재검토해서 보완

- 중로2-41호선 확장 시 고속도로 횡단 지하차도 박스까지 포함해서 도로 확장
- 중로3-A호선 원당초등학교에서 공동주택 단지까지 연장 개설
  (역말저수지 서측 제방)
- 푸르지오아파트(남측)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1류-45호선 조속히 개설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19. 11. 18

○ 회　　기 : 2019. 11. 25 ~ 12. 20 (26일간)

○ 주요안건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경기 T.E.G 캠퍼스 조성]
18.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
1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2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21.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2.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3.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2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오산 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벅찬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한 황금돼지의 해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돌아볼 시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뛰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도시 오산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시 승격 30주년과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였으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불안한 국제정세, 국내 정치의 불안 등으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7.4경제보복조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 헝가리에서 일어난 다뉴브강 참사, 미중 무역분쟁,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등 적지 않은 고난이 있던 한 해였습니다.

오산시로 눈길을 돌리면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버드파크 건립 추진,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 허가, 벌음동 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 등 여러 문제로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며 집행부에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3월, 제240회 임시회에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초 부실공사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정질문 등이 있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감사원 감사 예정에 따라 철회 후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줄곧 얘기했던 오산장터의 문제들이 사실로 드러났고 추가적으로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업무 부당처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9월 23일 오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버드파크의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사업추진을 요청했음에도 이틀 뒤인 9월 25일자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허가, 벌음동 폐기물 처리장 허가취소 등 올 해 일어난 많은 문제가 의회와의 소통의 부재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해 온 것들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반영해왔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오산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지금 언급된 감사원 감사결과 및 가칭 버드파크 건립사업의 진행사항과 향후 처리과정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아 업무에 더욱 정진하시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오산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간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10월 28일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시민안전국, 체육관광과, 청소자원과, 공원녹지과 등 1국 3과가 신설된 만큼 전 공직자는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이 커진 만큼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 조례안 13건, 동의안 6건, 보고안 2건, 의견제시 1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내년도의 밑그림을 그리는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의 경우 6,657억 규모의 살림살이로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및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매우 중요한 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세계경제 또한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내년 또한 글로벌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산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편성하고 심의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타당성 등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의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도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활기차게 시작했던 각종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내년은 오산시가 30주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죽미령 UN 초전기념 평화공원사업,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내삼미동 공유부지 내 복합안전체험관과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 등 미래 발전기반 사업들이 일부는 금년에 마무리 되고 일부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계획한대로 원활히 진행된다면 분명 오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오산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분명 오산시는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목표는 항상 시민의 행복 증진과 미래 오산 발전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오산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23만 오산 시민 여러분!

우리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 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한 해 동안 의원간담회 8회, 임시회 및 정례회 7회, 의원아카데미 2회, 현장 벤치마킹 3회, 봉사활동 11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산시의회는 대안 없는 논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직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뽑아주신 우리 시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을 견제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산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을, 잘 하고 있다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엔 더 크고 밝은 꿈을 꾸는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 바라며, 23만 오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5.(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1.26. ~12.02. (7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5분 자유발언** 1. 제246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6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오산시장 시정연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개요 설명)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11.25.(월)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1.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경기 T.E.G 캠퍼스 조성]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1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15.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7.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 **제안설명**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20. 휴회의 건	
11.25.(월) 14:00 제2회의실	-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보고종료**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6.(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27.(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11.28.(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11.29.(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29.(금) 14:00 제2회의실	**- 계수조정** 4.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30.(토)~ 12.01.(일)	□ **휴 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02.(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03.(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5분 자유발언** **- 의결**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3. 2020년 정기분 및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5. 휴회의 건	○ 휴회 : 12.04. ~12.19. (16일간)
12.04.(수) 11: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제안설명, 검토보고**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05.(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자치행정국, 보건소]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6.(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7.(토)~ 12.08.(일)	□ **휴 일**	
12.09.(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0.(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1.(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12.(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환경사업소]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3.(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4.(토)~ 12.15.(일)	□ **휴 일**	
12.16.(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오산교육재단]	
12.17.(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문화국, 시민안전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오산문화재단]	
12.18.(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2.19.(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 **의결**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20.(금) 11:00 본회의장	□ **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의결**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의결에 따른 오산시장 인사말씀) □ **2019년도 의정활동지원 유공공무원 시상**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97,014,689 천원

나. 일반회계 ····· 569,424,078 천원

다. 특별회계 ····· 127,590,611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3,051,630 천원

○ 기타특별회계 ····· 24,538,981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32,8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9,808,067 천원

○ 지방교부세 ····· 82,009,883 천원

○ 조정교부금등 ····· 75,134,851 천원

○ 보 조 금 ····· 182,086,582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45,134,306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32,8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9,170,397 천원

○ 지방교부세 ····· 81,986,283 천원

○ 조정교부금등 ····· 74,134,851 천원

○ 보 조 금 ····· 179,764,752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71,526,795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0,637,670 천원

○ 지방교부세 ····· 23,6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1,000,000 천원

○ 보 조 금 ····· 2,321,83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73,607,511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15,168,542 천원
○ 재 무 활 동 ····· 19,456,586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2,389,561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93,974,783 천원
○ 재 무 활 동 ····· 18,249,53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7,199,76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21,193,759 천원
○ 재 무 활 동 ····· 1,207,051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189,801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65건 ····· 559,015,107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12. 2.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65,706,672 천원
나. 일반회계 ····· 544,118,124 천원

다. 특별회계 ····· 121,588,548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7,361,810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4,226,738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40,635,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8,859,452 천원
○ 지방교부세 ····· 72,672,0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61,573,000 천원
○ 보 조 금 ····· 190,296,384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21,670,836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40,635,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4,608,414 천원
○ 지방교부세 ····· 72,672,0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61,573,000 천원
○ 보 조 금 ····· 184,785,60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59,844,11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4,251,038 천원
○ 보 조 금 ····· 5,510,784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1,826,726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83,681,457 천원
○ 재 무 활 동 ····· 10,017,13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2,008,083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67,429,366 천원
○ 재 무 활 동 ····· 8,238,03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8,450,726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16,252,091 천원

○ 재 무 활 동 ····· 1,779,10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3,557,357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65건 ····· 499,087,3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8. 12. 19.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665,706,672**	**-**	**-**	**665,706,672**
일반회계	소 계			544,118,124	-	-	544,118,124
	지방세수입			140,635,000	-	-	140,635,000
	세외수입			24,608,414	-	-	24,608,414
	지방교부세			72,672,000	-	-	72,672,000
	조정교부금등			61,573,000	-	-	61,573,000
	보조금			184,785,600	-	-	184,785,6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9,844,110	-	-	59,844,110
특별회계	소 계			121,588,548	-	-	121,588,548
	공기업	소 계		107,361,810	-	-	107,361,810
		상수도	소 계	36,186,298	-	-	36,186,298
			사업수익	19,267,199	-	-	19,267,199
			자본적수입	16,919,099	-	-	16,919,099
		하수도	소 계	71,175,512	-	-	71,175,512
			사업수익	25,668,057	-	-	25,668,057
			자본적수입	45,507,455	-	-	45,507,455
	기타	소 계		14,226,738	-	-	14,226,738
		세외수입		8,828,946	-	-	8,828,946
		보조금		588,504	-	-	588,50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809,288	-	-	4,809,288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계(10종)	**665,706,672**	**△1,625,848**	**1,625,848**	**665,706,672**
일반회계(1종)	544,118,124	△1,225,848	1,225,848	544,118,124
특별회계(9종)	121,588,548	△400,000	400,000	121,588,548
공기업특별회계(2종)	107,361,810	0	0	107,361,8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186,298	0	0	36,186,29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175,512	0	0	71,175,512
기타특별회계(7종)	14,226,738	△400,000	400,000	14,226,738
교통사업특별회계	11,813,389	△400,000	400,000	11,813,38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479,754	0	0	1,479,754
대지보상특별회계	37,400	0	0	37,4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81,903	0	0	481,903
도시개발특별회계	78,698	0	0	78,698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54,094	0	0	54,0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81,500	0	0	281,500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수 정 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544,118,124**	**△1,225,848**	**1,225,848**	**544,118,124**
의회사무과	2,277,939	0	0	2,277,939
홍보담당관	4,349,463	△60,000	0	4,289,463
감사담당관	267,359	△76,400	0	190,959
기획예산담당관	20,286,324	0	1,225,848	21,512,172
자치행정과	69,148,489	△4,000	0	69,144,489
세정과	811,443	0	0	811,443
징수과	1,431,737	0	0	1,431,737
회계과	11,088,452	△150,000	0	10,938,452
민원여권과	387,803	0	0	387,803
희망복지과	21,598,949	0	0	21,598,949
노인장애인과	82,128,097	0	0	82,128,097
가족보육과	89,450,203	△63,500	0	89,386,703
아동청소년과	31,321,987	△20,000	0	31,301,987
평생교육과	27,728,465	0	0	27,728,465
일자리정책과	7,640,635	△3,670	0	7,636,965
지역경제과	4,633,141	0	0	4,633,141
문화예술과	11,964,171	△357,841	0	11,606,330
체육관광과	10,945,740	△384,957	0	10,560,783
농식품위생과	5,575,497	0	0	5,575,497
도시정책과	295,670	0	0	295,670
미래도시개발과	8,466,800	0	0	8,466,800
건축과	1,177,640	0	0	1,177,640
주택과	6,494,831	0	0	6,494,831
토지정보과	607,255	0	0	607,255
안전정책과	4,070,376	△28,280	0	4,042,096
교통과	18,471,682	0	0	18,471,682
도로과	15,057,927	△52,200	0	15,005,727
정보통신과	4,884,252	0	0	4,884,252
보건행정과	5,456,749	0	0	5,456,749
건강증진과	9,600,450	0	0	9,600,450
환경과	11,118,482	△25,000	0	11,093,482
청소자원과	30,124,644	0	0	30,124,644
수도과	1,515,830	0	0	1,515,830
하수과	1,185,534	0	0	1,185,534
생태하천과	1,980,034	0	0	1,980,034
공원녹지과	9,573,126	0	0	9,573,126
중앙도서관	6,643,446	0	0	6,643,446
차량등록사업소	35,980	0	0	35,980
중앙동행정복지센터	756,560	0	0	756,560
대원동행정복지센터	902,300	0	0	902,300
남촌동행정복지센터	468,360	0	0	468,360
신장동행정복지센터	1,118,062	0	0	1,118,062
세마동행정복지센터	584,458	0	0	584,458
초평동행정복지센터	491,782	0	0	491,782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특별회계(9종)	121,588,548	△400,000	400,000	121,588,548
공기업 특별회계(2종)	107,361,810	0	0	107,361,810
상수도 특별회계(수도과)	36,186,298	0	0	36,186,298
하수도 특별회계(하수과)	71,175,512	0	0	71,175,512
기타 특별회계 (7종)	14,226,738	△400,000	400,000	14,226,738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과	11,556,155	△400,000	400,000	11,556,155
교통사업 특별회계 차량등록사업소	257,234	0	0	257,234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희망복지과)	1,479,754	0	0	1,479,754
대지보상 특별회계(도시정책과)	37,400	0	0	37,40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도시정책과)	481,903	0	0	481,903
도시개발 특별회계(도시정책과)	78,698	0	0	78,698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특별회계(청소자원과)	54,094	0	0	54,09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지역경제과)	281,500	0	0	281,500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 입 : 해당없음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7,617,717**	**△1,225,848**	**1,225,848**	**7,617,717**
기획예산 담당관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 유보금	0	-	1,225,848	1,225,848
홍 보 담당관	홍보물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 웹예능 드라마 제작 (신규)	60,000	△60,000	-	0
감 사 담당관	옴부즈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3,000	△3,000	-	0
〃	〃	〃	◎ 옴부즈만 운영비 - 임차료 및 사무용품 등	8,400	△8,400	-	0
〃	〃	301-12 기타보상금	◎ 옴부즈만 활동비	60,000	△60,000	-	0
〃	〃	〃	◎ 고충민원 자문수당	5,000	△5,000	-	0
자 치 행정과	시정지원	202-01 국내여비	◎ 협의회 및 단체 사업 시정업무 지원(신규)	4,000	△4,000	-	0
회계과	시청사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세정과 사무실 확장공사(신규)	150,000	△150,000	-	0
가 족 보육과	저출산 지원정책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 아픈아이 119 돌봄지원 서비스	123,500	△63,500	-	60,000
아 동 청소년과	아동놀권리 보장	201-03 행사운영비	◎ 찾아가는 까산이 놀이터 운영	20,000	△20,000	-	0
일자리 정책과	근로자 종합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3,670	△3,670	-	0
문 화 예술과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 지원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 (사)한국예총오산지회 사무실 운영비	117,777	△6,700	-	111,077
〃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오산문화 오감체험 (신규)	11,100	△11,100	-	0
〃	오산문화 재단 운영	306-01 출연금	◎ 오산문화재단 운영	5,989,788	△200,000	-	5,789,788
〃	오산시 시사편찬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 오산시 시사편찬	336,300	△81,041	-	255,259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	스미스 평화관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 평화 렉처콘서트(신규)	4,000	△4,000	-	0
〃	〃	〃	◎ 전국 학생 평화통일 챌린지(신규)	50,000	△50,000	-	0
〃	〃	301-09 행사실비 지원금	◎ 평화 렉처콘서트 출연자 사례금(신규)	4,000	△4,000	-	0
〃	〃	〃	◎ 평화 렉처콘서트 참여자 간식(신규)	1,000	△1,000	-	0
체 육 관광과	공공체육 시설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 스포츠센터 인공암벽장 리모델링(신규)	364,957	△364,957	-	0
〃	관광인프라 구축	201-03 행사운영비	◎ 관광박람회 참가	40,000	△20,000	-	20,000
안 전 정책과	재난상황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음성안내보조시스템 유지비(신규)	28,280	△28,280	-	0
도로과	노점상 정비	401-01 시설비	◎ 시설비 - 노점상 정비 용역 (상시) 인부임 - 노점상 정비 용역비 (행정대집행비)	207,945	△52,200	-	155,745
환경과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 미세먼지 홍보영상 제작 (신규)	25,000	△25,000	-	0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안	수 정 안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900,000**	**400,000**	**400,000**	**900,000**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과)	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 내부 유보금	0	-	400,000	400,000
〃	교통안전 시설 개선	207-01 연구용역비	◎ 교통안전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신규)	900,000	△400,000	-	500,000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해당없음

○ 오산교육재단 : 해당없음

○ 오산문화재단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산안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감 액	증 액	
오산시 출연금			오산문화재단 운영 (문화예술과)	5,989,788	△200,000	-	5,789,788
합 계				**200,000**	**△200,000**	**-**	**0**
전시사업	전시기획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 소장품	200,000	△200,000	-	0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총 괄**

가. 운용규모 ····· 12,454,189 천원

나. 수 입

○ 전 입 금 ····· 1,846,836 천원

○ 예 치 금 회 수 ····· 9,783,997 천원

○ 이 자 수 입 ····· 468,445 천원

○ 보 조 금 ····· 157,460 천원

○ 기타(과징금 및 융자금회수) ····· 197,451 천원

다. 지 출

○ 비융자성 사업비(고유목적사업) ····· 1,408,050 천원

○ 융 자 금 ····· 124,000 천원

○ 예 치 금 ····· 10,284,716 천원

○ 예 탁 금 ····· 530,610 천원

○ 기타(반환금, 인력운영비) ····· 106,813 천원

2. **기금별(11종)**

가. 재난관리기금 ····· 9,949,795 천원

나. 보훈복지기금 ····· 56,982 천원
다. 자 활 기 금 ····· 604,059 천원
라. 노인복지기금 ····· 70,801 천원
마. 장애인복지기금 ····· 74,582 천원
바. 양성평등기금 ····· 93,988 천원
사. 지역문화진흥기금 ····· 300,000 천원
아. 체육진흥기금 ····· 139,804 천원
자. 농업발전기금 ····· 108,413 천원
차. 식품진흥기금 ····· 785,148 천원
카. 옥외광고발전기금 ····· 270,617 천원
타. 통합관리기금 ····· 2,142,404 천원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12. 19.
○ 본회의 심의 : 2020. 12.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1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 및 여성의 보호에 관한 「오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명을 “오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아동·여성 보호”를 “여성안전”으로, “아동·여성폭력”을 “여성폭력”으로 각각 “아동”을 삭제하고 변경함(조례 본칙).
○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과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함(안 제6조제4항 단서 및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민과 학생이 메이커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배움을 실현

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 및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발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메이커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메이커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5조)

○ 오산메이커교육센터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메이커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구강건강 유지와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정함(안 제3조).

○ 지원규모는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지원액의 결정을 위한 시술의 종류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 시술기관의 선정방법과 시술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지급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

○ 의치보철 등 지원 및 시술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함(안 제8조).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도록 함(안 제1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유경제 촉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공유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앙동 56~58통 신설(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부산동 시티자이 2차 아파트 입주(1,090세대)

○ 남촌동 1개 반(11통 5반) 신설(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가장동 행복주택 아파트 입주(50세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화를 위한 센터장 선임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장 채용 조건을 마련하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직 및 운영 규정을 통합하고 현행화 함(안 제7조)

○ 임원 보수 규정 변경

(1) 임원 무보수 ⇒ 이사장 무보수(안 제11조제1항)

(2) 센터장 보수 규정 추가(안 제11조제2항)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센터장

○ 용어 정비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 2020. 11. 28.

○ 심 의 결 과 : 부결

– 현재 보수를 지급하는 사무국장이 있으며, 무보수 센터장을 보수를 지급하는 센터장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항은 센터장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민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현행 수수료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관련 조문 정비 (안 별표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 소상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소상공인의 책무에 대하여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지원 대상 사업, 지원한도 및 조건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안 제5조)

○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정함 (안 제6조부터 안제9조까지)

○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사업비 지원 규정을 정함 (안 제10조)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11조)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안 중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 개인이 아닌 의회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함(안 제13조제3항제2호나목).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오산시의회에서 ――――――――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박물관의 체계적인 건립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안 제7조)

○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직원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미술관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감면해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경기도 문화의 날' 관람료 100분의 30 경감 규정 신설
(안 제7조제3항제3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오산시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방문한 관람객에 한하여 관람료 전액을 무료로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 개정안 : 100분의 30 감경
- 수정안 : 전액 감면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관람료) ①·② (생 략)	제7조(관람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람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③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방문한 관람객에 한하여 100분의 30	3. ----------전액 감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 10. 28.자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송심의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7조)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경: 9명 ⇒ 15명

(2) 위원회 위원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불부합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임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목적 및 용어규정 정비 (안 제1조 및 제2조)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기재 조문 삭제 및 용어정비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규정 삭제 (안 제1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가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 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수정함(안 제8조제6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호 및 제3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u>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사항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 이란 ------------------------------------.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 ⑤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① ~ ⑤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생 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②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삭 제	1.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시 시장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 제8조제6항의 신고 ----------. ----------.
3.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
4. (생 략)	4. (개정안과 같음)
5. 삭 제	5. (개정안과 같음)

□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경기 T.E.G 캠퍼스 조성]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경기 T.E.G 캠퍼스 조성은「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정책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교육, 진로체험, 투자 연계 스타트업 기업보육을 통해 학생에서 일반 시민까지 교육과 일자리창출 교육공간을 공유하는 벤처 테크 빌리지(벤처타운)를 조성코자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 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경기 T.E.G 캠퍼스 조성** ◦ 추진배경: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사업으로 선정, 학생에서 일반 시민까지 교육과 일자리창출 교육공간을 공유하는 벤처 테크 빌리지 구축 ◦ 사업기간: 2020. 1. ~ 2022. 12. ◦ 위 치: 청학동 12-1번지 일원 ◦ 규 모: 지상4층 (부지면적 1,225㎡, 연면적 1,983.48㎡) ◦ 사 업 비: 11,671,000천원	경제 문화국 일자리 정책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재원별	연 도 별		
	합계	2019년	2020년이후
합계	**11,671,000**	**1,200,000**	**10,471,000**
시비	11,671,000	1,200,000	10,471,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9. 6. :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First 공모 신청(평생교육과)

(2) '19. 11. : 추진부서 변경(평생교육과-> 일자리정책과)

(3) '19. 11.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12억 교부, 40억의 30% 추후 사업추진에 따른 지급예정)

(4) '19. 12. : 3회 추경예산편성

(5) '20. 6. : 실시 설계 완료

(6) '20. 7. ~ '22.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1)「공간」과「플랫폼」역할을 통한 배움과 생각 표현의 장 마련

▸ '마을-학교-지자체'가 완성이 아닌 만들어가는 지속가능 장소 구성

▸ (역할) 메이커 문화의 확산을 통한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 능력 향상

▸ (기능)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한 실험실, 창작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공용 작업장

○ 사업대상지 위치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 (면적)	금액	비고
	계	**토지 건물 기타**	1	1,983.48	11,671,000	
취득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1,983,48	11,671,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2019년도 제4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1,983.48	11,671,000			
1	취득	건물 (신축)	청학동 12-1번지 일원	-	1,983.48	11,671,000	2022	경기 T.E.G 캠퍼스 조성	일자리 정책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죽미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SOC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죽미체육공원 남측 접면부에 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소음 및 차량사고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테니스 등 구기종목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기 조성된 실외 테니스장 상부에 체육관을 건립하여 전천후 체육시설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 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죽미 실내테니스장 건립** ○ 추진배경: 테니스 남측 접면부 고속도로 소음 및 차량 사고에 따른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 조성된 테니스장 상부에 체육관 건립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위 치: 세교동 627(현 죽미체육공원, 시유지) ○ 규 모: 지상 1층 (부지면적 41,642㎡, 연면적 4,300㎡) ○ 사 업 비: 3,000,000천원	경제문화국 체육관광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연 도 별		
	합계	2019년	2020년
합계	**3,000,000**	**1,000,000**	**2,000,000**
기금	1,000,000	1,000,000	-
시비	2,000,000	-	2,000,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9. 5.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추가 공모 신청(문화체육관광부)

(2) '19. 7.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3) '19. 7.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기금교부 신청

(4) '19. 7. ~ '20. 3. : 예산편성 및 설계 완료

(5) '20. 4. ~ '20.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1) 죽미 실내테니스장은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생활SOC 시설로써 인근 주민이 테니스장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체육활동 증대 가능.

(2) 테니스장 남측 접면부에 고속도로 소음 및 차량사고에 따른 2차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

○ 사업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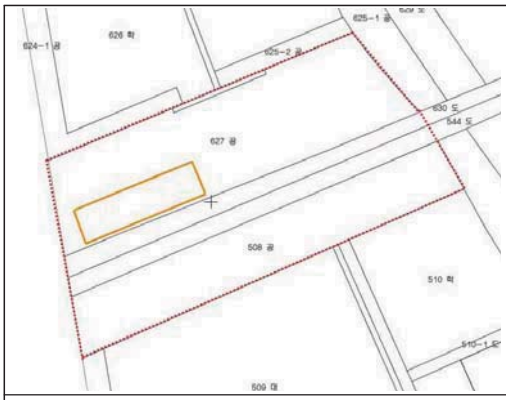

죽미 실내테니스장 지적도

죽미 실내테니스장 위성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2020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4,300	3,0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4,300	3,0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4,300	3,000,000			
1	취득	건물(신축)	세교동 627	-	4,300	3,000,000	2020	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	체육관광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생활SOC 복합화 정부 방침 및 서남부지역의 균형발전도모를 위하여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 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토지 건물	☐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 추진배경: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 사업기간: 2019. 2. ~ 2021. 12. ○ 위 치: 벌음동 277번지 일원 ○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부지면적 3,500㎡, 연면적 3,600㎡) ○ 사 업 비: 16,900,000천원	경제문화국 체육관광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재원별	연도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계	16,900,000	1,000,000	3,000,000	12,900,000
기금	3,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시비	13,900,000	-	2,000,000	11,900,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9. 2. :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수립(방침)

(2) '19. 2.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문화체육관광부)

(3) '19. 2.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4) '19. 3.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5) '19. 3.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기금교부 신청

(6) '19. 7. :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변경계획 보고(방침)

(7) '19. 8. ~ '19.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토지매입절차 진행

(8) '20. 1. ~ '20. 6. : 설계 공모 및 완료

(9) '20. 7. ~ '21.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1)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교육부 교과과정인 수영강습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수영장)을 공급하여 아이들이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

(2) 건립예정지는 오산시 서남부 중심에 위치하나 도심지와 물리적 거리가 큰 문제로 인해 오산스포츠센터 등 주요체육시설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인근 거주 시민의 만족도 증대·정주성 향상과 더불어 세교2지구 준공 후 시민의 체육활동 증대.

○ 사업대상지 위치도

벌음동 277일원 지적도

벌음동 277일원 위성사진

회계명 :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정기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계	**토지**	**1**	**3,500**	**7,000,000**	
		건물	**1**	**3,600**	**9,900,000**	
		기타				
취	매입	토지	1	3,500	7,000,000	
		건물				
		기타				
득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	3,600	9,900,000	신축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2020년도 정기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4건**			7,100	16,900,000			
1	취득	토지 (매입)	벌음동 277 일원	답	3,500	7,000,000	2020	국민체육 센터 건립	체육 관광과
		건물 (신축)	벌음동 277 일원	-	3,600	9,900,000	2021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시민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사상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오산 제1하수처리장 복개사업 추진으로 조성되는 상부공간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여가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인접 관광 인프라와 함께 생활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 시설을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여가공간으로 조성코자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매입 신축	건물	**□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추진배경: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공간을 문화여가 공간으로 재구성 ○사업기간: 2019. 2. ~ 2021. 3. ○위 치: 오산동 750번지 일원 (환경사업소 제1하수처리장 상부) ○규 모: 지상4층(부지면적 10,973㎡, 연면적 2,962.31㎡) ○사 업 비: 12,900,000천원	환경 사업소 하수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연 도 별				
	합계	2017까지	2018	2019	2020
합 계	12,900	4,900			8,000
도 비	4,900	4,900			
시 비	8,000				8,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6. 07. : `16 NEXT경기 창조오디션 수상

(2) '17. 12. : 기본계획 용역 착수

(3) '18. 03. : 반려동물 테마파크 TF팀 출범

(4) '18. 06. : 공공 디자인센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
(5) '18. 08.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검토의견회신
(6) '18. 10. 23 ~ 2019. 01. 21. : 현상설계 공모
(7) '19. 03. 20. : 착수보고회 개최
(8) '19. 07. 12. : 중간보고회 개최
(9) '19. 07. 15.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10) '19. 08. 05. : 일시정지(※사유:VE수행, 건설기술심의, 각종인허가)
(11) '19. 08. 29. : 도시계획시설(공원및환경기초시설)결정 용역착수
(※ '20.1.25완료 예정)
(12) '19. 09. 18.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제출
(13) '19. 10. : 설계VE 예정
(14) '19. 10. :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개최, 건축인허가 접수
(15) '19. 12.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16) '20. 01. : 도시계획시설결정(환경성검토) 완료, 발주의뢰
(17) '20. 02. :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완료
(18) '20. 04. : 공사착공
(19) '21. 03. : 공사준공

○ 기대효과

(1)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동물학대방지와 생명존중 사상 및 인성교육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시민의 반려동물 문화의식 향상 기대

(2) 국내·외적으로 높아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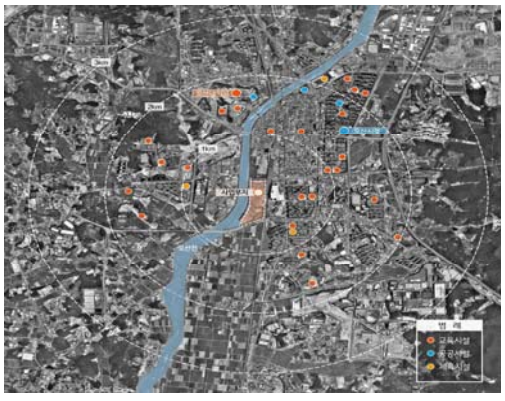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72 오산시 환경사업소

사업부지 현황도

회계명 : 일반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2020년도 정기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962.31	12,9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2,962.31	12,9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2020년도 정기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4건			2,962.31	12,900,000			
1	취득	건물(신축)	오산동 750-1번지 일원	-	2,962.31	12,900,000	2021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하수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2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운영	비고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	'19.7.1.	경기대로 99-15 관리동 지하 1층 (동부삼환아파트)	127.87㎡ (약38평)	45명	3명	직영 (현재)	※무상 임대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 운영 현황

(1) 시 설 명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2호점

(2)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3)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4)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5) 아동 현황 ('19. 10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 나이별	정원	성별		학년별				
		남	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인원	45	18	27	14	13	11	4	1

(6)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대우)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10:00 ~ 19:00)	· 월 급여액 : 2,138천원 – 월지급액(1,811,400원)+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 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학기중:13시~19시 – 방학중:09시~19시	· 월 급여액 : 1,030천원 – 월지급액(873,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19 보건복지부 내시액) :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수준

(7) 2019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국·시비)	기타
예산액	68,376	18,000 (월 1,500천원)	50,376 (월 4,198천원)	

(8) 주요업무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경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3명), 운영비(※ 운영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138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03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강사비, 기타 종사자 여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③「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안근거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

나.「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 추진경과

가. 조례 공포 : 2019. 5. 24.

나. 시행규칙 공포 : 2019. 9. 30.

다. 모집공고 : 2019. 9. 19. ~ 10. 4.(16일간)

라. 서류접수 : 2019. 9. 30. ~ 10. 4.(4일간) / 총 3명 접수
마. 면접실시 : 2019. 10. 22. 접수인원 / 총 3명 면접 수행
바. 면접합격자 공고 : 2019. 10. 24.

○ 운영개요
가. 모집방법 : 공개모집
나. 근무형태 : 주5일근무(주40시간)
다. 위촉기간 : 4년(단임)
라. 활 동 비 : 연 59,891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제나목 4급(상당)임기제 공무원 하한액
※ 별도 수당 및 여비 지원 하지 않음.

○ 옴부즈만 자격요건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부결
- 동의안의 위촉대상자는 오산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오산시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에서 상임이사 직을 가지고 사회복지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오산시청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며, 오산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까지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산하 기관·단체와의 관계 및 현직 오산시청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옴부즈만으로서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동의안을 부결함.
- 집행부에서는 추후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고, 모집공고부터 대상자 선정까지 전체 과정을 의회와 공유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1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출장목적

- 국외도시의 대중교통, 경제시설 등에 대한 기관방문 및 벤치마킹 등으로 견문을 확대하고 시정 도입 및 제안으로 시 발전 도모
- 국외도시의 선진행정·우수시책·수범사례를 비교 연수하여 의정 역량 강화 및 선진의정 구현

나. 출장요약

-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개발 과정의 선진사례인 말레이시아와 도시계획의 독보적 체계와 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 정책의 기틀 마련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하여 시정 도입 및 제안으로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1. 25.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나. 보고주체 및 대상

(1) 보고주체 :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2) 보고대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다. 보고절차

(1)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에 보고

(2)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매년 나누어 보고 가능

라. 해제권고 후 조치

–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식관리계획 결정

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 개소 : 59개소(미집행 면적 769,512㎡)

(2) 추정사업비 : 260,845백만원

(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연번	시설	개소	면적(㎡)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 계		**59**	**769,512**	**260,845**	
1	도 로	40	295,884	148,179	
2	광 장	4	21,405	8,848	
3	주차장	1	563	891	
4	공 원	4	211,038	37,827	
5	녹 지	10	240,622	65,100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1. 25.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부서의 집행계획을 반영하여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 개소 : 59개소 (미집행 면적 : 769,512㎡)

(2) 수립기간 : 2020년 ~ 2025년(5년)

- 1단계(2020년~2022년), 2-1단계(2023년~2024년), 2-2단계(2025년 이후)

(3) 추정사업비 : 260,845백만원

(4)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시설		전체		1단계 (2020년~2022년)	2-1단계 (2023년~2024년)	2-2단계 (2025년 이후)	비고
		시설수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	
합계		**59**	**260,845**	**28,849**	**24,526**	**207,470**	
도로	소계	40	148,179	23,165	19,539	105,457	
	대로	7	104,590	10,710	7,900	85,980	
	중로	4	9,554	-	6,170	3,384	
	소로	29	34,035	12,455	5,469	16,111	
광장		4	8,848			8,848	
주차장		1	891			891	
공원		4	37,827	5,684	4,987	27,156	
녹지		10	65,100			65,100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12. 3.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중로1-30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 8번 중로1-30은 현재 집행계획이 2-1 단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되, 집행계획을 2022년 이전인 1단계로 변경해서 시행하기 바라며,

○ 더불어, 중로1-30에서 서부우회도로 횡단박스를 지나 서쪽으로 서동로(소로1-27)까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 개통과 맞추어 추진하고, 특히 중로1-30에서 서부우회도로 횡단박스로 연결되는 부분과 횡단박스를 지나 서동로까지 개설 될 연결도로로 이어지는 부분은 높이 차이가 상당하여 선형 연결이 어렵고 공사 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현장 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2.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등(우선관리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자를 최대 5년간 5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성은 절실하나 재원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제3절 2020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4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상복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0. 2. 4
○ 회 기 : 2020. 2. 10 ~ 2. 19 (9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2.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이 중국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3만 7천여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중 800여명이 사망하였으며,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에 확진자 및 의심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서야 중국정부가 우한지역을 봉쇄하기로 한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는 등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시와 가까운 수원과 평택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도 관리대상자가 아직 3명이 있는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수시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24시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장이 공석이어 대책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현 최연동 보건행정과장께서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장 업무대행을 하시며 120여명의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주말도 없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전념하고 계심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매진하시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번 보건소 시정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연동 과장님을 비롯한 120여 보건소 직원분들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오산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과한 조치가 늦장 대응보다 낫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고 감염병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휴관 한 것은 신속하고 발 빠른 행정으로 참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한 것은 없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의 빠른 판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는 것을 24만 시민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오산시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년 기해년 한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정치권 또한 어지러운 한 해였습니다.

오산 또한 각종 문제들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는 축하할 일도 많았습니다.

먼저 4년 연속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복지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보육분야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 분야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재난관리 평가 우수,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 대한민국 한류대상,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우수 등 개청 이래 최대의 수상기록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건설을 위해 매진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독산성과 세마대지 학술조사 과정에서 1,500년 전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조선시대에 이르는 성곽과 유물 70점이 발굴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여러 세대의 성벽이 발굴된 드문 사례로 독산성이 한양의 중요한 방어 요충지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산성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발굴로 독산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뿐 만 아니라 오산시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산시의 위상이 올라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와 오산시의회가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오산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에는 오늘부터 65일 후인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정한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거를 이유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늦춰지고 멈춰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경제는 작년 2%의 성장률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성장률이라고 하지만 최저점을 지나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의 확산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의회일정의 첫 시작인 제247회 임시회의 첫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보고안, 의견제시 및 기타 안건 등 13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집행부의 2020년도 새해 계획을 청취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31살 청년 오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잘 설계하시고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렵게 확정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시정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질책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지난 2019년도를 '봉사의 해'로 정하고 매월 1차례씩 11차례의 봉사활동과 1차례의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 가치를 구현하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과 소통해 나갔다고 자부합니다.

오산시의회가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올해의 오산시의회 목표는 '일 잘 하는 의회'입니다.

소통과 봉사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산시의회는 시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가 옳은 길을 간다면 흔들리지 않도록,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갈 수 있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제 31살 청년 오산이 새로운 30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오산시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4만 시민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가 꾸는 그 꿈 오산시의회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24만 시민여러분 각 가정에 희망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2.10.(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1. 제24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 휴회 : 2.11. ~2.18.(8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6.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7.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설명, 질의·답변** 9.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1.(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1.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12.(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13.(목)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2.14.(금)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오산문화재단	
2.15.(토)~ 2.16.(일)	□ **휴 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2.17.(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시민안전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18.(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2.19.(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을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의정 및 시정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로 확대함(안 제1조).

○ 의원연구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함(안 제10조).

○ 연구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장이 오산시 체육회장을 겸직하여 왔으나, 체육회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체육 진흥 및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시민의 건강한 체력 유지와 체육활동 보장 및 오산시 체육 진흥 시책의 안정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전문체육의 육성 등 각종 체육 진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조례상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오산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체육활동 보장 및 오산시 체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오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 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오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속적 지원 및 장애인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의 지원,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나아가 재난 등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산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하고, 등록 외국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보험의 사고유형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과 보험기관이 계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보험 계약 후 보험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함(안 제1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함 (안 제4조).

○ 영주귀국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정함(안 제5조).

○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그 밖의 특별회계·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4조).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총 사업비 중 시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의 경비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 6조).

○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함(안 제7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로 함(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을 명시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정비

(1) “동주민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안 제2조제1호)

(2) “복지포인트” ⇒ “복지점수”(안 제5조제2항)

(3) “후생복지업무담당주사” ⇒ “후생복지 관련 업무담당 팀장” (안 제9조제4항)

○ 휴직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제2항제1호)

·“휴직자” ⇒ “육아·질병·가사 휴직자를 제외한 휴직자”

○ 후생복지사업 규정의 신설 및 변경(안 제7조)

(1) 장기재직·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규정 신설(안 제4호)

(2)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정 삭제(안 제7호)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 지급규정 삭제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 규정 신설(안 제8호)

(4)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규정 신설(안 제9호)

(5) 단체보험 가입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규정 신설(안 제11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유엔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운영위원회의 구성, 편의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조항 신설 및 불합리한 조항 정비 등「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을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조례”로 함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항 신설(안 제8조)

· 놀이방 및 카페, 기념품점 등 휴게시설 설치·운영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 및 학습비 청구 근거 조항 신설(안 제9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 신설(안 제10조 ~ 안 제17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등

○ 기념품의 제작 및 판매조항 신설(안 제19조)

· 홍보 및 관람객 방문 기념을 위한 기념품의 제작과 판매

○ 포상조항 신설(안 제20조)

· 홍보 및 운영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립목적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음

○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2020 ~ 2024년(5년간)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

○ 주요내용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및 기준인건비 현황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0.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2020년은 오산시 제4기(2019 ~ 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로써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72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4기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 작성주체 : 오산시장

○ 작성기준 : 매년
○ 주요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2)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재정 지원계획
(3)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0.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에 따라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을 오산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오산시 건강정책 운영실태와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2019년 시행계획 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작성주체 : 오산시장
○ 작성기준 : 2020년 1월 1일
○ 주요내용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3)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2. 10.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2020년 오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오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대상지역 : 오산시 전지역

○ 내　　용 : 오산시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계획

(1) 오산시 여건분석 및 도시쇠퇴진단

(2) 오산시 도시재생 기본구상

(3) 오산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안)

(4) 오산시 도시재생 단계별 추진방안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19. 2. 19.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성길용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0. 3. 2
○ 회 기 : 2020. 3. 9 ~ 3. 18 (10일간)
○ 주요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7.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14.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의 건
1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7.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3일자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었으며, 국내 확진자수는 7천명을 넘어섰고 수원과 평택, 화성 등 인근 시군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기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던 우리시에도 지난 29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확진자의 우리시 내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 나와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방역과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주말도 없이 24시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우리시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관리해주고 계신 곽상욱 시장님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관리의사이신 윤용 선생님이 주말도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시던 중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민을 위해 장례도 간소히 하시고 이틀 만에 다시 현장에 복귀하시어 진료에 임해 주신 시민을 위한 마음에 24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만큼 힘드시더라도 더욱 힘을 내어 코로나-19 방역에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일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의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젊은 도시인 오산의 경우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돌봄교실 등 가용자원 및 인력을 확보하시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등 취약계층과 초중고생에 대한 면마스크인 따숨 마스크 지원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필요한 사업이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참 잘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추후 따숨 마스크 지원 사업의 대상이 영유아 및 전 시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별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참석을 지양해 주시고 외출시 항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인이 확진자와의 접촉가능성이 있으며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지금은 정부와 시를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8일 후인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정한 선거중립,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선거의 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영향 받지 마시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을 위한 시책 집행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동의안 및 보고안, 의견제시의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는 결산 검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및 중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역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로 시민들의 의견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출로 의원님들의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사업들에 대해 코로나-19가 해소된 뒤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우수 경칩이 지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이 왔지만 아직 우리들에겐 봄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진 마음이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활짝 펼쳐져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산시의회는 여러분의 곁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힘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9.(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9.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안설명, 질의·답변**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11.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12.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14.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휴회 : 3.10. ~3.17. (8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9.(월) 11:00 본회의장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5.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의 건 - **제안설명, 질의·답변** 1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7.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18.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3.10.(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소관]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1.(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사업소, 담당관, 동 소관]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2.(목)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3.(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14.(토)~ 3.15.(일)	□ **휴 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16.(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8.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3.17.(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3.18.(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78,013,829 천원

나. 일반회계 ····· 556,325,012 천원

다. 특별회계 ····· 121,688,817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7,361,810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4,327,007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40,635,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8,876,450 천원
○ 지방교부세 ····· 72,672,000 천원
○ 조정교부금 ····· 61,573,000 천원
○ 보 조 금 ····· 195,686,276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8,571,103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40,635,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4,625,410 천원
○ 지방교부세 ····· 72,672,000 천원
○ 조정교부금 ····· 61,573,000 천원
○ 보 조 금 ····· 190,175,492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6,644,11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4,251,040 천원
○ 보 조 금 ····· 5,510,784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1,926,993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95,788,003 천원
○ 재 무 활 동 ····· 10,188,233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2,037,593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79,471,990 천원
○ 재 무 활 동 ····· 8,406,816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8,446,206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16,316,013 천원

○ 재 무 활 동 ····· 1,781,417 천원
○ 행정운영경비 ····· 3,591,387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50건 ····· 506,968,3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3. 13.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사회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최적화된 대안 마련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수집·관리, 활용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빅데이터의 활용과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빅데이터의 제공범위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빅데이터 활용과 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필요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빅데이터 활용실적 평가 및 포상, 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하여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산업체계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4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정인「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일원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주기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사무의 감사 주기를 해마다 한차례 이상에서 오산시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개정 (안 제24조)

○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위탁기간의 만료일 90일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25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20. 3. 17.

○ 심 의 결 과 : 보류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성과평가의 주기와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 심의를 보류함.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됨에 따라「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로 정하는 수의매각 대상 명확화 및 기준 강화

(1)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시유지의 경우 매각 시 적용대상 명확화 (안 제39조제3호)

(2) 농경지 매각 기준 강화 (안 제39조제6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의 주요내용이「오산시 청년기본 조례」와 중복되어 존치할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일부개정(경기도조례 제6220호, 2019. 6. 18.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

○ 지급대상 규정 변경 (안 제4조)

(1) 청년 ⇒ 만 24세 청년

(2) 거주기준 완화

⇒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외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추가 규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적용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을 포함시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적용범위를 구체화 하고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 및 안 제4조)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 금액 조정 (안 제6조)

·"5천만원" ⟹ "5천만원 및 세대별 1백만원"

○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광장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광장사용의 신청, 제한, 통지 및 취소 등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광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함(안 제9조)

○ 광장사용에 따른 시설물 등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따른 철거조치 및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은 시민의 실내 배드민턴에 대한 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교2 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부지 내 실내 배드민턴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의 배드민턴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이용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생활SOC 세교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추진배경: 배드민턴에 대한 시민의 체육수요 충족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위 치: 궐동 산36-1번지 일원 (현 세교2지구 근린공원1부지)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000㎡, 부지면적 3,471㎡) ○사 업 비: 2,500,000천원	경제 문화국 체육 관광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2,500,000	2,500,000			
국비(기금)	1,000,000	1,000,000			
시비	1,500,000	1,500,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9. 7. :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2) ’19. 12. :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기금 10억원)

(3) ’20. 1. ~ ’20.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경기도)

(4) ’20. 3. ~ ’20. 6. : 실시설계 추진

(5) ’20. 7. ~ ’20.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은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생활SOC시설로써 인근거주 시민이 실내배드민턴장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이용편의와 체육활동 증대·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지 위치도

배드민턴장(안)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000	2,5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2,000	2,5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2,000	2,500,000			
1	취득	건물 (신축)	궐동 산36-1번지 일원	-	2,000	2,500,000	2020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신축)	체육 관광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활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은 시민의 3:3 농구에 대한 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죽미체육공원 내 3:3 농구장 및 사무동 건축물을 건립하여 시민의 3:3 농구에 대한 수요 충족 및 이용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생활 SOC 죽미 3:3 농구장 건립** ◦추진배경: 3:3 농구에 대한 시민의 체육수요 충족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위 치: 세교동 619번지(현 죽미체육공원부지) ◦규 모: 지상 1층(연면적 500㎡, 부지면적 2,500㎡) ◦사 업 비: 2,500,000천원	경제문화국 체육관광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2,500,000	2,500,000			
국비(기금)	1,000,000	1,000,000			
시비	1,500,000	1,500,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9. 7. :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2) '19. 12. :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기금 10억원)

(3) '20. 1. ~ '20. 3. :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경기도)

(4) '20. 3. ~ '20. 6. : 실시설계 추진

(5) '20. 7. ~ '20. 12. : 공사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죽미 3:3 농구장은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생활SOC시설로써인근 거주 시민이 농구장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수요 충족 및 이용편의와 체육활동 증대·건강증진에 기여

○ 사업대상지 위치도

농구장(안)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500	2,5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500	2,5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500	2,500,000			
1	취득	건물 (신축)	세교동 619번지	-	500	2,500,000	2020	3:3 농구장 건립 (신축)	체육 관광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청 별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8.02.19.) 및 오산시의회의 승인(18.03.23.)을 득하였으나, 재정 여건 및 인근 공동주택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건립계획이 축소 변경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오산시청 별관 건립(변경) ○추진배경: 재정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건립계획 축소 변경 ○사업기간: 2017. 11. ~ 2021. 12. ○위 치: 오산동 915번지(시청사 동측 주차장 및 벽천) ○규 모: 지하 1층~지상5층(연면적 4,265㎡) ○사 업 비: 13,410,000천원	자치행정국 회계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3,410,000	1,100,000	5,318,000		6,992,000
시 비	13,410,000	1,100,000	5,318,000		6,992,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8. 3.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2) '18. 6.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3) '19. 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4) '19. 3. : 주민설명회 실시(대동아파트)

(5) '19. 8. :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일시중지 및 계획 재검토

(6) '19. 10. : 시청사 별관 건립계획 변경

(7) '19. 11. : 설계변경 재착수

(8) '20. 10.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9) '21.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오산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

○ 사업대상지 위치도

별관(안)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4,265	13,41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4,265	13,41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남촌동 복합청사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8.02.19.) 및 오산시의회의 승인(18.03.23.)을 득하였으나, 생활SOC사업 공모를 통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에 대한 국비투입과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가시설에 대한 시비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변경)** ㅇ추진배경: 생활SOC공모에 따른 국비투입 및 추가시설 반영에 따른 건립계획 확대 변경 ㅇ사업기간: 2018. 1. ~ 2022. 6. ㅇ위 치: 궐동 94번지 일원(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일대) ㅇ규 모: 지하 1층~지상3층 (연면적 8,650㎡, 부지면적 16,921㎡) ㅇ사 업 비: 34,196,000천원 (토지 보상비 포함 45,654백만원)	자치행정국 회계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5,654,000**	**5,500,000**	**5,000,000**	**3,220,000**	**19,984,000**	**11,950,000**
국비(균특)	4,804,000			1,400,000	2,904,000	500,000
시비	40,850,000	5,500,000	5,000,000	1,820,000	17,080,000	11,450,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18. 1. :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계획 수립

(2) ’18. 3.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3) ’18. 4. : 주민공청회 실시(6개동 단체장 및 동장, 사무장)

(4) ’18. 6. :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5) ’19. 6.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6) ’19. 11. : 건축설계 공모작 선정((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7) ’19. 12. :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완료(조건부)

(8)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9) ’19. 12. ~ ’20. 2. : 토지(사유지) 매입완료

(10) ’20. 5.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승인

(11) ’21. 3.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착공

(12) ’22. 6. : 공사준공

○ 기대효과

노후화된 청사를 복합청사로 신축함에 따라 행정·교육·건강·문화·보육기능이 집약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 제공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 사업대상지 위치도

청사(안)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 (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8,650	34,196,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8,650	34,196,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8,650	34,196,000			
1	취득	건물(신축)	궐동 94번지 일원	-	8,650	34,196,000	2022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신축)	회계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3~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3 ~ 7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3 ~ 7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3호점	'19.12.9.	현충로 107-30 오산센트럴푸르지오A	91.78 (28평)	36명	4명	※(現)직영 → 위탁(예정)
함께자람센터 4호점	'19.12.9.	현충로72번길 39 현대A 상가동 2층	104.25 (32평)	41명	4명	〃
함께자람센터 5호점	'20.3.2.	부산중앙로 11 오산시티자이1단지A	131.38 (40평)	52명	4명	〃
함께자람센터 6호점	'20.6월중	양산로 422, 104동 101호 효성백년가약A	99 (30평)	39명	4명	※폐원어린이집 센터전환
함께자람센터 7호점	'20.6월중	운암로 90, 306동 101호 운암3단지A	76 (23평)	30명	4명	〃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3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근무	· 월 급여액 : 2,200천원 – 월지급액(1,866,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3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090천원 – 월지급액(925,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0보건복지부 내시액) :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수준

(5) 2020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209,100	45,000 (월 1,500천원)	164,100 (월 5,470천원)	※ 2020.7월 위탁이후 예산 (3~7호점 5개소)

(6) 주요업무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3 ~ 5호점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6 ~ 7호점 : 지정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2020다함께돌봄사업안내」지정위탁 기준 [보건복지부]

■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예외) 지정위탁 가능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수탁자가 시설 실소유자로부터 공간을 제공받았을 경우 지정위탁 가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45 (2020.1.9.)]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00천원
돌봄선생님(3명, 1일 4시간) : 월 1,090천원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0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3~5호점은 공개모집을 하며, 6~7호점은 지정위탁으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없이 장소를 제공한 단체를 지정하여 '심사 및 결정' 단계부터 진행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시행계획 대비 시행결과

(1) [시행계획 수립시]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87개 단위사업
→ [시행결과]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72개 단위사업 추진

(2) 변경사항

(가) 국·도비보조사업(보편사업) : 13개 세부사업 "제외"

(나) 사업종료 : 2개 세부사업 "폐지"

(다) 수요변화, 예산, 정책변화, 수행기관 변화, 성과목표의 기달성 등 : 67개 세부사업 "변경"

(라) 2개 이상의 성과지표 단일화 추진 : 24개 세부사업 "변경"

(3) 2019년 시행계획의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시행결과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목표달성도			예산집행실적		
	목표치 (A)	실 적 (B)	달성률% (B/A*100)	목표액 (C)	실 적 (D)	집행률% (D/C*100)
계	129,748	163,599	126%	28,389	22,816	80%

○ 근 거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2)「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7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3항

○ 작성주체 : 오산시장

○ 작성기준 : 매년

○ 주요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

(2)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3)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지원내용

(4)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9.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 개소 : 14개소 (2019.12월~2020.1월 중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 갈곶2, 서1구역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2) 수립기간 : 2020년 ~ 2025년(5년)

- 1단계(2020년~2022년), 2단계(2023년~2025년 이후)

(3) 추정사업비 : 42,427백만원

(4)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시설현황

구분	합계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수지	비고
합계	14	7	2	3	1	1	
갈곶2구역	7	4	1	1	1		
서1구역	7	3	1	2		1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 사업비	기 시행	1단계(2020~2022년)			2단계 (2023년~2025년이후)			비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계	**42,427**	**1,436**	**18,206**	**6,245**	**6,886**	**8,891**	**763**	**–**	
갈곶2 구역	민 간 (원인자부담)	18,967	–	5,282	5,335	4,201	3,386	763	–	
서1 구역	민 간 (원인자부담)	23,460	1,436	12,924	910	2,685	5,505	–	–	

– 용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용도별	총 사업비	기 시행	1단계(2020~2022년)			2단계 (2023년~2025년이후)			비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후	
	계	**42,427**	**1,436**	**18,206**	**6,245**	**6,886**	**8,891**	**763**	**–**	
총계	**공사비**	**12,197**	**–**	**709**	**1,574**	**3,659**	**5,545**	**710**	**–**	
	보상비	**29,247**	**1,436**	**17,390**	**4,466**	**2,977**	**2,978**	**–**	**–**	
	기타	**983**	**–**	**107**	**205**	**250**	**368**	**53**	**–**	**설계,감리, 부대비**
갈곶2 구역	공사비	3,547	–	709	709	1,064	355	710	–	
	보상비	14,887	–	4,466	4,466	2,977	2,978	–	–	
	기타	533	–	107	160	160	53	53	–	
서1 구역	공사비	8,650	–	–	865	2,595	5,190	–	–	
	보상비	14,360	1,436	12,924	–	–	–	–	–	
	기타	450	–	–	45	90	315	–	–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갈곶2구역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 서1구역은 현재 가수초등학교에서 서부우회도로까지 계획된 중로1-30호선 통학로를 서쪽으로 서동로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공사비 및 보상비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재협의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 이전에 도로 개설 또는 확장을 우선 시행 및 완공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오산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내삼미동 공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한 「내삼미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입안목적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의 공유지내 드라마세트장, 재난안전종합체험관, 미니어처전시관 등의 개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용도지역에 있어 향후 시설의 증설 및 계획적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19년 / 2024년

(2)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원

(나) 면 적 : 128,868㎡

(다) 내 용 :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드라마세트장, 재난안전종합체험관, 미니어처 전시관, 복합시설용지]

(3)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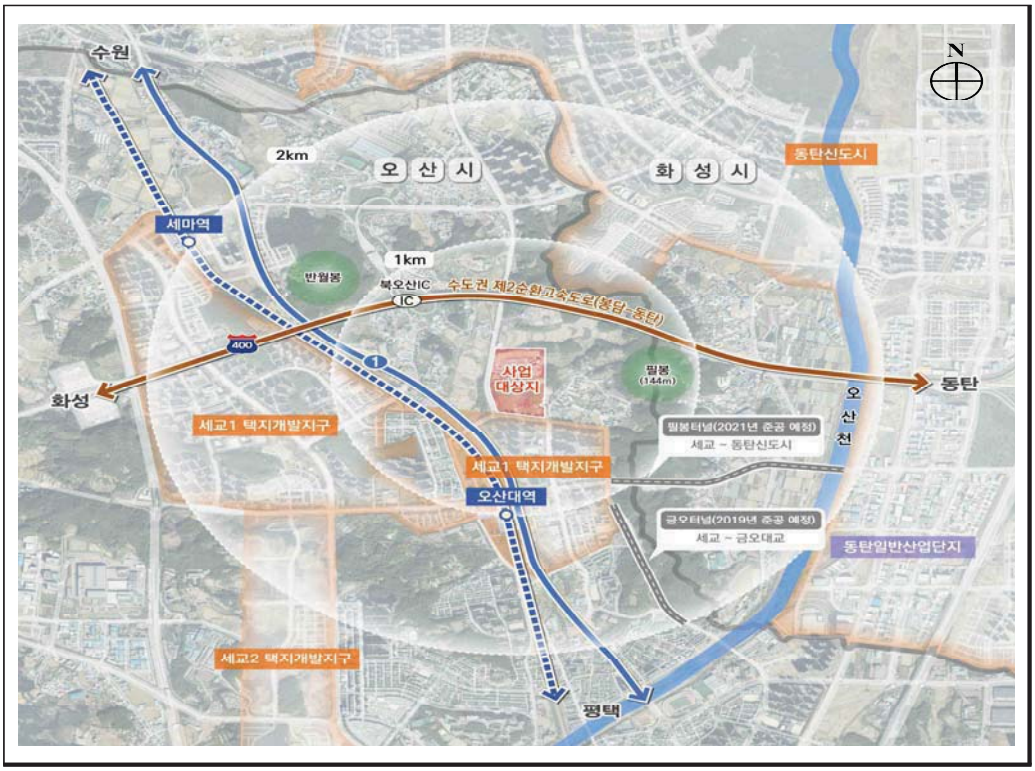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3. 18.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성혁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0. 4. 3
○ 회 기 : 2020. 4. 8 (1일)
○ 주요안건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역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시고 계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큰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역경에 마주칠 때마다 더욱 강해졌었고 이번 역경 또한 극복해 나갈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끝을 알순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선 오산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오산시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긴급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건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가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시민여러분들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드려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속에 우리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오산시민,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오산시, 그리고 오산시의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협조 없이 감염병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오산시의회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고
4.8.(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49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의결** 3.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정회**	
13: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 3.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4:00 본회의장	□ **제1차 본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96,398,455 천원

나. 일반회계 ····· 574,709,638 천원

다. 특별회계 ····· 121,688,817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7,361,810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4,327,007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43,400,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1,824,524 천원

○ 지방교부세 ····· 72,672,000 천원

○ 조정교부금 ····· 61,573,000 천원

○ 보 조 금 ····· 208,357,828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8,571,103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43,400,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7,573,484 천원

○ 지방교부세 ····· 72,672,000 천원

○ 조정교부금 ····· 61,573,000 천원

○ 보 조 금 ····· 202,847,044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6,644,11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4,251,040 천원

○ 보 조 금 ····· 5,510,784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1,926,993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14,819,717 천원
○ 재 무 활 동 ····· 10,188,233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1,390,505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98,503,704 천원
○ 재 무 활 동 ····· 8,406,816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7,799,118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16,316,013 천원
○ 재 무 활 동 ····· 1,781,417 천원
○ 행정운영경비 ····· 3,591,387 천원

4. 계속사업

○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57건 ····· 506,968,3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4. 8.
○ 본회의 심의 : 2020. 4. 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등 6인

▷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기초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장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청원과 사회적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오산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난기본소득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4. 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한은경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0. 4. 17
○ 회 기 : 2020. 4. 22 ~ 4. 24 (3일간)
○ 주요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감소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해주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음을 경고하고 일부 완화는 시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감염병은 쉽게 사라지는 병이 아닙니다. 한 순간의 방심에 지금까지의 수고와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생활방역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경기도 및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오프라인 지급 신청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곱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정하고 원포인트로 추경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응급조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준비 및 처리 등 집행절차에 만전을 기하시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 공무원 참석 없이 의원님들만 참석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명조'라는 전설의 새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머리가 두 개인 새로 하나의 머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같이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오산시와 오산시의회는 같은 운명을 함께하는 공명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오산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갔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시어 목록을 작성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심껏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곁에서 견뎌준 가족, 동료, 이웃 등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며 개인위생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닌 나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기관 관계자 및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22.(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 휴회:4.23 (1일간)
4.23.(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의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채택의 건	
4.24.(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승인

▷ **감사기간·대상부서 및 감사방법 확정**

▷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증인출석범위 확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4. 24.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20. 5. 29
○ 회　　기 : 2020. 6. 8 ~ 6. 30 (23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5.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 '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33. 가)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가)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
36.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8.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39.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40. 제8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확진자는 일부 집단간염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부의 통제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집회를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 및 공공시설 운영중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화된 조치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오산에서는 지난 2월 29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여덟분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시의 발 빠른 방역과 의료진의 헌신으로 지난 5월 14일

마지막 여덟 번째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현재는 한분의 확진자도 없는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산의 공직자와 의료진,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오산 방역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및 의료진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신 오산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경제 방역을 준비할 때입니다. 물론 아직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만큼 생활속의 방역,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올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금년도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 또한 금년도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역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행히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경기도 및 오산재난기본소득, 그리고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의 긴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때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직자 여러분!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를 표방하며 시작한 제8대 오산시의회가 벌써 2주년이 되어,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인 제25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의장인 저와 함께 전반기의회에서 열의와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김영희 부의장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산시의회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대 전반기 오산시의회는 권위만을 내세우지 않고 특권은 버리고 헌신과 고뇌가 가득한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며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여 시민여러분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산시의회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시 행정에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했고 그 결과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 등 여러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전반기 2년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처음 의회에 발을 디뎠던 순간의 마음가짐을 갖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후반기 2년 또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비롯하여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등 총 4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매우 중요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조례 및 동의안 심사, 결산검사 승인 등 부의안건 심의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제출받은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격려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집행을 마친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도 당초에 계획된 집행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성실한 수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소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산시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우리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국이 폐허가 되고 100년이 지나도 재건이 어렵다고 했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고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UN군과 북한군의 최초 교전이 이뤄진 죽미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죽미령에 평화공원을 조성하였고 이제 7월 개관을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평화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기 위한 평화의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국을 지켜주신 호국영령들과 지금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지역의 많은 보훈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을 이겨냈고 폐허에서 재건해냈듯이 이제 코로나의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에겐 승리의 DNA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 더욱 빛을 발하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내고 경제도 살려낼 것입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편에서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이제 곧 장마철과 무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 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8.(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1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1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휴회 : 6.9. ~6.28. (20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가) 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가) 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동의안 14.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7. 휴회의 건	
6.9.(화) 10:00 주요사업장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환경사업소(반려동물 테마파크, 음식물자원화 시설, 재활용센터) 2.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3. 서부우회도로 4.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미니어처 등) 5. 필봉터널, 대로3-12호선(금오터널) 개설공사 6. 복합문화체육센터 7. 오산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6.10.(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7.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10.(수) 10:00 제1회의실	15.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11.(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6.12.(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9건	
6.13.(토)~ 6.14.(일)	**□ 휴 일**	
6.15.(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결산검사대표위원설명, 제안설명,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4.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16.(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17.(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6.18.(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6.19.(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오산문화재단**]	
6.20.(토)~ 6.21.(일)	☐ **휴 일**	
6.22.(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 미래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6.23.(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안전국**(안전정책과, 교통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차량등록사업소**]	
6.24.(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환경과, 청소자원과, 수도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중앙도서관]	
6.25.(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6.26.(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의결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7.(토)~ 6.28.(일)	☐ **휴 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29.(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7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3. '코로나19'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4.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 의결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30.(화) 10:00 본회의장	□ **제3차 본회의** 1. 제8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까지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 신설,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조문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활동 네트워크 명칭 변경 등 조례 일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중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으로 정함(안 제2조).

○ 청년정책 사업 추진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청년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하고,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6항).

○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활동 네트워크”의 명칭을 “청년협의체”로 변경하고, 참여 자격 중 오산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을 추가함(안 제10조).

○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함(안 제2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을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시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위하여 야생생물과 생태·환경보호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야생생물과 생태·환경 보호 등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위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일정금액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월 10,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로 현실화 하며,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부과하도록 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실질소득 증대 및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의료권 보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함

○ “노인”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정함(안 제3조).

○ 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월별 고지액을 시에서 공단에 일괄 납부하도록 함(안 제4조).

○ 보험료 지원의 중단, 예산확보,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과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발견된 만성질환자를 보건소에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함(안 제3조).
○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 존중을 정함(안 제4조).
○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성인문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 등을 정비하고,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상위법과 본 조례의 목적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함(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의 목적을 정비함(안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중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여 정비함(안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종류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

○ 지원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단순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제7조).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 자전거정비소를 법에 따라 자전거수리센터로 하고, 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 공영자전거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안제13조의2).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3).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홍보 및 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의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용어를 동 조례에 중복 규정함에 있어 법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용어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영세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지방세 기본법」개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7조)

○ 선정대리인의 신청 방법·절차 등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 공동명의자의 범위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감면 규정을「조세특례제한법」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 조항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6조)

○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6조의 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물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책임 및 관리사무의 위임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정수관리 물품 취득의 경우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정수 배정을 의무화하며, 정수 조정사유 발생 시 정수 조정을 요청토록 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 매입대상과 기증품의 취득절차 규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 물품의 보관구분, 절차와 책임에 관한 규정, 보관 물품의 망실·훼손 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소관물품을 대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정함(안 제22조)
○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와 수요조회 대상 등 재정비하고, 불용품의 매각, 폐기 절차 등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
○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이행할 검사공무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안 제2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근거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근거 조항 정비(안 제12조제2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탁의 근거법령을 명시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의 정의규정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가 개정됨

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되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안 제18조)

·“3년 이내” ⇒ “5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보육체계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변경(안 제13조)

·“3년 이내” ⇒ “5년”

○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11조, 제23조 및 제24조)

(1) “일시보육” ⇒ “시간제보육”

(2) “아이러브맘 카페” ⇒ “아이사랑놀이터”

(3) “공공형·평가인증” ⇒ “공공형·평가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불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20. 6. 12.

○ 심 의 결 과 : 부결

→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해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을 부결함.

□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활동가를 모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동가 모집 및 활동비 등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규정된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른 위원 수 변경(안 제26조 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정비(안 제26조제1항제10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50미터 이하의 진입도로

○ 방화지구 지정 시, 건폐율 인센티브 적용 용도지역 확대(안 제48조)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제한을 완화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한 연장(안 제49조)

・“2018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개정(안 제64조)

・“열람” ⇒ “열람 또는 사본”

○ 수소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6부터 10까지)

○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안 별표 3부터 6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조문 정비

(1)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규제완화(안 별표 16)

(2)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 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안 별표 3부터 5까지, 안 별표 7부터 8까지, 안 별표 15부터 17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당초 설치 목적은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것이었으나, 재원이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고,

○ 보상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함에 따라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건축법」개정 및「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개공지 정비, 정부합동평가지표 등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미적용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정비

(1)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규정(안 제9조)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절차 조정(안 제22조)

(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정비 (안 제22조의2))

(4)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실내건축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5) 건축지도원의 자격범위 등 기준정비(안 제25조)

(6) 공개공지 대상·관리 기준 등 정립(안 제30조 및 별지 제6호서식)

(7)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
(8)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중 배출시설 사항 정비(안 제37조)
(9)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38조)
○ 그 밖의 용어정비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권고 사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에 효과적인 차량 2부제 교통량감축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승용차2부제의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제2항제3호)
・“금지하는” ⇒ “허용하는”
○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조항 및 조문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재난 발생 시 한시적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6조제6항)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 감면 기간과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30 경감
○ 승용차2부제의 경감율 상향 조정(안 별표 2)
・“100분의 30” ⇒ “100분의 50”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표기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 공동주택의 성격이나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조례상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한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안 제7조제1항)

○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 (안 제26조 별표 1 및 별표 2)

○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항목에 대해 납부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2조)

○ 상수도요금 연체료 일할 산정방식 도입 (안 제33조)

○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감면율(금액) 및 범위 규정 (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 그 밖에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문 및 용어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 사항 반영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및 현행화 (안 제10조제4항 및 제6항)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

(2) 간사: 자치행정과장 ⇒ 인권업무 담당 팀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무원 등’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부조리 신고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1년으로 제한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및「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사례 배제(안 제3조)

○ 보상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3조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운영지침 등 제안제도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고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안주무부서 및 관·과·소 등에서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정책발굴을 위한 창안대회 개최에 따른 근거 마련 (안 제4조)

○ 실시가능한 제안의 발굴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 (안 제6조)

○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안 제7조)

○ 제안심사에 시민참여 방안 마련 (안 제9조 및 안 제14조)

○ 제안의 이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제안의 실험 참가자에 대한 활동비 지원근거 마련 (안 제2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법률자문건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안 제2조)

· 위촉 인원 : 5명 ⇒ 10명

○ 소송비용 지급기준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행정심판 등의 수임료에 관한 규정 추가

(2) 착수금 상한액 조정 : 980만원 ⇒ 1000만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법령에 어긋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삭제 (안 제1조 및 제2조)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미연에 → 미리

(2) 폭원 → 넓이

(3) 사계 → 해당 분야

○ 정비대상조례 8건

(1)「오산시 건축 조례」

(2)「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3)「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4)「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5)「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6)「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7)「오산시사편찬위원회 조례」
(8)「오산시포상조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민간위탁사무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정인「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일원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주기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민간위탁사무의 감사 주기를 해마다 한차례 이상에서 오산시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개정 (안 제24조)
○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위탁기간의 만료일 90일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개정 (안 제25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20. 6. 12.
○ 심 의 결 과 : 부결
→ 오산시는 위탁자의 지위로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부당성에 대한 형식적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사무처리 전반에 사전 또는 사후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탁사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측정·평가하고 이를 위탁의 필요성과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무위탁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 주기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정조례안을 부결함.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세입 결산액 : 955,212,226,961원

○ 세출 결산액 : 659,149,207,064원

○ 세계 잉여금 : 296,063,019,897원

(2)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 753,543,246,140원

○ 세출 결산액 : 565,914,430,568원

○ 세계 잉여금 : 187,628,815,572원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126,490,660,98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7,322,784,1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815,370,452원임.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입 결산액 : 201,668,980,821원

○ 세출 결산액 : 93,234,776,496원

○ 세계 잉여금 : 108,434,204,325원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47,670,310,290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5,967,2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97,926,765원임.

나. 다음 연도 이월액 결산

(1)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26,490,660,98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5건 10,565,114,520원

사고이월액은 13건 1,486,191,210원

계속비이월액은 76건 114,439,355,250원임.

(2)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47,670,310,29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건 42,500,000원

사고이월액은 5건 1,001,955,610원

계속비이월액은 18건 46,625,854,680원임.

다. 기금 결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2019년도말 32,590,387,222원으로
조성액은 3,759,298,525원
사용액은 852,060,420원임.

라.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2019년도말 채권액은 5,051,626,440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2,970,514,500원
전화선예치금 14,860,000원
기타 616,090,000원
기금에서는 자활기금 349,200,750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당금 1,100,961,190원

(2) 채 무

2019년도말 채무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재산현재액은 2019년도말 2,910,907,996,999원으로
토지 5,877,887㎡ 1,827,780,540,401원
건물 222,650㎡ 461,762,652,007원
기타 696,009건 621,364,804,591원임.

바. 물품 결산

201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9,623,392,309원으로
취득은 1,358,998,565원
처분은 720,041,192원임.

사. 금고 결산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20. 1. 20일 현재
세입총액은 955,212,226,961원
세출총액은 659,149,207,064원
차인잔액은 296,063,019,897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액이 지출액 증명과 상이없음.

아. 재무회계 결산

2019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054,157,044,930원으로
부채는 21,161,220,404원
순자산은 3,032,995,824,526원임.

2019.1.1부터 12.31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547,848,278,121원으로
총수익은 560,877,457,732원
운영차액은 13,029,179,611원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9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20년도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일반회계》

○ 예비비 예산액(최종) 14,582,565천원
・지출결정액 : 591,388천원
・지 출 액 : 591,388천원
・불 용 액 : 0원
○ 예비비 잔액 13,991,177천원
1. 오산교통 파업관련 전세버스 긴급투입 및 대시민 홍보
○ 예 산 과 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교통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교통안전개선 대책추진	사무관리비

○ 지출결정액 : 591,388천원
○ 지 출 액 : 591,388천원
○ 불 용 액 : 0원
○ 지 출 사 유 : 관내 운수업체인 오산교통 노조 파업 사태로 직장인 및 학생통학,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우려되어 전세버스 긴급투입 및 홍보로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서비스업 등 전 부분에서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인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에 비례하여 2020년에 부과할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인하 유도를 통한 임차인 지원 등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착한 임대인 지원

(1)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세목

(가)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목으로 감면분에 따라 적용

(3) 감면율 : 총 임대료 인하액÷ [(연간임대료합계÷12)×6]

※ 최대 50% 감면 적용, 재산세 1천만원이상 : 최대 5백만원 한도내 감면

(4) 감면제외

(가)「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가)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 하반기에 신축되는 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내 (가칭)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622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337.9㎡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20.01.2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 계획
2020.03.3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 협약(시행사 ㈜지우엔)
2020.04.0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정원 및 반편성 계획 (단위 : 명)

계	만 2세	만 3세	만 4세~5세	비 고
61	6	15	40	취약보육

○ 인력투입 계획 (단위 : 명)

계	원장	교사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비 고
9	1	7	1	-	-	-	[의무 배치 기준] ①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조리사 : 현원 40명 이상 ③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210,264
2. 수익자부담금수입	68,136
3. 보조금및지원금	216,002
4. 전입금	
5. 기부금	
6. 과년도수입	
7. 잡수입	
8. 전년도이월액	
합 계	**494,402**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94,511
2. 운영비	46,559
3. 보육활동비	85,196
4. 수익자부담경비	68,136
5. 과년도지출	
6. 재산조성비	
7. 잡지출	
8. 예비비	
합 계	**494,40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가)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칭)시립번개뜰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55(서동)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27㎡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19.10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2020.01.2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 계획 수립
2020.02.14	가)보육타운 조성사업 추진 계획 수립
2020.04.0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정원 및 반편성 계획 (단위 : 명)

계	만 3세	만 4세	만 5세	비 고
40	10	15	15	취약보육

○ 인력투입 계획 (단위 : 명)

계	원장	교사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비 고
8	1	6	1	-	-	-	[의무 배치 기준] ①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조리사 : 현원 40명 이상 ③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56,168
2. 수익자부담금수입	53,589
3. 보조금및지원금	266,374
4. 전입금	
5. 기부금	
6. 과년도수입	
7. 잡수입	
8. 전년도이월액	
합 계	**476,131**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02,742
2. 운영비	48,196
3. 보육활동비	71,604
4. 수익자부담경비	53,589
5. 과년도지출	
6. 재산조성비	
7. 잡지출	
8. 예비비	
합 계	**476,131**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제1조)

○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제4조)

○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 (제12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제13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8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8호점	'20.9월중	매홀로 42, 108동 101호	92.1 (28평)	28명	3명	※폐원어린이집 센터전환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근무 (8시간)	· 월 급여액 : 2,200천원 – 월지급액(1,866,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090천원 – 월지급액(925,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0보건복지부 내시액) :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수준

(5) 2020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원기간	산출내역
합 계	**23,520**		
인건비 (국·도·시비)	17,520	4개월 (9월~12월)	– 센터장 : 2,200천원×1명×4개월 – 돌봄선생님 : 1,090천원×2명×4개월
운영비 (국·도·시비)	6,000		– 월 1,500천원×4개월 – 공과금, 임차료, 프로그램비 등

(6) 주요업무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지정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2020다함께돌봄사업안내」지정위탁 기준 [보건복지부]

■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예외) 지정위탁 가능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수탁자가 시설 실소유자로부터 공간을 제공받았을 경우 지정위탁 가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45 (2020.1.9.)]

(다)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0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심사 및 결정	⇒	◈ 장소 제공한 단체에 지정위탁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 결정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통지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부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공간 무상제공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종사자의 채용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폐원 어린이집 원장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폐원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음은 물론,「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의 민간위탁도 수탁자 선정이 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 또는 유휴공간이 아닌 세대안에「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소음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에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함.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9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9호점	'20.10월중	초평로 55	98.78 (30평)	30명	3명	※보육타운 내 설치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근무 (8시간)	· 월 급여액 : 2,200천원 – 월지급액(1,866,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090천원 – 월지급액(925,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0보건복지부 내시액) :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 수준

(5) 2020년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원기간	산출내역
합 계	**17,640**		
인건비 (국·도·시비)	13,140	3개월 (10월~12월)	- 센터장 : 2,200천원×1명×3개월 - 돌봄선생님 : 1,090천원×2명×3개월
운영비 (국·도·시비)	4,500		- 월 1,500천원×3개월 - 공과금, 임차료, 프로그램비 등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0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신주에 공중선로로 연결되어 있는 송·배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각 기관(오산시·한국전력공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본 업무협약은 오산시 공유지의 도로점용료 감액과 배전선로 및 도로복구 공사비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협약 체결 전「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업무협약 내용

(1) 주체 : 오산시, 한국전력공사

(2) 시기 : 2020. 7월 예정

(3) 목적 : 한전주 지중화의 안정적 사업 추진

(4) 내용

· 사업비 부담 : (오산시 : 한국전력공사) = (50% : 50%)

· 기타시설물(CCTV, 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등) 선로 지중화·이설 비용 포함

· 배전설비 운영기간동안 점용료 1/2 감면

· 각 기관은 상호 협력하며, 필요한 지원 및 정보제공에 최대한 노력

(5) 업무협약서(안) : 붙임참조

○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대원로(신양APT사거리~오산역환승센터)

· 총사업비 : 14.82억(통신설비 이설비용 미포함,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시 변동)

· 사업일정 : 오산시·한전MOU체결(7월) ↦ 오산시·통신사 협의 및 MOU체결(7월)
↦ 한전, 통신사 실시설계(8월) ↦ 사업비 반영(2021년 본예산)
↦ 착공(2021년 상반기) ↦ 준공(2021년 하반기)

(2) 비용부담 및 개발형태

· 오 산 시 : 설치장소 제공

· 한　　전 :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시행

○ 기대효과

(1)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

・안전사고예방

(2) 시 이미지 개선효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 6월 18일 오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음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1순위인 궐동 지역의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오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중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1순위인 궐동 지역의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 승인 신청 전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함.

○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21년 / 2024년

(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오산시 궐동 새장터마을 일원(궐동 21-3번지 일원)
- 면 적 : 104,272㎡(31,542평)
- 내 용 : 지역자원조사, 마스터플랜 구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 의장 · 부의장 선거

▷ 오산시의회 16대 의 장 : 장인수 의원 (총투표수 5표중 5표)

▷ 오산시의회 17대 부의장 : 김영희 의원 (총투표수 5표중 4표)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영희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0. 8. 25
○ 회 기 : 2020. 9. 2 ~ 9. 11 (10일간)
○ 주요안건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10.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9.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1.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2.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34.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
3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뎌지게 하고 피로감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허술해진 방역경계의 틈으로 코로나19가 침입했고 일부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8월 14일까지 8개월 동안 총 10명의 감염자가 확진되었지만 14일 이후 9월 1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 만에 15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 오산시도 방역에 느슨해진 부분은 없나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8월 16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또한 8월 23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우려스럽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회기로 우리 오산시의회에서는 집행부 실·과장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화면으로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온택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역에 있어 정말 엄중한 시기입니다. 만약 지금 이 위기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일선 보건소와 병의원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공직자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노력하는 의료진과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삶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료진과 공직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료진과 공직자의 헌신과 희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느슨해지고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경계심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것만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길이고 의료진과 공직자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19가 끝날 때 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노력한다면 코로나 19의 극복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8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반기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4만 오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직을 저에게 다시 한 번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여년 흐르는 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우리 자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오산시의회 또한 오산시가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에서 인구 24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지금은 오산시가 지나온 3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 운암뜰 개발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선배 의원님들이 지난 30년간 여야를 떠나 오산시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만큼 저와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부여된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시민의 행복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우리 의원들은 진중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후반기 의회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고 정당이나 정쟁중심이 아닌 시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며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통과 상생을 추구하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도래한 비대면 시대의 특성에 맞춰 시민들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의회 차원의 실시간 방송을 개설해 시민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서 시민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후반기 의회도 언제나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산시의회가 잘 하고 있다면 격려를, 잘못하고 있다면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오산시의회의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2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3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멈춰선 경제의 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결 즉시 빠른 집행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따겁게 내리쬐던 햇빛도 기세가 누그러지고 뜨겁던 폭염도 서서히 물러나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도 계절의 변화는 막지 못하는 듯 합니다.

더위가 물러나듯 코로나19도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맑고 선선한 계절을 맞아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기쁨이, 직장에는 무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2.(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9.3. ~9.10. (8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질의·답변 1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6.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	
	- 제안설명, 의결 17.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8.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3.(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11.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6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4.(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등 26건	
9.5.(토)~ 9.6.(일)	☐ **휴 일**	
9.7.(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3.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8.(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동 소관]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9.(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10.(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11.(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26건 3.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5. 시정에 관한 질문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97,838,569 천원

나. 일반회계 ····· 673,606,767 천원

다. 특별회계 ····· 124,231,802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6,075,943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8,155,859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42,145,287 천원

○ 세 외 수 입 ····· 78,775,202 천원

○ 지방교부세 ····· 70,924,000 천원

○ 조정교부금 ····· 73,400,000 천원

○ 보 조 금 ····· 303,941,702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28,652,378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42,145,287 천원

○ 세 외 수 입 ····· 26,341,102 천원

○ 지방교부세 ····· 70,924,000 천원

○ 조정교부금 ····· 73,200,000 천원

○ 보 조 금 ····· 297,676,918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3,319,46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2,434,100 천원

○ 조 정 교 부 금 ····· 200,000 천원
○ 보 조 금 ····· 6,264,784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5,332,918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712,114,073 천원
○ 재 무 활 동 ····· 14,704,671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1,019,825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594,633,172 천원
○ 재 무 활 동 ····· 12,816,044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6,157,551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17,480,901 천원
○ 재 무 활 동 ····· 1,888,627 천원
○ 행정운영경비 ····· 4,862,274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50건 ····· 512,741,523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9. 10.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헌혈기부문화 확산과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6항).
○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헌혈추진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규칙(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그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현대 사회에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민의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신청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정신건강검진 지원 대상과 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 검진비 환수 및 검진기관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지난 10여 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이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임.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전담인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차별금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오산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허가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회계공무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1일까지로 정함(안 제10조).

○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타 사항을 신설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기타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4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현행 : 만65세 미만 월 3만원, 만65세 이상 월 6만원,
  만80세 이상 월 10만원
- 개정 :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

○ 오산시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 신청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제5항)

○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함(안 부칙시행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보훈수당 인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지급기준별 보훈수당 인상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보훈수당 지급 인상수준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월 지급 인상액을 하향 조정함(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개정안 :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
- 수정안 : 만75세 미만 7만원, 만75세 이상 11만원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보훈수당 등 지급) ① 제8조제4호에 따른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2(보훈수당 등 지급) ① ----------.
1. 보훈수당: 만75세 미만 8만원, 만75세 이상 12만원(별지 제1호서식)	1. 보훈수당: 만75세 미만 7만원, 만75세 이상 11만원(별지 제1호서식)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 **오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대행에 관한 규정 중 시설의 관리는 사업의 대행이 아니라 관리위탁에 해당되며, 또한 그 운영의 대행기관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으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단체 등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기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

□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 배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경고 및 선발취소,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의회기의 게양 방법 중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대한민국국기법」에 맞지 않기에 이를 삭제하고「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제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규정된 공인의 글자체는 획이 복잡하고 구불구불한 '한글 전서체'로 국한되어 일반 시민이 널리 식별하기 어려워, 시민이 보다 알아보기 쉬운 글꼴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인의 글자체 변경(안 제4조제1항)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전서체 ⇒ 한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연가계획 규정 정비(안 제20조제1항)

○ 연가 사용 시 분할 허가 규정 삭제(안 제20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여성보건휴가 규정 삭제(안 제24조제3항)

○ 장기재직휴가 규정 중 1회 최소 사용 일수(5일) 삭제(안 제24조제7항)

○ 상위 근거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제2항 및 안 제24조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오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검토 중불합리한 법정동(오산동·갈곶동·누읍동) 경계가 확인되어, 오산천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 함.

▷ 주요골자

○ 지적재조사사업 오산지구 내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경계 변경·조정 (안 별표)

(1) 누읍동(15필지) 및 갈곶동(28필지) 일부를 오산동으로 편입

(2) 누읍동(6필지) 일부를 갈곶동으로 변경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 등의 신설, 관할구역 내 지번 누락, 불합리한 통·반 경계 조정, 지적공부 확정에 따른 지번 부여 등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앙동 8개통 55개반 조정(안 별표2)
- 지번 폐쇄 및 신설, 누락 지번 반영, 지적공부 확정 반영

○ 대원동 4개통 8개반 조정 및 5개반 신설(안 별표1 및 안 별표2)
- 지번 폐쇄 및 신설, 누락 지번 반영

○ 남촌동 4개통 11개반 조정(안 별표2)
- 불합리한 지번 조정, 누락 지번 반영

○ 신장동 7개통 2개반 조정, 3개반 삭제, 2개반 신설 및 3개통 22개반 신설 (안 별표1 및 안 별표2)
- 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 신축에 따른 통·반 신설
- 신규오피스텔 세대수 증가에 따른 분리, 통별 경계구역 조정

○ 세마동 1개통 1개반 조정 및 5개반 신설(안 별표1 및 안 별표2)
- 넓은 면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반 조정 및 신설

○ 초평동 1개통 1개반 조정 및 1개반 신설(안 별표1 및 안 별표2)
-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반 조정 및 신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안 제4조제1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조문정비(안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 지대 개선)을 적용하기 위하여「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규정 추가 신설 (안 제12조제2항제4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개정(경기도조례 제6554호, 2020. 5. 19.)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급대상자 규정 변경(안 제4조)

·“지급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안 제5조제3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재난과 이에 준하는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구성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정비 (안 제8조 및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문화재단의 임원 체계 및 임명절차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매장터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제7항)

○ 오산문화재단의 임원 체계 및 절차 정비(안 제7조)

○ 임원 직무 규정 정비(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정의 목적 및 출자법인의 사업 범위 등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 시가 출자하는 법인의 목적은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2) 사업범위는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3) 명칭, 사무소 위치 및 세부 사업범위는 정관으로 정함

○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및 주주권 행사 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현금 출자, 설립 자본금의 10분의1이상 ~ 2분의1미만 출자

(2)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주주권 행사

○ 공무원의 출자법인 파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건축법」개정 및「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합동평가지표 관련 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 사항 반영 및 규제 완화 관련 조문 정비

(1)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목적 규정(안 제1조)

(2) 규제완화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3)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규정 정비(안 제24조)

○ 기타 용어의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한 표준조례안을 배포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기준 추가 규정(안 제4조)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된 지원금액 등에 대한 구상권 신설(안 제4조의2)

○ 시장의 과도한 청구비용에 따른 원인제공자의 반환청구권 신설(안 제4조의3)

○ 그 밖의 용어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범위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 친환경차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위한 주차료 면제규정과 시청부설주차장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월 정기 주차차량의 운암공영주차장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규정(1일 1회 2시간) 단서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변경 및 조문 정비(안 제19조)

○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 차량에 한해 운암공영주차장 이용 근거 규정 신설(안 별표 1 제2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주차장 확장 또는 추가 확보 등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청 직원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시청부설주차장과 운암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청부설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으로 인정한다면 운암공영주차장 월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차별이며,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임.

○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별표 1 제2호 중 운암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은 해당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함.

□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표 및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자부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 환경부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상위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11조)

○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 함(안 별표 1)

○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추가 및 상향 조정(안 별표 3)

(1) 생활폐기물 매립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설

(2)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비율 상향 조정

· 과태료 총액의 20% ⇒ 30%

○ 생활쓰레기용 규격봉투 규격 추가 규정(안 별표 5)

○ 불연성폐기물 마대 소형 규격(20ℓ) 및 가격 추가 규정(안 별표 9)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한 가정 육성, 가족관계 증진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12.31.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table>
<tr><td>통합센터설치일자</td><td>2018. 1. 1.</td><td>센터장</td><td>이 병 희</td><td>센터장 상근여부</td><td>상근</td></tr>
<tr><td>센터주소</td><td>오산시 성호대로 83</td><td>연 락 처</td><td colspan="3">031-372-1335 / 031-378-9766</td></tr>
<tr><td rowspan="2">운영형태</td><td rowspan="2">위탁운영</td><td rowspan="2">위탁운영
기관 및 기간</td><td colspan="3">사단법인 나눔과 비움</td></tr>
<tr><td colspan="3">위탁기간 : 2018.1.1. ~ 2020.12.31.</td></tr>
<tr><td>지원예산</td><td>648,294천원
(2020년 예산,국도비포함)</td><td>센터면적</td><td colspan="3">665.46㎡
지상1층(334.71㎡) / 지하1층(330,75㎡)</td></tr>
<tr><td rowspan="6">인력현황
총 164 명
· 상근 21명
· 비상근 143명</td><td>센 터 장</td><td>1명</td><td>취약위기가족지원 담당</td><td colspan="2">1명</td></tr>
<tr><td>운영사업 종사자</td><td>10명</td><td>언어발달지도사</td><td colspan="2">1명</td></tr>
<tr><td>통번역사</td><td>1명</td><td>이중언어코치</td><td colspan="2">1명</td></tr>
<tr><td>아이돌봄사업 전담</td><td>5명</td><td>사회통합 전담인력</td><td colspan="2">1명</td></tr>
<tr><td>방문교육 지도사</td><td>13명</td><td>아이돌보미 활동자</td><td colspan="2">130명</td></tr>
</table>

○ 운영 예산내역 및 사업현황

(1) 예산내역(단위 : 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고
2018년	보조금	예산	497,454,000	323,553,000	76,489,000	97,412,000	
		집행	490,779,270	322,952,560	70,414,910	97,411,800	
	법인전입금	예산	10,000,000	6,600,000	3,400,000	-	
		집행	10,000,000	6,600,000	3,400,000	-	
2019년	보조금	예산	550,978,000	362,953,000	72,778,000	115,247,000	
		집행	542,788,720	360,226,350	71,433,640	111,128,730	
	법인전입금	예산	10,000,000	6,600,000	3,400,000	-	
		집행	10,000,000	6,600,000	3,400,000	-	
2020년 상반기	보조금	예산	648,294,000	451,090,000	94,192,000	103,012,000	
		집행	252,522,990	205,631,610	40,195,210	6,696,170	
	법인전입금	예산	10,000,000	6,400,000	3,600,000	-	
		집행	4,781,000	3,287,800	1,493,200	-	

(2) 사업현황

(가)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사업영역	기 본 사 업	추진계획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아버지역할지원) ·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이중언어환경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 가족상담사업	23개 사업 820회기 6,691명
가족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4개 사업 75회기 1,730명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 가족사랑의날,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10개 사업 61회기 6,290명

(나) 가족(건강가정)관련 별도 예산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1. 취약위기가족지원(국비)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취약·위기 긴급위기가족사례관리	연중
2.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도비)	가족발달주기에 따른 가족건강성 증진교육 제공	5~10월
3. 경기육아나눔터(도비)	이웃 간 돌봄품앗이 확대 육아부담경감 공간 지원	연중
4. 아이돌봄지원사업(국비)	취업부모 양육부담경감, 개별 돌봄파견 서비스제공	연중
5. 오산시아픈아이119사업(시비)	오산시 거주 전염성질병으로 등교 어려운 아동 돌봄서비스	연중

(다) 다문화가족 별도 예산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진시기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국비)	가정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연중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국비)	만12세 이하 전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연중
3.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국비)	입국초기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연중
4.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국비)	가족 내 이중언어사용 활성화로 소통증진 교육	4~12월
5.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국비)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다문화활동가로 참여	6월
6. 특수목적형 한국어 교육운영(국비)	실생활에 유용한 7개과정 실용한국어 교육 지원	4~11월
7. 결혼이민자 한국어(도비)	결혼이민자 0,1~4단계 한국어 집합교육	4~11월
8.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도비)	결혼이민자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일원육성	4~11월
9. 중도입국자녀 한국생활적응지원(도비)	중도입국자녀대상 한국어교육, 문화체험교육	5~10월
10. 다문화다양성 이해교육(도비)	유아, 초등생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지원	4~11월
11. 다문화가족 신문구독 지원(도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연중
12.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도비)	센터 신규회원등록, 어려운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연중
13. 다문화가족 동아리활성화(도비)	동아리모임 지원한 통한 다문화가족 정보교류	4~10월
14. 다문화가족 캠프지원(도비)	온가족이 함께하는 테마별 가족체험 프로그램	10월
15.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 지원(도비)	만4세~10세 다문화가족자녀 한글, 국어교육 제공	6~12월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2021.1.1. ~ 2025.12.31.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다)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라) 위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에서 5년간 매년 센터운영지원 예산액 대비 일정부분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 우리시에서 제시한 위탁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한 법인·단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수탁과 함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
· 수탁운영자는「건강가정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법령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및「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위탁신청 시 약정된 자체부담금이 있을 경우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약정금을 출연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 위탁사무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및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없음
· 보조금 이외의 추가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센터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2) 향후 추진 일정

심사 및 결정	⇒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오산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 결정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 및 단체에 통지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기능·시간제보육·아이사랑 놀이터 운영·보육교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0. 12. 31.로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현황

(1)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 분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 재 지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시설규모	597.84㎡ / 2층 (시간제보육실, 아이사랑놀이터 5호점, 사무실, 상담실 등)
근무인원	7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5, 행정원 1)
사업비(2020년)	440,770천원(시비 100%)

(2) 아이사랑놀이터

호점	소재지	연면적(㎡)	종사자수	사업비(2020년)
1호점	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내	56.4	2명	573,194천원 (시비 100%)
2호점	중앙도서관 1층내	100	2명	
3호점	금암마을 3단지 관리동 2층	142	2명	
4호점	죽미마을 8단지 807동 2층	150	2명	
5호점	오산시 양산로 410번길 30	90	2명	

(3) 장난감대여점

호점	소재지	연면적(㎡)	종사자수	사업비(2020년)
1호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1층	225	2명	159,163천원 (시비 100%)
2호점	세교종합복지타운 1층	136	2명	

○ 예산현황

(1)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용	사업비
합 계		**440,770(시 100)**
운 영 비		368,224
인건비	· 기본급(센터장외6명) ·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286,683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14,014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67,527
사 업 비		72,546
어린이집 지원사업	· 표준보육과정,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과정 컨설팅,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 영유아 문화 체험전	42,232
가정양육 지원사업	· 전문가 상담, 부모교육 · 가족문화공연, 오산천 그림그리기 대회 · 사진 콘테스트	17,494
홍보 및 정보화사업	· 인력뱅크 운영(구인/구직) · 가정양육 정보제공, 어린이집 정보제공 · 보육정보지 발간, 메일링서비스, SNS 등	12,820

(2) 아이사랑놀이터 1~5호점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용	사업비
합 계		**573,194(시 100)**
운 영 비		475,594
인건비	· 기본급(운영요원 10명) ·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383,437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1,500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90,657
사 업 비		97,600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	97,600

(3) 장난감대여점 1~2호점 (단위 : 천원)

사업명	내 용	사업비
합 계		**159,163(시 100)**
운 영 비		159,163
인건비	· 기본급(운영요원 4명) ·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123,057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1,200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34,906

○ 위탁계획

(1)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가) 근 거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운영의 위탁)

(2) 수탁기관 자격 :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해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나) 오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제13조(운영의 위탁)

(4) 위탁조건

(가) 위탁 범위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운영 재원 : 보조금 수입 및 수익사업

(다)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오산시 보육사업 안내,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마)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바) 보조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5) 위탁운영체 선정절차

(가) 관련근거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3조(운영의 위탁)

(나) 선정절차 :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수탁자 공개모집

(다)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대학, 법인·단체

(라) 신청서류 : 위탁운영신청서 및 관련서류

(마) 심의사항 : 센터의 운영능력 등

(바) 선정방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정

(사) 선정결과 : 심사결과 평균 최고득점자 선정 후 결정통지 및 위·수탁 계약체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꽃다리 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66(휴먼시아 8단지 내)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51㎡
위 탁 기 간	2016.11.01. ~ 2020.12.31.(4년 2월)
현 수 탁 자	사단법인 동행연우회(원장 심재선)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30(27)	5	14	15	야간연장형·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8	1	6	-	1	-	야간연장교사 1, 보조교사 1 담임교사 4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14,144
2. 수익자부담금수입	20,400
3. 보조금및지원금	234,317
4. 전입금	-
5. 기부금	-
6. 과년도수입	300
7. 잡수입	430
8. 전년도이월액	11,500
합 계	**381,091**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77,302
2. 운영비	37,123
3. 보육활동비	35,064
4. 수익자부담경비	20,400
5. 과년도지출	2,300
6. 재산조성비	7,100
7. 잡지출	210
8. 예비비	1,592
합 계	**381,091**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시립꽃다리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1)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가) 심의일시 : 2020.7.30.(목)

(나) 심의안건 : 제2020-4호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재위탁 결정

(다) 심의결과 :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운영체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평균점수	89.50
심의결과	재위탁 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92(금암동 세교복지타운 내)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76㎡
위 탁 기 간	2016.6.1. ~ 2020.12.31.(4년 7월)
현 수 탁 자	곽보연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2세	만 3~4세	만 5세	누리장애아	
49(46)	7	15	18	6	야간연장형·장애아통합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원장	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양사	비 고
계	10	1	8	-	1	-	야간연장교사 1, 보조교사 2 담임교사 5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56,168
2. 수익자부담금수입	53,589
3. 보조금및지원금	266,374
4. 전입금	-
5. 기부금	-
6. 과년도수입	-
7. 잡수입	-
8. 전년도이월액	-
합 계	**476,131**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02,742
2. 운영비	48,196
3. 보육활동비	71,604
4. 수익자부담경비	53,599
5. 과년도지출	-
6. 재산조성비	-
7. 잡지출	-
8. 예비비	-
합 계	**476,131**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어린이집집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1)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가) 심의일시 : 2020.7.30.(목)

(나) 심의안건 : 제2020-4호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재위탁 결정

(다) 심의결과 : 위탁운영자 선정

위탁운영체	곽보연
평균점수	90.40
심의결과	재위탁 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및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중독문제 조기 선별·개입·치료·회복 지원 강화 등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12.31.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시 설 명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 치	· 경기동로 59 보건소 2층
현수탁자	· 행복주는의원
현센터장	· 홍종우(행복주는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
조 직	· 15명(센터장1, 팀장1, 팀원13)

○ 위탁운영계획

(1)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

(2) 사업내용

(가) 사업범위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수행

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5.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6.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9.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나) 관련법 및 제반규정 준수

(다) 매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보고와 잔액반납 및 사업보고서 제출

(라) 반기별 사업운영실적 보고 및 평가·분석

· 수탁기관 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

(1)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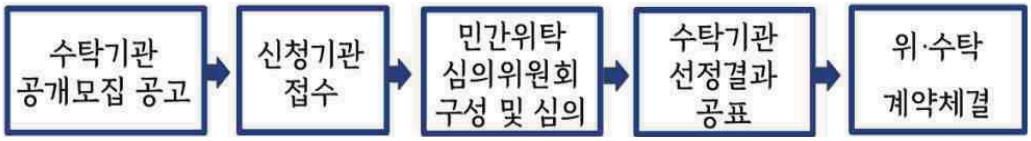

(2) 선정방법: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에 의거 공개 모집 후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

○ 위탁사유

(1)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2) 의료 및 사회복지(수탁기관)·공공서비스(행정기관)간 통합적 연계로 신속한 위기개입과 효율적 예방관리 가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 개소: 1개소

(2) 수립기간: 2020년 ~ 2025년(5년)

- 1단계(2020년~2022년), 2단계(2023년~2025년 이후)

(3) 추정사업비: 1,100백만원

(4)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시설현황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	비고
신설	7	하수도	갈곶동 368번지 일원	315	오고 제2020-98호 (2020.6.11.)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시행	1단계			2단계			비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이후	
계	1,100	–	–	1,100	–	–	–	–	
국 비	0	–	–	–	–	–	–	–	
도 비	0	–	–	–	–	–	–	–	
시 비	1,100	–	–	1,100	–	–	–	–	

– 용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총사업비	기 시행	1단계			2단계			비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이후	
계	1,100	–	–	1,100	–	–	–	–	
공사비	750	–	–	750	–	–	–	–	
보상비	350	–	–	350	–	–	–	–	
기 타	0	–	–	–	–	–	–	–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궐동문화공원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 오산시 궐동 산17-7번지 일원에 비공원시설의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 본 지역은 현재 문화공원 및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설치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사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18년 / 2023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오산시 궐동 산17-7번지 일원
- 면 적 : 158,515㎡(47,970평)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계	**158,515**	**100.0**	
공원시설	114,715	72.4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	43,800	27.6	공동주택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비공원시설 공동주택 건립),
  구역 외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개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11.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대호초등학교 방향 중로 확장만으로는 교통량 분산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동주택에서 법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또는 궐리사 방향으로 우회하거나 공원을 횡단해 수청동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의 추가 확장·개설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기 바람.
2. 공동주택 건축 계획이 963세대이고 주차계획은 1,068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용도지역 변경 후 공동주택 사업 승인 등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 주차장 추가 확대를 사업자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수정을 요구함.

▷ 주요골자

○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9. 2.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9.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명철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0. 10. 13
○ 회 기 : 2020. 10. 20 ~ 10. 26 (7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3.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1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0.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21.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
22. 2021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3.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24.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25.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 등 일부지역은 2단계에 준하여 방역수칙이 적용되지만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모범적인 행동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산시에서도 9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추가 확진자가 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확산세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산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것으로 방역의 모범을 보여준 오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고향방문을 자제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진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석에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조상님 산소도 찾아뵙지 못하며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시민여러분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잠깐 찾아뵙지 못했지만 더 건강한 모습을 오래 뵐 수 있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게 되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스크쓰기 및 손소독 등 생활방역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개인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명한 가을하늘을 보며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과거 이 시기에 우리는 독산성문화제도 하고 독산성마라톤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고 청명한 가을을 즐겼었습니다.

올해는 직접 만나서 축제도 마라톤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산시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2020년 독산성문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독산성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일부라도 해소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과거 인지하지 못하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과거의 우리를 반성하게 합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길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는 동물기원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간들이 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그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해온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이제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었고 경제 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보면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오산시도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방역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별 방역입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방역성과가 있는 국가에서 경제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방역성과 없이는 성공적인 경기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방역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인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산시의회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그날까지 시민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출연계획안 등 동의안 8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산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오산시의 규모와 행정에 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직인지 적정한 인력의 배치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시 대규모 인사에 대한 기대로 직원들이 동요하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바 직원들이 동요치 않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도 꼼꼼한 심의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도 물러가고 강하게 몰아치던 태풍도 지나가고 한가위도 지나 어느덧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들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각종 과일들이 무르익어 우리 마음도 풍성해짐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거센 태풍을 이겨낸 가을곡식처럼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도 알찬 결실이 풍성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20.(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0.21. ~10.25. (5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5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10.20.(화)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9.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0.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 11. 2021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2.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3.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14. 휴회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21.(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5.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22.(목)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10.23.(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10.24.(토)~ 10.25.(일)	□ **휴 일**	
10.26.(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등 동의안 8건 **- 제안설명, 의결** 3.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오산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시장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 및「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나,「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임대료와 인건비 등 그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를 삭제함(안 제3조제2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지원)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금액은 1회 12,000원으로 하고, 매월 최대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운용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중 “중증장애아”를「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변경하고, 재활치료비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장애아동”과 “공공재활치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재활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 재활치료비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u>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u>	<u>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u>중증장애아동</u>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u>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u>을 이용하는 일반치료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u>장애아 가구</u>의 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장애아동</u>--- ---------------------- ---------------------- ---------------------- ---------------------- ---------------------- ---------------------- ---------------------- -- <u>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공재활치료시설</u>-------------- ---------- <u>장애아동 가구</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제 정 안	수 정 안
1. “중증장애아” 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아동”이라 함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을 말한다.
2. “재활치료비”라 함은 각급 재활치료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 공공재활치료시설----------.
3. “전자식바우처시스템” 이라 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지원액을 카드에 기록하여 제공하며 결재와 정산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공공재활치료시설”이라 함은 오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 오산시 ---------- 사람으로 ------.
1.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날까지 연장 지원 가능)	1. 장애아동
2.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2. ---------- 재활치료----------
<신 설>	3.「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인 장애인 및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활치료비는 일반치료비용을 지원하며 지원액 및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 지원 : 1회당 12,000원 2. 1인당 지원 : 매월 최대 8회 지원	제4조(재활치료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검사자료(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발달검사 결과서, 진단서, 발달센터의 발달지연 소견서 중 한 가지)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 ---------- 장애아동 ----------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발달재활서비스가 ---------- ---------- ---------- 공공재활치료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매월 2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①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은 전자식바우처 시스템에 따른다. ② 지원된 재활치료비는 매월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반환된다.	제6조(지원 및 운용방법) 재활치료비의 지급, 결재, 정산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대상자 소유의 카드에 입금하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방법) 공공재활치료시설에서는 매월 재활치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장애인복지법」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u>건강</u>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u>-------------------.

□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조례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모호한 규정 근거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전통시장의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시설물 관리, 설치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대부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 공설시장의 의무적 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 정부 또는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수익발생 시설물의 위탁 운영, 수익금 징수·활용 및 정산, 위탁업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20. 7.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지역화폐의 발행 형태,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 법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기준을 100분의 60으로 정함(안 제8조).

○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개인당 할인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민을 대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분과위원회 심의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의원인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정비 사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57조제4항제1호).

○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오산시의회 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마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1조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 기준인건비 반영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구조정(안 제9조 및 제10조의2)

(1) 신설: 2과(스마트교통안전과, 식품위생과)

(2) 명칭변경

(가) 농식품위생과 → 농축산정책과

(나) 교통과 → 대중교통과

○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0조)

(1) 766명 → 839명 (증 73명)

(가) 집행기관: 749명 → 822명 (증 73명)

(나) 의회사무기구: 17명 → 17명 (증 0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 구현을위해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이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위원의 의무 및 임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2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6. 11. 30.「지방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 근거법령 정비(안 제1조 및 제7조)

(1)「지방재정법」제95조 ⇒「지방회계법」제50조

(2)「지방재정법」제94조 ⇒「지방회계법」제49조

○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안 제2조 및 제4조)

(1) '경리관' ⇒ '재무관'

(2)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운영되는 무상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기준, 무료임대료 및 계약해지사유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입주세대 선정기준 추가 규정(안 제7조제1항)

○ 월 임대료 무료 규정 신설(안 제12조)

○ 임대계약 해지 규정 추가 신설(안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예외 사항 규정(안 제15조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추가 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 및 귀속절차에 해당 법률 추가 규정

(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안 제3조제1호)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안 제4조)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제11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보조금 지원규정 추가 신설(안 제10조제7호)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오산시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및 제4조)
○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안 제17조 및 제18조)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안 제20조)
○ 화학물질모니터단 및 교육·훈련 등(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 및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 (안 제12조제3항)
 · 개방화장실의 미개방, 표지판 철거 및 관리불량 등
○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지원법위 확대 (안 제13조)
 · 편의 위생용품 ⇒ 편의용품, 편의시설, 청소지원 및 관리비 일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과제에 따른 이행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청구인 비용부담 규정 삭제(안 제28조제3항 및 제36조제3호)

○ 수도사용요금의 분할 납부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 수도사용요금의 할인 및 납부유예 규정 추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의 재난 발생 시 요금의 100분의 30 이내 할인 규정 추가(안 제38조제1항제11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영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도요금 납부유예 근거 규정 신설(안 제38조제2항)

○ 요금 체납 후 수도 공급 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0조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07년도 조례 개정이후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의 미반영 사항 반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고,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출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우리시 여건에 맞는 보상금 등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직무발명 관련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 보상금 지급기준 조정 및 지급시기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8조)

○ 소관부서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안 제13조)

○ 기 지급된 보상금 반환의 경우에 대한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 직무발명위원회 심의사항 보완(안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19.10.17.) 및 오산시의회의 의결(19.12.03.)을 득하였으나, 예산 절감 및 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인구밀집에 따른 이용 편의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무상귀속 예정인 근린공원 1 부지로 사업위치가 변경되어 취득대상 토지 면적이 100%감소된 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변경개요 및 관리계획 변경사유

1)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개요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당초</th><th>변경</th></tr>
<tr><td colspan="2" rowspan="2">사업위치</td><td>벌음동 277번지 일원</td><td>가수동 221번지 일원</td></tr>
<tr><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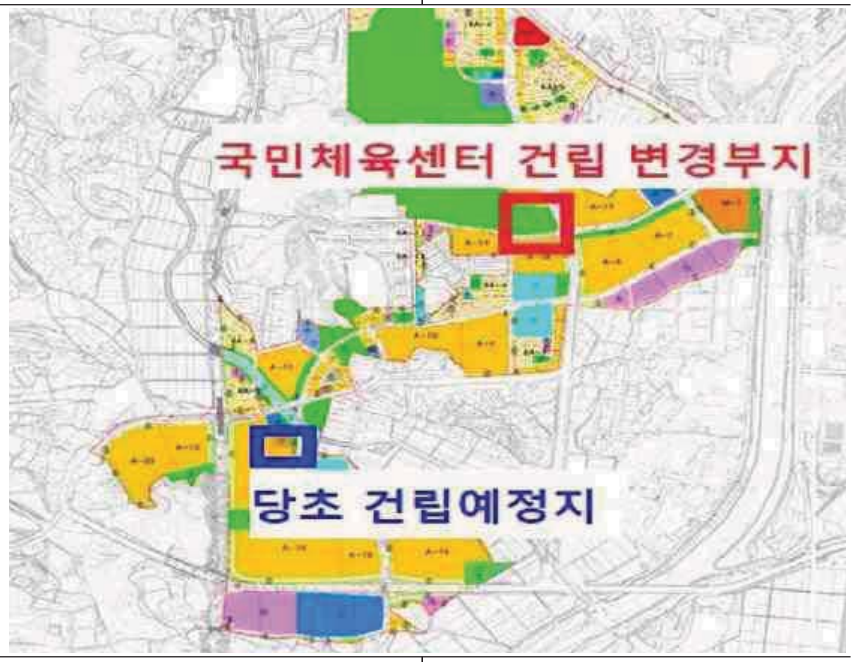
</td></tr>
<tr><td colspan="2">사업비
(기준가격)</td><td>16,900,000천원
- 토지매입: 7,000,000천원
- 건물신축: 9,900,000천원</td><td>12,700,000천원
(건물신축)</td></tr>
<tr><td rowspan="2">취득
대상</td><td>건물</td><td>3,600㎡(지하1층, 지상2층)</td><td>변동사항 없음</td></tr>
<tr><td>토지</td><td>3,500㎡</td><td>0㎡(해당 없음)
공유재산(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1 주차장) 내 건립</td></tr>
</table>

2) 관리계획 변경사유

가) 사업비 절감(토지매입비 70억) 및 접근성·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심부(가수동 221번지 일원)로 건립위치 변경

나) 변경되는 사업위치는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오산시로 무상귀속 될 근린공원1 부지 내로 공유재산으로 취득(매입)하는 토지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감소 (3,500㎡→0㎡(100% 감소)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기확보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2,700,000**		**1,000,000**	**762,000**	**10,938,000**
기 금	3,000,000		1,000,000	262,000	1,738,000
국 비					
도 비					
시 비	9,700,000			500,000	9,200,000
기 타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9. 2. : 오산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수립(방침)
- '19. 2.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문화체육관광부)
- '19. 2.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9. 3. :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기금신청
- '19. 7. :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변경계획 보고(방침)
- '19. 8. ~ '19. 12.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도심사)
- '20. 7. :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변경계획 보고(방침)
- '20. 8. ~ '21. 3. : 설계 공모 및 완료
- '21. 3. ~ '22. 6.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1)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교육부 교과과정인 수영강습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수영장)을 공급하여 아이들이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
2) 건립예정지는 오산시 서남부 중심에 위치하나 도심지와 물리적 거리가 큰 문제로 인해 오산스포츠센터 등 주요체육시설 이용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인근 거주 시민의 만족도 증대·정주성 향상과 더불어 세교2지구 준공 후 시민의 체육활동 증대.

○ 사업대상지 위치도

가수동 221번지 일원 계획도

국민체육센터 변경부지 인근 위성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1	3,500	7,000,000				△1	△3,500	△7,000,000	
		건물	1	3,600	9,900,000	1	3,600	12,700,000			2,800,000	
		기타										
	매입	토지	1	3,500	7,000,000				△1	△3,500	△7,000,000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	3,600	9,900,000	1	3,600	12,700,000			2,80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수량(면적)				
	건물	가수동 221번지 일원	답	3,600	12,700,000	2022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축)	체육관광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8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8호점	'21.1월중	매홀로 42, 108동 101호 (수청대우아파트)	92.1 (28평)	28명	3명	※가정어린이집 센터 전환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전용면적 3.3㎡ 당 아동 1인(보건복지부 지침)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근무 (8시간)	· 월 급여액 : 2,200천원 - 월지급액(1,866,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090천원 - 월지급액(925,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급여(2020년 보건복지부 내시액)

(5) 사업비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원기간	산출내역
합 계	70,560		
인건비 (국·도·시비)	52,560	12개월	- 센터장 : 월 2,200천원×1명×12개월 - 돌봄선생님 : 월 1,090천원×2명×12개월
운영비 (국·도·시비)	18,000		- 월 1,500천원×12개월 - 공과금, 임차료, 프로그램비 등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지정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2020 다함께돌봄사업안내」지정위탁 기준 [보건복지부]

■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예외) 지정위탁 가능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수탁자가 시설 실소유자로부터 공간을 제공받았을 경우 지정위탁 가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145 (2020.1.9.)]

(다)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0 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심사 및 결정	⇒	◈ 장소를 제공한 단체에 지정위탁 방식으로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시 수탁 결정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통지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 요 골 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 17,929천원

1) 출연대상

가)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주요사업

(1) 지방재정 건전화 및 지방재정 불균형해소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2)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2) 출연 내역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오산교육재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21년 오산교육재단 출연(안) : 4,190,617천원

– 출연금 구성내역

총 예 산 액	운영비	사업비
4,330,617천원	2,342,923천원	1,987,694천원

– 출연금 반영내역

총 예 산 액	2021년 출연금	2021년 순세계잉여금
4,330,617천원	**4,190,617천원**	140,000천원

(1) 출연목적

(가) 관내 학생대상 장학사업 운영 및 혁신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

(2) 출연내역 :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 고취,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실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의결내용 : 오산교육재단 출연 4,190,617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 출연을 하기 위해「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먼저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 출연목적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및 시·군의 기금출연 필요함

(2)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3) 출연기관 : 경기도

(4) 2021년도 출연규모 : 82백만원

(5) 출연금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5년 ~ 2019년)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도 출연 요청액	최근 5년간 지원금액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오산시 지원금액	82	81,923	20,579	11,400	9,452	13,599	26,893

※ 2020년 출연액 : 58백만원

(6) 지원한도

자금명	코로나19 운전 자금	특화기업 운전 자금	시설투자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5억원	30억원	15억원	5억원	1억원

※ 유흥업, 부동산, 금융·보험업 등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경기 불황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 출연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먼저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 요 골 자

○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 출연목적

경기 침체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출연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다)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3)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4) 2021년도 출연규모 : 1,000백만원
(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 300백만원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 700백만원
※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200	400	400	500	1,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200	200	200	200	200

(5)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 지원
(6) 지원 한도
(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백만원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재)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화재단 출연금

총 예 산 액	출 연 금	기타 수입액
7,984,842천원	**6,357,899천원**	1,626,943천원

(1) 출연목적
-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의 활동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2) 출연내역 : 오산문화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복지 구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의결내용 : 오산문화재단 출연 6,357,899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1) 21년도 출연금 납부 예정금액 : 10,000천원

(2) 매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출연금 납부' 공문 시달

(도·농복합시 및 군 : 50,000천원, 일반시 : 10,000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함.

○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함.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 받을 것을 촉구함.

○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함.

○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이 참여한 조사 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함.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

오산시의회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규탄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0. 26.

오산시의회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0. 26.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20. 11. 17
○ 회　　기 : 2020. 11. 25 ~ 12. 21 (7일간)
○ 주요안건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11.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4.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30.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3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32.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2020년이 어느덧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배려하며 어려움을 견뎌주신 24만 시민여러분과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파하는 상황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에 합리적 견제와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오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4일 0시부터 코로나 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에는 초록불이 켜졌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방역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산시 재정상황이 어렵겠지만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와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오산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코로나19로 무너지고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해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배려하며 잘 버텨왔습니다. 비록 일부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어려움도 겪었지만 우리는 버티고 이겨내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계속된 방역과 통제로 지치고 느슨해진 마음과 작은 방심이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함께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터널의 끝에 희망이라는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이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3분기 1.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모여 내년 2021년에는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도 나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아직까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께 24만 오산시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3건, 오산시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3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의 경우 지방채 180억을 발행하여 총 7,162억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시어 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타당성 등을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수렴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금년도도 이제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잘 챙기시어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에 준공이 예정된 미니어처 테마파크 및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대형공사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오산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의 최종 목적은 시민의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민의 행복이라는 소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을, 잘하고 있다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한 달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5.(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1.26. ~12.01. (6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오산시장 시정연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개요 설명)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5.(수)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1.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12.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3.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 휴회의 건	
11.26.(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10.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3.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6.(목)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11.27.(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11.28.(토)~ 11.29.(일)	□ **휴 일**	
11.30.(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1.30.(월) 14:00 제2회의실	- **계수조정** 5.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01.(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02.(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동의안 2건	○ 휴회 : 12.03.~12.20. (18일간)
	4. 휴회의 건	
12.03.(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제안설명, 검토보고**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04.(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자치행정국, 보건소]**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5.(토)~ 12.06.(일)	□ **휴 일**	
12.07.(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08.(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9.(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0.(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1.(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환경사업소]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2.(토)~ 12.13.(일)	☐ **휴 일**	
12.14.(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5.(화)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오산교육재단]	
12.16.(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문화국, 시민안전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오산문화재단]	
12.17.(목)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2.18.(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 의결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9.(토)~ 12.20.(일)	☐ **휴 일**	
12.21.(월) 11:00 본회의장	☐ **제3차 본회의** - 의결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의결에 따른 오산시장 인사말씀)	
	☐ **2020년도 의정활동지원 유공공무원 시상**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818,940,709 천원

나. 일반회계 ····· 699,423,633 천원

다. 특별회계 ····· 119,517,076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1,517,943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7,999,133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43,076,287 천원

○ 세 외 수 입 ····· 77,844,303 천원

○ 지방교부세 ····· 70,944,0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80,900,000 천원

○ 보 조 금 ····· 318,488,75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27,687,369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43,076,287 천원

○ 세 외 수 입 ····· 26,026,195 천원

○ 지방교부세 ····· 70,944,0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80,700,000 천원

○ 보 조 금 ····· 315,357,691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3,319,46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1,818,108 천원

○ 조정교부금등 ····· 200,000 천원

○ 보 조 금 ····· 3,131,059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4,367,909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729,990,894 천원
○ 재 무 활 동 ····· 15,020,469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3,871,709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621,390,817 천원
○ 재 무 활 동 ····· 13,531,84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4,500,974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08,657,714 천원
○ 재 무 활 동 ····· 1,488,627 천원
○ 행정운영경비 ····· 9,370,735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64건 ····· 488,578,6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12. 1.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총 괄

가. 운용규모 ····· 5,356,681 천원
나. 수 입
○ 전 입 금 ····· 2,098,158 천원

○ 예 치 금 회 수 ····· 2,778,139 천원
○ 이 자 수 입 ····· 216,924 천원
○ 보 조 금 ····· 130,860 천원
○ 기타(과징금 및 융자금회수) ····· 132,600 천원

다. 지 출

○ 비융자성 사업비(고유목적사업) ····· 1,563,104 천원
○ 융 자 금 ····· 70,000 천원
○ 예 치 금 ····· 3,109,897 천원
○ 예 탁 금 ····· 500,000 천원
○ 기타(반환금, 인력운영비) ····· 113,680 천원

2. 기 금 별(10종)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390,972 천원
나. 보훈복지기금 ····· 55,877 천원
다. 자 활 기 금 ····· 312,715 천원
라. 노인복지기금 ····· 68,159 천원
마. 장애인복지기금 ····· 87,773 천원
바. 지역문화진흥기금 ····· 507,583 천원
사. 농업발전기금 ····· 142,946 천원
아. 식품진흥기금 ····· 755,906 천원
자. 옥외광고발전기금 ····· 286,087 천원
차. 재난관리기금 ····· 3,139,635 천원

※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12. 19.
○ 본회의 심의 : 2020. 12.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16,208,970 천원

나. 일반회계 ····· 605,557,839 천원

다. 특별회계 ····· 110,651,131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95,011,891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5,639,240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49,118,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7,290,072 천원

○ 지방교부세 ····· 72,117,000 천원

○ 조정교부금 ····· 74,500,000 천원

○ 보 조 금 ····· 215,595,390 천원

○ 지 방 채 ····· 18,0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09,588,508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49,118,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2,073,547 천원

○ 지방교부세 ····· 72,117,000 천원

○ 조정교부금 ····· 74,500,000 천원

○ 보 조 금 ····· 212,061,792 천원

○ 지 방 채 ····· 15,5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0,187,50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5,216,525 천원

○ 보 조 금 ····· 3,533,598 천원

○ 지 방 채 ····· 2,5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49,401,008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80,238,257 천원

○ 재 무 활 동 ····· 7,449,98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28,520,728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523,319,020 천원

○ 재 무 활 동 ····· 5,636,154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6,602,665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156,919,237 천원

○ 재 무 활 동 ····· 1,813,831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1,918,063 천원

4. 계속사업

○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54건 ····· 443,330,6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12. 20.

○ 본회의 심의 : 2020. 12.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규정함(안 제2조).

○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을 규정함(안 제3조).

○ 지회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지회 회원의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5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용어를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개정함(안 제명).
○ 용어의 정의 중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변경하고, 동식물, 광물 등 지질학적, 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
○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부서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및 제4조).
○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별표 1, 별표 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광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문화·관광·아동친화 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안 제3조).

○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청소년 칭찬조례」의 주요내용이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과 중복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폐지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오산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하여 오산 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체험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 예술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예술촌 입주작가의 선정기준과 입주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입주작가의 역할과 입주작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총괄·지원·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재난상황의 공유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피스텔 등 1인 가구가 다수인 지역의 통장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원활한 통장 모집을 도모하고, 신축 오피스텔 등 전입자 증가에 따른 통 분리 및 공동주택 지번 부여 등 통·반 신설 및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오피스텔 지역 등의 통장 자격 기준 확대(안 제5조제2항)

○ 신장동 2개통 9개반 조정, 2개반 신설 및 2개통 12개반 신설(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 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의 범위를 본인에서 유족으로 확대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이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수수료면제 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7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규정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갱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항제5호)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항제6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회복지기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신규 사업 신설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의2)

○ 보훈복지기금의 용도 추가 신설(안 제4조)

· 6월 호국보훈의 달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과 선양을 다하고자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금의 이자수입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며, 다른 단체·계층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임.

○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보훈복지기금의 용도에 추가 신설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함(안 제4조제2항제1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② ----------.
1. 보훈복지기금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바.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	<삭 제>
사. (생 략)	바. (개정안 사목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상위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대표협의체 당연직위원 규정 정비(안 제4조제3항)
○ 상위법에 따라 실무협의체 구성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 실무분과 위원 구성 규정 정비(안 제6조)
○ 동 협의체 규정 정비(안 제7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복지위원 규정 삭제(안 제8조)
○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안 제12조)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설치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3조)
○ 기타 용어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제3항)

· 2020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안 제26조, 제36조제5호,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정비(안 제36조제3호)

· “오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중복 조항 삭제

○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개최 시기 정비(안 제40조)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그 밖의 조문 정비

(1) “양성평등”용어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함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향후 준공예정인 창업지원시설 T.E.G. 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창업지원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체력인증센터를 오산스포츠센터로 이전하여 시청사 내 공간 확보 및 시민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체력인증세터 소재지 변경(안 제3조)

· 성호대로 141 ⇒ 경기동로 33

○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9조제2항제2호)

· 체육·생활체육회 ⇒ 체육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기금 목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함.

▷ **주요골자**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의 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의 용도 재정비(안 제6조)

○ 그 밖의 조문 정비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소하천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미부과 소하천 점용료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

– 미부과 하천 점용료 기준을 5백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소액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함

○ 소하천의 불법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 상향(안 제2조제5항)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자에게 점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는 규정을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 개정(안 제3조)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개정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 등은 전액 감면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함

○ 점용료 등의 조정 기준 신설(안 제3조2)

–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연구용역의 억제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과제선정단계의 유사·중복 검증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용역추진 부서의 장이 용역의 중복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정함

○ 위원회 기능에 용역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 용역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연구용역실명제 도입(안 제13조)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제재방안 규정(안 제13조의2)
○ 용역결과 공개 규정(안 제13조의3)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심의사항 추가 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 그 밖의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관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우리 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지명 사용을 권장하여 오산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지명'의 범위(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안 제4조)
(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 지역실정의 부합 여부
(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시민들의 혼동 가능성

(3)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
(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등의 반영 여부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수청동 635-2번지 인근은 원룸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별도 공영주차장이 없어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간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주차용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매입	토지	**❑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배경: 수청동 635-2번지 인근은 원룸 및 상가 밀집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0. 12. ~ 2021. 4. ◦위 치: 수청동 635-2번지 ◦규 모: 부지면적 1,878㎡(주차면수 60면) ◦사 업 비: 2,400,000천원	시민안전국 교통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기 확보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계	**2,400,000**	**700,000**	1,600,000	100,000	-
시비	1,700,000	-	1,600,000	100,000	-
기타 (공공기여금)	700,000	700,000	-	-	-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2018. 4. : 오산 세교지구 내 주차용지 공공기여 협약서 체결

(2) 2019. 10. : 공공기여금 납입(700백만원)

(3) 2020. 12. : 수청동 635-2(A=1,878㎡) 토지 매입

(4) 2021. 4. : 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면수 60면)

○ 기대효과

- 원룸 및 상가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민의 주차환경 개선

○ 사업대상지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1	1,878	2,400,000	
		건물				
		기타				
	매입	토지	1	1,878	2,400,000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

회계명 :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1,878	2,400,000			
1	취득	토지 (매입)	수청동 635-2번지	주차장	1,878	2,400,000	2020	공영주차장 조성 (매입)	교통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달의 최적 서식지로 다시 태어난 오산천변 가수동 258-3번지 일원 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부지 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를 건립하여 수달보존연구와 서식지 보호 관리시스템 및 수달 치료·연구 허브기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수달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수달 보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연체험의 장 및 생태관광 명소를 구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 추진배경: 천연기념물인 수달보호 및 서식지를 확대하고, 오산천을 기반으로 자연·인간·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심관광지 조성으로 다양한 생태컨텐츠 제공 ○ 사업기간: 2020. 4. ~ 2023. 6. ○ 위 치: 가수동 258-3번지 일원 (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 내) ○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000㎡, 부지면적 5,490㎡) ○ 사 업 비: 6,500,000천원	환경 사업소 생태 하천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 계	**6,500,000**	**-**	**300,000**	3,100,000	3,100,000
국 비	4,550,000	-	210,000	2,170,000	2,170,000
도 비	975,000	-	45,000	465,000	465,000
시 비	975,000	-	45,000	465,000	465,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2018. 4. : 오산천 수달서식지 복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2018. 04. : 수달 서식지 복원을 위한 6개 지자체 MOU 협약체결

(3) 2019. 12. : 경기남부지역 수달 모니터링 및 보호방안 학술연구 사업완료

(4) 2020. 04. ~ 09. :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5) 2020. 09. :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6) 2020.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7) 2020.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8) 2021. 03.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9) 2022. 04. ~ 2023. 03. : 공사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수도권 내 수달보호센터 건립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 보호 및 서식지 확대
- 수달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및 미래세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 마련
-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심 관광지 개발

○ 사업대상지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2,000	6,5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관리계획)

회계명 : 교통사업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주관 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2,000	6,500,000			
1	취득	건물 (신축)	가수동 258-3번지 외 23필지	-	2,000	6,500,000	2021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신축)	생태 하천과
				이	하	여	백		

※ 추정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총사업비로 산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2021년은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차로써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75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4기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 작성주체 : 오산시장

○ 작성기준 : 매년

○ 주요내용

(1)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및 특징·방향

(2)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3) 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4) 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

(5)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11. 25.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제4절 2021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상복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1. 1. 18
○ 회 기 : 2021. 1. 25 ~ 2. 3 (10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관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3.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9.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올해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하얀 소는 신비롭고 상서로운 동물로 힘과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직함과 근면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021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직한 소처럼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정말 우리에게 암흑기와 같은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한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이슈를 코로나 감염증이 차지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아직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3차 대유행의 큰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곧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제 코로나19와의 사투도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모범적인 방역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해준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위기를 견뎌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작년 경자년 한해,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지원 예산의 확대 편성을 의결하였으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의 장기화 및 반복된 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더불어 최근 경기도가 보편적 지원형태의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바 우리 오산시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더 피해가 크고 좀 더 어려운 곳들을 선정해서 핀셋지원 방식의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도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일자 인사발령으로 오산시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어 많은 공직자가 승진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산시의 성장에 따른 조직개편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위치도 바뀌고 부서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도 많이 바뀜에 따라 민원인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은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혼선 및 민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과 민원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의회일정의 첫 시작인 제255회 임시회의 첫 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규칙안 등 6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건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오산시의 2021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잘 준비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신 후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원안 그대로 확정해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시정계획이 타당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질책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제시와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도 해주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지난 한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소통하지 못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들과 소통해 나갔다고 자부합니다.

오산시의회가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축년 올해의 오산시의회 목표는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의회'의 완성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종속된 행정에서 우리는 분권 및 자치를 이루고자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작은 과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과 국가가 협력관계임을 명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제 더 많은 분권을 이루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와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시민여러분만을 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남은기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시민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봉사하며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오산시의회는 호랑이의 눈으로 시의 행정을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오산시의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서로에게 웃음을 먼저 보이면 행복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24만 시민 여러분 모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5.(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1.26. ~2.2. (8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5분 자유발언** 1. 제25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6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제안설명, 질의·답변 7.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8.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6.(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관리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6건	
1.27.(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6건	
1.28.(목)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29.(금)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오산문화재단	
1.30.(토)~ 1.31.(일)	☐ **휴 일**	
2.1.(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시민안전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2.2.(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2.3.(수)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6건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안설명, 의결** 4.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심의중인 안건과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 및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연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함(안 제28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 기금의 용도는 부지·건물 매입비, 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함(안 제15조).

○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안 별표)

・“발안로 1308-9” ⇒ “초평중앙로 77”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입법기준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규정 중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상위법령의 단순 재 기재 사항 삭제(안 제11조)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입법례에 따른 조문 정리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전문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8명이상 11명이하”에서 “13명 이내”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상 11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 13명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보조금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간 연장
(안 제4조제4항제1호)

· 3년 ⇒ 5년

○ 보조금 결정 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및 별표)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정비
(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및 제9조)
(1) 민간위원 확대: 공무원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초과 불가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의 연임규정 한 차례로 제한
(4) 그 밖의 입법례에 따른 조문 정리
○ 보조금 사용 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쟁입찰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감염병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마스크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마스크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개최 규정 변경(안 제16조제1항)
・'분기' ⇒ '반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18년 제정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임원 및 조직에 대한 조문 정비(제4~5조)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조항 정비(제11조)

○ 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납입 및 사용에 대한 조항 마련(제12조)

○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제13조)

○ 운영세칙 조항 정비(제15조)

○ 별지서식 가입신청서 및 위임장 추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 개소 : 1개소

(2) 수립기간 : 2021년 ~ 2026년(5년)

- 1단계(2021년~2023년), 2단계(2024년~2026년 이후)

(3) 추정사업비 : 15,217백만원

(4)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시설현황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	비고
신설	10	수도 공급설비	부산동 산5번지 일원	9,262	오고 제2021-1호 (2021.1.5.)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시행	1단계			2단계			비고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이후	
계	**15,217**	**1,056**	**2,450**	**11,711**	**–**	**–**	**–**	**–**	
국 비	0	–	–	–	–	–	–	–	
도 비	0	–	–	–	–	–	–	–	
시 비	15,217	1,056	2,450	11,711	–	–	–	–	

– 용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총 사업비	기 시행	1단계			2단계			비 고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이후	
계	**15,217**	**1,056**	**2,450**	**11,711**	**–**	**–**	**–**	**–**	
공사비	9,711	–	–	9,711					
보상비	4,000	–	2,000	2,000					
기 타	1,506	1,056	450	–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수도공급시설(배수지) 결정 시에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조성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고,
2. 부산동 수도공급시설은 설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열 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 ~ 고덕 열수송관 공사 중 전체 사업구간의 27%에 해당하는 5.2km 구간이 오산시를 관통하지만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오산시와 어떠한 협의조차 없었고, 해당 사업이 오산시민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열수송관이 오산시 도심구간 주거단지를 관통함에 따라 공사로 인해 오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과 불안까지 조성되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통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발의함.

▷ 주요골자

○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동탄 ~ 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한 동탄 ~ 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 변경 검토를 요구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산 시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없는 동탄 ~ 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이 필요하다면, 오산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오산시를 비롯한 오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구함.

▷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5년부터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480MW급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이유로 2018년 1월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포기하고 동탄2 열병합발전소 및 소각열 등 인근 지역의 잉여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고시하였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동탄2 열병합발전소에서 평택고덕지구까지 총 19.3㎞의

열수송관 공사구간 중 오산시를 관통하는 구간은 지방도317호선(동부대로) 5.2㎞에 이르고, 900mm관로 2열을 매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사업구간의 공정률은 48%에 이르고 있으며, 오산시 구간 중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2020년 12월 공사를 착수했지만, 나머지 오산시 구간은 2020년 11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산시에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을 했으나 오산시에서 허가하지 않자 2020년 12월 30일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오산시에 의견을 묻거나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오산시를 관통하는 5.2㎞ 구간은 상업지역과 구 도심을 제외하고도 운암지구를 비롯한 12개의 아파트단지에 9,706세대, 27,360명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한복판 주거지역이고, 시민들은 열수송관 관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염려하고 있으며,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 간 상호 갈등의 양상과 집단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열수송관 공사는 평택시민을 위한 사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산 시민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다. 지역의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열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평택시 역시 대단위 개발로 열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 할 수 있음에도, 이미 계획하였던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취소했으며, 고덕지구 바로 인근 평택ES와 고덕지구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삼영이앤이(용인시)에서 전량 열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멀리 화성시 동탄2 열병합발전소와 오산시에 위치한 DS파워까지 19.3km나 수송관을 매설해서 열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장거리 수송관을 통한 열에너지 공급은 열손실 등으로 비용 대비 사업성 역시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된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을

반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한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 변경을 검토하라.

하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산 시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없는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이 필요하다면, 오산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오산시를 비롯한 오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2021. 2. 3.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2. 3.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성길용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1. 2. 3
○ 회 기 : 2021. 2. 8 (1일)
○ 주요안건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3차 대유행의 불씨가 퍼지지 않도록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14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에도 가족을 찾아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모두가 더욱 건강하게 만나기 위한 예방조치라 생각하고 이번 명절의 만남은 잠시만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의 반복된 유행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등 코로나 취약계층에게는 버텨내기 어려운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오산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은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원인들 한 분 한 분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자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는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긴급하게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뜻을 같이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오산시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재난지원금이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단비가 되어 버틸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마중물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이 곧 오산시의 행복이 될 것임을 알기에 더욱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설, 여러분 모든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2.8.(월) 10: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 **정회**	
11: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13:00 본회의장	□ **제1차 본회의** - **의결**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21,008,970 천원

나. 일반회계 ····· 610,357,839 천원

다. 특별회계 ····· 110,651,131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95,011,891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5,639,240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50,2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77,290,072 천원

○ 지방교부세 ····· 72,117,0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75,177,000 천원

○ 보 조 금 ····· 215,595,390 천원

○ 지 방 채 ····· 18,000,00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12,588,508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50,2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2,073,547 천원

○ 지방교부세 ····· 72,117,000 천원

○ 조정교부금등 ····· 75,177,000 천원

○ 보 조 금 ····· 212,061,792 천원

○ 지 방 채 ····· 15,500,00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3,187,50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5,216,525 천원

○ 보 조 금 ····· 3,533,598 천원

○ 지 방 채 ····· 2,500,00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49,401,008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85,038,257 천원

○ 재 무 활 동 ····· 7,449,98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28,520,728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528,119,020 천원

○ 재 무 활 동 ····· 5,636,154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6,602,665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56,919,237 천원

○ 재 무 활 동 ····· 1,813,831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1,918,063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2. 8.

○ 본회의 심의 : 2021. 2. 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으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총 괄

가. 운용규모 ····· 5,390,972 천원

나. 수입계획

○ 예 수 금 수 입 ····· 3,500,000 천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 500,000천원 (기존)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3,000,000천원 (추가)

○ 예 탁 금 원 금 회 수 ····· 1,687,500 천원

○ 예 탁 금 이 자 ····· 203,472 천원

다. 지 출 계 획

○ 예 탁 금 ····· 5,187,500 천원

– 예 수 금 수 입 ····· 3,500,000천원 (500,000천원 → 3,500,000천원)

– 예탁금원금회수 ····· 1,688,000천원

○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 203,472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2. 8.

○ 본회의 심의 : 2021. 2. 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성혁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1. 2. 26
○ 회 기 : 2021. 3. 8 ~ 3. 12 (5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2.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듯한데 벌써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따스함이 느껴지는걸 보니 정말 봄이 시작된 듯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도 밝고 희망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

되었고 코로나19의 확산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7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했던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견뎌주신 시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도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산시의회는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제2차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협의를 통해 긴급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온라인 접수에 이어 3월부터 오프라인 접수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분들이 없는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관련하여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이어서 7월부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혼란 없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민 백신접종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는 동의안 및 의견제시 등 3건과 조례안 등 9건, 그리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잘 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 하나하나가 시정발전 및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성심성의껏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해 사전 충분한 설명과 자료 준비로 의원님들의 심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코로나 백신의 접종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2월 수출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이겨낼 것을 믿었고 이제 곧 코로나를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걸 잃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내 주변 사람의 소중함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의 소중함을 배운 것입니다.

인류는 환경을 파괴하며 질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인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키기 위해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봅시다.

작은 실천이 분명 큰 변화를 가져 올 거라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사투 및 시련의 시간을 서로에게 힘이 되어 극복합시다.

오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있기에 존재함을 잊지 않고 시민 여러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봄 햇살의 따스함이 여러분 마음에도 가득하기 바라며, 24만 오산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8.(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3.9. ~3.11. (3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7분 자유발언** 1. 제25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7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6.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7.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제안설명, 질의·답변** 9.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0.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1.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9.(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9.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10.(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3.11.(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3.12.(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3.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외에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과 취약한 근로여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대상을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규정함(안 제4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범위를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로 규정함(안 제4조).

○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8조).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과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조례의 내용이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오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폐지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단순 반복해 자치법규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서 위탁사무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감사를 담당부서의 지도·점검으로 변경함(안 제18조).

○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5장 제목,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50조제3항).

○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은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오산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40조제1항).

○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2020.12.11.)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는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 중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50조제3항).

○ 준용규정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개정(2020.9.28.)되어 개정된 명칭인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5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조례 제정(2015. 11. 16.) 이후 「아동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조례로 만들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에 "아동영향평가"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구체화함(안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조성 원칙”으로 변경하고,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기본원칙의 내용을 인용해 개정함(안 제4조).

○ 아동친화동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성계획의 내용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신설함(안 제5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예산의 확보 및 분석, 권리 보장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보장, 안전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함(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부위원장 : 부시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자격에 관련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종사자 및 아동 대표 추가
- 위촉직 위원 임기 : 3년 / 연임(제한없음)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 신설
- 위원회 정기회의 : 연 1회 개최 → 연 2회 개최

○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부칙 제2조),

- 종전의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를 “어린이·청소년 의회(아동의회)”로 통합
- 의회구성 :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 각 40명 이내 → 100명 이내
- 기능강화 : 아동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아동의회 기획사업 추진, 행사참여 신설
- 상임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시의회의 지원, 운영계획수립 삭제
- 포상 관련 근거 신설

○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개정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옴부즈퍼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완하고, 실효성 없는 위촉 제한에 관한 내용 삭제
- 임기 : 2년 / 한 차례만 연임 → 2년 / 연임(제한없음)
-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 명시(신설)

○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44조부터 46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규정(안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기준에 대하여 시설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연결도로 폭 등을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 추가 확보.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시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 참여 제도로써, 안전보안관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및 제31조)

○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및 제34조)

○ 안전보안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안전보안관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관련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여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자원화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21. 3. 11.

○ 심 의 결 과 : 부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시설의 위탁에 있어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하여 구성된「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참여에 따라 설립절차인 운영규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고시를 거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

▷ **주요골자**

○ 협의회 명칭(제1조)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 협의회 목적 명시(제3조) :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 협의회 기능(제4조)

(1)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협의회 구성(제5조) “별표”

○ 임원 및 임무(제6조~8조)

○ 회의 및 의결(제9조~13조)

○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제14조~16조)

○ 사무국 설치 및 업무(제17조~18조)

○ 경비부담,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사무인수인계, 규약개정(제19조~2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 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현재 협의회를 운영함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고문’, ‘수석부회장’ 직책 추가(제5조)

○ 임원 임기 연장(제6조) : 1년 → 2년

○ 정기총회 횟수 조정(제7조) : 상·하반기(연 2회) → 연 1회

○ 사무국 지위 승격(제14조 및 제15조) : 사무국→ 사무처

○ 특별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제1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에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을 목적으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본 지역은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상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 : 도시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30% 이하

○ 사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구역지정일 ~ 2024년

(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
- 면　적 : 601,055㎡(182천평)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12.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립목적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음.

○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2021 ~ 2025년(5년간)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

○ 주요내용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및 기준인건비 현황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3. 8.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제2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한은경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1. 4. 12
○ 회 기 : 2021. 4. 19 ~ 4. 30 (12일간)
○ 주요안건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3.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코로나 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1. 오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2.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5.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144호)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27.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2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오늘은 4.19혁명이 일어난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년 전 우리 선배들은 독재정권의 총칼에 대항하여 고귀한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고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과실은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 더 오랜 시간과 더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4월 민주혁명 희생자분들에게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지금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의 미얀마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로 미얀마의 무고한 시민들이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군부에 수많은 시민들이 저항하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보는듯한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며 미얀마 시민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수차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겨냈듯이 미얀마도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1991년 4월 15일은 오산시의회 초대 의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또한 1961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다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만 9,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시작한 오산시의회가 이제는 24만의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외형이 커지는 동안 오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오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서른여섯 분의 선배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소명입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권한과 더 많은 재정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치단체장과 시의원, 그리고 시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바탕으로 권위는 있되 권위적이지 않도록 우리 의원 스스로도 그 누구와도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임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의회는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자치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1건 및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기타 안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며, 또한 오산시 행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하시는 안건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 여러분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소통으로 의원님들의 심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라온 만큼 안건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증가하며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 29일부터는 오산스포츠센터에 백신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우리시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도 일반시민에 대한 백신접종의 시작을 보며 저는 코로나 극복이란 희망을 마음속에 품어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고 한파가 몰아쳐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고 꽃은 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까지 오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19.(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4.20. ~4.29. (10일간)
	□ **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제25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1. '코로나 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2. 오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3.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6.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설명, 질의·답변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144호)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 제안설명, 의결 18.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19.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144호) 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20.(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6.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4.21.(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4.22.(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0:30 제2회의실	□ **안건 협의(행정사무감사계획)**	
4.23.(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24.(토)~ 4.25.(일)	□ **휴 일**	
4.26.(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3.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27.(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동 소관]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4.28.(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4.29.(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4.30.(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 '코로나 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144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45,854,488 천원

나. 일반회계 ····· 633,245,521 천원

다. 특별회계 ····· 112,608,967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96,369,298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6,239,669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50,2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0,606,997 천원

○ 지방교부세 ····· 72,177,000 천원

○ 조정교부금 ····· 75,177,000 천원

○ 보 조 금 ····· 225,099,793 천원

○ 지 방 채 ····· 22,9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19,652,698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50,241,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5,390,472 천원

○ 지방교부세 ····· 72,177,000 천원

○ 조정교부금 ····· 75,177,000 천원

○ 보 조 금 ····· 221,518,195 천원

○ 지 방 채 ····· 20,4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8,341,854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5,216,525 천원

○ 보 조 금 ····· 3,581,598 천원

○ 지 방 채 ····· 2,5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1,310,844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13,091,002 천원

○ 재 무 활 동 ····· 15,481,119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17,282,367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551,616,265 천원

○ 재 무 활 동 ····· 10,115,119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1,514,137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정 책 사 업 ····· 61,474,737 천원

○ 재 무 활 동 ····· 5,366,00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45,768,230 천원

4. 계속사업

○ 시청사 별관건립 등 57건 ····· 474,125,6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4. 29.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액	증액	
총 계				**745,854,488**	**24,845,518**	**-**	**-**	**745,854,488**
일반회계	소 계			633,245,521	22,887,682	-	-	633,245,521
	지방세수입			150,241,000	0	-	-	150,241,000
	세외수입			25,390,472	3,316,925	-	-	25,390,472
	지방교부세			72,177,000	60,000	-	-	72,177,000
	조정교부금등			75,177,000	0	-	-	75,177,000
	보조금			221,518,195	9,456,403	-	-	221,518,195
	지방채			20,400,000	4,900,000			20,4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341,854	5,154,354	-	-	68,341,854
특별회계	소 계			112,608,967	1,957,836	-	-	112,608,967
	공기업	소 계		96,369,298	1,357,407	-	-	96,369,298
		상수도	소 계	32,148,226	1,357,407	-	-	32,148,226
			사업수익	20,040,819	0	-	-	20,040,819
			자본적수입	12,107,407	1,357,407	-	-	12,107,407
		하수도	소 계	64,221,072	0	-	-	64,221,072
			사업수익	26,379,072	0	-	-	26,379,072
			자본적수입	37,842,000	0	-	-	37,842,000
	기타	소 계		16,239,669	600,429	-	-	16,239,669
		세외수입		7,375,131	0	-	-	7,375,131
		보조금		613,098	48,000	-	-	613,098
		지방채		2,500,000	0	-	-	2,50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751,440	552,429	-	-	5,751,44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9종)				**745,854,488**	**24,845,518**	**△104,000**	**104,000**	**745,854,488**
일반회계(1종)				633,245,521	22,887,682	△104,000	104,000	633,245,521
특별회계	소 계(8종)			112,608,967	1,957,836	-	-	112,608,967
	공기업	소 계(2종)		96,369,298	1,357,407	-	-	96,369,298
		상수도	소 계	32,148,226	1,357,407	-	-	32,148,226
			사 업 비 용	23,863,308	1,363,932	-	-	23,863,308
			자본적지출	8,284,918	△6,525	-	-	8,284,918
		하수도	소 계	64,221,072	0	-	-	64,221,072
			사 업 비 용	47,944,472	△703,000	-	-	47,944,472
			자본적지출	16,276,600	703,000	-	-	16,276,600
	기타	소계(6종)		16,239,669	600,429	-	-	16,239,669
		교통사업특별회계		13,721,030	584,361	-	-	13,721,03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639,258	0	-	-	1,639,258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61,271	143	-	-	461,271
		도시개발특별회계		79,691	0	-	-	79,691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55,094	0	-	-	55,094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283,325	15,925	-	-	283,325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633,245,521**	**22,887,682**	**△104,000**	**104,000**	**633,245,521**
의회사무과	2,308,372	77,400	-	-	2,308,372
홍보담당관	4,699,147	-197,500	-	-	4,699,147
감사담당관	185,230	-13,960	-	-	185,230
기획예산담당관	23,086,360	1,892,811	△82,000	-	23,086,360
자치행정과	72,789,643	-4,995,939	-	-	72,789,643
세정과	793,743	-7,952	-	-	793,743
징수과	1,167,453	-21,980	-	-	1,167,453
회계과	6,517,631	268,500	-	-	6,517,631
민원여권과	693,976	40,234	-	-	693,976
희망복지과	24,536,686	480,186	-	-	24,536,686
노인장애인과	90,942,432	-540,945	-	-	90,942,432
가족보육과	99,212,436	3,341,229	-	-	99,212,436
아동청소년과	31,211,482	65,705	-	-	31,211,482
평생교육과	26,928,207	-1,101,286	-	-	26,928,207
일자리정책과	16,583,137	2,148,725	-	-	16,583,137
지역경제과	14,565,163	1,536,587	-	-	14,565,163
문화예술과	12,388,546	-430,606	-	-	12,388,546
체육관광과	18,778,492	6,980,213	△22,000	-	18,778,492
농축산정책과	6,466,107	1,105,946	-	-	6,466,107
도시정책과	202,146	4,000	-	-	202,146
미래도시개발과	5,953,842	1,715,600	-	-	5,953,842
건축과	936,841	-47,889	-	-	936,841
주택과	14,804,575	2,647,256	-	-	14,804,575
토지정보과	541,482	-7,692	-	-	541,482
안전정책과	4,140,882	18,102	-	-	4,140,882
대중교통과	22,022,405	817,374	-	-	22,022,405
도로과	16,507,465	1,121,374	-	100,000	16,507,465
정보통신과	3,749,965	-243,360	-	-	3,749,965
스마트교통안전과	7,205,370	1,236,028			7,205,370
보건행정과	6,434,268	252,578	-	-	6,434,268
건강증진과	10,227,219	-145,599	-	-	10,227,219
식품위생과	869,538	-93,730			869,538
환경과	17,664,513	2,065,997	-	4,000	17,664,513
청소자원과	33,709,495	665,087	-	-	33,709,495
수도과	0	0	-	-	0
하수과	5,981,000	2,000,000	-	-	5,981,000
생태하천과	2,675,838	177,390	-	-	2,675,838
공원녹지과	14,968,298	197,134	-	-	14,968,298
중앙도서관	6,348,961	-174,000	-	-	6,348,961
차량등록사업소	32,948	0	-	-	32,948
중앙동행정복지센터	769,310	37,482	-	-	769,310
대원동행정복지센터	1,218,368	-39,460	-	-	1,218,368
남촌동행정복지센터	453,008	-29,150	-	-	453,008
신장동행정복지센터	891,509	64,254	-	-	891,509
세마동행정복지센터	540,276	-3,392	-	-	540,276
초평동행정복지센터	541,756	24,930	-	-	541,756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특별회계(9종)			**112,608,967**	**1,957,836**	**-**	**-**	**112,608,967**
공기업 특별회계(2종)			96,369,298	1,357,407	-	-	96,369,298
	상수도 특별회계(수도과)		32,148,226	1,357,407	-	-	32,148,226
	하수도 특별회계(하수과)		64,221,072	0	-	-	64,221,072
기타 특별회계 (7종)			16,239,669	600,429	-	-	16,239,669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9,040,709	481,121	-	-	9,040,709
		스마트교통안전과	3,805,562	104,740	-	-	3,805,562
		차량등록사업소	874,759	-1,500	-	-	874,75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희망복지과)		1,639,258	0	-	-	1,639,258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도시정책과)		461,271	143	-	-	461,271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정책과)		79,691	0	-	-	79,691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환경과)		55,094	0	-	-	55,094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지역경제과)		283,325	15,925	-	-	283,325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세 입 : 해당없음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 업 명	제 출 예 산 액	추 경 요 구 액	수 정 액		수 정 예 산 액
						감 액	증 액	
합 계				**918,000**	**△722,000**	**△104,000**	**104,000**	**918,000**
기 획 예 산 담당관	예비비	801-01 일반 예비비	◎ 일반예비비	860,000	△640,000	△82,000	-	778,000
체 육 관광과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207-01 연구 용역비	◎ 오산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건립검토 용역(신규)	22,000	22,000	△22,000	-	0
도로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401-01 시설비	◎ 보도턱 낮춤사업	0	△100,000	-	100,000	100,000
환경과	공중 화장실 관리	201-02 공공 운영비	◎ 시설장비유지비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비	36,000	△4,000	-	4,000	40,000

○ 기타특별회계 : 해당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해당없음

○ 오산교육재단 : 해당없음

○ 오산문화재단 : 해당없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보훈복지기금) 변경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폐지기금 조성금 처리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계획 변경과 보훈복지기금 기금사업의 지출계획 변경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 운용규모 ····· 8,800,972 천원

2) 수입계획

○ 예 수 금 수 입 ····· 3,500,000 천원

○ 예탁금원금회수 ····· 5,097,500 천원

– (기존)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 1,687,500 천원

– (추가) 폐지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양성,평등) ····· 3,410,000 천원

○ 예 탁 금 이 자 ····· 203,472 천원

3) 지출계획

○ 예 탁 금 ····· 5,187,500 천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 203,472 천원

○ 기타회계전출금 ····· 3,410,000 천원

나. 보훈복지기금

1) 운용규모 ····· 55,877 천원

2) 수입계획

○ 예 치 금 회 수 ····· 31,127 천원

○ 이 자 수 입 ····· 24,750 천원

3) 지출계획

○ 예 치 금 ····· 31,877 천원

○ 비융자성사업비 ····· 24,000 천원

– (기존) 사회보장적 수혜금)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지급

– (변경) 사회복지사업보조) 보훈단체 및 회원의 복지증진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4. 29.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최근에 수동적인 개념의 부모교육에서 벗어나 부모자신의 양육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모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모든 시민이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모학습”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부모학습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부모학습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부모학습에 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한 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부모학습 사업의 민간위탁, 사업추진 경비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와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오산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상복 의원

▷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사업을 통해 기존의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기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6.9.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오산시 주소정보 활용과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법령의 개정내용과 위임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오산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광고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오산시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운전이 서툴거나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있고, 우선주차구획 명칭에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운전에 서툴다는 고정관념을 견고히 하고 여성만을 육아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며, 오히려 남성운전자에게 역차별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음.

○ 이에, 우선주차구획 명칭을 “여성”을 삭제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 표시를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바탕에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노인·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의2).

○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의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한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노인·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하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각각 확대함(안 별표 3).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직원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퇴직 예정일 6개월 전까지로 제한된 장기재직휴가 사용기한 규정 삭제 (안 제24조제8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재기재 조항 삭제 (안 제24조제10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우리시 서동 지역에 건립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하나울복지센터)과 관련, 복지시설 관련 조례에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추가(안 별표)

· 오산시 하나울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서녘말길 21 (서동)

○ 하나울복지센터의 사업 추가(안 제5조)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2) 기능향상훈련 및 재활치료

(3)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교육

(4)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및 돌봄 상담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효율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사업 규정(안 제6조의2)

○ 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 및 제9조)

○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문화도시센터 운영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을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인·단체 등을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차별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입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므로

○ 문화도시센터 위탁에 관한 규정 중 수탁자의 자격을「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수정함.

나. 주요골자

○ 문화도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제14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이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를 신설함에 있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목적(안 제1조)

· 전시 관람 및 다양한 체험의 장을 조성하여 오산시민의 여가 증진 및 관광 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업무 및 위탁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1) 전시물의 수집·관리·보존·전시 및 체험 교육 운영 사항 규정
(2) 위탁 근거 규정
○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1) 운영일 : 화 ~ 일요일, 10:00 ~ 18:00
(2)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 관람료 징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강사 모집 및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
○ 편의시설(카페 및 기념품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안 제1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조성될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반려동물테마파크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험시설 이용료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반려동물테마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민활동가 운영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조례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03.28.)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함.

▷ 주요골자

○「오산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방법 규정 신설
(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당연직 기관의 조직개편 및「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으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업무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당연직 기관변경(안 제3조)

(1) 제2819부대 168연대 3대대장 ⇒ 제2819부대 1대대장

(2) 국군기무부대 오산지역 관계관 ⇒ 559군사안보지원대장
(3) 화성동부경찰서장 ⇒ 오산경찰서장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간사변경(안 제4조)
(1) 작전 및 예비군 담당간사
: 제2819부대 168연대 3대대 작전과장
⇒ 제2819부대 1대대 정보작전과장 및 동원과장
(2) 경찰담당 간사
: 화성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오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반 변경(안 별표)
-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지원반의 임무수행과 유관한 부서로 우선 편성하고 그 외 부서는 편성인력을 고려하여 배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목재의 다양한 기능 교육과 지식을 제공하여 목재문화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목공체험 프로그램 체험료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체험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목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규정 (안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이 이관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제명을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오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

○ 오산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반영

(1) 오산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에 필요한 승인 절차 규정(안 제6조)

(2)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인자 부담 사항과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7조 및 안 별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변경(안 제2조제1항)

(1) 위원회 총인원 수 변경: 5명 ⇒ 7명

(2) 민간위원 대상 정비 및 인원수 변경: 3명 ⇒ 5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의 위임근거 조항 변경 및 감사 청구 가능 연령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지방자치법」“제16조” ⇒ “제21조”, “19세” ⇒ “18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민·공무원제안규정」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 심사의 시민 참여 및 제안 실시 우수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의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심의 별도의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7조의2)

○ 인사상 특전 대상자 및 인사상 특전 종류 변경(안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 민원실 제안서 양식 비치 및 제안서 접수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3항제4호)

○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규정 신설(안 제26조의2)

○ 그 밖의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코로나 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속적인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이어가고자

○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에 부과할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인하 유도를 통한 임차인 지원 등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감면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기간: 2021. 1. 1. ~ 2021. 12. 31.

○ 감면세목: 2021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목으로 감면분에 따라 적용

○ 감면방법: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 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 감면제외

(1)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업종(도박게임, 금융 및 보험업 등)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인 경우

○ 감면율(%) = ①임대료 인하율 × ②추가 가산율

① 임대료인하율(%) $= \left[\frac{\text{1년간 총 임대료 인하액}}{\text{인하 전 1년간 총 임대료}} \right] \times 100$

② 추가 가산율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임대료 인하기간		
	2개월 이하	3개월 ~ 6개월	7개월 ~ 12개월
추가 가산율	2배	3배	4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하반기 준공됨에 따라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참여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법적근거

(1)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2)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3) 노인복지법 제45조(비용의 부담)

(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5)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6)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8)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제6조(위탁계획)

(9)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시설현황

(1) 시 설 명 : 오산시니어클럽

(2) 소 재 지 : 경기대로 636번길 13 (내삼미동 496-2)

(3) 연 면 적 : 713㎡ (지상4층)

(4) 조　　직 : 6명 (관장 1명, 실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5) 사업규모 : 222,000천원 (도비 30%, 시비 70%)

※ 하반기(6개월) 운영비 및 신규 설치지원금 (2021년 예산액 기준)

○ 수탁자 선정계획

(1) 위탁기간 : 2021. 9. 1. ~ 2025. 12. 31. (4년 4월)

(2)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3) 수탁기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나) 지역사회복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외에 오산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 등의 재정 확보가 가능한 법인

(4) 사업범위(사업내용)

(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사업 수행

(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라)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마) 5070 청춘드림팀 재능기부단 운영 및 지원

(바)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 성과 평가·분석, 사업비 정산보고 및 잔액 반납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탁조건

(가) 수탁기관은 시설을 직접 운영 (권리 타인양도 및 전대 금지)

(나) 수탁기관은 수탁신청 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규모의 비용을 제안하여야 함 (재정부담금 확약서 첨부)

(다)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상근 필수, 수탁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라) 수탁기관은 현 오산노인종합복지관(실버인력뱅크) 직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마) 수탁기관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서동 지역에 건립 중인 오산하나울복지센터(舊. 로뎀실버텔)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오산시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시설명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2) 위 치 : 오산시 서넓말길 21 (서동)

(3) 시설규모

– 대지면적: 4,120㎡, 건축면적: 508.32㎡, 연면적: 1,993.07㎡ (지상 4층)

(4) 시설용도

구 분	동 측	서 측
	입주 시설명	입주 시설명
1층	장애인주간보호시설(경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중증)
2층	재활치료교실 및 프로그램실	
3층	발달장애인 학습관 및 공동 작업장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4층	주방 및 식당, 다목적실	강당

○ 위탁운영 계획

(1)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위탁기간) 규정에 의거

(3) 운영보조금 추산액(202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335**	
인건비	890	20명(센터장1, 사무국장1, 사무직1, 치료사6, 사회복지사11)
운영비	80	여비, 사무용품,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시설비	65	시설개선, 비품구입, 시설장비유지
사업비	300	재활치료, 상담교육, 가족지원, 직업훈련 등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시설장의 자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5년간 오산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과 각종 법령위반으로 처벌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시설장 포함)
-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유린 등)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오산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된 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5) 위탁운영조건

- 위탁범위 :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 운영관리
-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사업(이용료)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
-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 운영 권리 타인양도 및 전대 금지
- 수탁기관은 복지관 운영비,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매년 현금 삼천만원 (₩30,000,000) 이상의 재정부담을 하여야 함.
-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상근 필수, 수탁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기관은「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장애인복지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여가문화의 공간으로 조성중인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 인력과 지식을 갖춘 민간(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고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	오산시 오산천로 72	- 부지면적 10,973㎡ - 건축연면적 2,934㎡	'21.09월중 개관(예정)

○ 주요내용: 반려동물 매개 인성교육, 체험문화 컨텐츠 및 여가공간제공,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 계획

(가) 위탁기간: 2년4개월(2021.9.1. ~ 2023.12.31.)

※ 관련근거: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

(나)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1) 심사기준: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2) 결정방법: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다) 신청자격

1)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오산 반려동물테마파크의위탁대상 사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반려동물 관련 운영사업 수행실적인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라) 위탁범위: 반려동물테마파크 시설운영 및 반려동물 매개 인성교육 등 업무 전반을 위탁(※ 일부 임대시설 제외)

(2) 운영조건

가) 위탁에 따른 운영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나)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다)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오산시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라)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일정

가) 위탁운영 모집공고 및 접수: 2021.5월중

나)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사: 2021.6월중

다) 심사결과 공개: 2021.6월중

라) 위·수탁 계약 및 공증: 2021.6월중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 및 재정의 가위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계획된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표 달성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지방채 발행 한도(362억원)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후 추경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 ⇨ 15,900백만원(일반회계)

※ 본예산 5개 사업 지방채 18,000백만원 발행 旣 의결

○ 지방채 발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차 입 선	발 행 액	상환기간 / 연이율	비 고
합 계		15,900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공자금관리기금	4,900	5년거치 10년상환 / 1.547%	2회 추경 반영
시청사 별관 건립	청사정비기금	5,000	2년거치 10년상환 / 한국은행기준금리 + 0.5%	3회 추경 반영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지역개발기금	6,000	3년거치 5년상환 / 1.5%	3회 추경 반영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제7조에 의거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에 따라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을 오산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오산시 건강정책 운영실태와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제7기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국내외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시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작성주체 : 오산시장

○ 작성기준 : 2021년 1월 1일

○ 주요내용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19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144호)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 맑음터 공원(문화공원)과 연결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내 제1처리장 상부공간을 문화공원으로 추가 결정(중복)하기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144호) 결정(변경)(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공원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4	문화 공원	오산동 750번지 일원	89,215	증)14,151	103,366	2016.3.14. 오산고시 제2016-26호	

나)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4	문화 공원	・위치: 오산동 750번지 일원 ・면적: 89,215㎡ → 103,366㎡ (증 14,151㎡)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 내 제1처리장 상부공간을 문화공원으로 추가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2) 하수도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하수종말 처리시설	오산동 750번지 일원	116,137	1987.7.13. 경고제201호	
변경	1	하수종말 처리시설	오산동 750번지 일원	116,137	1987.7.13. 경고제201호	문화공원144호 중복결정 (A=69,496㎡)

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종말 처리시설	• 중복결정 면적 변경 : 55,345㎡ → 69,496㎡ (증 14,151㎡)	• 하수종말처리시설 상부공간 문화공원 추가 중복 결정

◯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

구분	기정	변경
결정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일본 정부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이어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것이 자명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함.

○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관리와 처리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함.

○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동해안권 방사능 감시지점을 확대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함.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바다에 방류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들과 인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테러이자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하다.

오산시의회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전쟁범죄에 이어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는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될 것이 자명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와 동해안권 방사능 감시지점을 확대 운영하고, 일본의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9.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1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승인

▷ 감사기간·대상부서 및 감사방법 확정

▷ 감사요구자료 목록 및 증인출석범위 확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4.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21. 5. 31
○ 회 기 : 2021. 6. 7 ~ 6. 28 (22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8.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5.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1.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소차충전소 설치]
23.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5.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어제는 제66회 현충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념식이 취소되어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시에서 자율적으로 분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님들께 헌화 분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순국선열들과 71년 전 6.25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마다 우리 민족은 단결하였고 해결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해왔듯 우리 또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백신접종대상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집단면역 달성의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백신수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백신확보의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5월 수출이 45.6%로 늘며 3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고 소비도 조금씩 살아나며 우리 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선 빠른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합니다.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지역경제 또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오산시의 백신 접종은 접종대상인원의 43%가 1차 접종을 마쳤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예약률은 79%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접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도 시민들의 백신접종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어 만에 하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 또한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 최근 곽상욱 오산시장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에서 여덟 번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오산시의회에서도 고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신 시장님 이하 오산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의견제시 및 기타 안건 5건 등 총 3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매우 중요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결산검사 승인 등 부의안건 심의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행정감시 수단으로써 지방의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존립 목적인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어 시의 행정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집행을 마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도 당초에 계획된 집행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피시고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성실한 수감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산시의 건설적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오산시민의 대표로 제8대 오산시의회를 구성한지 어느덧 3년을 지나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놓았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한다는 열정으로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노력해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8대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에 대한 헌신과 고뇌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1년 시민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 듣겠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소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오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 의회에 발을 디뎠던 순간의 마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행복한 오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곧 장마철과 무더위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두주무(桑土綢繆)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새는 곳을 막는다고 합니다. 한낱 작은 새도 이렇게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산시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저지대 침수지역은 없는지, 배수로는 괜찮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는 더위에 취약한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이상 없는지 미리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7.(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6.8. ~6.27. (20일간)
	□ 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제259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9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7.(월)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소차충전소 설치] 11.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 질의·답변 12.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안설명, 의결 13.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14.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6.8.(화) 10:00 주요사업장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 오산 미니어처 빌리지 2. 경기도 국민안전 체험관 3. 드라마세트장 4.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 5. 오산문화스포츠센터 6. 오산천 공영주차장 7. 오산 커뮤니티센터(쎄씨봉) 및 창작예술촌 8.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9.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9.(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10.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9.(수) 10:00 제1회의실	11.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7.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10.(목)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6.11.(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11: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의결**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6.12.(토)~ 6.13.(일)	□ **휴 일**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14.(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결산검사대표위원설명, 제안설명,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질의·답변**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4.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15.(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16.(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1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6.17.(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2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6.18.(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3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농축산정책과), **오산문화재단**]	
6.19.(토)~ 6.20.(일)	☐ **휴 일**	
6.21.(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4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 미래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6.22.(화)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5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안전국**(안전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스마트교통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6.23.(수)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6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사업소**(환경과, 청소자원과, 수도과, 하수과, 생태하천과, 공원녹지과), **중앙도서관**]	
6.24.(목)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7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6.25.(금) 10:00 제1회의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26.(토)~ 6.27.(일)	□ **휴 일**	
6.28.(월)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승인안 2건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소차충전소 설치] 등 동의안 2건 4.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 안심안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여성안심안전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 소재의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게 안심호루라기, 경보기 등의 여성안심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사업의 지원방법 및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사회복지사협회 사업의 지원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사회복지사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우선 임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포상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한은경 의원

▷ 제안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를 수탁기관에 명시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주민들의 주요 생활을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 제한이 있기에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건축을 허용하고,

○ 도시계획위원회는 오산시의 중대한 도시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오산시의 지형이나 지역 여건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위촉 제한이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 관내 현업 종사자의 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추가함(안 별표 17 제17호).

○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위촉 시 관내 현업 종사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7조제8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60일로 보장한 이의신청 기간을 조례에서 7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민원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고자 함.

▷ **주요골자**

○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대상사업과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안 제35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에 있어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등은 공공지원 신청 이전에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하며, 리모델링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

출금으로 조성될 것이므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기보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고려할 때 더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공지원 신청을 위하여 신청 이전에 진행하는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 공공지원의 범위를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로 규정했으나, 권리변동계획은 리모델링 중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만 수립하는 것이므로 리모델링의 모든 범위를 포함하도록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때까지”로 수정함(안 제17조제1항).

○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2조부터 제35조).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① (생 략)	제16조(공공지원의 대상 사업)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 공공지원을 할 ----------.
1. 구분소유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업무 지원	<삭 제>
2.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 등 각종 우편물 발송과 관련한 업무 지원	<삭 제>
3. 주민설명회(주민홍보) 개최와 관련한 업무 지원 등	<삭 제>
제1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	제1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① ---------- 리모델링의 허가(주택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포함한다)를 받은 ----------.

제 정 안	수 정 안
②·③ (생 략)	②·③ (제정안과 같음)
제5장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삭 제>
제22조(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오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삭 제>
제2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주택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 4.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경비 5.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삭 제>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간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삭 제>
제32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삭 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3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삭 제>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 **오산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제정된「오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제정이후 구성되어 운영된 적이 없고 교류협력을 위한 사항은 현재 현행 조례인「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운영 중이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됨에 따라 실질적인 우리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범위와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교류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의 명칭 개정

· “오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교류협력 도시의 선정에 대한 명시 (안 제4조)

○ 교류협력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규정 (안 제5조)

○ 자매결연 등의 체결 또는 취소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 (안 제6조)

○ 교류협력 도시와의 협약 체결 원칙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 근거 규정 (안 제7조)

○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명시 및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안 제8조)

○ 교류협력 협약 체결 후 지속적인 교류 추진 규정 (안 제9조)

○ 교류협력 협약 취소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다양한 계층의 주민에게 통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통장의 연령 요건을 하향화하고, 세교2지구 택지개발 및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통·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통장 연령 요건 하향: ‘30세’ ⇒ ‘20세’(안 제5조제2항)

○ 남촌동 1개통 1개반 조정(안 별표 2)

○ 신장동 5개통 49개반 조정(안 별표 2)

○ 초평동 9개통 36개반 조정, 1개반 신설, 3개반 삭제(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제1항 및 제2항)

○ 지원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문 정리(제4조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일자리 알선을 위한 규정 신설(제4조의2)

○ 오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장 변경(제5조제2항)

· "부시장" ⇒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문화를 위하여 오산시 인구규모에 맞는 상근직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조직 및 운영 규정을 통합하고 조직 구성 변경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포함 10명 이내의 직원"
⇒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1명 포함 10명 이상의 직원"

○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별표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규정 정비(안 별표 1)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인터넷발급 무료 규정 명시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갱신·기간연장) 수수료 삭제

(3)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오산아이드림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및 위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오산아이드림센터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휴관일, 이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공연장의 사용, 대관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 오산아이드림센터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공포, 2020. 5. 1. 시행) 및「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공포, 2020. 5.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풍수해 등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5층 이상으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건축법」개정 및「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제정(예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 예정인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반영

○「건축법」개정 사항 반영 및 일부 규제완화(안 제4조 및 제5조)

·리모델링 관련 완화 비율 증대(110% → 120%)

○ 건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건축위원회 구성위원 증원(50명 → 70명)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기능 등 관련 사항 정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2)
(1)「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지역을 '시장이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명확히 규정
(2) 건축위원회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종류 등에 관한 사항 정비
(3) 위원회 심의 방식(비대면) 추가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 확대(연면적 3,000㎡ → 1,000㎡)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조례 위임 가설건축물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대상 가설건축물 중 운동, 휴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천막구조물 포함
○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4조 및 안 제24조의2)
○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0조)
(1) 필로티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범위 확대(50% → 100%)
(2) 건축기준 완화적용 내용 정비(필로티 설치 공개공지 면적 제외)
○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2조 및 안 별표 3)
(1) 별표 3 내용정비(대지 내 공지 이격거리 일부 완화 조정)
(2) 건축한계선을 다른 법령에 의한 건축한계선(유사한계선)으로 확대
○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3조)
・맞벽건축 가능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여 맞벽건축 활성화 도모
○ 그 밖의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 12. 25.「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 요령 세분화 및 명확화 (안 별표 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21. 4. 2.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공원시설의 설치 규정 신설(안 제24조)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동물놀이터 허용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사업을 현행화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규정 정비 (안 제19조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1) 종합운동장, 수영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오산시 체육시설의 종류 전반을 공단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그 밖에 사업 현행화 및 입법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이관되어 2021.7.13. 시행예정인바, 이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조례 위임사항 규정 등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방보조금의 관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규정(안 제5조)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규정(안 제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민간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규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세입 결산액 : 996,172,735,415원

○ 세출 결산액 : 793,971,469,419원

○ 세계 잉여금 : 202,201,265,996원

(2) 일반회계

○ 세입 결산액 : 825,029,839,714원

○ 세출 결산액 : 702,608,878,916원

○ 세계 잉여금 : 122,420,960,798원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91,831,385,387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138,951,9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450,623,451원임.

(3)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입 결산액 : 171,142,895,701원

○ 세출 결산액 : 91,362,590,503원

○ 세계 잉여금 : 79,780,305,198원

※「지방재정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 22,530,304,324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302,496,3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947,504,544원임.

나. 다음 연도 이월액 결산

(1)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91,831,385,387원으로

명시이월액은 47건 6,454,398,970원

사고이월액은 22건 3,469,438,481원

계속비이월액은 75건 81,907,547,936원임.

(2)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2,530,304,324원으로

사고이월액은 2건 364,470,054원

계속비이월액은 11건 22,165,834,270원임.

다. 기금 결산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으로서 2020년도말 26,723,462,938원으로

조성액은 3,602,299,366원

사용액은 9,469,223,650원임.

라.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 권

2020년도말 채권액은 4,393,641,517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2,329,314,500원

전화선예치금 14,860,000원

회원권 606,090,000원

기금에서는 자활기금 342,415,827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부당금 1,100,961,190원

(2) 채 무

2020년도말 채무액은 0원임.

마. 공유재산 결산

재산현재액은 2020년도말 2,910,907,996,999원으로

토지 6,065,818㎡ 1,873,457,234,216원

건물 236,162㎡ 470,598,238,596원

기타 696,012건 621,519,804,591원임.

바. 물품 결산

202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11,142,447,346원으로

취득은 1,918,174,817원

처분은 399,119,780원임.

사. 금고 결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21. 1. 20일 현재

세입총액은 996,172,735,415원

세출총액은 793,971,469,782원 (※ 대지보상특별회계 절삭액 363원 포함)

차인잔액은 202,201,265,633원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액이 지출액 증명과 상이없음.

아. 재무회계 결산

2019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065,769,265,356원으로

부채는 22,086,224,050원

순자산은 3,043,683,041,306원임.

2020. 1. 1.부터 12. 31.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총수익은 680,992,449,453원

비용이 707,265,487,713원으로

운영차액은 △26,273,038,260원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0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21년도 제1차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일반회계

1) 예비비 예산액(최종) 2,305,209천원

(가) 일반예비비: 1,450,000천원

(1) 지출결정액: 808,500천원

(2) 지 출 액: 574,432천원

(3) 불 용 액: 234,068천원

(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55,209천원

(1) 지출결정액: 285,000천원

(2) 지 출 액: 105,478천원

(3) 불 용 액: 179,522천원

2) 예비비 잔액 1,211,709천원

(가) 일반예비비: 641,500천원

(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70,209천원

○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희망복지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구호	의료 및 구료비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150,000천원

(다) 지 출 액: 150,000천원

(라) 불 용 액: 0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원

2) 코로나19 방역추진에 따른 참여자의 급식 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안전정책과	재난방재·민방위	재난 상황관리	기타보상금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55,000천원
(다) 지 출 액: 18,322천원
(라) 불 용 액: 36,678천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정책과 방역계획에 의거 시민·민간단체가 참여한 방역활동에 대한 급식지원

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지역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140,000천원
(다) 지 출 액: 53,372천원
(라) 불 용 액: 86,628천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대책사업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지역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기타보상금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100,000천원
(다) 지 출 액: 5,000천원
(라) 불 용 액: 95,000천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5)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2차)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희망복지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구호	의료 및 구료비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70,000천원
(다) 지 출 액: 70,000천원

(라) 불 용 액: 0원

(마) 지 출 사 유: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및 해외입국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6)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콜라텍)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안전정책과	재난방재·민방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콜라텍) 특별경영자금 지원(성립전)	민간위탁금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500천원

(다) 지 출 액: 500천원

(라) 불 용 액: 0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인 콜라텍에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7)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코인노래연습장)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경영자금 지원(성립전)	민간위탁금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2,500천원

(다) 지 출 액: 2,500천원

(라) 불 용 액: 0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인 코인노래연습장에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8)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유흥, 단란주점)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농식품위생과	식품의약안전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지원(유흥,단란)(성립전)	민간위탁금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65,500천원
(다) 지 출 액: 61,000천원
(라) 불 용 액: 4,500천원
(마) 지 출 사 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인 유흥, 단란주점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9) 폭우피해 긴급복구지원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안전정책과	재난방재·민방위	폭우피해 긴급복구비	시설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185,000천원
(다) 지 출 액: 5,478천원
(라) 불 용 액: 179,522천원
(마) 지 출 사 유: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오성빌라·대원빌라 축벽이 붕괴되어 시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복구공사 실시

10)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3차)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희망복지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구호	의료 및 구료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100,000천원
(다) 지 출 액: 100,000천원
(라) 불 용 액: 0원
(마) 지 출 사 유: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및 해외입국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1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4차)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희망복지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구호	의료 및 구료비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200,000천원
(다) 지 출 액: 200,000천원
(라) 불 용 액: 0원
(마) 지 출 사 유: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및 해외입국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12)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등 구호물품 지원(5차)

(가) 예산과목

조 직	부 문	세 부 사 업	통 계 목	비고
희망복지과	재난방재·민방위	재해 구호	의료 및 구료비	일반예비비

(나) 지출결정액: 25,000천원
(다) 지 출 액: 13,738천원
(라) 불 용 액: 11,262천원
(마) 지 출 사 유: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발병 및 해외입국자의 증가로 자가격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물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0. 6. 29.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수소차충전소 설치]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국적인 수소충전 확충에 대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차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인바, 취득건물의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이므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 요 골 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종류	사 업 개 요	소관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수소차 충전소 설치** ○ 추진배경: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라 수소차충전소를 구축하여 수소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소차 보급기반 마련 ○ 사업기간: 2020. 12. ~ 2022. 2. ○ 위 치: 미정 – 기존 CNG,·LPG충전소, 주유소, 개별부지 등 사업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충전소 부지 선정 ○ 규 모: 330㎡ 이상(승용 65대 충전) ○ 사 업 비: 3,000,000천원 – 국비 1,500,000천원, 도비 450,000천원, 시비 1,050,000천원	환경사업소 환경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기 확보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합계	**3,920,000**	**–**	**–**	**3,000,000**	**920,000**
국비	1,500,000	–	–	1,500,000	–
도비	450,000	–	–	450,000	–
시비	1,970,000	–	–	1,050,000	920,000

※ 설치 3,000,000천원, 운영지원 920,000천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2020. 9. :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국비보조신청

(2) 2021. 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3) 2021. 3. : 부지선정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4) 2021. 3. :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설치 대행계약 체결

(5) 2021. 4. : 압축패키지 입찰 및 설계용역 추진

(6) 2021. 7. : 기술검토 및 건축인허가 진행

(7) 2021. 9. : 공사발주 및 착공

(8) 2022. 2. : 수소충전소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330	3,0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330	3,000,000	건물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330	3,000,000			
1	취득	건물(신축)	미정	-	330	3,000,000	2022	수소차충전소 설치 (건물 신축)	환경사업소 환경과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아이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양산동 지역에 건립 중인 오산아이드림센터가 2022년 3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산아이드림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오산아이드림센터

(2) 위　　치 : 오산시 양산동 670-1번지

(3) 시설규모 : 부지면적 2,724㎡, 건축면적 2,762㎡ (지하1층 ~ 지상4층)

(4) 주요시설

층별	시 설 현 황	비고
4층	영유아 공연장, 방송실	
3층	신체활동장(나무놀이터), 영유아공연장, 준비실	공연장(236석)
2층	사무실, 오감만족체험방, 모자보건사무실 자연출산아카데미실&강의실	
1층	방방놀이터, 오감만족체험방, 휴게시설	외부주차장 : 19대(장애인1, 아이동반3, 일반13, 버스2)
지하1	기계실	

○ 위탁운영 계획

(1)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2) 위탁기간 : 2022. 3. 1. ~ 2024. 12. 31. (2년10개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의1(계약기간) 규정에 의거

(3) 위탁범위 : 오산아이드림센터 관리·운영 전반

(4) 운영보조금 추산액(202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용
인건비	548	14명(센터장1, 팀장2, 직원7, 기간제4)
운영비	250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청소용역, 차량유지비, 기타운영비 등
시설비	80	시설장비유지비, 소형승용차구입 등
사업비	250	기획공연(정기 및 오픈공연), 사업홍보비(홈페이지 구축 등), 진행 운영비 등
합　계	1,128	

(5)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영유아 및 아동대상의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보육·놀이·체험·문화·예술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험(수행실적)과 능력을 갖춘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영유아, 아동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6) 위탁운영자 신청 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오산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단체)과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시설장 포함)

(나) 법인(단체)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단체)

(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과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라)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단체)

(7)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운영자는 오산아이드림센터 관리·운영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한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운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함.

(다) 위탁시설 운영자와 법인(단체)은 각각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상근 필수, 수탁법인(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라)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은 반드시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

(마) 위탁사무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수탁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및 위탁취소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없음.

(바) 센터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부산동 219-12번지 일원에 부산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부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안)」입안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 현재 생산녹지지역인 해당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건 : 도시개발구역 내 생산녹지지역 30% 이하

○ 계획개요

1) 계획내용 :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 위 치 : 오산시 부산동 219-12번지 일원
3) 면 적 : 71,949㎡
4) 사업시행자 : 벌말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5) 주요사업계획
   - 단독주택용지 : 총 54획지 17,452㎡(24.2%)
   - 근린생활시설용지 : 총 10획지 8,570㎡(11.9%)
   - 산업용지(지식산업센터) : 19,114㎡(26.6%)
   - 도시기반시설용지 : 26,813㎡(37.3%)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28.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도시경관 유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등 개발로 인한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지식산업센터)의 서측(대로1-2)과 남측(대로2-18) 대로와 접한 경계 부분에 완충녹지 설치를 검토하고 반영하기 바라며,
2. 지식산업센터의 진·출입로가 개발구역 내 주거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에 대형차량의 운행이 예상되는 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주거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외부에서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가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국제법 위반이며 역사 퇴행적 행위임.

이러한 일본 측의 행위는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 등 왜곡된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함.

○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반성하고, 올림픽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도쿄올림픽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본에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함.

○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냉철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교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함.

▷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문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작은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의 땅인 것처럼 표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한국 정부가 2019년 7월 일본 측에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외교부가 금년 5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과 도쿄올림픽위원회에 항의와 독도를 일본영토처럼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다시 요구했지만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명분을 쌓으려는 저열한 속셈이 분명하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며, 일본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영토 내에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코로나'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각국의 대표 선수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만행으로 이런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 분쟁 방지와 올림픽 정신 준수 등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권고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일본 측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이를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하게 권고하는 등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의 세계평화를 역행하는 행위와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을 다각적으로 알리고,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하여 외교력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냉철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 우리 정부의 냉철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독도 영유권 등 왜곡된 주장을 통해 이를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게 사과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반성하고, 올림픽 정신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도쿄올림픽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일본에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 냉철한 준비와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외교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6. 7.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6. 7.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영희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1. 8. 26
○ 회 기 : 2021. 9. 1 ~ 9. 10 (10일간)
○ 주요안건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3.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4.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변경)]
2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
2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변경)]
23.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7.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0.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1.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2.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3.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5. 오산시-오산고현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9.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0.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1.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42.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44.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5.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6.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47.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주협약 동의안
48.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49.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50.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1.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2.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동의안
53.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54.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양산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
55.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조성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지만 우린 아직 가을을 맘껏 즐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 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지의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일부 결실을 얻기도 했습니다.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했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며 우리는 곧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이를 일으키며 사라지지 않고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델타변이와 함께 찾아온 4차 유행의 파고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높게 덮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최고단계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린 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단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와의 사투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답답할 것입니다.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국민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국민 70%의 백신접종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게 하기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오산시도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하나로 이뤄진다면 코로나는 극복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완전한 박멸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접종과 더불어 치료제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코로나 또한 독감의 한 종류로 우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그리고 백신접종 및 빠른 검사와 치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와의 긴 싸움으로 지치고 실의에 빠진 또한 찌는 듯한 폭염에도 코로나와의 사투를 이어와 주신 의료진 및 시민 여러분과 거리두기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 등 예산안 2건,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동의안 34건, 의견제시 2건 및 기타 안건 등 총 5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와의 사투를 견뎌 내기 위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 즉시 빠른 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난지원금의 경우 방역 상황이 안정된다면 추석 이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수)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7분 자유발언** 1. 제26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0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9.2. ~9.9. (8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수)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9.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변경)] 11.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문화원 건립] 12.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변경)] 13.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6.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8.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3.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오산시-오산고현초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9.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0.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1.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2.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34.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5.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37.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주협약 동의안 38.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39.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40.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1.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2.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동의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1.(수) 11:00 본회의장	**- 제안설명, 질의·답변** 43.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양산3구역] 의회 의견제시의 건 44.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45.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46.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양산3구역] 의견제시의 건 ▶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9.2.(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4.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9.3.(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9.4.(토)~ 9.5.(일)	□ **휴 일**	
9.6.(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3.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9.8.(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9.9.(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9.10.(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34건 4.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양산3구역] 등 의견제시의 건 2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95,153,503 천원

나. 일반회계 ····· 672,672,640 천원

다. 특별회계 ····· 122,480,863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5,021,425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7,459,438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51,63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0,609,033 천원

○ 지방교부세 ····· 89,410,508 천원

○ 조정교부금 ····· 99,917,403 천원

○ 보 조 금 ····· 239,665,908 천원

○ 지 방 채 ····· 31,9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02,018,651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51,63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5,389,367 천원

○ 지방교부세 ····· 89,410,508 천원

○ 조정교부금 ····· 99,517,403 천원

○ 보 조 금 ····· 239,665,908 천원

○ 지 방 채 ····· 29,4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41,216,792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8건)

○ 세 외 수 입 ····· 55,219,666 천원

○ 조 정 교 부 금 ····· 400,000 천원
○ 보 조 금 ····· 3,559,338 천원
○ 지 방 채 ····· 2,500,000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0,801,859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45,126,187 천원
○ 재 무 활 동 ····· 24,632,222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25,395,094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582,584,269 천원
○ 재 무 활 동 ····· 18,886,634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1,201,737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8건)

○ 정 책 사 업 ····· 62,541,918 천원
○ 재 무 활 동 ····· 5,745,588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4,193,357 천원

4. 계속사업

○ 초평동 주민센터 신축 등 62건 ····· 486,615,6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9. 9.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발전기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옥외광고발전기금

가. 운용규모 ····· 349,843 천원

나. 수 입 계 획
○ 전 입 금 ····· 250,000 천원
○ 보 조 금 ····· 37,800 천원
– (추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시·도비 보조금 등 ····· 37,800 천원
○ 예 치 금 회 수 ····· 41,139 천원
– (변경) 2020회계연도 결산액 반영 ····· 25,956 천원
○ 이 자 수 입 ····· 20,904 천원
다. 지 출 계 획
○ 비융자성사업비 ····· 51,300 천원
– (삭감) 간판개선 정비사업 ·····△240,000 천원
– (추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37,800 천원
– (추가) 광고 미게첨 옥외광고 활용 사업 ·····13,500 천원
○ 예 치 금 ····· 289,120 천원
○ 보전지출 ····· 9,423 천원
– (추가) 2020년 광고물정비 도비 집행잔액 반납 ····· 9,423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9. 9.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2009. 5. 14. 전부개정 이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위임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오산 문화스포츠센터 개관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등을 현재의 환경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편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일반적인 용어 사용과 유사해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시설의 사용”을 “개인사용”과 “전용사용”으로 세분화함(안 제2조).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우선순위, 장애인에 대한 사용의 우선순위 특례, 사용의 취소 및 정지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체계로 구분하던 것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함(안 제8조).
○ 체육시설의 초과사용료 납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
○ 사용자의 사용신청 취소, 천재지변 등 반환기준을 정비함(안 제11조).
○ 관람권 발행 및 관람권 수입금액 규정을 정비함(안 제12조).
○ 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자의 책임과 설비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6조).
○ 체육시설 개방 및 개방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사용료 현실화 및 1회 사용시간 변경(2시간 단위)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고 오산문화스포츠센터 개관에 따른 사용료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현대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핵심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드론·3D프린팅 등 차세대 영상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사진 산업의 광범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사진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지역의 사진문화 및 사진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 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공휴일에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 인프라 격차가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수원, 평택, 고양, 남양주)에 불과함.
○ 이에,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를 위하여 오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장애인 가정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발생 위험에 대하여 오산시의 적극적인 예방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오산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전기화재 예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한은경 의원,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한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위원에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명문화함(안 제15조제3항).

○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아니 할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되므로 삭제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동으로 위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추가 및 일련번호 변경(안 별표)

(1)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 추가(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소관부서 직제 순 일련번호 변경(가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순서 변경)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세율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균등분” ⇒ “개인분”, “재산분” ⇒ “사업소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25조의2)

1) 오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생산자가 로컬푸드의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2)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3)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서, 그 공유지의 위치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9조 및 제64조)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31조)

○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범위 확대(안 제33조)

·증가분의 “100분의 70” ⇒ “전액”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설한「어서오산 “휴(休)”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어서오산 “휴(休)”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어서오산 “휴(休)”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1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경기도의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재해 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을 반영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안 제19조제1항제2호)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안 제45조제6항)

○ 그 밖에 조문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주거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약자는 물론 오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개정된 위임 법령 및 근거 법조항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4조)
○ 위원회 간사 규정 변경(안 제11조)
・“주소정보 업무 담당 부서장” ⇒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
○ 근거 법령 삭제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5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주차난 해소와 문화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의 월야간권을 추가하고 무료주차요금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및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법정 설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주차요금 감면규정 정비(안 제10조제1항제5호)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오산시 유공납세자 면제 규정 추가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 정비

(1) 용어정비: “1일주차권(12시간 이내)” ⇒ “12시간 주차권”(안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2) 노외주차장: 월야간권 신설(안 별표 1 제2호)
(3) 무료주차요금 적용 주차장 확대: 삼미 공영주차장 추가규정 (안 별표 1 제9호라목)

○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개선방안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안 별표2 제5호)

○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법정 설치 비율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10호)
・“100분의 2” ⇒ “100분의 3”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안 제7조 및 제8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이 유사한「오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상의 도로관리심의회에 위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상위법 규정에 따라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하도록 함.

○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 4. 1.「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 및 관련 용어 정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고급오락장」재산세 감면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1. 6. 8 공포·시행)되어 지방의회 의결로 고급오락장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감면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4호단서·제4항

(2) 대상기간 : 2020. 6. 2. ~ 2021. 6. 1.(1년)

○ 재산세 감면기준

(1) 감면세목 : 2021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포함)

(2) 감면방법 : 대상기간(1년) 내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가) 건축물 재산세 : 중과세분(4%)을 감면하여 일반과세(0.25%)한다.

(나) 토지분 재산세 : 고율분리과세(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

(3) 벌칙규정 :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

○ 기타

(1)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한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20.02.18.) 및 오산시의회의 승인(20.03.18.)을 득하였으나, 이용시민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코트면수 증가, 시설공법변경 및 구조적 안전 확보, 하자발생 방지 등을 위한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실내배드민턴장 건물의 기준가격이 당초 관리계획 대비 30%를 초과 증가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구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관리계획 수립(변경) 사유	주관 부서
		종류	소재지	면적(㎡)				
기존 계획	취득 (증축)	건물	궐동 36-1 번지 일원	2,000	2,500,000	2020년	기준가격 10억 이상	회계과
변경 계획	취득 (증축)	건물	궐동 36-1 번지 일원	2,231	5,100,000	2021년	기준가격 30%초과 증가	회계과
증감내역				231 (11.55%증가)	2,600,000 (104% 증가)			

○ 사업변경 개요

구분		당초	변경
사업위치		궐동 36-1번지 일원	해당 없음
사업비 (기준가격)		건물 신축 2,500,000천원	건물 신축 5,100,000천원
취득 대상	건물	2,000㎡(지상1층)	2,231㎡(지상1층)
	토지	해당 없음 (공유재산(세교2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1) 내 건립)	해당 없음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9. 7. :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 '19. 10. :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선정(기금 10억원)

- '20. 1. ~ '20. 3. : 지방재정투자심사(도심사) 실시
- '20. 4. ~ '20. 5. : 설계공모 실시
- '20. 6. ~ '21. 4. : 실시설계용역 실시 및 완료
- '21. 3. ~ '21. 5. : 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 실시
- '21. 5. ~ '21. 10. : 공사 착공 및 준공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000	2,500,000	1	2,231	5,100,000		231	2,6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2,000	2,500,000	1	2,231	5,100,000		231	2,6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2,231	5,100,000			
1	취득	건물(신축)	궐동 36-1번지 일원	-	2,231	5,100,000	2021	생활SOC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신축)	체육관광과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기존 오산문화원 원사가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내 편입되어 2018년 건물 철거 이후 오산문화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방대한 향토 자료의 보관이 어려우며, 향토문화 교육 및 세미나 등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 문화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향토문화를 발굴·계승·보존함과 아울러 오산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흥 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오산문화원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및 사업개요

구분		재산 종류	사 업 개 요	소관 부서
취득	신축	건물	☐ **오산문화원 건립** ◦추진배경: 향토문화의 발굴·계승·보존과 아울러 오산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오산문화원사 건립 필요 ◦사업기간: 2020. 11. ~ 2022. 12. ◦위 치: 은계동 7-7번지(오산시립미술관 부지 내) ◦규 모: 연면적 1,320㎡(지상 3층) ◦사 업 비: 3,700,000천원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3,700,000**	**200,000**	**1,000,000**	**2,500,000**	
국비(특교)	500,000		500,000		
도비(균특)	1,100,000			1,100,000	
시비	2,100,000	200,000	500,000	1,400,000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2017.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

(2) 2020. 11. : 문화원사 건립 부지 최종 확정

(3) 2021. 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4) 2020. 11. ~ 2021. 7. : 기본 및 실시설계

(5) 2021. 11. : 공사 착공

(6) 2022. 12. : 공사 준공

○ 기대효과

– 향토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가능

○ 사업대상지 위치도

회계명 :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320	3,700,0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1,320	3,700,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1,320	3,700,000			
1	취득	건물 (신축)	은계동 7-7번지	-	1,320	3,700,000	2022	오산문화원 건립 (신축)	문화예술과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도심의 공공시설 공간 개발을 통해 도시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오산시청사 2층 옥상 유휴공간에「오산자연생태체험관」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2018.2.19)하고 오산시의회의 승인(2018.10.29)을 득하였으나, 컨텐츠의 다양성 확보 및 시민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물 기준가격(사업비)이 당초 대비 30%초과 증액된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구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관리계획 수립(변경) 사유	주관 부서
		종류	소재지	면적(㎡)				
기존 계획	취득 (증축)	건물	오산동 915번지	678	4,500,000	2018년	기준가격 10억이상	회계과
변경 계획	취득 (증축)	건물	오산동 915번지	3,998.95	11,452,900	2021년	기준가격 30%초과 증액	회계과
증감내역				3,320.95 (489.82%증가)	6,952,900 (154.5% 증가)			

○ 사업개요

- 위　　치 :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3,998.95㎡
- 주요시설 : 조류관, 수족관, 활공장, 4D체험관, 휴게 공간 등
- 사 업 비 : 11,4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21. 5.

– 변경개요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목적(용도)		동·식물원 조성	변경 없음
취득위치		오산동 915번지	변경 없음
취득대상	건물	1건(건축면적 678㎡(지상2층))	1건(건축면적 3,998.95㎡(지상4층))
	토지	해당 없음(공유재산 내 건립)	변경 없음
기준가격		4,500,000천원	**11,452,900천원 (154.5% 증액)**
조감도			

○ 추진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부결 ····· 2018. 4.
– 시의회 현장 벤치마킹 실시(경주 버드파크) ····· 2018. 9.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동의 ····· 2018. 10.
– 투자양해각서 체결(오산시-경주버드파크) ····· 2018. 11.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9. 8.
– 지구단위계획 변경 ····· 2019. 9.
– 건축허가 ····· 2019. 9.
– 착공신고 수리 ····· 2019. 10.
– 가설울타리 설치 및 공사착공 ····· 2019. 11.
– 공사준공 ····· 2021. 2.
– 실시협약 체결 ····· 2021. 2.
– 건축물 사용승인 ····· 2021. 5.
– 기부채납 ····· 2021. 5.
– 무상사용·수익허가 ····· 2021. 5.

○ 기대효과

-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법인설립과 운영에 따른 지방 세수 증대
- 운영 자재 및 소모품 등 지역구매로 소비 촉진

회계명 : 일반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678**	**4,500,000**	**1**	**3,998.95**	**11,452,900**		**3,320.95**	**6,952,900**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1	678	4,500,000	1	3,998.95	11,452,900		3,320.95	6,952,900	기부채납 (오산 자연생태 체험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3,998.95	11,452,900			
1	취득	건물	오산동 915번지	-	3,998.95	11,452,900	2021	기부채납 (오산 자연생태체험관)	회계과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 개선 및 기능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2021.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오산시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현황

(1) 시설명 :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2) 위 치 : 오산시 오산로272번길 37 (오산동)

(3) 설치일 : 2008. 3. 11.

(4) 위탁운영법인 :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5) 위탁운영기간 : 2017. 6. 1. ~ 2021. 12. 31. (4년 7개월)

○ 시설 규모 및 층별 용도

구 분	면적(㎡)	용 도
계	**356.1**	**치료실 : 총 9개**
2층	173.85	부모대기실, 자료실, 치료실6 (언어2, 음악, 집단, 인지, 미술)
1층	173.85	사무실, 부모대기실, 치료실3 (놀이2, 감각통합)
지하	8.4	보일러실

○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 액	858	119	178	178	184	199
도 비	144(17%)	32	32	32	24	24
시 비	714(83%)	87	146	146	160	175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2) 위탁운영기간(예정) : 2022. 1. 1. ~ 2026. 12. 31. (5년)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고, 장애아 재활치료 사업의 수행 능력 및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장애아재활치료사업 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사회복지 또는 재활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법인

(4) 시설장의 자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가)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

(다) 장애인복지 분야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5) 신청제외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나)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속한 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감독관청의 법인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횡령, 유용,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등)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라)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6) 위탁사무

(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

(나) 발달장애 아동 상담·훈련·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다)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7)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관리

(나)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재활치료 수익금, 법인전입금 등
(다)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 운영 권리 타인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야 함.
(재정부담금 확약서 첨부)
(마) 센터의 종사자는 상근 필수, 수탁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단,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함.
(바)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서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장애인복지관련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보조기기 수리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위탁운영체를 공모·선정하여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현황
(1) 시설명 :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2) 위 치 : 오산시 경기동로 15 (오산동) 종합운동장 6호
(3) 면 적 : 30㎡
(4) 위탁운영자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오산시지회
(5) 위탁운영기간 : 2019. 11. 1. ~ 2021. 12. 31. (2년 2개월)
(6) 종사자 : 3명 (센터장1, 선임수리기사1, 수리기사1)

○ 운영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계	2019	2020	2021
금 액	313,488	37,111	129,621	146,756

※ 전액 시비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자 선정

(2) 위탁운영기간(예정) : 2022. 1. 1. ~ 2024. 12. 31. (3년)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능력이 있는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신청제한대상

(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자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센터장 포함)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사업 실체가 없는 자

(라) 타인(타 법인 등)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

(5) 위탁사무

(가) 보조기기의 상태 점검 및 수리 서비스

(나) 지정수리업체에 수리 의뢰 서비스

(다) 현장점검 및 긴급출동 서비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 위탁운영조건

(가) 위탁범위 :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관리

(나)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및 수탁자 자부담 (법인전입금 등)

(다)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수탁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마) 수탁자는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유지관리 지원 조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기존 종사자 승계하여야 함.

(아) 수탁자 선정 후 허위 사실 등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금바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금바위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여계산로 10 (금암동, 금암마을 휴먼시아아파트 7단지)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31㎡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금바위사회적협동조합(원장 송미순)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30(23)	5	7	11	야간연장·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7	1	5	-	1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97,895
2. 수익자부담금수입	8,880
3. 보조금및지원금	189,922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240
8. 잡수입	560
9. 전년도이월액	12,500
합 계	**309,997**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27,380
2. 운영비	29,275
3. 보육활동비	36,053
4. 수익자부담경비	8,640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0
7. 상환반환금	0
8. 재산조성비	7,500
9. 잡지출	100
10.예비비	1,048
합 계	**309,997**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42(가장동)
시 설 규 모	지상 3층, 연면적 1,117㎡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사단법인 아이길벗(원장 김한우)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세	만5세	장애아	
175(142)	10	28	34	31	32	7	장애아통합·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영영사	비고
33	1	26	1	1	3	1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528,588
2. 수익자부담금수입	175,033
3. 보조금및지원금	622,995
4. 전입금	4,32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1,970
9. 전년도이월액	0
합 계	**1,332,906**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890,950
2. 운영비	104,790
3. 보육활동비	153,349
4. 수익자부담경비	175,033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0
7. 상환반환금	7,340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0
10.예비비	1,444
합 계	**1,332,906**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세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세교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수청로 221(금암동, 금암마을 휴먼시아4단지)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69㎡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세교꿈터 사회적협동조합(원장 강미숙)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5세	
39(31)	7	10	14	야간연장·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합계 \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9	1	7	-	1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59,144
2. 수익자부담금수입	8,820
3. 보조금및지원금	248,839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300
8. 잡수입	1,056
9. 전년도이월액	16,000
합 계	**434,159**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96,585
2. 운영비	45,980
3. 보육활동비	73,110
4. 수익자부담경비	8,000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2,000
7. 상환반환금	6,500
8. 재산조성비	88
9. 잡지출	100
10.예비비	1,796
합 계	**434,159**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세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세마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세마역로 60(세교동)
시 설 규 모	지상 3층, 연면적 730㎡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개인(원장 김덕희)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세	만5세	
123(93)	3	10	21	20	20	19	야간연장·휴일보육·24시간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21	1	18	-	2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362,652
2. 수익자부담금수입	98,409
3. 보조금및지원금	462,148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1,476
9. 전년도이월액	2,000
합 계	**926,685**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529,858
2. 운영비	101,065
3. 보육활동비	147,690
4. 수익자부담경비	98,409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0
7. 상환반환금	45,438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225
10.예비비	4,000
합 계	**926,685**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수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수청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수청로 79-22(내삼미동)
시 설 규 모	지상 2층, 연면적 691㎡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원장 하은경)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5세	장애아	
150(139)	10	14	29	40	37	9	장애아통합·야간연장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사무원	비고
25	1 (간호사겸직)	18	2	1	2	1	1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485,805
2. 수익자부담금수입	89,382
3. 보조금및지원금	538,245
4. 전입금	2,88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300
8. 잡수입	3,000
9. 전년도이월액	14,208
합 계	**1,133,820**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765,080
2. 운영비	104,288
3. 보육활동비	131,216
4. 수익자부담경비	89,843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1,000
7. 상환반환금	39,020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500
10.예비비	2,873
합 계	**1,133,820**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예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예일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오산로 91-28(갈곶동)
시 설 규 모	지상 4층, 연면적 884㎡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장로교회(원장 김숙리)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3~5세	
131(130)	10	14	30	76	야간연장·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23	1	18	1	2	1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467,304
2. 수익자부담금수입	130,692
3. 보조금및지원금	452,575
4. 전입금	6,004
5. 기부금	0
6. 적립금	960
7. 과년도수입	3,600
8. 잡수입	1,760
9. 전년도이월액	3,680
합 계	**1,066,575**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680,326
2. 운영비	74,260
3. 보육활동비	131,185
4. 수익자부담경비	153,929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1,600
7. 상환반환금	23,320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0
10.예비비	1,955
합 계	**1,066,575**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초록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초록별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누읍로 20(누읍동, 휴먼시아아파트)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38㎡
위 탁 기 간	2017.11.01. ~ 2021.12.31.(4년2월)
현 수 탁 자	같이가치사회적협동조합(원장 홍진희)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3~5세	
32(26)	2	5	7	12	야간연장· 휴일보육·24시간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8	1	6	-	1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16,268
2. 수익자부담금수입	34,340
3. 보조금및지원금	231,019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360
9. 전년도이월액	3,000
합 계	**384,987**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274,097
2. 운영비	34,063
3. 보육활동비	44,222
4. 수익자부담경비	22,520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0
7. 상환반환금	7,066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19
10.예비비	3,000
합 계	**384,987**

○ 위탁운영 계획

(1) 현 수탁자 재계약(재위탁) : 위탁기간 중 법규 및 계약사항 위반이 없는 경우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 가능, 위탁만료일은 12월31일로 함

(3) 선정방식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 결과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80점 미만이면 공개모집 전환

(5)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 등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재계약(재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심사자료 제출
⌄	
재위탁 대상자 심사 및 재위탁 여부 결정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 –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경쟁으로 전환 – 심사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원칙
⌄	
오산시 의회 동의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결과 및 재위탁 여부 결정사항에 대해 오산시 의회 동의
⌄	
위수탁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미래클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22(오산동)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150㎡
위 탁 기 간	2019.11.01. ~ 2021.12.31.(2년2월)
현 수 탁 자	개인(원장 이옥경)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세	
34(28)	5	12	11	야간연장, 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9	1	7	-	1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56,120
2. 수익자부담금수입	35,913
3. 보조금및지원금	257,621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520
9. 전년도이월액	8,043
합 계	**458,217**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08,275
2. 운영비	44,392
3. 보육활동비	59,161
4. 수익자부담경비	35,913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623
7. 상환반환금	8,550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72
10.예비비	1,231
합 계	**458,217**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3) 선정방식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은여울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오산대역로 222(수청동)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53㎡
위 탁 기 간	2019.11.01. ~ 2021.12.31.(2년2월)
현 수 탁 자	개인(원장 박원희)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1세	만 2세	만 3~5세	
43(36)	10	14	12	야간연장, 휴일보육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23	1	6	-	1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156,120
2. 수익자부담금수입	35,913
3. 보조금및지원금	257,621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520
9. 전년도이월액	8,043
합 계	**458,217**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08,275
2. 운영비	44,392
3. 보육활동비	59,161
4. 수익자부담경비	35,913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623
7. 상환반환금	8,550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72
10.예비비	1,231
합 계	**458,217**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3) 선정방식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위탁개시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호어린이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오산시 남부대로 486-23(청호동,청호휴먼시아아파트)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236㎡
위 탁 기 간	2019.11.01. ~ 2021.12.31.(2년2월)
현 수 탁 자	개인(원장 김혜선)

(2) 보육아동 현황 (단위 : 명)

정원(현원)	현원					취약보육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5세	장애아	
54(37)	3	10	10	11	3	장애아통합

(3)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 합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조리원	영영사	비 고
10	1	7	1	-	1	-	

(4) 예산편성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209,496
2. 수익자부담금수입	35,676
3. 보조금및지원금	357,642
4. 전입금	0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110
9. 전년도이월액	20,000
합 계	**622,924**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423,440
2. 운영비	76,840
3. 보육활동비	67,762
4. 수익자부담경비	35,676
5. 과년도지출	0
6. 적립금	0
7. 상환반환금	17,800
8. 재산조성비	0
9. 잡지출	0
10.예비비	1,406
합 계	**622,924**

○ 위탁운영 계획

(1)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경쟁을 통한 변경위탁(※사유 : 재계약 기간만료)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3) 선정방식 :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고득점자

(4) 수탁자의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5)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타어린이집의 대표자(원장 포함)로 등록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당해 시설의 대표직(원장직 포함) 사임 및 실질적 운영권을 변경하고 타시설과 위탁시설의 운영을 완전분리하여 시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으로 이를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 부담
-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기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7) 변경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보건복지부 권장표준안)

오산시 의회 민간위탁 동의 → ○ 위탁개시 90일 전

위탁체 모집 →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시군구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심 사	○ 오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오산고현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년 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협력으로 학교 안 초등돌봄 공간을 마련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산시-오산고현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오산고현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운영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운영	비고
오산시-오산고현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21.9	오산시 남부대로 459, 오산고현초	66㎡	20명	2명	직영 (현재)	

※ 2019. 7월부터 운영한 함께자람센터(틈새돌봄)을 2021. 9월 학교돌봄터로 전환한 사항임

○ 오산시 학교돌봄터 운영 현황

(1) 시 설 명 : 오산시-오산고현초 함께자람 학교돌봄터

(2) 대상아동 : 오산고현초 재학생 20명(1학년 대상)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3) 운영시간 : 상시돌봄(시간제, 종일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7:00(4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7:00(8시간)

(다) 아침돌봄 : 월 ~ 금 07:30 ~ 09:00(1시간30분)

(4)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 프로그램] 기본적인 돌봄 관련 지원(출결, 급·간식 등)
- [공통 프로그램] 정서지원 및 학습(숙제)·독서지도와 신체활동 등
- [특별 프로그램] 마을자원(고현마을)을 활용한 놀이 프로그램

(5) 아동 현황 ('21. 8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 나이별	정원	현원	대기인원	학년	성별	
					남	여
인원	20	20	18	1학년	6	14

(6)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가) 자격요건 및 급여(대우)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6시간 근무 : 11시 ~ 17시30분 (휴게시간30분 포함)	· 월 급여액 : 2,039천원 [(실수령 1,646,620원) +4대보험 기관·본인부담 392,380원)]
돌봄 선생님 (1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6시간 근무 : 11시 ~ 17시30분 (휴게시간30분 포함)	· 월 급여액 : 2,039천원 [(실수령 1,646,620원) +4대보험 기관·본인부담 392,380원)]

※ 돌봄인력 급여는 센터장, 돌봄선생님 구분 없이 동일(2021 보건복지부 내시액)

(7) 2021년 예산 현황(국비 25%, 도 교육청 25%, 시비 50%)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예산액	24,312	16,312	8,000	9~12월 4개월분

(8) 주요업무

- 보건복지부「학교돌봄터 운영 지침」에 의거한 학교돌봄터 운영에 관한 업무
-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 아동의 급·간식, 위생 및 안전 관리
- 학부모 상담 및 종사자 복무 관리
-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기타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경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2명), 운영비(※ 운영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6시간 근무) : 월 2,039천원
  돌봄선생님(1명, 1일 6시간) : 월 2,039천원
- 운영비 : 월 2,0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강사비, 기타 종사자 여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②「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추진('19. 9월 예정)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위탁의 근거 조항을 추가

(2) 위탁운영 조건

(가) 학교돌봄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학교돌봄터 운영지침」,「오산시 - 오산고현초 학교돌봄터 운영지침」,「오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법인 정관에 '아동 돌봄시설' 혹은 '학교돌봄터' 등의 사업명 표기

(라) 수탁기관은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마)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사)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아)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자)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차)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기타
- 수탁자는「아동복지법」,「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법령과 위·수탁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위·수탁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함
- 그 밖의 상세한 위탁조건은 오산시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하고 이행함
- 수탁계약 종료 시, 대표자를 제외한 현직자를 고용승계 함
- 2개소 미만이 위탁 신청한 경우 또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 (70점) 미달 시 재공모하고, 재공모 이후 1개소만 위탁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 심의를 거쳐 심사, 선정함. 이 경우에도 심사점수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후 재공고

(4)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0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0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0호점	'21.1.11.	수청로 117 (꿈에그린더센트럴)	78.6 (23평)	23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220천원 – 월지급액(1,873,800원)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00천원 – 월지급액(928,500원)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1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 (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75,576	18,000 (월 1,500천원)	57,576 (월 4,798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20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0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1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1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1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1호점	'21.1.11.	부산중앙로 12 (오산시티자이2단지)	72 (21평)	21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220천원 - 월지급액(1,873,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00천원 - 월지급액(928,5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1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 (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75,576	18,000 (월 1,500천원)	57,576 (월 4,798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20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0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1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2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2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1호점	'21.1.11.	부산중앙로 12 (오산시티자이2단지)	72 (21평)	21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220천원 – 월지급액(1,873,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00천원 – 월지급액(928,5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1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 (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75,576	18,000 (월 1,500천원)	57,576 (월 4,798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20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0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1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3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3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3호점	'21.5.3.	내삼미로 65 (더샵오산센트럴)	73.3 (22평)	22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220천원 – 월지급액(1,873,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00천원 – 월지급액(928,5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1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 (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75,576	18,000 (월 1,500천원)	57,576 (월 4,798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20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0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1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4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4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4호점	'21.5.3.	부산중앙로 42 (오산시타자이2차)	74 (22평)	22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220천원 – 월지급액(1,873,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00천원 – 월지급액(928,5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1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 (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75,576	18,000 (월 1,500천원)	57,576 (월 4,798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20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0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1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5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5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5호점	'21.7.12.	누읍로 20 (누읍휴먼시아)	98 (28평)	28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220천원 – 월지급액(1,873,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00천원 – 월지급액(928,5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1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1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운영비(도비)	인건비 (국·도·시비)	비고
예산액	75,576	18,000 (월 1,500천원)	57,576 (월 4,798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220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00천원
- 운영비 : 월 1,5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1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위탁시설 현황

위 치	오산시 오산로 278번길 3(오산동 843-9)			
설 치 일	1998. 9. 18.			
면 적	355.1㎡ (지하1층, 지상 3층)			
층별용도	지하 (228.45㎡)	1층 (228.45㎡)	2층 (221.83㎡)	3층 (211.83㎡)
	주차장 창고 기계실	- 오색경로당	- 사무실 - 상담실(3개)	- 회의실, - 집단상담실 - 미술치료실 등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4,137,178	1,253,034	1,437,258	1,446,886

(2) 현 위탁체 현황

위 탁 자	오산청년회의소 (회장 김병규)
위탁기간	2019. 1. 1. ~ 2021.12.31

(3) 종사자 현황: 19명 (학교상담전담 14명 별도관리)

구분	총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규직)						청소년동반자 (계약직)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계약직)		학교상담 프로그램 (계약직)
		계	센터장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계	전일제	시간제	팀장	팀원	상담사
				팀장	팀원	팀장	팀원						
정원	19 (33)	6	1	1	2	1	1	10	2	8	1	2	14
현원	19 (33)	6	1	1	2	1	1	10	2	8	1	2	14

(4) 2021년 사업비 지원: 479,848천원 (국 95,125 도 8,250 시 376,473)

구분	예산액(천원)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446,886**	**188,829**	**45,578**	**1,212,479**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86,502			886,502
청소년 안전망 사업	130,128	48735		81,393
청소년 동반자 사업	172,381	75,560	11,334	85,48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5,500	59,162		56,338
학교 밖 청소년 얼칼리지 프로그램운영	19,300			19,300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79,295		22,722	56,573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13,780	5,372	2,522	5,886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30,000		9,000	21,000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계획

(가)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나)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의결 선정

(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 단체의 정의]

Ⅰ.「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Ⅱ.「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Ⅲ.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고시 제2005-6호)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라) 위탁범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오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이행 가능성, 적합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조직·인력·자산 등 현황 (단체의 전문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위탁사무 현황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및 공공시설 수탁 운영 실적)
- 단체의 공신력 및 책임능력
- 운영의지 및 전문성

(2) 위탁운영조건

(가)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및 수탁자 자부담

(나) 회계관리 : 단체와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다) 수탁자는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대, 담보할 수 없음.

(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 청소년사업안내,「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27조 및「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제13조를 근거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 위탁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 재공고 실시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선정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 심사결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위탁운영체들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동점 시 비중이 큰 심사기준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운영체 순으로 결정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21.12.31.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위탁시설 현황

위 치	오산시 경기대로 307 (오산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4층)								
개 관 일	2013. 10. 23.								
면 적	505.86㎡								
구분	사무실	나래터	도담터	play&cafe	동아리, 만화방	음악 연습실	댄스 연습실	화장실2	복도등
	32.76㎡	32.76㎡	32.76㎡	37.8㎡	24.57㎡	24.57㎡	49.14㎡	93.6㎡	177.9㎡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천원)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777,021	249,890	265,783	261,348

(2) 현 위탁체 현황

위 탁 자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조창석)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

(3) 종사자 현황: 7명 (정규직 3, 계약직 4)

구 분	총 계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				방과후아카데미		
		계	관장 (정규직)	팀장 (정규직)	팀원 (정규직1, 계약직 1)	계	팀장 (계약직)	담임 (계약직)
정원	7	4	1	1	2	3	1	2
현원	7	4	1	1	2	3	1	2

(4) 2021년 사업비 지원: 479,848천원 (국 95,125 도 8,250 시 376,473)

구 분	예산액 (천원)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479,848**	**95,125**	**8,250**	**376,473**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261,348	–	–	261,348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3,208	11,604	–	11,604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		3,000	7,000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64,042	82,021	–	82,021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3개동아리)	3,750	1,500	–	2,250
2021 청소년 종합예술제 운영	17,500	–	5,250	12,250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계획

(가)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나)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의결 선정

(다)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 단체의 정의]

Ⅰ.「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Ⅱ.「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Ⅲ.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 (고시 제2005-6호)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

(라) 위탁범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청소년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오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선정기준

- 사업계획 적정성 (이행 가능성, 적합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조직·인력·자산 등 현황 (단체의 전문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등)
- 위탁사무 현황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 및 공공시설 수탁 운영 실적)
- 단체의 공신력 및 책임능력
- 운영의지 및 전문성

(2) 위탁운영조건

(가) 운영재원 : 보조금 수입 및 수탁자 자부담

(나) 회계관리 : 단체와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다) 수탁자는 직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전대, 담보할 수 없음.

(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고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함.

(마) 수탁자는「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 청소년사업안내,「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오산시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27조 및「오산시청소년기본조례」제13조를 근거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 위탁신청자가 1개 법인(단체)일 경우 재공고 실시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선정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 심사결정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위탁운영체들의 총득점을 비교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 동점 시 비중이 큰 심사기준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운영체 순으로 결정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21.12.31.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 위　　치 :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46(가장동)

(3) 시설규모 : 부지면적 2,730㎡, 건축연면적 3,472㎡ (지하1층 ~ 지상3층)

(4) 주요시설

층 별	구　분	면적(㎡)	용　도
	계	**3,472**	**-**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304	
1층	문화강좌실, 근생시설	976	· 제과제빵실, 한식조리실, 바리스타실, 헤어미용실, 체육시설(탁구장)
2층	문화강좌실, 노총사무실	1,071	· 문화 1,2,3,4실, 컴퓨터교육실 ·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 사무실
3층	문화강좌실 및 사무실	1,121	· 양재실, 휴게실, 기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조직 및 구성 (단위 : 명)

계	관　장	사무국장	상근직원
6	1(비상근)	1(비상근)	4

○ 위탁운영 계획

(1) 위탁방법 : 공개모집(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2)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1(계약기간) 규정에 의거

(3) 위탁범위 :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전반

(4) 운영보조금(2021년 기준) : 724,571천원

(5)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등 비영리단체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행
- 근로복지기본법 및 우리 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 위탁 추진일정

(1)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9월
(2) 신청자 접수 : 2021. 10월
(3)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 2021. 11월
(4)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탁시설물 현황

(1) 시 설 물 : ① 오산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② 시장 내 공용화장실(3개소)
(2) 위 치
(가) 고객지원센터 : 오산시 오산로 272번길 22
(나) 공용화장실 : 제1주차장(성호새싹길 31), 제2주차장(성호새싹길 48-1), 고객지원센터 광장(조성예정)(오산로 272번길 22)

(3) 위탁시설물 세부정보

시설물명	동	층별	시설용도	면적	사용용도	사용자	비고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동	계		750㎡			
		1층	영유아보육시설	192㎡	어린이집	시립 미래클어린이집	
			공공업무시설	5.7㎡	금융서비스	오산신협	
			공공업무시설	25.3㎡	여성휴게실	사)오산오색시장 상인회	
			공공업무시설	27㎡	고객안내실	사)오산오색시장 상인회	
		2층	공공업무시설	63㎡	사무실 및 회의실	오산오색시장 상인회	
			공공업무시설	64㎡	소비자 상담실	소비교육중앙회 오산시지부	
			공공업무시설	123㎡	–	–	
		3층	공공업무시설	250㎡	–	–	
	2동	계		78.1㎡			
		1층	공연장	78.1㎡	야외 공연장	사)오산오색시장 상인회	
	3동	계		39.9㎡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39.9㎡	카페	사)오산오색시장 상인회	
공용화장실		계		104㎡			
		오색시장 제1주차장 공용화장실		40㎡	공용화장실	–	
		오색시장 제2주차장 공용화장실		66㎡	공용화장실	–	
		고객지원센터 광장 공용화장실(조성예정)		–	공용화장실	–	

○ 운영인력 규모 : 4명 (상근)
○ 운영예산(2022년 예상) : 220,956천원
○ 위탁운영 계획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3) 선정방식 : 오산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4) 심사기준 : 7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
(5) 수탁자의 자격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
·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민법」이나「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6)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운영자는「전통시장 관련법」및「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신청서 일건의 내용(사업계획서, 법인현황, 사업자등록증 등)중 변경 및 허위기재 등이 발견 시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을 책임
(라) 수탁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방식 등 운영 불가(위반 시 계약을 취소함.)

○ 위탁 대상자 선정 절차

오산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계약만료 90일 전
▼	
위탁체 모집	○ 방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심 사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 신규·변경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	
심사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수탁 계약	○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이행

○ 위탁 추진일정

(1)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1. 10월

(2) 신청자 접수 : 2021. 11월

(3)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 2021. 11월

(4)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동 166번지 일원 사업 대상지에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과, 공공부분 출자 의향을 밝힌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PFV)를 설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166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2021. ~ '2025.(5년)

(4) 면 적 : 601,055㎡

(5) 총사업비 : 7,044억원

(6) 사업내용 : 주거·산업·복합·도시기반시설 용지 개발

(7) 추진방법 :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50억원)

(8) 시 출자금액 : 990백만원(SPC자본금의 19.8%)

(9) 대상지 위치 및 토지이용 계획

위 치 도	토지이용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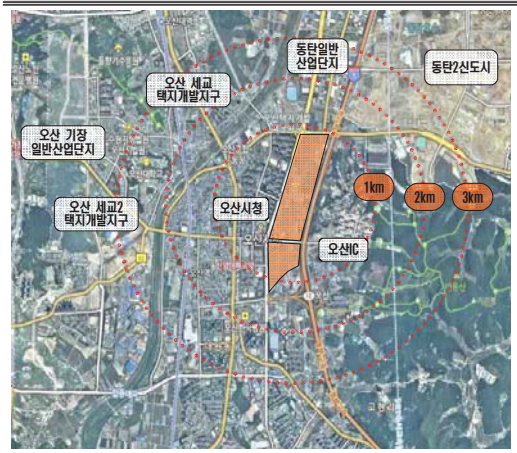	

○ 추진경위

- 2019. 11. : 사업협약 체결(오산시-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 2019. 11. ~ 2020. 03. :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
- 2020. 3. :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의결
- 2020. 7.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협의
- 2020. 9.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공포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 주주협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동 166번지 일원 사업 대상지에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개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과 공공부분 출자 의향을 밝힌 한국농어촌공사, 수원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PFV)를 설립하고자 본 주주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 본 협약은 오산시의 역할 및 책임, 주금납입 및 이익 배당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기에「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2) 위　　치 : 오산동 166번지 일원

(3) 면적 : 601,055m²

(4) 사업기간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일로부터 청산(예정)일(2021~2025)

(5) 총사업비 : 약 7,044억원

(6) 사업주체 : 민·관합동 (오산시 등 공공부문 + 민간 컨소시엄)

・출자비율(계획) : 오산시 등 공공부문 50.1% / 민간 컨소시엄 49.9%

○ 주주협약 내용

(1) 체결주체 : [공공]오산시 등 4개사, [민간]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 (8개사)

		구　분	출자비율	역　할
공공부문 (50.1%)		오산시	19.8%	○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설립 업무 협력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등 인허가 절차이행 및 행정지원
		한국농어촌공사	19.7%	
		평택도시공사	5.3%	
		수원도시공사	5.3%	
민간 부문 (49.9%)	건설 (대표사)	현대엔지니어링(주)	19.9%	○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설립 업무 협력 ○ 공사시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개발계획 수립, 테넌트 확보 등
	재무	한국투자증권(주)	12.0%	
		미래에셋증권(주)	3.0%	
	전략	㈜케이알산업	3.0%	
		새천년종합건설(주)	3.0%	
		이에스아이(주)	3.0%	
		이에스개발(주)	3.0%	
		㈜에코앤스마트	3.0%	

(2) 협약목적 :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PFV) 주주들 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함

(3) 협약내용

· 출자자 구성 및 개별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사항
· 자산관리회사(AMC)의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발행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주금납입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에 관한 사항
· 회계 및 이익의 배당방법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조성토지 관리처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체결 시기 : 2021. 7월 예정

(5) 협약서(안) : 붙임

○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2019. 11. : 사업협약 체결 (오산시-현대엔지니어링(주) 컨소시엄)
- 2020. 7. :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
- 2020. 9.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공포
- 2021. 6. : 운암뜰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및 주주협약(안) 의회 동의
- 2021. 7. :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

○ 기대효과

-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한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함으로서 민간기업의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부분의 운영의 투명성을 조화시켜 적기에 개발사업 수행가능
- 건설출자자의 단지조성공사의 책임준공 사항 규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해소
- 전략출자자의 AI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유치, 전략적 핵심 테넌트 시설 유치를 규정하여 오산시 남부생활권의 새로운 경제 활력 기능 부여
- 지식산업 관련 기업 입주에 따른 고용 및 재정 증대효과 등 오산시의부족한 자족기능 확충 가능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경험을 갖춘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3년)

(3) 수탁기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단체 또는 법인)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시 대행료 수입 범위 내에서 이행

(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

○ 위탁대상자 선정절차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기 간 : 15일 이상**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심 사	**· 오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공신력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전문성 ④ 위탁관리 방안 ⑤ 법인의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심사 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탁계약	**· 협약서 작성 후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간판 등) 설치시 낙하위험 및 고정상태 등 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시하고자 위탁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인 안점점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3년)

(3) 수탁기관 자격

·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 기술자격을 분야별 1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안전점검 수수료 수입 범위 내에서 이행

(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

○ 위탁대상자 선정절차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기 간 : 15일 이상**
↓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심 사	**· 오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신인도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강사확보 여부 ④ 위탁관리 방안
↓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사 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	
위탁계약	**· 협약서 작성 후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운영계획

(1) 위탁방법 : 공개경쟁

(2)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 (3년)

(3) 수탁기관 자격

·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40명 이상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한 단체 또는 법인

(4)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비 범위 내에서 이행

(나) 교육 강사 및 직원은 수탁자가 임명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우리시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준수

(라)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고 등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

○ 위탁대상자 선정절차

【 절 차 】	【 내 용 】
공개모집 공고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시 홈페이지 등 게시)** **· 기 간 : 15일 이상**
신청자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일체
심 사	**· 오산시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심사 기준표)** ① 법인의 신인도 ② 법인의 관련사업 운영실적 ③ 법인의 강사확보 여부 ④ 위탁관리 방안
심사 및 결정	**· 심사결정 방법 :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미만의 경우 부적격 처리
심사 결과 공개	**· 오산시 홈페이지 공개**
위탁계약	**· 협약서 작성 후 공증 이행**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산업체등에 저렴한 용수공급과 하수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보호를 위해「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재)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탁계획

(1)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근거: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 제28조

(2)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입찰

(3)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수탁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금지함

(나) 수탁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하수도법」,「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조례」, 위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다) 수질이상 등 발생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요처의 손해배상은 민간위탁 운영처에서 책임지고 배상한다

(4) 수탁자 선정절차

(가) 관련근거: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 제28조

(나) 선정방법: 조달청의뢰 공개입찰

(다) 신청자격: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는 업체

(라) 선정결과: 공개입찰결과 낙찰자와 위·수탁 계약체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코로나 19 상황 지속에 따른 세출증가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시의 향후 재원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 중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집중 투자하여 시 자율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의회의 의결을 통해 기(旣) 편성한 지방채 재원에 대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경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2021년도 지방채 발행 사업 변경 사항

(1)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 취소

(가) 발행액 : 60억원

(나) 차입선 : 지역개발기금 (경기도)

(2) 지역개발기금 발행취소액 대체사업 발굴

(가)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

- 발행액 : 20억원 (차입선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나)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 발행액 : 20억원 (차입선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 지방채(지역개발기금) 변경 예정 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차 입 선	발행규모			연이율 (상환기간)
		기존	변경	증감	
【합 계】	**1개**	**60**	**40**	**△20**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취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0	0	△60	1.5% (3년거치, 5년상환)
미니어처 전시관 건립 (대체)		0	20	20	
국민체육센터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대체)		0	20	20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보고내용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2021년)

나. 대상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보고시기: 매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보고

라. 주요내용

1)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가능(지방의회에 보고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권고)

2) 해제 권고는 서면(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 포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양산3구역] 의회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오산(양산3구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제안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 본 지역은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상 주거형 시가화예정용지 배분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사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20년 / 2024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일원
- 면 적 : 76,070㎡(약 23,011평)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공동주택 건립, 기반시설(도로, 공원)] 개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1. 공동주택마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되, 최소한 세대 당 1.5대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이를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기 바라며,
2. 기반시설 설치계획 중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한쪽만 보도를 설치한 후 나머지 한쪽은 다른 개발 사업이 있을 때 해당 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도로를 개설할 때 양쪽 모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양쪽 모두 보도를 설치하고, 더불어 자전거도로까지 설치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람.

□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 **제 안 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우리시 전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계획내용 : 2025년 오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계획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25년

(2) 공간적 범위 : 오산시 행정구역 전역 (42.707㎢)

○ 의회 의견청취 대상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2)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로 중 주간선도로, 공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9. 10.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의견없음)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명철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1. 10. 8
○ 회 기 : 2021. 10. 19 ~ 10. 22 (4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5.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9. 2022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0.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1.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2.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조성에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을 누비며 민원을 해결하는 등 각종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및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확진자수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90%를 넘어서며 일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등 우리의 일상으로의 복귀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산시 또한 백신 1차 접종률이 90% 이상으로 10월말까지 2차 접종 7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5일부터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소아 청소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를 통제하며 함께 생활하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접종률과 치료제의 개발 등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경기의 회복 또한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으며 서로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빗장을 풀면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 방심하게 된다면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며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의 시행에 앞서 우리 오산시도 선제적으로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 체육시설 등의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혜택을 추가적으로 찾아 시행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출연계획안을 비롯한 동의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심의하는 모든 안건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유념하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출연계획안인지, 민간위탁 동의가 적정한 것인지 등 안건을 세세히 살피시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 따뜻한 햇볕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가을입니다.

황금빛 들녘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과수원의 사과와 배는 탐스럽게 익어 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의 따가운 햇빛과 퍼붓는 장맛비, 태풍을 견뎌 내고 결실을 일궈 낸 농부처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우리 모두의 노력이 일상의 회복이라는 큰 결실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오산시의회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 모두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을 등화가친의 시기라 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생각하던 책 한권쯤 곁에 두고 즐길 수 있는 가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19.(화) 11: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제26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 자유발언 신청시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6.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7.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1. 2022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12.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13.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14.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15.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	○ 휴회 : 10.20. ~10.21. (2일간)
	16. 휴회의 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0.20.(수)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10.21.(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10.22.(금)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등 동의안 10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실무협의체 기능 조항 정비(안 제5조제1항제6호)

(1)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의 적정성 심의” 규정 삭제

○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 부위원장 인원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및 안 제7조제3항)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정비(안 제5조제3항)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삭제
○ 그 밖에 조문 및 용어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교육재단 장학생 선발제도 및 경기도 복권기금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제도의 운영에 따른 중복수혜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발생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1. 7월에 개정된 환경부의 “시·군 환경계획 수립 지침”과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권리관점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임된 조례의 형식을 재정립하고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 (안 제1조).
○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 (안 제2조).
○ 환경정보공개 및 국제협력의 원칙 추가 (안 제3조).
○ 환경훼손에 대한 용어를 삽입하고,「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유해화물질에 대한 용어 삭제 (안 제4안).
○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 (안 제8조).

○ 환경보전 수립기간을 정부지침에 따라 조정 (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 2021. 10. 21.

○ 심 의 결 과 : 보류

→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한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안건 심의를 보류함.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05년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건립 당시 대비 2025년 인구수는 약 100%증가 및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약158%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적환 공간 부족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인근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적환공간을 확보하고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구분		재산 종류	사 업 개 요	소관 부서
취득	매입	토지 건물	**☐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추진배경: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량 증가 및 그간 우리시에서 반입해오던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적환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필요 ○취득재산: 토지 및 건물(매입) ○기 간: 2022. 1. ~ 2022. 10. ○위 치: 갈곶동 3-3번지 일원 ○규 모: 13,917.88㎡(토지13,484㎡,건물433.88㎡) ○기준가격: 4,780백만원 (토지4,466백만원,건물314백만원) - 사업비: 12,534백만원 ·매입비(토지, 건물): 12,000백만원 ·부지정리 및 적환공간 조성: 534백만원	환경사업소 청소자원과

○ 연도별 사업비 확보계획 (단위:천원)

재원별	합계	연도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12,533,784	-	-	12,533,784	-
시비	12,533,784	-	-	12,533,784	-

- 매입비(토지, 건물): 12,000,000천원, 부지정리 및 적환공간 조성 533,784천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공 ····· ′19.04.
(나) 생활자원회수시설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 ····· ′20.08.
(다) 오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추진계획 수립 ····· ′21.07.
(라) 토지매수 협의 및 매입비 예산 확보 추진 ····· ′21.12.
(마)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추진 ····· ′22.10.
(바) 재활용센터 적환공간 조성 추진 ····· ′22.12.

○ 기대효과

- 생활쓰레기 적환공간 증가로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 및 처리 가능.

○ 위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2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수량(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1	13,484	4,466,216	
		건물	1	433.88	313,494	
		기타				
	매입	토지	1	13,484	4,466,216	
		건물	1	433.88	313,494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일반회계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 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수량(면적)				
합계				13,917.88	12,000,000	2022	오산시자원재활용센터 부지 조성 (매입)	청소자원과
계	7필지			13,484	11,643,150			
1	토지	갈곶동 3-3	전	413	289,100			
2		갈곶동 6	잡종지	73	87,600			
3		갈곶동 7	대	610	671,000			
4		갈곶동 7-1	대	1,129	1,580,600			
5		갈곶동 7-2	잡종지	297	356,400			
6		갈곶동 7-3	전	10,715	8,572,000			
7		갈곶동 7-4	도로	247	86,450			
계	3동			433.88	356,850			
8	건물	갈곶동 7 외	-	433.88	356,850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1.12.31.로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전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시설 개요

구 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오산시 현충로 104(오산동)					
건물연면적	부지면적 2,115㎡, 건물연면적 1,473㎡(지하1층, 지상3층) *어린이집 면적 178.22㎡ 제외(가족보육과 소관)					
개 소	2005. 9. 6.					
직 원 수	11명 (관장 1, 부장 1, 과장 2, 직원 7)					
위탁법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기간	2017. 7. 1. ~ 2021. 12. 31.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060백만원	534백만원	575백만원	619백만원	652백만원	680백만원

※ 현재 운영중인 오산은빛사랑채는 2021. 12월중 폐업 예정으로 민간위탁 대상 제외

○ 위탁운영계획

(1)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9조

(2) 수탁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나) 관련근거 :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7조

(다) 선정기준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위탁체 모집 및 접수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시 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사기준 :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표”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위탁체를 결정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3)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법인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폐업 예정에 따른 오산은빛사랑채 활용 방안

(가) 시설 노후화, 이용자 감소, 신규 장기요양기관 증가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12월중 폐업을 할 예정

(나) 오산은빛사랑채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하여 프로그램실로 변경하여 이용자 중심의 복지관으로 운영할 예정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가)시립세교2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2년 상반기에 신축되는 세교2택지지구내 A-15BL(탑동)에 위치하게 되는 (가칭)시립세교2어린이집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어린이집 운영 현황

1) 기본현황

구 분	내 용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세교2택지지구 내 A-15BL
시 설 규 모	지상 1층, 연면적 301.1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경과

일 정	내 용
2021.03.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 계획
2020.06.30.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의(한국토지주택공사)
2020.09.1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수립

○ 정원 및 반편성 계획 (단위 : 명)

계	만 2세	만 3세	만 4세~5세	비 고
50	7	20	23	취약보육

○ 인력투입 계획 (단위 : 명)

계	원장	교사	조리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비 고
10	1	8	1	-	-	-	[의무 배치 기준] ① 간호사 : 현원 100명 이상 ② 조리사 : 현원 40명 이상 ③ 영양사 : 현원 100명 이상

○ 예산편성 계획 (단위 : 천원)

세 입	
과 목	예산액
1. 보육료 수입	214,656
2. 수익자부담금수입	65,648
3. 보조금및지원금	264,439
4. 전입금	3,238
5. 기부금	0
6. 적립금	0
7. 과년도수입	0
8. 잡수입	3,860
9. 전년도이월액	996
합 계	552,837

세 출	
과 목	예산액
1. 인건비	328,542
2. 운영비	42,878
3. 보육활동비	106,082
4. 수익자부담경비	72,016
5. 적립금	0
6. 상환반환금	0
7. 재산조성비	2,000
8. 과년도지출	0
9. 잡지출	319
10. 예비비	1,000
합 계	552,837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유엔군 초전기념관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1.12.31.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개시 전 유엔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사무 :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 유물 수집 및 전시, 교육 및 홍보 등

◯ 위탁시설 현황

구분	**유엔군 초전기념관 (개관 2013. 4. 23)**
위치/연면적	오산시 경기대로 742, 1,262.13㎡ (지상3층)
종사자수	5명 (비상근 관장1, 사무국장1, 행정주임1, 교육사1, 기간제1)
현수탁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 (회장 김동희)
위탁현황	2020. 1. 1 ~ 2021.12.31.
주요시설	기념관, 주차장, 신초전비, 구초전비, 야외광장, 야외화장실, 참전국 국기게양대
관람객수	267,917명 (2021.8월말 기준, 개관이래 누적)

◯ 민간위탁(재계약) 계획

(1) 위탁사무 : 유엔군 초전기념관 운영

(2) 수 탁 자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오산시지회 (회장 김동희)

(3) 위탁방식 :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4)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5) 위탁사무 상세

- 기념관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엔군 초전 기념비 유지관리
- 유엔군 초전 관련 관계유물 수집 및 전시
-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부대시설의 보존과 환경 등의 보호관리
-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탁조건

(가) 사업수행

- 수탁자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기념관 운영비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오산시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법인 및 단체에서 자부담할 수 있음
-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적용

(나) 기 타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해결함
-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2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출연 기관

(1)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2) 주요사업

-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및 학술행사 개최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

○ 출연금액

– 2022년도 출연금 : 17,224천원

※ 전전년도(2020회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2/10,000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출연 필요성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으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바,

– 우리 시도 출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2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2022년 오산교육재단 출연(안) : 3,886,309천원

– 출연금 구성내역

총 예 산 액	운영비	사업비
3,986,309천원	1,624,339천원	2,361,970천원

– 출연금 반영내역

총 예 산 액	2022년 순세계잉여금	2022년 출연금
3,986,309천원	100,000천원	3,886,309천원

(1) 출연목적 : 관내 학생대상 장학사업 및 혁신교육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2) 출연내역 :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3) 기대효과
・장학금 지급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취 및 다양한 혁신교육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실현

○ 의결사항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의결내용 : 오산교육재단 출연 3,886,309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원활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먼저 오산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2022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 출연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에 어려움이 생겨, 육성기금을 출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출연근거
(가) 오산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다)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출연기관 : 경기도 지역금융과
(4) 2022년도 출연규모 : 84백만원
(5) 출연금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6년 ~ 2020년)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도 출연 요청액	최근 5년간 지원금액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오산시 지원금액	84	84,349	11,400	9,452	13,599	26,893	23,005

※ 2021년 출연액 : 82백만원

(6) 지원한도

자금명	코로나19 운전 자금	특화기업 운전 자금	시설투자	벤처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인 창업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5억원	30억원	5억원	5억원	1억원

※ 유흥업, 부동산, 금융·보험업 등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1) 출연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출연근거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다) 오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라)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3)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4) 2022년도 출연규모 : 1,000백만원

(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 300백만원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 700백만원

※ 최근 5년간(2017년 ~ 2021년) 출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200	200	200	200	300
소상공인 특례보증	400	400	500	1,000	700

(5) 출연금의 10배수까지 특례보증 지원

(6) 지원 한도

(가)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최대 300백만원

(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022년도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에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문화재단 출연금 :

총 예 산 액	출 연 금	기타 수입액
6,506,286천원	4,992,286천원	1,514,000천원

– 출연목적

· 오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

– 출연내역 : 오산문화재단 출연금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을 통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구현

○ 의결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의결내용 : 오산문화재단 출연 4,992,286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우리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1) 22년도 출연금 납부 예정금액 : 10,000천원

(2) 매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적립출연금 납부' 공문 시달
(도, 농복합시 및 군 : 50,000천원, 일반시 : 10,000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 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後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 연 금 : 24,000천원(1인당 최대 대출금액 80,000천원*10%*3명)

○ 지원대상 : 법인택시 5년이상 무사고 장기근속자(오산시 소재)

○ 이차보전금(이자) 지원방식

(1) 경기도 : 5년간 이차보전금(1.5%)의 30%지원

(2) 오산시 : 5년간 이차보전금(1.5%)의 70%지원

○ 협력은행(농협)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운수종사자 대출

(1) 보증한도 : 1인당 최대 80,000천원

(2) 보증기간 : 8년(2년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0. 22.

○ 심 의 결 과 : 부결

–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 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본 시책 사업은 소상공인의 업종 간 또는 개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연계획안을 부결함.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1. 개 요

○ 집회공고 : 2021. 11. 17
○ 회 기 : 2021. 11. 25 ~ 12. 21 (27일간)
○ 주요안건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9.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8. 오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9. 오산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변경)]
21.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
22.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3.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한 2021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며 견뎌 오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위드코로나로의 단계적 전환으로 서서히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고 2022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오산시 전역을 발로 뛰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 행복도시 오산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위협에 맞서 전세계가 신음하고 버텨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식당,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국민들은 지쳐 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지쳐 있던 국민들에게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열정과 투혼으로 커다란 위안을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백신접종의 시작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했던 10월말 전국민 70%접종을 달성하며 위드코로나 1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또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역대 10월 수출 1위를 기록했으며, 10월 기준 실업률 또한 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똘똘 뭉쳤고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산시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년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탄에서 오산으로 이어지는 트램의 국토부 승인과 분당선 오산 연장계획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미니어처 빌리지와 오산 문화스포츠센터의 개관 등 축하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21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았고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가운데 그 어느 상보다도 복지행정상의 수상은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업의 성과를 이뤄 낸 곽상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행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찾아온 일상회복의 첫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가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백신접종과 더불어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힘내서 백신접종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제262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의 경우 총 6,986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75억 원 감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오산시 재정상황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시민의 뜻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며 조금의 낭비도 일어나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들어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해 왔지만 집행부에 비해 비대칭적인 권한으로 인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저희 의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의정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며, 시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 제고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을, 잘하고 있다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에게 올 한해 고생 많았다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5.(목) 10: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휴회 : 11.26. ~12.01. (6일간)
	□ **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오산시장 시정연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개요 설명)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2.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문화원 건립(변경)] 13.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25.(목) 10:00 본회의장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4.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6. 휴회의 건	○ 휴회 : 11.26. ~12.01. (6일간)
11.26.(금)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7.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6. 오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7. 오산시 환경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26.(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11.27.(토)~ 11.28.(일)	**□ 휴 일**	
11.29.(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30.(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30.(화) 14:00 제2회의실	**- 계수조정** 4.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12.01.(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12.02.(목) 11: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의결**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2.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오산문화원 건립(변경)] 등 동의안 2건 4. 휴회의 건	○ 휴회 : 12.03. ~12.20. (18일간)
12.03.(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제안설명, 검토보고**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04.(토)~ 12.05.(일)	□ **휴 일**	
12.06.(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자치행정국, 보건소]**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7.(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8.(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09.(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도시주택국, 중앙도서관]**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2.10.(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1.(토)~ 12.12.(일)	□ **휴 일**	
12.13.(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환경사업소]**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4.(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15.(수)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도시주택국, 오산교육재단]	
12.16.(목)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경제문화국, 시민안전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오산문화재단]	
12.17.(금) 10:00 제2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사업소,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2.18.(토) ~ 12.19.(일)	□ **휴 일**	
12.20.(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 **의결**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2.21.(화) 11:00 본회의장	□ **제3차 본회의** - **의결**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 의결에 따른 오산시장 인사말씀)	
	□ **2021년도 의정활동지원 유공공무원 시상**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 요 골 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849,312,996 천원

나. 일반회계 ····· 726,972,100 천원

다. 특별회계 ····· 122,340,896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5,353,610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6,987,286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55,72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3,417,309 천원

○ 지방교부세 ····· 81,440,508 천원

○ 조정교부금 ····· 104,797,637 천원

○ 보 조 금 ····· 295,196,923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101,838,619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55,72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6,507,825 천원

○ 지방교부세 ····· 81,440,508 천원

○ 조정교부금등 ····· 104,397,637 천원

○ 보 조 금 ····· 291,666,611 천원

○ 지 방 채 ····· 24,400,00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42,837,519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9건)

○ 세 외 수 입 ····· 56,909,484 천원

○ 조 정 교 부 금 ····· 400,000 천원

○ 보 조 금 ····· 3,530,312 천원

○ 지 방 채 ····· 2,500,000 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59,001,100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93,895,905 천원

○ 재 무 활 동 ····· 31,397,67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24,019,416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631,512,102 천원

○ 재 무 활 동 ····· 25,523,86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69,936,138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8건)

○ 정 책 사 업 ····· 62,383,803 천원

○ 재 무 활 동 ····· 5,873,81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54,083,278 천원

4. 계속사업

○ 시청사 별관 건립 등 62건 ····· 485,697,66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12. 1.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예산 총괄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시 제출 예산액			수정예산액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예 산 액	증 감 액
합 계			**849,312,996**	**841,345,961**	**7,967,035**	**849,383,296**	**70,300**
일 반 회 계			726,972,100	718,865,098	8,107,002	727,042,400	70,300
특별회계 (8종)	소 계		122,340,896	122,480,863	△139,967	122,340,896	–
	공기업 특별회계 (2종)	소 계	105,353,610	105,021,425	332,185	105,353,610	–
		상수도 특별회계	32,480,411	32,148,226	332,185	32,480,411	–
		하수도 특별회계	72,873,199	72,873,199	0	72,873,199	–
	기타특별회계 (6종)	소 계	16,987,286	17,459,438	△472,152	16,987,286	–
		교통사업	14,300,670	14,752,774	△452,104	14,300,670	–
		의료급여기금운영	1,791,202	1,827,283	△36,081	1,791,202	–
		기반시설부담금	461,271	461,271	0	461,271	–
		도시개발	79,724	79,691	33	79,724	–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71,094	55,094	16,000	71,094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83,325	283,325	0	283,325	–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			**849,312,996**	**7,967,035**	**-**	**70,300**	**849,383,296**
일반회계	소 계		726,972,100	8,107,002	-	70,300	727,042,400
	지방세수입		155,722,000	4,090,000	-	-	155,722,000
	세외수입		26,507,825	1,118,458	-	-	26,507,825
	지방교부세		81,440,508	△7,970,000	-	-	81,440,508
	조정교부금등		104,397,637	4,880,234	-	-	104,397,637
	보조금	소 계	291,666,611	9,367,583	-	70,300	291,736,911
		국고보조금등	225,431,672	6,379,649	-	58,000	225,489,672
		시도비보조금등	66,234,939	2,987,934	-	12,300	66,247,239
	지방채		24,400,000	△5,000,000	-	-	24,40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837,519	1,620,727	-	-	42,837,519
특별회계	소 계		122,340,896	△139,967	-	-	122,340,896
	공기업	소 계	105,353,610	332,185	-	-	105,353,610
		상수도 소 계	32,480,411	332,185	-	-	32,480,411
		상수도 사업수익	18,473,004	△1,567,815	-	-	18,473,004
		상수도 자본적수입	14,007,407	1,900,000	-	-	14,007,407
		하수도 소 계	72,873,199	0	-	-	72,873,199
		하수도 사업수익	25,179,096	0	-	-	25,179,096
		하수도 자본적수입	47,694,103	0	-	-	47,694,103
	기타	소 계	16,987,286	△472,152	-	-	16,987,286
		세외수입	7,944,164	566,033	-	-	7,944,164
		조정교부금등	400,000	0	-	-	400,000
		보조금	561,812	△29,026	-	-	561,812
		지방채	2,500,000	0	-	-	2,500,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581,310	△1,009,159	-	-	5,581,31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총 계(9종)				**849,312,996**	**7,967,035**	**△12,300**	**82,600**	**849,383,296**
일반회계(1종)				726,972,100	8,107,002	△12,300	82,600	727,042,400
특별회계	소 계(8종)			122,340,896	△139,967	-	-	122,340,896
	공기업	소 계(2종)		105,353,610	332,185	-	-	105,353,610
		상수도	소 계	32,480,411	332,185	-	-	32,480,411
			사 업 비 용	24,053,096	189,788	-	-	24,053,096
			자 본 적 지 출	8,427,315	142,397	-	-	8,427,315
		하수도	소 계	72,873,199	0	-	-	72,873,199
			사 업 비 용	56,366,599	0	-	-	56,366,599
			자 본 적 지 출	16,506,600	0	-	-	16,506,600
	기타	소 계(6종)		16,987,286	△472,152	-	-	16,987,286
		교통사업특별회계		14,300,670	△452,104	-	-	14,300,67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791,202	△36,081	-	-	1,791,20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61,271	0	-	-	461,271
		도시개발특별회계		79,724	33	-	-	79,724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71,094	16,000	-	-	71,094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283,325	0	-	-	283,325

□ 부서별 세출예산 수정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합 계	726,972,100	8,107,002	△12,300	82,600	727,042,400
의회사무과	2,180,664	△103,930	-	-	2,180,664
홍보담당관	4,502,462	△22,205	-	-	4,502,462
감사담당관	137,771	△11,140	-	-	137,771
기획예산담당관	23,859,421	△1,237,168	△12,300	-	23,847,121
자치행정과	71,826,194	△1,112,882	-	-	71,826,194
세정과	823,864	△20,263	-	-	823,864
징수과	1,250,396	△75,428	-	-	1,250,396
회계과	13,032,381	9,200	-	-	13,032,381
민원여권과	639,113	△39,975	-	-	639,113
희망복지과	31,558,688	3,113,877	-	-	31,558,688
노인장애인과	99,767,879	5,908,425	-	-	99,767,879
가족보육과	103,042,380	1,283,391	-	82,600	103,124,980
아동청소년과	32,852,973	△292,583	-	-	32,852,973
평생교육과	25,421,545	△358,845	-	-	25,421,545
일자리정책과	13,365,327	△5,514,643	-	-	13,365,327
지역경제과	20,014,646	2,902,695	-	-	20,014,646
문화예술과	11,930,167	△776,989	-	-	11,930,167
체육관광과	16,721,412	△1,207,870	-	-	16,721,412
농축산정책과	6,400,637	△5,823	-	-	6,400,637
도시정책과	188,586	△1,650	-	-	188,586
미래도시개발과	5,924,478	△16,800	-	-	5,924,478
건축과	864,352	△11,460	-	-	864,352
주택과	15,905,513	△342,683	-	-	15,905,513
토지정보과	507,408	△22,377	-	-	507,408
안전정책과	55,242,262	△8,290	-	-	55,242,262
대중교통과	23,362,164	△30,264	-	-	23,362,164
도로과	22,183,612	1,324,951	-	-	22,183,612
정보통신과	3,426,329	△152,542	-	-	3,426,329
스마트교통안전과	9,898,995	885,156			9,898,995
보건행정과	7,639,993	24,192	-	-	7,639,993
건강증진과	10,513,522	△266,809	-	-	10,513,522
식품위생과	788,606	△12,774	-	-	788,606
환경과	21,359,273	2,848,278	-	-	21,359,273
청소자원과	33,547,447	△83,800	-	-	33,547,447
수도과	0	0	-	-	0
하수과	5,981,000	0	-	-	5,981,000
생태하천과	4,954,519	2,208,042	-	-	4,954,519
공원녹지과	15,585,824	△114,802	-	-	15,585,824
중앙도서관	5,838,792	△265,754	-	-	5,838,792
차량등록사업소	26,918	△1,500	-	-	26,918
중앙동행정복지센터	683,614	△45,543	-	-	683,614
대원동행정복지센터	1,126,684	△66,581	-	-	1,126,684
남촌동행정복지센터	369,535	△37,400	-	-	369,535
신장동행정복지센터	786,649	△54,142	-	-	786,649
세마동행정복지센터	438,463	△67,480	-	-	438,463
초평동행정복지센터	499,642	△18,810	-	-	499,642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시제출예산액	추경요구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감 액	증 액	
특별회계(8종)		122,340,896	△139,967	-	-	122,340,896
공기업 특별회계(2종)		105,353,610	332,185	-	-	105,353,610
상수도 특별회계(수도과)		32,480,411	332,185	-	-	32,480,411
하수도 특별회계(하수과)		72,873,199	0	-	-	72,873,199
기타 특별회계 (6종)		16,987,286	△472,152	-	-	16,987,286
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과	9,394,814	300,000	-	-	9,394,814
	스마트교통안전과	3,831,097	△152,104	-	-	3,831,097
	차량등록사업소	1,074,759	0	-	-	1,074,75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희망복지과)		1,791,202	△36,081	-	-	1,791,20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도시정책과)		461,271	0	-	-	461,271
도시개발특별회계(도시정책과)		79,724	33	-	-	79,724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환경과)		71,094	16,000	-	-	71,094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지역경제과)		283,325	0	-	-	283,325

□ 세부사업별 수정내역

○ 일반회계

▶ 세 입 (단위 : 천원)

장	관 / 항	목	사업명	제출 예산액	추경 요구액	수정액 감액	수정액 증액	수정 예산액
합 계				**1,367,673**	**△70,300**	**-**	**70,300**	**1,437,973**
보조금	국고 보조금등 / 국고 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가족보육과> ◎ 아이돌봄지원	1,127,236	△58,000	-	58,000	1,185,236
〃	〃 / 〃	521-01 시·도비 보조금등	[일반회계] <가족보육과> ◎ 아이돌봄지원	240,437	△12,300	-	12,300	252,737

▶ 세 출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명		제출 예산액	추경 요구액	수정액 감액	수정액 증액	수정 예산액
합 계					**3,869,548**	**△1,096,615**	**△12,300**	**82,600**	**3,939,848**
기획 예산 담당관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	◎ 일반 예비비		2,261,438	△1,014,015	△12,300	-	2,249,138
가족 보육과	아이돌봄 지원 (국비/지원)	308-11 공기관등에대 한경상적위탁 사업비	◎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소계	1,608,110	△82,600	-	82,600	1,690,710
				국비	1,127,236	△58,000	-	58,000	1,185,236
				도비	240,437	△12,300	-	12,300	252,737
				시비	240,437	△12,300	-	12,300	252,737

○ 기타특별회계 : 해당없음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추경없음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해당없음

※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 추경없음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농업발전기금 폐지(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폐지기금 조성금 처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지출계획 변경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 운용규모 ····· 10,469,733 천원

2) 수입계획

가) 예 탁 금 원 금 회 수 ····· 6,747,500 천원

- (기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5,097,500 천원
- (추가) 폐지기금 예탁금 원금회수(농업) 1,650,000 천원

나) 예 수 금 수 입 ····· 3,500,000 천원

다) 예 탁 금 이 자 ····· 222,233 천원

- (기존)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 203,472 천원
- (추가) 예탁금 이자수입(농업) ····· 18,761 천원

3) 지출계획

가) 예 탁 금 ····· 5,187,500 천원

나)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 1,872,233 천원

- (기존) 예수금 이자상환 203,472 천원
- (추가) 폐지기금(농업)예수금 원금상환 1,650,000 천원
- (추가) 폐지기금(농업)예수금 이자상환 18,761 천원

다) 기 타 회 계 전 출 금 ····· 3,410,000 천원

나. 농업발전기금

1) 운용규모 ····· 1,812,129 천원

2) 수입계획

가) (추가)예 탁 금 원 금 회 수 ····· 1,650,000 천원

나) 예 치 금 회 수 ····· 101,989 천원

- (기존) 예치금 회수 ····· 101,196 천원
- (변경) 결산액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 ····· 101,989 천원

다) 이 자 수 입 ····· 60,140 천원
– (기존)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 41,750 천원
– (변경)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 60,140 천원

3) 지출계획

가) 비융자성사업비 ····· 4,600 천원
– (기존) 심의수당 및 3개사업 ····· 30,450 천원
· 농업발전기금 심의수당 ····· 3,000 천원
· 학교4-H 우수활동회원 장학금 지원 ····· 4,800 천원
·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 13,650 천원
· 선진지 농업 연찬회 지원 ····· 9,000 천원
– (변경) 심의수당 및 1개사업 ····· 4,600 천원
· 농업발전기금 심의수당 ····· 1,400 천원
· 학교4-H 우수활동회원 장학금 지원 ····· 3,200 천원
나) (추가)반 환 금 기 타 ····· 84,000 천원
다) (추가)기타회계 전출금 ····· 1,723,529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12. 1.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698,689,603 천원
나. 일반회계 ····· 579,330,457 천원
다. 특별회계 ····· 119,359,146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1,735,795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7,623,351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57,94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8,186,259 천원
○ 지방교부세 ····· 73,641,000 천원
○ 조정교부금 ····· 94,732,000 천원
○ 보 조 금 ····· 234,008,555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50,179,789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57,94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4,365,488 천원
○ 지방교부세 ····· 73,641,000 천원
○ 조정교부금 ····· 94,732,000 천원
○ 보 조 금 ····· 226,678,959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971,010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7건)

○ 세 외 수 입 ····· 63,820,771 천원
○ 보 조 금 ····· 7,329,596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48,208,779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581,675,918 천원
○ 재 무 활 동 ····· 10,299,706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06,713,979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491,715,937 천원
○ 재 무 활 동 ····· 8,479,686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9,134,834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7건)

○ 정 책 사 업 ····· 89,959,981 천원
○ 재 무 활 동 ····· 1,820,02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27,579,145 천원

4. 계속사업

○ 시청사 별관 건립 등 46건 ····· 351,989,81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1. 12. 20.

○ 본회의 심의 : 2021. 12. 21.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1. 총 괄

가. 운용규모 ····· 6,041,617 천원

나. 수 입

○ 전 입 금 ····· 1,673,323 천원

○ 보 조 금 ····· 101,850 천원

○ 융 자 금 회 수(이자포함) ····· 64,000 천원

○ 예 치 금 회 수 ····· 3,944,909 천원

○ 이 자 수 입 ····· 197,535 천원

○ 기 타 수 입 ····· 60,000 천원

다. 지 출

○ 비 융 자 성 사 업 비(고유목적사업) ····· 1,031,464 천원

○ 융 자 성 사 업 비 ····· 50,000 천원

○ 인 력 운 영 비 ····· 60,000 천원

○ 예 탁 금 ····· 300,000 천원

○ 예 치 금 ····· 4,558,910 천원

○ 기 타 지 출 ····· 41,243 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금액으로 합계에는 미포함

2. 기 금 별(9종)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5,210,347 천원

2) 보 훈 복 지 기 금 ····· 58,873 천원

3) 자 활 기 금 ····· 445,012 천원

4) 노인복지기금 ····· 134,070 천원
5) 장애인복지기금 ····· 104,035 천원
6) 지역문화진흥기금 ····· 327,878 천원
7) 식품진흥기금 ····· 729,615 천원
8) 옥외광고발전기금 ····· 309,132 천원
9) 재난관리기금 ····· 3,933,002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0. 12. 19.
○ 본회의 심의 : 2020. 12. 2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청년기본소득은 조례에 따른 청년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저소득 청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저소득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현행 조례에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법인 등 공공기관(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공공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며,

○ 사무의 위탁을 위한 적정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개정〉

○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의회의 동의 등)에 따르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신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바,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각각의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법」과 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행정안전부)>

○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사전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회 동의, 계약 체결, 비용 부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

- 사무의 공공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5조).
-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 재위탁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공공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 공공위탁의 정산 및 실적보고, 사무편람 작성, 지도·감독 및 감사, 계약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신설>

- 회계연도 및 수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비용의 정산 및 실적을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를 자체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사무의 민간위탁은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 적정성 검토, 수탁자 선정방법, 재계약, 지도·감독과 감사의 결과 및 조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상설)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 현행 조례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운영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각각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포함) 개시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 후 중요사항의 변경 시 변경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개정>

- 수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연간 위탁금액(관리·운영비 포함)이 1억원 이하의 사무는 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 <예외규정 신설>

※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개정>

- 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 민간위탁 계약체결 등과 재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8조). <개정>

- 수탁기관 선정 공고 후 15일 경과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이 부결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일시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민간위탁 운영지원, 수탁기관의 의무,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및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개정>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33조).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해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평가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연간 위탁금액(관리·운영비 포함)이 1억원 이하의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 시설관리 업무는 성과평가를 제33조의 지도·감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민간위탁 계약의 취소와 수탁기관 응모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김영희 의원 외 4인

▷ 제안이유

○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한정해 나열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일환인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을 확대 정의하고,

○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체 간 공동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권장 비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관내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와 육성 지원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으로 확대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지역건설근로자”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오산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고, 시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의 우선 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게 권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오산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시민의 문화권 보장과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주체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오산시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오산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자치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 각 호의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

○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문화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오산시 이음문화정책협의체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협의체는 오산시 이음시민자치회의 각 동 분과위원회와 관계기관 협력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성길용 의원

▷ 제안이유

○ 노후주택 등의 상수도 급수설비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하여 옥내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갱생의 효과 문제와 교체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불편의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옥내급수설비 개량 지원에 수도관의 세척·갱생, 교체뿐만 아니라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우수한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을 “옥내급수설비”로 용어를 정의하고 급수설비 개량 지원 대상을 옥내급수설비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

○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와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급수설비의 상태 및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량”이라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제12호).

○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권고 및 비용의 보조 대상으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개량”으로 변경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급수설비 개량비용의 지원 시설 중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함(안 제39조제4항).

○ 수도요금 요율표에 제곱미터(㎡)로 잘못 표기된 사용량의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수정함(안 별표 1).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통장의 자격기준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연임제한 예외 규정의 문리해석상 오류를 정비하여 장기간 공석인 동의 원활한 통장모집을 도모하고, 아파트 명칭 변경, 신축 등에 따른 통·반 조정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통장의 자격 기준 예외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

○ 연임 제한 예외 규정의 문리해석상 오류 정비(안 제5조제5항)

○ 대원동 10개통 81개반 조정, 1개통 4개반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 신장동 1개통 12개반 조정(안 별표 2)

○ 세마동 3개통 25개반 조정(안 별표 2)

○ 초평동 3개통 17개반 신설(안 별표 1 및 별표 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변경 사항을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인원 비율 확대를 위하여 내부위원 축소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 개정(안 제10조제3항)

(1) 내부위원(당연직)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2) 부위원장을 도시주택국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

○ 위촉 위원의 성비 규정 조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 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6항)

○ 제15조(협력사업비의 공개)제1항 및 제2항의 협력사업비 현금출연 및총액과 예산편성내역의 공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제3항, 제4항, 제5항)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2]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조정

○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반영하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신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보건복지부의 중복 유사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노인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수수당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인 장수수당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1) 제2조 1호 정의 → 삭제

(2) 제5조 지원 목적 → 삭제

(3) 제6조 대상자의 범위 → 삭제

(4) 제7조 지급대상자 조사 → 삭제

(5) 제8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삭제

(6) 제9조 지급방법 → 삭제

(7) 제10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조치 → 삭제

(8) 제11조 지급대상자 관리 → 삭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변경하고 장난감대여점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함.

▷ **주요골자**

○ 회원의 자격 확대(오산시 소재 직장 포함) (안 제2조)

○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따른 연회비 환불규정 명시 (안 제5조의 2 신설)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여 고가 장난감 대여료 납부 조항 신설 (안 제5조 2항)

○ 조문 제목 명칭 변경 및 조항 일부 신설 (안 제5조, 제6조, 제8조, 별표1, 별표2, 별표3)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2021.12.31.)이 도래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하고자 함. 이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근거 규정인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 및 현행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골자

○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호 및 제4호)
○ 관련 법규 인용 조항 변경(안 제5조제1항제5호)
○ 심의안건의 처리기한 변경 및 재심의 신청 관련 조항 신설(안 제15조제3항 및 제6항)
○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27조제3항제5호 및 제4항)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및 변경(안 별표7)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관내 국도·지방도·시도 등에 대하여「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관내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연결허가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및 제6조)
○ 기타 변속차로 등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및 제1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한조례 폐지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적용대상 사업 및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별도 조례로 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오산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21. 7월에 개정된 환경부의 "시·군 환경계획 수립 지침"과 아동청소년과의 "아동권리관점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부서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임된 조례의 형식을 재정립하고 목적 규정을 간결하게 표현 (안 제1조)

○ 용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 (안 제2조)

○ 환경정보공개 및 국제협력의 원칙 추가 (안 제3조)

○ 환경훼손에 대한 용어를 삽입하고,「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유해화물질에 대한 용어 삭제 (안 제4안)

○ 환경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

○ 교육대상인 청소년을 아동까지 확대 (안 제8조)

○ 환경보전 수립기간을 정부지침에 따라 조정 (안 제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오산문화원 건립(변경)]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문화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오산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였으나, 건설자재 단가급상승 및 문화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설 추가 조성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오산문화원 건물의 기준가격이 당초 관리계획 대비 30%를 초과 증가되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오산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 취득재산 내역

구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천원)	취득시기	관리계획 수립(변경) 사유	주관부서
		종류	소재지	면적(㎡)				
기존계획	취득(신축)	건물	은계동 7-7	1,320	3,700,000	2022년	기준가격 10억 이상	문화예술과
변경계획	취득(신축)	건물	은계동 7-7	1,320	5,670,000	2023년	기준가격 30%초과 증가	문화예술과
증감내역					증)1,970,000			

○ 사업변경 개요

구분		당 초	변 경
사업목적(용도)		오산문화원 건립	변경 없음
취득위치		은계동 7-7번지	변경 없음
취득대상	건물	1건, 1,320㎡ (1층 필로티주차장, 지상2~3층)	변경 없음
	토지	해당 없음(공유재산 내 건립)	변경 없음
기준가격		3,700,000천원	5,670,000천원 (53.2% 증액)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1) 지방재정 투자심사 ····· ′17.11.

(2) 문화원 건립위치 최종 선정(방침) ····· ′20.11.

(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1. ~ ′21.12.

(4)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BF 인증용역 ····· ′20.12. ~ ′21.12.

(5) 설계용역 진행과정 문화원 협의(8회) ····· ′21.01 ~ ′10

(6) 오산시 경관위원회 심의(서면) ····· ′21.04.19 ~ ′04.26.

(7) 오산시 총괄건축가(오웅성교수) 자문 ····· ′21.05.17.

(8) 오산시 공유재산심의회(서면, 원안가결) ····· ′21.06.11.

(9)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 ′21.07.28.

(10) 공용건축물 건축허가(협의) 완료 ····· ′21.09.28.

(11)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 ′21.11.

(12)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1.11. ~ ′12.

(13) 경기도 계약심사 ····· ′21.12.

(14) 공사계약 의뢰 및 공사착공 ····· ′22.02.

(15) 공사 준공, 시운전 및 입주 ····· ′23.06.

○ 기대효과

– 사업비 증액으로 문화원 보유 자료의 전시 및 크고 작은 공연 및 문화교류가 가능한 공간 구성을 통해 오산시민의 문화향유 요구 충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1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건수	수량(면적)	금액	
	계	**토지**										
		건물	1	1,320	3,700,000	1	1,320	5,670,000			1,970,000	
		기타										
취	매입	토지										
		건물										
		기타										
득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1	1,320	3,700,000	1	1,320	5,670,000		-	1,970,000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매각	토지										
		건물										
		기타										
분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2021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총계		1건			1,320	5,670,000			
1	취득	건물	은계동 7-7번지	대	1,320	5,670,000	2023	오산문화원 건립 (증축)	문화예술과
				이	하	여	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사업비 분담계획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2021년8월 기본계획이 최종승인 고시되었고 2022년 3월중 설계착수 예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기본계획 상의 추가사업비(LH분담금 초과분)분담에 대한 오산시·화성시·수원시의 지자체 비용부담 원칙 합의로 사업지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자함.

▷ 주요골자

○ 사업(건설)비 분담 : 연장율(8.19%)+공사비율(20.4%)

구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합계
비용(억원)	← LH분담금(9,200억원) →			9,773억원 (예비비 제외)
	17	461	95	
비율(%)	3%	80%	17%	100%

○ 운영비 분담 : 건설 후 3개시 조율(연장비율+수요비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 수립목적

- 2022년은 오산시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로써 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업, 77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제4기 계획기간 중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

○ 작성주체 : 오산시장

○ 작성기준 : 매년
○ 주요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 및 특징·방향
-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등
-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 계획
-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등

○ 세부내용 :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별책)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립목적
- 중기기본인력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데 있음.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2022 ~ 2026년(5년간)
-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 배치계획
- 신규인력 증원·감축분야 및 인력운영비 현황 등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1. 12. 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5절 2022년도 회의운영 현황

제2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상복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2. 1. 3
○ 회 기 : 2022. 1. 10 (1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3.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4.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6.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7.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0.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1.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2.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3.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4.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
17.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
20.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3.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24.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의 첫 번째 임시회 개최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되어 금년 1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원포인트로 열게 되었습니다.
연초 바쁘신 와중에도 임시회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 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됩니다.
주민의 권리에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조례 청구 및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는 등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아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더불어 의정 자료수집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인력을 도입하여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여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성을 높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을 구체화 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가 강화됩니다.
국가 중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됩니다. 또한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방자치 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큰 나무가 되고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자양분이 필요합니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할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0.(월) 10: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제2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축조심사, 의결** 3.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6.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7.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8.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0.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2.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3.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15.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6.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 19.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유발언 신청시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0.(월) 10:00 본회의장	20.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 22.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5.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26.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사무과장의 추가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과장의 신설 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직무대리의 순위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직무대리자의 권한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격 등 시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승진임용기준 및 자격증가점 등 임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근무상황 및 근무상황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의 제정 목적과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국외출장의 신청 및 허가, 출장계획 변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공무국외출장자 대상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와 출장자 준수 수칙을 규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과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과 출장비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및 심사,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조기퇴직수당의 신청 및 심사,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복무 선서 및 책임완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근무기강 확립 및 비밀엄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공무원의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공무원의 휴가(연가, 병가, 특별휴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여비의 지급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오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와 운영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오산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오산시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시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9조의2, 제14조, 제82조).

○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1조).

○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및 각하 등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2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57조"를 "「지방자치법」 제65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중 위원수를 "5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제1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규칙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칙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연번	해당 자치법규	인용조문 개정내용
1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49조 등
2	오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제59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 회기와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및 제4조제2항).

○ 정례회 회기 상한일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 조정함(안 제3조제1호).

○ 임시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주민청구조례심사를 위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 정비하기 위함.

▷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예외 규정 적용을 확대함(안 제2조제3항).

○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5항).

○ 주민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연번	해당 자치법규	인용조문 개정내용
1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33조 → 제40조 등
2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49조 등
3	오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42조 → 제51조 등
4	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41조 → 제49조 등
5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지방자치법 제38조 → 제4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 및「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기밀의 누설,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의원의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을 명시하고, 겸직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의원의 회피와 재산 등록 및 신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영리행위가 제한되는 공공단체, 관리인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이 겸직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 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신고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징계의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및 안 별표2).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외 6인**

▷ **제안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이해충돌방지 규정 등 도입)을 반영하고,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주요골자**

○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반영함.

-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구체화함(안 제4조).
-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신설함(안 제5조).
- 직무 관련 조언 자문 등의 제한 신설함(안 제6조).
-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설함(안 제7조, 제8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를 구체화함(안 제23조).

○ 공직자 또는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규정을 구체화해 신설함(안 제13조).

○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및 약속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18조).

○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사례금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회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의회는 주민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및 조례안 작성자문 등 조치
- 시장은 전자적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안 제3조)

- 연대 서명해야하는 청구권자 수는 공표한 오산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 공표한 오산시 청구권자 총수 : 18세 이상 주민(체류 3년 지난 외국인 포함)

○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제7조, 제10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대표자 이름·주소, 청구이유, 연서주민수, 이의신청방법을 포함하고 오산시청과 동별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을 정함(안 제11조)
– 10일 이내로 함
○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다른 조례의 개정 (안 부칙 제2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6조(연서의 수) 삭제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오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의견제출 부여 규정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제4조)
○ 의견제출 방법 규정(안 제5조 및 별지 서식)
○ 의견제출서 보완요구 규정(안 제6조)
○ 의견의 검토와 결과통보, 반영 규정(안 제7조,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오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정의 규정 중 "직무"의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호)

– 보상금 지급기준에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포함하여 회기와 공무여행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로 인한 경우 모두 인정되도록 함

○ 인용조문 변경

– (안 제1조)「지방자치법」 제34조 → 제42조,「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 제37조

– (안 제2조제2호)「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 제40조제1항제1호

– (안 제5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별표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관련 조항이「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개정

– (안 별지 제1호서식)「지방자치법」 제34조 → 제42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조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 조정(안 제20조)

– 집행기관 1명 감원, 의회사무기구 1명 증원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
- (안 제1조)「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제120조 → 제125조에서 제134조
- (안 제11조제1항)「지방자치법」 제113조 → 제126조
- (안 제14조제1항)「지방자치법」 제114조 → 제127조
- (안 제17조)「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제4항 →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제4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개정안	자치법규명	자치 법규조항	개정내용
안 제1조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7조제1항제8호
		제2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42조
		제3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7조제1항제8호
		제4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7조제1항제8호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7조제1항제8호
		제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7조제1항제8호
		제9조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제51조제1항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47조제1항제8호
안 제2조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42조

개정안	자치법규명	자치 법규조항	개정내용
안 제3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78조
		제12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제32조제6항
		제15조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제32조제6항
안 제4조	오산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제142조제1항
안 제5조	오산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안 제6조	오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지방자치법」 제12조→제16조
안 제7조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117조제3항
안 제8조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5조제3호	「지방자치법」 제146조→제163조
안 제9조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157조
안 제10조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39조
안 제11조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9조
안 제12조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 제13조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53조, 같은법 제156조
안 제14조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의2 제5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117조제3항
안 제15조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	제1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117조제3항
안 제16조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4조제3호	「지방자치법」 146조→제163조
안 제17조	오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90조→제102조

개정안	자치법규명	자치 법규조항	개정내용
안 제18조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제7조제5항
안 제19조	오산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17조
안 제20조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제9조제1항
안 제21조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7조
안 제22조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8조→제1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안 제23조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9조
안 제24조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117조제3항
안 제25조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제117조제3항
안 제26조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50조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64조→제73조
안 제27조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9조
안 제28조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의회사무과(의회 의원 포함)”→<삭제> ※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에서 별도 조례제정예정 (’22.1.13), 집행부 조례에서 “의회 “관련 조문” 삭제
안 제29조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78조
안 제30조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7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성길용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2. 1. 13
○ 회 기 : 2022. 1. 17 ~ 1. 24(8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지난 2021년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써 온 한해였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란 희망을 품었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높은 접종률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계속된 변이를 일으키며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이 힘든 싸움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와의 사투를 이어오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려움 속에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이 힘들고 긴 싸움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먼저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실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새해에도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은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대한민국과 오산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투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중한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산시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264회 임시회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민선 7기의 마지막 업무보고인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정한지, 올바른 방향으로 설계하였는지 검토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오산시의 미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업무계획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민선 7기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행정에 있어 한 치의 누수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의회를 구성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차를 넘어서 이제 임기가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시의원들은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며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부딪치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오산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 성과가 오산시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때로는 질책을, 때로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오산시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처음 의회에 발을 디뎠던 그때를 잊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옆에 힘들어하는 동료, 친구, 가족과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임인년 새해, 24만 시민 여러분 모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1.17.(월) 10: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7분 자유발언** 1. 제26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휴회의 건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1.18.~1.23.(6일간)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8.(화)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1.19.(수)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1.20.(목)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시민안전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21.(금) 10:00 제1회의실	□ **시정업무보고** –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1.22.(토)~ 1.23.(일)	□ **휴 일**	
1.24.(월) 10: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역환승센터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 교통 편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치 및 명칭(안 제2조)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 사용·수익허가(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수탁재산의 관리(안 제7조)
○ 사용자의 행위제한(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1. 1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제26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이성혁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2. 3. 15
○ 회 기 : 2022. 3. 21 ~ 3. 30 (10일간)
○ 주요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7.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8.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1.「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 개정 보고의 건
12.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13.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오늘은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고 봄꽃이 만발한다는 춘분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형형색색의 꽃들과 함께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겪어야 했던 길고 어둡던 겨울을 이제는 벗어나 우리 마음속에서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먼저 엊그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치러 낸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여러모로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만큼 승패를 떠나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우리 모두는 선거기간 동안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 분열됐던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고 위기의 시대를 힘차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30%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3월말 정점을 찍고 안정기에 접어들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미크론의 증상이 가볍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검사도 받지 않고 격리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그날까지 그동안 우리가 지켜 온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더 빠른 일상의 회복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의료 종사자, 보건소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어서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와 오산시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투표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중한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제265회 임시회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4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 그리고 3건의 보고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2021년도 회계 결산을 위한 결산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살피실 때 각종 안건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이 잘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 및 정책을 편성하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시민의 목소리라는 생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정권교체기 흔들림 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고 흘러 또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봄의 따뜻함과 아름다운 봄꽃을 보면 우리 마음은 설레입니다. 봄의 설레임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지만 얼었던 땅이 녹으며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빙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이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만인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고 꿈이 현실이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4만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21.(월) 10: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7분 자유발언 1. 제26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9.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3.22. ~3.29. (8일간)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10.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1.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2.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4.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보고, 질의·답변, 보고종료** 15.「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제안설명, 질의·답변** 16.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17.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18. 휴회의 건	
14:00 제2회의실	- **안건논의**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3.22.(화)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3.(수)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4.(목)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계수조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3.25.(금) 10:00 제1회의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의결**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26.(토)~ 3.27.(일)	□ **휴 일**	
3.28.(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00 제2회의실	- **축조심사** 1.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3.29.(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3.30.(수) 10: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3.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4.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1. 예산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가. 총 액 ····· 719,558,337 천원

나. 일반회계 ····· 600,588,294 천원

다. 특별회계 ····· 118,970,043 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 100,414,417 천원

○ 기타특별회계 ····· 18,555,626 천원

2. 세 입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지 방 세 ····· 157,94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86,056,981 천원

○ 지방교부세 ····· 73,770,000 천원

○ 조정교부금 ····· 94,732,000 천원

○ 보 조 금 ····· 240,069,752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6,987,604 천원

나. 일반회계

○ 지 방 세 ····· 157,942,000 천원

○ 세 외 수 입 ····· 24,365,488 천원

○ 지방교부세 ····· 73,770,000 천원

○ 조정교부금 ····· 94,732,000 천원

○ 보 조 금 ····· 232,755,878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17,022,928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7건)

○ 세 외 수 입 ····· 61,691,493 천원

○ 보 조 금 ····· 7,313,874 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49,964,676 천원

3. 세 출

가. 일반 및 특별회계

○ 정 책 사 업 ····· 601,365,735 천원

○ 재 무 활 동 ····· 11,137,72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107,054,877 천원

나. 일반회계

○ 정 책 사 업 ····· 511,660,885 천원

○ 재 무 활 동 ····· 9,777,375 천원

○ 행정운영경비 ····· 79,150,034 천원

다. 특별회계(공기업포함 7건)

○ 정 책 사 업 ····· 89,704,850 천원

○ 재 무 활 동 ····· 1,360,350 천원

○ 행정운영경비 ····· 27,904,843 천원

4. 계속사업

○ 시청사 별관건립 등 46건 ····· 342,856,831 천원

▷ 심의경과 및 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2. 3. 25.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 제안자 : 장인수 의원

▷ 제안이유

○ 학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역 내 산업체 인력난 심화 등 지역의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과 교육기관의 분산된 역량 결집을 통한 위기 극복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오산시 소재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교육 역량을 지역수요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지원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관학협력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문서 교환으로 성립하고,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오산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시장은 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관학협력 사업의 평가 및 평가 결과 반영, 관학협력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건축법」 개정 및「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위원회 대상 관련 사항 정비(안 제11조)

– 2021.7.9. 개정된 조례에 따라 조문 정비

○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개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포함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2조)

–「건축법」 및「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 공개공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0조)

–「건축물관리법」 제정 및 2021.7.9. 개정된 조례에 따라 조문 정비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5조)

–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 정비

○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8조)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조항 삭제

○ 별표3 내용 정비

–「주택법」 개정에 따른 별표3 내용 정비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지방자치법」('22.1.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안 제6조)
○ 수당 등(안 제7조)
○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안 제8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안 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안 제7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안 제8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에「지방재정법」제5조제3항의 주요재정사업 평가 중 행사성 사업의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추가(안 제9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목록 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예산의 전용, 예산과목 변경 시 심의절차 준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오산시청어린이집의 시청사 별관 이전 관련 사업장 위치 변경 및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인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주요 변경 예정사항

구 분	현 재	이전 후	비 고
위 치	대원로 64, 대동아파트 109동 101호	성호대로 141, 시청사 별관 2층	
면 적	127㎡	930㎡	7.3배 증가
정 원	20명	65명	45명 증가
반 편성	3개 반 (만1·2·3세반)	6개 반 (만0·1·2·3·4·5세반)	
사 업 비 (민간위탁금)	250,000천원	400,000천원	2회 추경 반영 (교재교구 및 비품 구입비용)
종 사 자	7명	10명	

○ 위탁현황 (단위: 천원)

운 영 방 법		위탁운영		
위 탁 기 관		이은숙(개인)		
위 탁 기 간		`20.01.01. ~ `22.12.31.(3년)		
예산 현황	연 도	2020	2021	2022
	총 계	376,627	387,730	408,468
	시 비 (민간위탁금)	229,470	230,071	241,987
	보육료수입 등	147,157	157,659	166,481

○ 향후계획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2년 9월
- 시청사 별관 이전 사전 준비 : 2022년 10월
-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2022년 12월
- 별관 이전 완료 : 2023년 1월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6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6호점	'21.11.1.	여계산로 60, 509동 1층 (세교센트럴파크)	80.73 (24평)	24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309천원 – 월지급액(1,935,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43천원 – 월지급액(958,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2년 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71,540	29,370	8,991	22,779	10,400	
운영비	13,200	1,800	-	1,800	9,600	월 1,100천원
인건비	55,940	27,570	8,271	19,299	800	월 4,595천원
돌봄프로그램	2,400		720	1,680		월 200천원

(6) 주요업무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309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43천원
- 운영비 : 월 1,1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월 200천원(프로그램 강사비)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2022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7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7호점	'21.11.1.	수목원로 430 (오산대역꿈에그린)	84 (25평)	25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309천원 – 월지급액(1,935,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43천원 – 월지급액(958,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2년 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71,540	29,370	8,991	22,779	10,400	
운영비	13,200	1,800	-	1,800	9,600	월 1,100천원
인건비	55,940	27,570	8,271	19,299	800	월 4,595천원
돌봄프로그램	2,400		720	1,680		월 200천원

(6) 주요업무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309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43천원
- 운영비 : 월 1,1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월 200천원(프로그램 강사비)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2022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8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8호점	'21.12.6.	문시로 183-19, 118동 1층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166.84 (51평)	36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309천원 - 월지급액(1,935,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43천원 - 월지급액(958,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2년 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72,740	29,370	8,991	22,779	11,600	
운영비	14,400	1,800	-	1,800	10,800	월 1,200천원
인건비	55,940	27,570	8,271	19,299	800	월 4,595천원
돌봄프로그램	2,400		720	1,680		월 200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309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43천원
- 운영비 : 월 1,2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월 200천원(프로그램 강사비)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2 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함께자람센터 19호점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함께자람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의 오산시 명칭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16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함께자람센터 19호점	'22.1.3.	동부대로 332-14 (오산자이)	210 (64평)	50명	3명	※(現)직영 → 위탁(예정)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초등학생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소득수준 무관)

※ 입소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 이용인원 : 동시간대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 이상 설치 권고(보건복지부)

(2) 운영시간 : 상시돌봄, 일시돌봄(학교 휴업, 방학 등)

(가) 학기 중 : 월 ~ 금 13:00 ~ 19:00(6시간)

(나) 방학 중 : 월 ~ 금 09:00 ~ 19:00(10시간)

(3) 주요내용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돌봄, 등·하원 지원, 급·간식 제공, 프로그램(문화·예술·체육 등) 지원 등)

(4) 운영인력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선생님 2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센터장 (1명)	·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8시간 근무	· 월 급여액 : 2,309천원 - 월지급액(1,935,8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돌봄 선생님 (2명)	· 자격증 또는 경력 ·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2급, 간호사면허 등	· 월~금 교대근무 (4시간)	· 월 급여액 : 1,143천원 - 월지급액(958,000원)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퇴직적립금]

※ 돌봄인력 인건비(2022년 보건복지부 내시액)

(5)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73,940	29,370	8,991	22,779	12,800	
운영비	15,600	1,800	-	1,800	12,000	월 1,300천원
인건비	55,940	27,570	8,271	19,299	800	월 4,595천원
돌봄프로그램	2,400		720	1,680		월 200천원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나) 아동의 돌봄 및 교육 등 돌봄 프로그램의 관리·운영

(다) 이용 아동의 위생 및 안전 관리

(라) 아동의 급·간식 위생관리

(마)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바) 기타 돌봄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등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재원 : 국비, 도비, 시비 지원)

- 인건비 : 센터장(1명, 1일 8시간 근무) : 월 2,309천원
  돌봄선생님(2명, 1일 4시간) : 월 1,143천원
- 운영비 : 월 1,300천원(수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월 200천원(프로그램 강사비)
- 이용료 : 무료(단, 특별프로그램 및 급·간식 수익자 부담)

※ 수익자 부담내역 : 특별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급·간식 비용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2022 다함께돌봄사업안내」수탁자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함께자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 운영지침,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운영지침,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위탁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함께자람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주 요 골 자

○ 별도 사무국 설치 근거 명시 (안 제4조)
○ 사무국 경비사용 근거 마련 (안 제12조)
○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안 제13조)
○ 사무국 조직, 정원 및 급여 등 근거 명시 (안 제17조)
○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 규정 (안 제18조)
○ 감사 선임 방식 변경 (안 제4조)
○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 명시 (안 제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21.
○ 심 의 결 과 : 보고종료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내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에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오산(내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이 제안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 대상지는 2035 오산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상 동부생활권으로 동부생활권의 시가화예정용지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기 개발지(세교1택지지구) 및 개발예정지(내삼미1구역)와 연계하여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도시자족시설 등)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사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20년 / 2025년
- 공간적 범위
  · 위　치 :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
  · 면　적 : 240,128㎡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복합용지, 공동주택,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개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개발 계획은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로써
- 드라마세트장과 미니어처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단지로 조성된 내삼미1구역과 연계 및 조화되지 않는 개발 계획일 뿐만 아니라,
- 상업 및 업무시설인 복합용지 필요성 재검토
- 복합용지의 용적률 축소
- 초·중등 통합학교 설립 필요
- 사업지구 남측의 기존 주거지역과의 단절(연결도로 필요)
- 정형화 되지 않은 사업구역의 기형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함.

□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외삼미2구역] 의견제시의 건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외삼미동 67-9번지 일원에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목적으로「오산(외삼미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제안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안목적

– 본 지역은 2035오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복합용도)에 포함된 지역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사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목표연도 : 2020년 / 2024년

– 공간적 범위

・위　치 : 오산시 외삼미동 67-9번지 일대

・면　적 : 106,724㎡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복합용지, 공동주택,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개설]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3. 30.

○ 심 의 결 과 : 의견제시

▷ **의견제시**

○ 외삼미2구역 지구단위개발은 동탄신도시 연접부 미개발지의 도시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로써

– 정형화 되지 않은 사업구역의 기형

– 근린공원의 위치 조정 및 저수지와 통합 수변공원 조성 필요

– 학군 조정 및 중학교 설립 필요

– 남측 저수지 변 도로 개설 및 연결 필요

– 동측 도로 선형 조정

– 사업부지 내 민원 해결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함.

제2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 개 요

○ 집회요구 : 김영희 의원 외 2인
○ 집회공고 : 2022. 4. 13
○ 회 기 : 2022. 4. 18 ~ 4. 22 (5일간)
○ 주요안건
1.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2.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1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15.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16.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2. 개회사 [의장 : 장인수]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김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곽상욱 오산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 장인수입니다.
따스한 기운과 파릇파릇 피어나는 신록이 주는 생동감이 완연한 봄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합니다. 기세를 높이던 오미크론 변이도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상황이 안정되면서 정부는 오늘부터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과감히 해제하였습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19도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든 듯합니다. 이른바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시대로 한발 들어선 것입니다.

긴 시간동안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제266회 임시회의 첫째 날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제8대 오산시의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기도 합니다.

제8대 오산시의회의 지난 4년은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시의 정체성 확립과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 오산시의회 의원들을 믿고 4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 곳곳을 누비며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의사일정과 더불어 각종 간담회 및 봉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도시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시며 이제 민선 5, 6, 7기 1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곽상욱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처음 임기를 시작하며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아쉬웠던 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5일 개장한 죽미령 평화공원을 비롯하여 오산문화스포츠센터의 준공 및 개관, 내삼미동 미니어처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오산을 대표할 만한 관광문화시설이 새롭게 탄생하였다는 것은 행복도시 오산건설에 있어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성과 또한 시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뤄진 성과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버드파크 건립 과정에서의 마찰, 세교 평안한 사랑병원 개설허가 및 벌음동 폐기물 처리장 허가취소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의회와의 소통 미흡으로 인한 아쉬웠던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몇 년간 독산성 축제 및 마라톤, 오산천에서 이뤄졌던 자전거 축제 등 각종 행사가 열리지 못한 아쉬움 또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대응하여 우리 오산시의회는 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고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으며 행사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의회는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오산시의회와 오산시 집행부는 오산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로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소통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 주신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안건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해 오신 대로 꼼꼼하게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의원님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 등을 잘 파악하시어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기말 기강 해이 등으로 민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직자들께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엄중한 선거중립,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행정을 감시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민의 정치참여입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더 많은 주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만의 힘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참여한다면 그때 세상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여러분이 참여할 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산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토론하고 조율할 것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해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4.18.(월) 10:00 본회의장	□ **개 회 식**	○ 자유발언 신청시 ○ 휴회 : 4.19. ~4.21. (3일간)
	□ **제1차 본회의** ○ **간부공무원 소개** ○ **7분 자유발언** 1. 제26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6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6.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8.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9.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휴회의 건	
4.19.(화)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3.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시 / 장소	부 의 안 건	비 고
	8.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4.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4.20.(수) 10:00 제2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축조심사** 1.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4.21.(목) 10:00 제1회의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의결** 1.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4.22.(금) 10:00 본회의장	**□ 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 의결** 1.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 자유발언 신청시

4. 주요 안건 심의결과

□ 오산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김명철 의원

▷ 제안이유

○ 느린학습자는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IQ 71~84)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을 위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도 불림.

○ 이들은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으며, 이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이에, 오산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느린학습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느린학습자의 개념과 용어, 대상의 범위가 사회적·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 조례의 제정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오산시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현재 교육부에서는 느린학습자의 개념·정의, 선별·진단,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계획 중에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 결정과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또한 정비가 필요할 것임.

○ 특히, 느린학습자에 대한 오해로 인한 편견과 주변의 편향된 시선 때문에 당사자와 부모가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대규모 생애주기별 실태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태조사의 경우 본 조례가 없더라도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르도록 본 조례안에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오산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안제5조제3항을 삭제함.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산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관련 내용 수정 및 선거사무종사자 포상휴가 보장

▷ 주요골자

○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관련 내용 수정(안 제24조제6항)

– “한 차례만 6일 이내의” → “연 6일 이내의(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의 합)”

○ 포상휴가에 선거사무종사자 특별휴가 보장 내용 신설(안 제24조제6항제6호)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을 인상하고, 일몰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현행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조)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함(안 제6조)

구분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택1)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병행
현 행		150원	300원
개정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미만	250원	500원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이상	800원	1,600원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종료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를「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공공시설(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요금 기준을 정하고,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서「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근거 마련(안 제1조, 안 제2조)

○ 부설주차장 명칭과 위치 규정(안 제3조)

○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 규정(안 제4조)

○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현실화 및 오산문화스포츠센터 요금기준 마련(안 제5조)

	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현행	오산시청사	무료	500 (매 30분 이내)	4,000		10,000	무료
개정	오산시청사	무료	300 (매 10분 당)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15,000	유료
				9,000	3,000		

	구 분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4시간 기준	4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신규	오산문화 스포츠센터	무료	100	-	15,000	유료

○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경 대상을「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오산시 주차장 조례」와 일치시키고, 일부사항 공공시설 주차장 특성에 따라 개정(안 제6조, 안 제7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 부족과 민원인 이외의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물가 인상과 시민의 경제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차요금의 인상을 시기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우므로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도록 수정하고,

○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처음 4시간을 무료로 운영하므로 장기주차차량 방지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월 정기주차요금을 오산시청 부설주차장과 형평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주차요금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오산시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안 별표 2 제1호).

(단위 : 원)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1시간 기준	1시간 초과 이후 (매 30분 이내)			
오산시청사	무료	500	4,000	10,000	무료

○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4시간 초과 이후 주차요금을 매 10분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정기 주차요금을 1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정함(안 별표 2 제2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table>
<tr><th>개 정 안</th><th>수 정 안</th></tr>
<tr><td>

[별표 2]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2항 관련)

1. 오산시청사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th colspan="2" rowspan="2">1일 최대 주차요금</th><th row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th rowspan="2">토·일요일 공휴일</th></tr>
<tr><th>처음 1시간 기준</th><th>1시간 초과 이후(매 10분 당)</th></tr>
<tr><td>오산시 청사</td><td>무료</td><td>300</td><td>평일</td><td>토·일요일 공휴일</td><td>15,000</td><td>유료</td></tr>
<tr><td></td><td></td><td></td><td>9,000</td><td>3,000</td><td></td><td></td></tr>
</table>

2.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th rowspan="2">1일 최대 주차요금</th><th row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th rowspan="2">토·일요일 공휴일</th></tr>
<tr><th>처음 4시간 기준</th><th>4시간 초과 이후(매 10분 당)</th></tr>
<tr><td>오산문화 스포츠센터</td><td>무료</td><td>100</td><td>-</td><td>15,000</td><td>유료</td></tr>
</table>

</td><td>

[별표 2]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2항 관련)

1. 오산시청사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th rowspan="2">1일 최대 주차요금</th><th row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th rowspan="2">토·일요일 공휴일</th></tr>
<tr><th>처음 1시간 기준</th><th>1시간 초과 이후(매 30분 이내)</th></tr>
<tr><td>오산시 청사</td><td>무료</td><td>500</td><td>4,000</td><td>10,000</td><td>무료</td></tr>
</table>

2. 오산문화스포츠센터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th rowspan="2">1일 최대 주차요금</th><th row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th rowspan="2">토·일요일 공휴일</th></tr>
<tr><th>처음 4시간 기준</th><th>4시간 초과 이후(매 10분 당)</th></tr>
<tr><td>오산문화 스포츠센터</td><td>무료</td><td>300</td><td>-</td><td>10,000</td><td>유료</td></tr>
</table>

</td></tr>
</table>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상위법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 보건복지부 지침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내용 반영

○ 「어린이집 입학금 및 기타경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대상자 및 비용 보조사업 추가

▷ 주요골자

○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 개정(안 제5조)

○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추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6조)

◯ 시립어린이집의 재계약에 대한 제한사항 개정(안 제19조)

◯ 비용의 보조 대상자 및 대상사업 개정(안 제2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현행 조례에서 법규나 계약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개정조례안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로 법규의 위반행위를 구체화 하였으나, 이에 따라 위탁운영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재계약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의 재계약 제한 사유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로 수정함(안 제19조제2항)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① (생 략)	제19조(위탁기간 및 위탁계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으로 위원회가 평가기준표에 따른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기존 수탁자와 3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없다.	② --------------------- ---------------------- ---------------------- ---------------------- -. --- 법규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 ---------------.
1.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시설폐쇄 및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삭 제>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개정안과 같음)

□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등, 적시성·전문성 확대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심의기능 확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및 전문성 등 제고 관한 사항(안 제3조)
-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10명 → 15명)
-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변경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준용 등

○ 심의위원회내 적시성·전문성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등 신설(안 제3조2)

○ 아동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심의기능 신설(안 제4조제4호)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른「아동복지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체계 공공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목적, 정의에 대한 명확성 및 확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신변보호 근거마련 (안 제4조제3항)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아동학대 예방의 날 조항 신설(안 제8조)

○ 학대피해아동 등 지원사업 신설(안 제10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1조)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사업 관련 기관·시설·종사자 등 포상 신설(안 제14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관광 활성화 및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도시들과의 상생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미스 평화관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이용료의 감경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스미스 평화관 가상현실(VR) 체험시설 이용료 감경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적용대상 : 관광 활성화 및 교류협력을 위해 오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적용내용 : 개인 이용료의 20% 감경

구 분	1종 이용권(20% 감경시)	자유 이용권(20% 감경시)
어른일반	5,000원 (4,000원)	15,000원 (12,000원)
만5세 이상, 학생(초중고) 군인, 경찰	3,000원 (2,400원)	10,000원 (8,000원)

○ 이용료 감경조항 신설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6조제4항)

– 이용료 면제 → 이용료 감면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관람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위치 및 금지 제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여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조)

◯ 관람료에 관한 세부사항 규칙에 위임(안 제7조)

◯ 관람료 감면 규정 일부개정(안 제8조 제1항)

◯ 개인관람료 20퍼센트 감면 규정 신설(안 제8조 제3항)

◯ 관람의 금지 및 제한 사항 수정 및 일부 삭제(안 제9조)

 - 목록 심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예산의 전용, 예산과목 변경 시 심의절차 준수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수정가결

▷ 주요 수정골자

가. 수정이유

◯ 전시관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을 “만 3세 이상 ~ 만 18세 이하”에서 “만 2세 이상 ~ 만 18세 이하”로 개정해 만 2세를 관람료 징수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만 2세 영유아에게까지 관람료 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 연령의 하한기준을 현행과 같이 만 3세로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전시관 관람료 면제 대상 중 “만 2세 미만”을 “만 3세 미만”으로 현행과 같이 수정함(안 제8조제1항제10호).

◯ 전시관 관람료 징수 대상 중 소인 연령의 하한기준을 현행과 같이 만 3세로 수정함(안 별표).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개정안과 같음)
10. <u>만 2세</u> 미만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10. <u>만 3세</u> ----------------------------------
11. (생 략)	11.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별표] 관 람 료(제7조 관련)

구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 (20명이상)	
대인	5,000원 ~10,000원	2,500원 ~5,000원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소인	3,000원 ~8,000원	1,500원 ~4,000원	· 만 2세 이상 ~만 18세 이하

[별표] 관 람 료(제7조 관련)

구분	금 액		비 고
	개인	단체 (20명이상)	
대인	5,000원 ~10,000원	2,500원 ~5,000원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소인	3,000원 ~8,000원	1,500원 ~4,000원	·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

□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민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4호)

○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 및 국내 자매결연도시 시민에 대한 이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시설 활성화를 위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규정 및 수강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오산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효율적·체계적 징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안 제2조)

– 공유수면 점용료 등 산정기준으로 [별표1]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을 따름

○ 재해 등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료 등 감면비율 신설(안 제7조)

– 감면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5호(재해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 감면대상: 기존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자 중,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감면비율: 전액 감면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오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3조)

○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제7조)

○ 인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10조)

○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14조)

○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6조)

○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7조 ~ 제21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간의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임차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이어가고자

○ 임차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2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함으로써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감면대상: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대상기간: 2022. 1. 1. ~ 2022. 12. 31. (신청기한: 2022. 12. 31. 까지)

○ 감면세목: 2022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도시지역분 포함)]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목으로 감면분에 따라 적용

○ 감면방법: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 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 감면제외

(1)「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 별표 14에 따른 업종(도박게임, 금융 및 보험업 등)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인 경우

○ 감면율(%) = ① 임대료 인하율 × ② 추가 가산율

① 임대료인하율(%) $= [\ \frac{\text{1년간 총 임대료 인하액}}{\text{인하 전 1년간 총 임대료}}\ ] \times 100$

② 추가 가산율 (임대료 인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임대료 인하기간		
	2개월 이하	3개월 ~ 6개월	7개월 ~ 12개월
추가 가산율	2배	3배	4배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아동학대로 분리·인도되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남)	22.9월 예정	비공개 시설	123㎡	7명	6명	신규설치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아동학대로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2)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3) 주요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심리치료, 건강검진 등), 교육 및 정서지원 등

(4) 운영인력 :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쉼터 상근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4명)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월~금 교대근무 (8시간/일)	
임상심리치료사 (1명)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주 40시간	

(5) 2022년 예산 현황

– 설치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1,070,600**	**405,360**	**–**	**608,040**	**57,200**	
매입	870,000	348,000	–	522,000	△30,000	
리모델링	140,000	36,000	–	54,000	80,000	매입비 절감액 30,000천원 리모델링비 전환
기자재비	50,000	20,000	–	30,000	–	
사무관리비	3,600	–	–	–	3,600	
기타 부대비용	7,000	1,360	–	2,040	3,600	

–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예산액	**229,904**	**91,960**	**68,972**	**68,972**	· 신규 설치는 6개월 분 지원 · 2개소 분
인건비	186,762	74,704	56,029	56,029	
운영비	12,416	4,966	3,725	3,725	
사업비	30,726	12,290	9,218	9,218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나) 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다)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라)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마) 피해아동의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국도비 지원

· 인건비 : 93,381천원(6개월분)

시설장(1명, 쉼터 상근) 월 2,593천원

보육사(4명, 1일 8시간) 월 2,593천원

심리상담치료사(1명, 1일 8시간) 월2,593천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운영비 : 6,208천원(6개월 분)

· 사업비 : 15,363천원(6개월 분)

- 도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주·부식비(일7천원/인)

피복비(월50천원/인)

활동지원비(개소당 연 1,000천원)

위기아동관리수당 : 월50천원/인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월15~20만원/인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월5만원/인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기관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다)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마)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아)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아동학대로 분리·인도되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학대피해 아동쉼터(여)	22.9월 예정	비공개 시설	133㎡	7명	6명	신규설치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아동학대로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2)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3) 주요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활지원(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심리치료, 건강검진 등), 교육 및 정서지원 등

(4) 운영인력 :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쉼터 상근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4명)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월~금 교대근무 (8시간/일)	
임상심리 치료사 (1명)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주 40시간	

(5) 2022년 예산 현황

– 설치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1,070,600**	**405,360**	**–**	**608,040**	**57,200**	
매입	870,000	348,000	–	522,000	△30,000	
리모델링	140,000	36,000	–	54,000	80,000	매입비 절감액 30,000천원 리모델링비 전환
기자재비	50,000	20,000	–	30,000	–	
사무관리비	3,600	–	–	–	3,600	
기타 부대비용	7,000	1,360	–	2,040	3,600	

–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예산액	**229,904**	**91,960**	**68,972**	**68,972**	
인건비	186,762	74,704	56,029	56,029	· 신규 설치는 6개월 분 지원 · 2개소 분
운영비	12,416	4,966	3,725	3,725	
사업비	30,726	12,290	9,218	9,218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나) 피해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다)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라)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마) 피해아동의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국도비 지원

· 인건비 : 93,381천원(6개월분)

시설장(1명, 쉼터 상근) 월 2,593천원

보육사(4명, 1일 8시간) 월 2,593천원

심리상담치료사(1명, 1일 8시간) 월2,593천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운영비 : 6,208천원(6개월 분)

· 사업비 : 15,363천원(6개월 분)

- 도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주·부식비(일7천원/인)

피복비(월50천원/인)

활동지원비(개소당 연 1,000천원)

위기아동관리수당 : 월50천원/인

·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 월15~20만원/인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월5만원/인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기관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다)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마)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사)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아)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자 : 오산시장

▷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아동복지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개소일	소 재 지	면적(㎡)	정원	종사자	비고
오산 아동보호전문기관	22.11월 예정	미 정	201㎡	14명	신규설치	신규설치

○ 운영현황

(1) 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

(2)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3) 주요내용

- 상담, 치료 및 교육
- 관련기관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치료 서비스 연계 및 의료비, 의료서비스 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법률 지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운영인력 : 기관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 임상심리 치료 전문인력 1명 이상

- 자격요건 및 급여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기관장 (1명)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주40시간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종사자 구분	자 격 요 건	근무시간	급 여
상담원 (6명 이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위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자완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임상심리 치료사 (1명 이상)	·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5) 2022년 예산 현황

– 설치비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				비고
		국	도	시	시비추가	
예산액	600,000	300,000	150,000	150,000		
시설매입	400,000	200,000	100,000	100,000		
리모델링	120,000	60,000	30,000	30,000		매입비 절감액 30,000천원 리모델링비 전환
기자재비	70,000	35,000	17,500	17,500		
기타 부대비용	10,000	5,000	2,500	2,500		
기타 부대비용	7,000	1,360	–	2,040	3,600	

– 운영비 : 확정내시 미확정

(6) 주요업무

(가)「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거,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다)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위탁운영 계획

(1) 세부운영 계획

(가) 위탁기간: 5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나) 위탁방법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체 선정)

(다)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국도비 지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인건비 : 33,864천원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기준 적용 권고

· 운영비 : 개소당 91,084천원

· 사업비 : 개소당 45,920천원

(라)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위탁운영 조건

(가) 오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를 운영함에 있어「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함

(나)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침,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위탁 운영계약서 등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다) 수탁기관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수탁 운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짐

(바) 수탁자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사)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위탁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은 오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자)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장에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함

(3) 향후 추진 일정

수탁기관 공개모집	⇒	◈ 방 법 :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오산시 홈페이지 등) ◈ 기 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 시까지 ◈ 접 수 : 신청서 및 법인정관 등 심사자료 접수
심사 및 결정	⇒	◈ 오산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결정방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수탁기관을 선정함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하고 재공고
심사결과 공개	⇒	◈ 위탁체로 결정된 법인에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위·수탁 계약	⇒	◈ 계약서 표준서식 활용 계약서 작성 및 공증

▷ 심의경과 및 결과

○ 본회의 심의 : 2022. 4. 22.

○ 심 의 결 과 : 원안가결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제3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장 행정사무감사

제1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18. 10. 18. ~ 10. 26.(9일간)

3. 감사대상부서

4국, 2관, 1직속기관, 2사업소, 6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 4국 :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미래도시국
○ 2관 :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 1직속기관 : 보건소
○ 2사업소 :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 6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4.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장 : 김명철 의원
○ 감사위원 :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용수, 행정7급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차혜진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부 서	비 고
10.18.(목) 10:00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정보통신과)	1국(6과)
10.19.(금) 10:00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1국(5과) 1재단
10.22.(월) 10:00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1국(4과)
10.23.(화) 10:00	**미래도시국**(도시과~차량등록과)	1국(6과)
10.24.(수) 10:00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환경과~하천공원과)	1직속기관(2과) 1사업소(4과)
10.25.(목) 10:00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행정복지센터**(중앙동~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사업소 2관 6동 1공단
10.26.(금) 10:00	**경제문화국**(문화체육관광과), **오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과, 1재단

6.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처리요구사항

◈ 홍보감사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홍보감사관 (7건)	■ **제목 : 오산시 홍보대사 정비** 오산시 홍보대사의 역할과 활동, 위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해촉 및 신규 위촉 등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관리 철저**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사례를 전직원 공람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행정홍보비 집행기준 마련과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 행정홍보비의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성 없이 과도하게 집행하고 추경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행기준 또한 불투명함. 객관적인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바라며, 2019년도 홍보예산은 홍보매체별 홍보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한 후 적정하게 편성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민기자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민기자의 인원을 축소하고 시민기자의 역할이 충실하게 되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정비**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민기자 예산지원과 시민참여매체 운영 위탁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으니 이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 개정 또는 규칙 제정을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이미지형상화사업 운영 규정」 정비** 「오산시 이미지형상화사업 운영 규정」에 이미지형상화사업 통제관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있으니 현행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청렴 교육 및 시책 추진 철저** 2015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등급 하향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청렴 교육 및 시책 추진으로 향후 평가시 청렴도시의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기획예산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기획예산과 (6건)	■ **제목 :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확대 운영**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2019년도에는 여러 분야에 주민의견이 수렴되도록 예산교육, 시민홍보,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예비비 예산계상의 정확성 제고** 예비비 승인예산액 대비 지출액은 2017년도 33%, 2018년도는 40%임.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바 예비비 예산 집행 추세를 검토하여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마을변호사 운영 홍보 및 활성화** 현재 실시하는 마을변호사 운영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행정소송 감소를 위하여 노력** 시에 제기되는 행정소송으로 시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송 사건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직원 법무교육 확대 실시** 직원 대상 법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집행부와 시의회 간 합동교육과 연찬회를 통해 법제업무 현안사항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위탁행정의 구분 및 개별 조례 제정** 사무의 위탁에 있어「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의한 공공위탁과 제3항에 의한 민간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위탁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조례 제·개정 통해 위탁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25건)	■ **제목 : 공무국외여행 일정 관련** 소속 직원 공무국외여행은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가급적 국경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과 중요 행사를 피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위원회 관련 감사 자료 작성 철저**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등 감사 자료에 누락된 위원회가 있으니 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통장자녀장학금 환수 재검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의 사기진작이 목적이고 학교장의 중복지급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항을 부당지급으로 판단하여 성급하게 환수절차를 시행함은 부적절한 조치로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 승격 30주년 홍보** 오산시 승격 30주년은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이니 각 부서 및 산하기관·단체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2019년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오산장터, 성호초등학교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와 연계해서 오산장터 주민들이 주도하여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시에서 지원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3.1절 기념행사와 8.15광복절 기념행사 추진** 3.1절 기념행사와 8.15광복절 기념행사를 오산시 주관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인사 관련 성과평가 방법 개선**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성과평가에 있어 외부기관의 용역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 대원동 분동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라며, 신장동 분동 또한 타당성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제목 :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 총괄 관리**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분야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기획 및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시민소통위원회 필요성 재검토** 시민소통위원회는 설치의 필요성 부족을 사유로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니 운영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무국외여행 결과 시정반영 철저** 공무국외여행은 시기와 소속부서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바라며, 공무국외여행 후 벤치마킹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반영 결과를 관리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장 공무직 채용** 6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장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사회단체 워크숍 수준 공평하게 추진** 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사회단체 워크숍을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하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동 주민자치단체 보조 예산 균등 지원** 5개동 주민자치위원회와 1개동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원액이 다르니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 수준 검토 철저**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중 3천6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음에도 2018년 보조금이 약 6천만원 증가하였음. 2019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5급 승진자 교육 이수 후 과장 또는 동장 보직** 5급 승진자 보직인사 이후 승진자 교육으로 장기간 부서장 공석이 발생하니 교육 이수 후 보직을 받도록 인사시스템을 변경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국내 도시와 교류사업 활성화**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사업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추가로 국내 다른 도시와의 교류 확대에 대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관련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니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각종 위원회 근거 조례 및 위원 정비** 오산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평균적으로 공무원의 당연직 비율이 너무 높고, 성비 또한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는 업종의 종사자를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례에 정한 경우도 있으니 관련 조례를 일제 조사해서 위원회 구성 내용과 위원을 정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공무직 복지 및 처우 개선** 공무직 직원에 대한 복지와 포상, 해외연수 참가 등에 있어 일반직과 차별되지 않도록 처우에 불평등이 없는지 비교하고 개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자율방범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자율방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새터민 지원 업무 추진 철저** 새터민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조직개편안 중 하천공원과와 수도과 통합 재검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하천공원과와 수도과를 통합한다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역할분담과 사업구분이 어려우며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 기반이 약화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과 시민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인사원칙 준수** 직원인사 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보직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순환보직(전보)의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보직으로 인사 발령을 지양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위원회 위원 여비 및 수당 지급 근거 정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출 근거를 규정으로 정한 사례가 있으니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안전총괄과 (14건)	■ **제목 : 법령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 활성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으나 법에 설치하도록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니 해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검토하고 활성화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횡단보도 음성안내 시스템 확대 설치 및 유지보수 철저** 학교 앞 횡단보도 음성안내 시스템은 전체 학교로 확대 설치를 검토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설치 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 수준 평준화**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니 처우와 지원 등에 있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유니폼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한국병원 본관과 별관 브릿지 안전 점검** 한국병원 주차타워 부지에 별관 신축 후 설치한 본관과 연결하는 브릿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폐지수집 노인 안전대책 마련** 야간에 폐지수집 노인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SNS를 통한 재난재해 및 안전 홍보 강화**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재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주요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다문화센터 안전교육 지속 추진** 다문화센터 안전교육을 1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재해구호 물품 확보 및 관리 철저** 재해구호물품을 유사시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확보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독거노인 등 소화기 보급**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소화기 보급을 확대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사무복무요원 배치 관련** 사회복무요원 배치 시 위화감 조성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방독면 보유량 확대** 민방위 대원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이 현재 70%이므로 추후 100% 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폭염 대비 대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철저** 폭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2019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폭염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안전총괄과	■ **제목 : 시설물 내진성능 검토 및 로드맵 작성** 시설물을 인계 받을 때 내진성능을 사전 검토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중앙동 민간기동순찰대 관련** 중앙동 민간기동순찰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현재 맑음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중앙동 관할 구역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세 정 과 (0건)	지적사항 없음	
징 수 과 (6건)	■ **제목 : 시금고 사회공헌 사업 확대 유도** 시금고에서 시행하는 한부모가정 장학금 지급 등의 사회공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협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입징수 및 결손처분** 정당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처리에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징계부가금 징수 철저** 징계부가금 미납금 징수를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개인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 대책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창의행정 홍보** 창의행정 연구발표대회 대상, 우수, 장려상 수상을 SNS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농협 365 자동화기계 설치** 시민 편의를 위하여 오산역환승센터에 농협 365 자동화기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체납처분 공무원 등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체납자 가택 수색 시 방검복 착용 등 공무원 신변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회 계 과 (7건)	■ **제목 : 시청사 어린이 물놀이시설(자이언트 트리) 안전 대책 철저** 시청사 서측에 조성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시설의 재질이 석재인 만큼 최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수의계약 지양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각종 공사 및 용역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통해 계약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 **제목 :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설 사업기간 단축**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이니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기간을 앞당기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관련**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 업체와 단가 비교를 통해 경제성 또한 감안해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관내업체 수의계약 형평성 있게 추진** 관내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의회 청사 건설 조기 준공** 의회 청사 건설은 2020년 6월 이전 준공하여 입주하도록 사업기간을 앞당겨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설계변경 않도록 최초 설계 철저** 각종 공사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상승, 공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설계변경 않도록 처음 설계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표준단가를 적용하지 말고 시장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정보통신과 (6건)	■ **제목 : 민원상담 콜센터 위탁운영 근거 및 수탁자 재검토**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업체에 위탁 가능여부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조례를 정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 외곽지역 방범용 CCTV 확충** 도심지역 이외에 지곶동, 양산동, 서랑동과 초평동 지역 등 외곽지역은 방범 취약 지역임에도 방범용 CCTV설치가 부족하니 검토 및 예산을 확보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민원상담 콜센터 조기 설치** 시청사 증축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전이라도 현 청사 내에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방범용 CCTV 설치 업체별 단가 비교 검토** 방범용 CCTV 설치 업체별 단가 차이가 있음. 업체 선정에 있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스마트시티 모니터요원 정규직화 검토** 스마트시티 모니터요원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을 비롯해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행정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보고자료 작성 등을 위한 행정력 낭비와 담당직원의 부담을 줄이도록 공단 및 재단을 포함하여 오산시 부서별 행정업무 및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열람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복지교육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14건)	■ **제목 : 아동수당신청 및 소명자료 관련 언론보도 대응 철저** 아동수당 신청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과도한 자료수집과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아동수당 홍보 철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 신청을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유엔군초전기념관 전시 무기 등 철수 검토** 현재 유엔군 초전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무기 등 군수물품은 향후 조성되는 평화공원과 컨셉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니 향후 철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고유 목적과 기능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강좌 등 유료 프로그램의 비율이 너무 높으며 이는 운영비 부족문제 때문이라고 판단됨. 사회복지관 고유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 지도와 예산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저소득층 공공 임대아파드 임대료 부담 지원** 저소득층 입주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관리비가 비싸서 부담이 되니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건축과 협조).	김영희 의원
〃	■ **제목 :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근로사업 발굴 및 활성화**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대상자의 개성과 학력, 희망분야 등을 고려해서 개인의 근로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일자리)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바람(일자리정책과 협조).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확충 및 셔틀버스 운행**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족과 관련해서 주차타워 건축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남촌·초평·대원동 이용 주민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교통과 협조).	이상복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화재 및 재난대비 교육 및 실제훈련 실시** 종합사회복지관은 화재나 재난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 훈련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민원인 건의함 비치** 종합사회복지관에 민원인 건의함을 비치하고 건의사항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종합사회지관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유엔군 초전기념 평화공원 연중 개방** 유엔군초전기념관은 현재 휴관일이 있으나 향후 조성되는 평화공원은 관련조례 제정 시 휴관일 없이 연중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수강생의 의견과 수요 등을 판단해서 개설하되, 평생교육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한은경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평화공원 조성 후 공원담당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 유엔군 초전기념 평화공원은 조성 후 공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추진상황 관리 철저**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세교노인복지관, 세교장애인복지관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협약 체결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사실은 수탁기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과 사업 추진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노 인 장애인과 (10건)	■ **제목 : 경로당 안전관리 철저** 경로당은 가스 및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주방환경 개선 등 사전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기능 보강** 현재 노후되고 협소하여 기능보강이 필요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확장 건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약자 보호구역 지정**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앞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교통과, 건설도로과 협조)	이상복 의원
〃	■ **제목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리·감독 철저**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주간복지센터에서 중요업무 추진시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협의 및 관리·감독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노 인 장애인과	■ **제목 : 법령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 운영 철처**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으므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안건을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 인구는 증가함에도 경로당 이용율은 감소하고 있으니 원인을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노인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라며, 강사수당 인상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공동묘지 이전 검토** 공동묘지 인근에 공동주택과 가장공단이 있고 지곶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입주하였음. 해당지역 시민들을 위해 지곶동 공동묘지와 가장동 공설묘지 이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철저** 대상자 발굴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물인터넷서비스 119와 연계 방안 검토** 사물인터넷서비스와 119를 연계해서 독거노인 케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보통신과와 협조하여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조례에 의한 업무 추진 철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할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으니 조례에서 정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을 의회에 별도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성길용 의원
가족보육과 (19건)	■ **제목 : 청소년시설 확충** 오산시 인구에 비해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세교지구에는 전혀 없음.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와 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평생교육과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수업 연계** 평생교육 국어교육과정에서 배출된 인력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을 현행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 지급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가족보육과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 추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물이 노후 되고 협소하니 부지 선정 후 신축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 채용 확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면 언어와 문화 등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중 다문화가족 부모 채용을 확대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및 사업 확대** 총예산 대비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비율이 너무 낮음.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전문성 확보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시행**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습지화 되어있으므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개발해서 실시하고,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통합으로 인한 사업의 종류와 규모 확대에 따른 센터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어린이집, 유치원 지도·감독 철저** 최근 사립유치원 급식 비리와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 아동 학대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자녀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출산축하용품 지원 방법 개선**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정해진 물품으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양산동에 건립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2층으로 공간이 협소해 교육 등을 시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3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학과 보충수업과정 개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언어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이들 연령에 맞는 학과 보충수업 과정이 더욱 필요하니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가족보육과	■ **제목 :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 결식아동수에 비해 급식카드 가맹점은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별로 차이도 있으니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시설 지원 대상 관련**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을 소외계층·일반아동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지원받도록 운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조례 제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에 따라 각각 존치 되어 있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 제정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맞벌이가정 저학년자녀 온종일돌봄 학교안 시설 우선 추진**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자녀 온종일돌봄을 학교안 시설에서 우선 지원하고, 학교 이외의 시설은 협의가 필요하므로 향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간단체 행사(대관)시 시 주관행사로 혼용 금지** 시청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평화교육 강사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민간단체가 시청사(대관)에서 행사 추진 시 오산시 주관 행사로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청소년 임신과 미혼모 상담 및 지원 시책 마련** 청소년의 임신 및 미혼모가 사회 환경적으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상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시에서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취약계층 여성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미혼모, 여성 한부모가정 등 여성을 대상으로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취득 등의 맞춤형 지원(아이돌봄 서비스 포함)을 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일자리정책과 협조).	한은경 의원
민원여권과 (1건)	■ **제목 : 세교지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세교지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평생교육과 (8건)	■ **제목 :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 시 주도의 평생교육 사업을 벗어나서 전문기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을 교육재단에 위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학관 설립 추진** 오산거주 대학생의 통학과 교육비 부담을 덜도록 서울에 장학관을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평생교육과	■ **제목 : 교육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사업 목적에 맞게 세부 사업명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 홍보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 추진** 오산시 주도의 축제보다 학교, 학생, 마을주민, 모두가 어우러져 특색 있는 축제가 정착 되도록 지원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출연금 예산편성 철저** 오산교육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시 총 출연금 및 세부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기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1인 1악기 추진 확대** 초등학교 5~6학년 정규 교과 수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1인 1악기 수업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배달강좌 런앤런 강사 관리 철저** 배달강좌 런앤런 강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강사역량교육, 인성교육, 공동체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강의가 되도록 하고, 강좌 운영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배달강좌 런앤런 수강료 징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은 문화강좌 수강료를 받고 있음. 배달강좌 런앤런 무료 수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수강료를 징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 자 리 정 책 과 (12건)	■ **제목 : 청년일자리 사업 다각화 및 홍보 철저** 청년인구에 비해 청년인터사업이나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등과 같은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이 참여율조차 미비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참여율과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 목 : 관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오산시 소재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부족한 일자리의 직종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관련 분야 교육생 양성, 전공자 또는 전공중인 대학생을 매칭 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서랑동 문화마을 활성화** 서랑동 문화마을 주차장 확보, 코끼리열차 운행, 도로 개설 및 정비, 둘레길 조성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 자 리 정 책 과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자립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후 안정화 될 때까지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자립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청소년 대상 직업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업 추진** 일자리 정책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함.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40~60대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 40~60대 중장년층 대상 직업능력개발과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일자리정책 빅테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자료를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정보통신과 협조).	성길용 의원
〃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수강생의 수준을 고려해서 초·중·고급반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강사의 자질 검증과 일반 문화강좌보다는 직업훈련(자격증) 강좌의 비율을 높이기 바라며, 강당과 회의실 등을 기업체에 대관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서랑동 문화마을 주민 특산품 등 판매 활성화** 서랑동 문화마을 주민, 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특산품 등의 판매를 활성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반되니 해당 조항을 법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서랑동 저수지 경관 관리 철저** 서랑동 저수지 포토존으로 설치된 외국인의 조각상이 문화마을과 컨셉이 맞지 않으니 교체를 검토하고, 제방 상부와 장미터널 일대에 제초작업 등 경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서랑동 문화마을 주차장 확보** 서랑동 문화마을에 주차장이 없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교통과, 하천공원과 협조)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지역경제과 (6건)	■ **제목 : 야맥축제 발전방안 강구** 야맥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상생 협조와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축제 시 제기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상인회와 함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안전관리 철저** 오색시장은 가스 및 전기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사전예방이 중요함. 화재예방을 위하여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제도 홍보 철저**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어려운 중소기업 및 청년창업 대상자가 특례보증 지원 시책을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시행**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많은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업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기업유치 활동 철처** 기업유치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 산림훼손, 환경오염 등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하고, 우리시민 일자리 창출을 확대시키고, 기업이 오산시에서 활동하기 좋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상권 활성화 추진** 최근 임대료 인상으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고충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 지역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물주와 상인간 임대료 동결 등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문화체육 관 광 과 (18건)	■ **제목 : 독산성 관련자료 전시 및 외곽지연 난개발 방지** 독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산성외곽 등 고증과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전체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산성 입구에 전시하고, 개발제한지역 인근에 난개발이 우려되니 시에서 매입 등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 철저** 오산박물관 은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먼저 부지선정을 우선한 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건립후를 대비해 산재되어 있는 오산시 출토 유물 회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에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체육 관 광 과	■ **제목 : 오산문화원 건립 사업 추진 철저** 오산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회관 철거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문화원 이전 및 건립에 대한 검토만 하고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사실은 문제가 있음.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에 문화원 건립을 검토하고, 중간에 설계변경 하지 않도록 최초 계획수립과 설계를 제대로 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예총 사무실 재이전 및 오산시 예술인 공간 확보** 한국예총 오산지부의 문화재단 건물로 이전을 문화재단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재단과의 합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다른 문화예술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음. 소통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한국예총 오산지부 사무실 재이전과 오산시 예술인 공간 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문화예술회관 증축 검토** 문화예술회관 건물 앞 광장까지 건축물을 증축해서 현재 로비는 공연장 관람석으로 확장하고, 증축공간을 쉼터와 연습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두바퀴축제 본래의 주제에 맞게 기획** 두바퀴축제를 시민참여형축제로 전환하고, 시민건강과 자전거라는 본래의 테마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획하기 바라며, 체육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독산성문화제 결과 분석 및 문제점 개선 철저** 독산성문화제 개최 결과를 전반적으로(공연내용, 공연팀수준 및 의상, 직원참여문제, 시민참여방안, 천신고유제 장소 독산성으로 변경, 사업비 적정성, 예산의 배분 등) 분석 및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해서 다음 축제에 반드시 반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부산동 옛 경기재인청 및 이용우 생사 관광지 조성** 오산장터·오산천, 부산동 왕버드나무와 화랭이 이용우 생가 마을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관내업체 적극 활용** 각종 홍보물, 인쇄물 제작과 축제물품 구입에 있어 2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적인 추진**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이 없어 보임. 전체 계획과 부서별(분야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각종 행사시 문화제 보존·관리 철저** 독산성문화제 시 고인돌을 개방하여 고인돌위에 사람이 올라가고 말이 돌아다니는 등 문화제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결과가 되었음. 재발방지와 각종 행사시 문화제 보존·관리에 주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 **제목 : 인라인 전용경기장 건설 및 선수 육성·지원 확대** 오산시는 전통적으로 인라인이 강한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부진함. 인라인 진흥을 위하여 국제규격의 전용경기장 건설이 시급하니 경기장 건설과 선수 육성 및 지원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물향기스포츠센터에 주차장 확보** 물향기스포츠센터에 주차장이 없으니 LH공사와 협조하여 세교2지구 개발 준공 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에 출토 유물 전시공간 마련** 소리울도서관 부지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적을 소리울도서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 바람(중앙도서관, 미래사업과 협조).	김영희 의원
〃	■ **제목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지급 방법 개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을 동호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함.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학교에 직접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찾아서 개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재검토** 오산스포츠클럽 자립 운영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예산지원 축소를 검토하기 바라며,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위탁근거 및 운영계획 보고**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위탁운영의 근거로 제시한 법령이 맞지 않으니 확인 후 결과 및 조치계획을 2018년 위탁기간 만료 이후 운영계획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직원채용 자체 감사 검토** 오산문화재단 2018년도 제3회 계약6급 직원채용시 지원자들의 서류 불합격처리 13건 및 인성·면접기회 박탈건, 2017년도 무기계약직 생활임금, 2016년도 무기계약직 채용관련 면직 미처리로 인한 퇴직금 미정산 등에 있어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감사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농식품위생과 (8건)	■ **제목 : 필봉산 등산로 정비 철저** 필봉산 등산로 가로등 기초작업 후 매몰되어 방치된 것이 상당수임. 소유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추가 투입하더라도 시민 편의와 산림자원 훼손 방지를 위하여 등산로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로수 관리 철저** 인도가 좁아 통행이 불편한 지역을 조사해서 가로수를 정비하고, 가로수 식재 및 정비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수종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성 있게 실시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농 식 품 위 생 과	■ **제목 : 음식문화축제 다문화가족 참여 확대** 시민의 날 음식문화축제에 나라별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다양화하고 다문화가족 참여를 확대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부산동 왕버드나무 보호 관리 철저** 부산동 왕버드나무에 안내판과 주변 조명 설치, 병충해 방지 등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주변에 공원조성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국도변 꽃단지 조성 계절별 다양한 초화류 식재** 오산대역 앞 국도변 꽃단지 조성 사업은 코스모스, 해바라기 이외에 계절별 다양한 종류의 초화류를 심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중로1-116구간 가로수 식재 요구안 LH와 적극 협의** 세교1지구 대로1-5와 중로1-114를 잇는 중로1-116 구간 가로수는 직경 15cm 이상의 은행나무 숫나무만 심거나 불가능하다면 은행나무 대신 다른 나무를 심도록 LH에 우리시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띠녹지 조성 또한 오산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서동저수지 불법낚시터 철거** 서동저수지 불법낚시터는 더 이상의 편의시설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이루어지기 전에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서동저수지 준설 조속히 실시** 가장천 하천정비 사업 공사 시작 이전에 서동저수지 준설을 실시하기 바람(하천공원과 협조).	성길용 의원
토지정보과 (3건)	■ **제목 : 위원회 위원 정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5명이 공무원임. 공무원 이외의 일반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공인중개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정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실태 일제 점검** 국공유재산 무산사용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무상사용의 근거, 사용허가의 적법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도로명 주소 표기의 단순화** 도로명 주소는 역사적 지명이나 의미가 있는 명칭으로 사용하되 가급적 발음과 표기가 쉬운 단어를 사용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미래도시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시 과 (9건)	■ **제목 : 세교2지구 개발 조기 완료 노력** 세교2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어 부동산가격 하락과 지역경제 침체를 비롯한 많은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개발사업 기술자문단 운영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운영을 한다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티자이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변경 개설 검토** 시타자이아파트 1,2단지 사이 도로는 대형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이 많아 먼지와 소음, 사고위험 등의 주민 불편이 있으니 도로 변경 또는 우회도로 개설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부산동 왕버드나무 주변 소규모공원 조성** 부산동 왕버드나무 앞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소규모라도 안내소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접부지 매입 등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신청 허위서류 제출 재발 방지** 부산동 614번지 개발행위허가 후 취소원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로 허가를 신청했다면 민원인의 자발적 취소원 제출이 아니라 시에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했어야 함.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법적인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도시기본계획에 녹지공간 확보와 동·서 연결도로 개설 반영** 오산시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하니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른 수요에 맞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녹지공간 확보와 동·서 연결도로 개설을 반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공동주택 최고층수 상향조정 재검토** 세교2지구 공동주택 최고층수 상향조정은 인구감소와 주택공급과잉 등을 예상할 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재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완충녹지지역 설치 및 규제완화 필요 지역 검토 조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중·소로에는 완충녹지가 설치하지 않고 있음. 획일적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중·소로에 완충녹지 설치와 대로변 완충녹지 규제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미래사업과 (6건)	■ **제목 :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준비 및 추진 철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가격이 사업성 확보의 관건이므로 실현가능한 사업성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만들고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실패하진 않도록 준비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상징적 묘비 설치 검토**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소나무 540그루 식재 대안으로 마련한 진입로 양측 벽면에 참전병사 540명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540개의 묘비 설치로 변경하는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미니어쳐 테마파크 스토리 단순화 등** 미니어쳐 테마파크를 정조대왕 능행차, UN 참전국 축제, 한국의 근현대사 등 여러가지 스토리로 계획하고 있으나 스토리를 단순화해서 컨텐츠의 양보다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완공 이후에 전시 컨텐츠의 지속적인 확충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충분한 전시공간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복합안전체험관 건립 및 부지 활용방안 재검토** 복합안전체험관은 오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비 백억원을 투자하지만 관광자원으로 주변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막연히 기대만 할뿐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이나 상승효과는 분석 및 검증되지 않았음. 복합안전체험관 유치 건립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해당 부지의 대체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성길용 의원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예비군 훈련장 부지 매입하여 테마파크 개발**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테마파크로 개발한다면 물향기수목원, 평화공원, 드라마세트장, 미니어쳐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벨트로 조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공시설 건축 시 주차장 지하화** 공공시설 주차장은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바라며, 특히 복합문화체육센터 옆 테니스장 부지와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미니어쳐 테마파크 등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건설도로과 (14건)	■ **제목 : 이마트 앞 육교 승강기 점검 및 가동** 이마트 앞 육교 승강기 운행이 중지되어 있으니, 육교 철거 이전까지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정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동부대로 지하화 공사현장 안전 관리 철저** 동부대로 지하화 공사로 인한 보행불편, 교통사고 유발 등의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문제점 발견 즉시 조치하고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건설도로과	■ **제목 :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 철저** 오산IC 상습정체 해소를 위한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세교~운암지구 연결도로 터널구간 차로 감소 개선** 세교~운암지구 연결도로 터널구간의 진출입 부분은 4차로인데 터널안만 2차로로 차로를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자명하니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한전주 지중화 사업 MOU(안) 재검토** 시청사거리~시티자이아파트 구간의 한전주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의 MOU(안)에서 공사비 분담은 50:50이지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도로점용료를 1/2 감면하도록 한 사항은 불공정한 계약이니 해당 부분을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한전주 지중화 사업 대상지 합리적 선정**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시급성을 따지면 롯데마트사거리~남촌오거리, 신양(아)사거리~오산역환승센터 구간 등의 구도심지역이 우선임에도 시청사거리~시티자이(아) 구간이 선정되었음. 해당 구간은 시티자이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했어야 하는 사업임.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역 환승센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오산역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함. 이러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계획과 적법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무단횡단금지 휀스 민원발생지역 개선 검토**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휀스는 일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해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이 있음. 민원이 제기되는 구간에 대하여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동서간 취약지구 우회도로 활성화** 오산대교 북측에서 서쪽방향 우회도로를 활성화 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수동 육교 안전관리** 가수동 육교를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육교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오산시 전역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건설도로과	■ **제목 : 도로정비 철저** 밀머리로(경기대로 148번길)에 인도가 없는 곳을 정비하고, 보안등과 가로등이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으니 필요성을 검토해서 선택철거 등의 조치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 다각적 검토**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가 지연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오산역환승센터 앞으로 지하도나 고가 설치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청사초롱 보행등 하자보수 철저** 청사초롱 보행등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교 통 과 (10건)	■ **제목 : 공항 이용버스 불편해소**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예약제 확대, 배차시간 축소, 신규노선 개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버튼식 교통시스템 설치 및 신호체계 단순화**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버튼식 교통시스템 설치와 신호체계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교주변 학생들 통행이 많은 교차로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개구리식 주차구역 시범운영 검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구리식 주차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개구리식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세교 9단지 부근 일방통행로 지정** 불법주차로 교통 혼잡이 수시로 발생되는 세교 9단지 부근의 일방통행로 지정 등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버스승강장 개선** 세교 홈플러스 맞은편 버스승강장은 비·바람에 취약하니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비가림막 승강장으로 교체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분당선 오산역 연장 및 오산역-동탄 트램 적극 추진** 분당선 오산역까지 연장과 오산역-동탄 트램 연결 사업을 경기도 및 용인시, 화성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저상버스 운행 확대** 오산시 운행 저상버스는 6대이며 그마저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없는 실정임. 관내 순환 노선만이라도 저상버스 운행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주민의견 수렴 철저** 공영주차장은 공사비 차이가 나더라도 가급적 지하화해서 지상은 공원이나 광장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버스준공영제 민관이 함께 추진** 버스준공영제는 시민과 노동조합, 전문가의 참여로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건 축 과 (9건)	■ **제목 :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정비 및 단속 철저** 불법현수막이 시 전역에 마구잡이로 걸려 있고 에어라이트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 정비용역, 수거보상제 실시 등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보임. 별도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거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모든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등의 주차면수 불법행위 강력 대응**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등의 주차면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인 조치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기 바람.(교통과 협조)	김영희 의원
〃	■ **제목 : 조합원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 대책 마련** 조합원아파트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음. 사업자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분양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도시과 협조).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커뮤니티센터 공사 중지 기간 동안 터파기 현장 안전관리 조치없이 방치한 사실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반환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철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광장 옆 생선가게, 비틀즈 벽화는 오산장터와 어울리지 않으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건 축 과	■ **제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비 지급 관련**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상 인건비 성격의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교통섬에 설치한 지주형 광고물 철거** 오산IC 앞 사거리 교통섬에 시에서 설치한 지주형 광고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이행강제금 부과 후 미납분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철저**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민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측과 협의 및 중재하고, 법과 절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차량등록과 (0건)	지적사항 없음	

◈ 보 건 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보건행정과 (6건)	■ **제목 : 심장자동충격기 설치·관리 및 사용법 교육 확대** 심장자동충격기 의무대상시설 이외의 학교를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과 시설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설치 후 소모품 교체 등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기적으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방법 교육 대상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관내 의료기관 응급환자 치료 대책 마련** 열상 및 자상 환자가 관외병원으로 멀리 가지 않고 관내 성형외과에서 빠른 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 협의하고 필요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철저** 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치료 지원과 노인정, 보육시설, 학교 등 단체생활 시설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보건행정 홍보 철저** 119처럼 보건소로 연결되는 대표전화번호와 모바일 앱 개발 등 보건행정 홍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보건행정과	■ **제목 : 생활주변 의무의료기관 설치 방안 검토** 아파트 및 주택가 등 생활주변에 의무적 의료기관 설치 방안을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동절기 해충 방역 철저** 동절기 모기 등의 해충 방역을 실시하고, 특히 구도심과 취약지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건강증진과 (5건)	■ **제목 :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 검토** 금연구역 내 흡연사례가 빈번해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금연 지도·단속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연교육을 연령대에 맞게 실시하기 바라며,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와 흡연부스를 설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방문간호사 근무체계 유지** 초평동 지역은 의료환경이 열악하므로 방문간호사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요구됨. 방문간호사가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하도록 근무지 지정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방문간호사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위한 2인 1조 근무체계와 전담차량 운행, 맞춤형 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지역복지자원 연계 추진** 현장방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마을건강관리 활동가 지원 철저** 걷기 프로그램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마을건강관리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알콜중독환자 치료 및 지원 철저** 알콜중독환자 치료 및 지원 사업 참여 실적이 저조함. 사례관리와 사업추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콜 및 흡연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환경사업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13건)	■ **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위반사항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사후 관리와 통제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지곶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악취 민원 적극 해결** 지곶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변 악취에 대한 원인은 파악되었으니, 경기도, 화성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 **제목 : 음식물자원화시설 근본적 개선방안 검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장기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공사현장 소음 및 먼지 예방조치 철저** 관내 각종 공사현장에 소음 및 먼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폭염관리대책사업 추진 철저** 금년도 폭염관리대책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예산의 집행율이 0%임. 경기도에서 별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됨.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극 추진**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과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일회용품 미사용업체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업무 추진 철저** 2017년 11월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고 있음. 조속히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검토** 개방형 공중화장실 23개소 중 13개소가 주유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유소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니, 일반 건물에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기 바라며, 주유소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한 관련 지침 등 근거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지정을 취소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업소 지도·점검 실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지도·점검을 2017년에 1회, 2018년에 미실시하였음.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지도·점검을 즉시 실시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종량제봉투의 두께를 두껍게 조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주요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주요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오산시 로고가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별 자동판매기 설치 검토**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가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규격별 자동판매기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 **제목 :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단순화 검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단순화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도입 방안과 시범 실시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확대** 석면피해 시설물을 전수조사 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오산시에는 석면피해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수 도 과 (2건)	■ **제목 : 노후관 교체공사 확대 실시** 누수복구 공사가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많이 증가되었음, 누수율 감축을 위해 구간별 노후관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교체공사를 확대하여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준수** 수도과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노후관 교체공사)를 하천공원과소관(죽미체육공원 수도시설 설치) 사업에 집행함은 예산편성기준에 부적정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하 수 과 (3건)	■ **제목 : 서동로 19번길(벌음동) 수해 대책 추진** 서동로 19번길(벌음동) 일원 개발행위로 하수관이 막혀 강수시 상습적인 침수와 배수구 역류 등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의 비교 분석후 재검토**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 사업비와 환경부 표준사업산정기준과 약 260억원 차이가 있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세마하수처리장 증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기 바라며,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오산1,2하수처리장 전체에 대한 운영권(20년) 부여는 시급성이 없어 부적절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우·오수관 분리공사 추진** 대원동 밀머리 부근과 남촌동 성산초등학교 인근에 우·오수관 분리민원이 해결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하천공원과 (11건)	■ **제목 : 고인돌공원 시설 점검 및 개선 철저** 고인돌공원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설치, 초가원두막 지붕 보수 및 추가 설치, 입구 교량 바닥등 보수 등 전반적인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보완·개선하는 등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하천공원과	■ **제목 : 꿈의 놀이터 안전 조치 절저** 꿈의 놀이터 짚라인은 안전수칙 보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천 정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오산천에 생태정원과 작은공원 조성 후 효율적인 급수를 위하여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천 제방도로 개선** 종합운동장과 스포츠센터 옆 오산천 제방도로에 보도블럭, 데크길, 볼라드 설치는 생태하천 산책로에 어울리지 않으니 자연상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천변 나무 식재 지양** 식목행사 시 오산천 경사면에 매실나무를 심었으나 하천변에 부적합하니 향후 오산천변 나무 식재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침례교회, 현대아파트 앞 제방도로 인도(데크길) 확보** 침례교회, 현대아파트 앞 제방도로에 데크길 또는 인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 (건설도로과 협조).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 지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는 순찰을 통한 오염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 등 본연의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맑음터공원 캠핑장 사용료 회계관리 철저** 맑음터공원 캠핑장의 총 사용료 징수액과 세외수입 부과징수 금액은 일치하지만 월별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일치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철저** 오산천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를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음.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가장천 습지 공사 하자 개선 및 가로등 설치** 가장천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인공 습지로 물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습지에 가로등이 없으니 빠른 시일 안에 등을 설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천내 수목 정리와 퇴적토 등 정비 실시** 금곡보 아래 설치된 여울에 퇴적토가 쌓여 여울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니 퇴적토를 제거하고, 홍수 예방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하천 안에 우거진 수목을 정리하고 토사가 퇴적된 부분 등 하상정비를 실시하기 바라며, 금곡보 상부에 수면 위로 돌출된 구조물을 정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중앙도서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중앙도서관 (4건)	■ **제목 : 꿈두레도서관 지하공연장 바닥 재질 변경** 꿈두레도서관 지하공연장 바닥이 카펫이므로 곰팡이, 먼지, 얼룩 등 오염에 대한 위생적 측면에서 관리가 비효율적이니 마루 바닥 등으로 변경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도서관 복사기 이용카드 신용 및 교통카드 기능 탑재** 도서관 복사기를 선불카드를 구입(3천원)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휴면카드의 사용 잔액이 문제가 되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의 기능을 탑재해서 겸용하도록 개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사업 추진 철저** –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을 비롯한 특이사항 등 의회 보고 및 의회의견 반영 철저 – 증축에 따른 설계 변경 완료 후 계약 전에 의회 보고 – 공연장 무대 공간 확대, 관람석 의자 스탠드 형태로 변경 – 공사장 건축자재 관리 철저 – 향후 건물 측면과 후면 임야 매입하여 공원(산책로) 조성	김영희 의원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청학도서관 취업 관련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 청학도서관은 이전 후 청년의 취업능력 개발과 관련한 특성화 도서관으로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없음

◈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시설관리 공 단 (7건)	■ **제목 :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결재방식 개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신용카드 결재시 현행 입력식카드 결재만 가능하니 터치식카드결재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카드결재방식을 변경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공영주차장 주차위치 확인시스템 설치 검토**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주차면수 확인과 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위치 확인시스템을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장애인 사용 지원 철저**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에 장애인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해서 장애인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장산업단지 내 쉼터공원 이정표 설치** 가장산업단지 진입 후 사거리에 쉼터공원 방향 이정표가 없으니 확인 후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시설관리공단	■ **제목 : 죽미다목적체육관 조명시설 및 음향장비 보강** 죽미체육공원 체육관에 조명시설과 음향장비를 보강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무인공영주차장 청각장애인 배려 대책 마련** 무인공영주차장 음성안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이용 불편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위탁과 대행 구분 철저** 시설관리공단 사업성격에 따라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을 구분하여 사업별 관련된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서 작성 또한 위탁과 대행사업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람(오산시 사업별 소관부서 협조).	김명철 의원

◈ 오산문화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산문화재단(12건)	■ **제목 : 수준 높은 뮤지컬 기획공연 추진** 문화예술회관 뮤지컬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뮤지컬 기획공연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철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공정하고 투명한 직원 채용** 직원 채용은 법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준수하고,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직원의 급여 책정 시 형평성을 고려하기 바라며, 상위직급 결원으로 신규 채용 필요시 하위직급을 채용하여 하위직급 직원들의 내부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케스트라 사업 인력 정규직 전환 검토** 문화재단 오케스트라 사업추진 인력 2명의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 전환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창작예술촌 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 오산창작예술촌 운영에 있어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연 수지율 고려 및 공연 홍보 철저** 공연을 계획할 때 수지율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연 계약 이후에는 홍보에 주력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 산 문화재단	■ **제목 : 공연일수 확대 및 수준 높은 공연 유치** 연간 공연일수 등 실적이 저조하니 연간 공연일수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문화재단 조직의 안정성 확보 및 적극적 업무 추진**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잦은 교체는 재단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조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독산성문화제 경기재인청 공연 관련** 독산성문화제 프로그램 중 경기재인청 공연은 퓨전보다 전통식으로 추진하고, 2015년과 같은 포럼 개최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립미술관 전시기간 단축과 다양화 및 작품 확보 노력** 시립미술관 작품전시는 장기간 전시보다는 가급적 전시기간을 짧게 단축하고 전시의 종류를 다양하게 운영하기 바라며, 소장가치가 있는 질 높은 작품을 꾸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우리시 청년작가 전시활동 참여 확대방안 강구** 지역 청년작가들이 다양한 전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예술 활성화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지역 예술인 연찬회 지속 추진** 오산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합동연찬회를 실시해서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 교류 기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오산교육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 산 교육재단 (4건)	■ **제목 : 시민참여학교 수업진행 강사 강사비 지급** 시민참여학교와 관련하여 탐방학교 진행시 학부모 강사 이외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에게 강사비 지급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나누미 강사 참여후기 책자 발간** 나누미 강사들의 참여후기 및 소감을 수필집 형식으로 발간해서 교육사업 홍보에 활용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교육재단에 걸맞는 사업 추진** 교육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1인 1외국어, 미디어 교육, 예체능 교육 등 그에 걸맞는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교육재단 사무실 이전 검토** 교육재단 사무실이 비좁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을 추진하기 바라며, 복지교육국장, 평생교육과장과 협의하고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제2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19. 6. 21. ~ 7. 1.(11일간)

3. 감사대상부서

4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 4국 : 안전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 3관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1직속기관 : 보건소
○ 3사업소 :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 6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4.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장 : 성길용 의원
○ 감사위원 :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용수, 행정7급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차혜진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부 서	비 고
6.21.(금) 10:00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정보통신과)	1국(6과)
6.24.(월) 10:00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1국(6과) 1재단
6.25.(화) 10:00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농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1국(4과)
6.26.(수) 10:00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주택과), **차량등록사업소**	1국(6과) 1사업소
6.27.(목) 10:00	**중앙도서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중앙동~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사업소 3관 6동 1공단
6.28.(금) 10:00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환경과~하천공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오산문화재단**	1직속기관(2과) 1사업소(4과) 1국(1과), 1재단
7.1.(월) 11:0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6.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처리요구사항

◈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홍보담당관 (12건)	■ **제목 : 시정에 대한 언론 보도 관련** 언론이 대부분 시에서 작성해서 보내주는 보도자료 그대로 일률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음.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적극 대응** 시정에 대한 사실과 다른 왜곡, 허위, 과장 보도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정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정홍보비 지급 기준 준수 철저** 사실왜곡, 허위, 과장보도로 인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받은 언론사 등 시정홍보비 지급 기준에서 홍보비 지급제외 대상으로 정한 언론사에 홍보비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정홍보비 집행 철저** 시정홍보비 지급 기준에 따라 홍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인터넷 언론사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 관련** 시정홍보비 지급제외 대상 중 인터넷 언론사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와 관련하여 포털사이트를 “네이버”와 “다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이용자가 많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를 포함해서 개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출자·출연기관의 홍보비 시에서 집행 및 관리 검토** 출자·출연기관의 홍보비를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시에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객관적인 홍보대사 선정 기준 마련 및 위촉 철저**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위촉할 때 오산시에 직접적인 영향력 있고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위촉하되, 선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홍보대사 정비와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연예인으로만 위촉하지 말고 문학·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방송국 설치 및 작가·아나운서 정규직화 추진** OSTV 방송을 방송국으로 설치하고,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작가와 아나운서 정규직화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홍보담당관	■ **제목 : 홍보매체별 홍보효과 분석 및 정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니 매체별 홍보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통해 부진한 방법은 정리하고 우수한 홍보방법에 집중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속 정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오산시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 등록에 대한 기준 강화** 오산시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 등록에 대한 기준 강화와 관련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출입기자는 자격을 유지하되 새로이 등록하는 언론인과 언론사 출입등록은 기준을 마련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감사담당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없음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기획예산담당관 (4건)	■ **제목 : 에스코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에스코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오산시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따라서 이 사안은 시장 개인의 소송이므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함은 부당하며, 환수의 대상이므로 지급한 소송비용을 환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에스코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관련** 에스코사업 관련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소송은 개인이름으로 했지만 주소는 시청이었고 업무추진에 따른 소송이므로 개인소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규정을 해석하는 시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근거와 판례 등을 제대로 제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관내 주요사업현장 방문**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관내 주요사업현장 방문과 설명으로 위원들의 사업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금액과 통계수치 등을 표로 작성할 때 총 합계를 표시하고, 구분이 필요하다면 소계도 함께 표시하도록 작성 부서 등에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안전행정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22건)	■ **제목 :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 철저** 대원동과 신장동 분동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현안사업의 순차적 추진** 남촌동복합청사, 초평동행정복지센터, 현재 대원동 주차장 확충, 대원동 분동 등 현안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환경과, 하천공원과 조직개편** 환경과는 환경보호과와 자원순환과, 하천공원과는 생태하천과와 공원녹지과로 직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문화체육관광과 조직개편**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와 체육으로 직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방치차량 관리업무 교통과로 이관**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 안 되고 있으니, 교통과에 인원을 충원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방치차량 관리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대외협력관 역할 강화** 대외협력관의 의회에 대한 역할에 있어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소통을 강화하기 바라며, 업무추진비 배정 등 대외협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직렬에 맞는 보직으로 직무의 전문성 확보** 직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본인의 직렬과 관계없는 업무에 배치와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인사 추진** 승진 인사에 있어 특정 보직이 승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인사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능력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인사를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부서(팀)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 재배치 및 조직개편** 특정부서(팀)에 업무 편중, 직원 부족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기적으로 업무량을 조사해서 인력 재배치 등 인사를 실시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청원경찰 본연의 직무 수행** 청원경찰이 일부 청원경찰법에 맞지 않는 민원업무(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과 등)를 수행하고 있는 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맞춤형복지제도 미사용 포인트 환급 검토** 복지포인트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포인트 차감이 안된다는 메세지가 웹페이지에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한내 미사용 잔여 포인트를 지역화폐등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량 교체 또는 신차 구입을 지원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공무국외여행 명칭 개선 등**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라며, 공무국외출장 이후 1~2일 정도 적응(휴식) 기간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3.1절 기념행사 추진 관련** 3.1절 기념행사 추진은 참여인원, 행사규모, 대여의상 등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아쉬움이 있었음. 행사 진행시 계획부터 철저하게 수립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가로기 게양대(꽃이) 일제 정비** 가로기 게양대(꽃이) 손·망실된 것들을 조속한 시일 안에 일제정비 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국내·외 도시와 교류 내실화** 국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어느 한 도시에 집중되지 않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들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교류를 위한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교류가 부진한 국내·외 교류도시 결연 취소 검토** 킬린시와 같이 교류 활동이 없는 국내·외 교류도시는 결연 취소를 검토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국제교류협회 활성화** 오산시 국제교류협회의 활동이 예전보다 위축되어 있음. 실질적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교류협회를 활성화하고 역할을 강화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위원회 위원 정비 및 수당 지급 기준 마련**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이므로 수당지급액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에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지 않도록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예산편성 및 관리 철저** 2018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이 과다한 바, 예산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사무 일제 조사** 오산시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한 사례가 있는지 전부서의 민간위탁사무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행사용 의전매뉴얼 정비** 각종 행사 시 의전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매뉴얼대로 추진하도록 전부서에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안전정책과 (11건)	■ **제목 : 민방위교육 장소변경 및 방법개선** 민방위교육을 지하대피소, 유엔평화공원 등 시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실제 상황 발생을 가상해서 실질적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교육 장소와 방법 개선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민방위교육 장소 변경** 민방위교육 시 시청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하니 죽미체육공원 등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동별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방위교육 시 시청광장 임시주차장 개방** 민방위교육 시 시청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광장 임시주차장을 개방하고 활용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폭염·풍수해 대비 및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 폭염·풍수해 대비 시책 추진과 빗물펌프장 사전점검 및 시험가동, 어린이 물놀이시설 감전사고 예방과 수질검사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태풍 대비 행동요령 시민 홍보 및 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태풍에 대비해서 행동요령을 SNS와 학교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강풍에 대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지도를 실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철저** 찾아가는 시민 안전체험과 교육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중간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어린이 놀이시설 폐타이어 고무칩 전수조사 및 교체** 폐타이어 고무칩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교체를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안전정책과	■ **제목 : 1인가구 범죄예방 시책 마련 추진**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산시에도 1인세대가 33,600여세대임. 이에 따른 무인택배함, 언전한 보조키 확보 등 범죄예방 시책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정기적으로 지속 추진** 다문화가족 안전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교육시간과 횟수를 증가해서 정기적으로 반복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가장동 저류지 주차장 설치 안전성 검토** 가장동 저류지에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안전상의 문제와 저류지 본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드라이비트 재질 건물 현황 조사 및 소방안전 조치** 작년 화재가 발생한 갈곶동 원룸이 드라이비트 재질이었음. 관내 드리이비트 재질의 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시설과 소방장비 점검 및 안전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징 수 과 (3건)	■ **제목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환경개선부담금, 소음진동규제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 적극 추진** 출국금지요청,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 관리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체납처분 공무원 안전 확보 지속 추진** 체납처분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회 계 과 (13건)	■ **제목 : 시청사 별관 및 주차장 건립 대안 검토** 시청사 별관과 주차장 건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업무공간 부족은 의회청사 건립 후 의회에서 사용하는 5층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굳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시청광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버드파크 위치 재검토** 버드파크 조성은 공용의 공간인 시청사 내에 조성하기보다는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에 기존 계획되어 있는 드라마세트장,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와 패키지 상품화하여 관광벨트로 이용한다면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므로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 **제목 : 시청사 버드파크 조성 재검토** 시청사에 버드파크 조성은 다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을 설득하거나 이전 또는 취소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초평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철저** 초평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으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니 주민 불편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남촌동복합청사 사업부지에 잔여 건물 매입** 현재 상태로는 건축을 하더라도 효율적 공간 활용이 어려우니 사업대상 부지에 남아있는 건물 4동을 매입한 후 설계를 진행하거나 매입과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시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시청사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청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관리 철저** 시청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청사 주차장 사고예방 안전 조치** 시청사 주차장 개구리주차라인 출차차량과 현관 전면 주차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바닥에 “출차주의” 표시 및 조명 설치 등)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청사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안 검토** 시청사 주차장 부족의 대안으로 웨딩의 전당 주차장 및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주간에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부서별 일상경비 통장 잔액관리 철저** 각 부서별 일상경비 통장 잔액을 과다하게 보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 바라며, 연말(12월 31일)에 지출이 집중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물놀이시설 운영 계약시 경쟁입찰 검토** 맑음터공원, 죽미체육공원 물놀이시설은 해마다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바, 물놀이시설 운영이 가능한 업체 파악과 원가계산을 재확인하고 경쟁입찰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청 외 기관·단체 등의 지출증빙서류 기준 마련** 산하단체 및 기관과 보조금 교부단체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제각각이니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달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과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 **제목 : 각종 기념품 등 제작·구입 남발 지양** 시청 및 산하기관·단체의 각종 기념품 등 제작·구입을 과다하게 남발하고 있으니 꼭 필요시에만 구입하되, 가급적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관내업체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정보통신과 (9건)	■ **제목 : 정보화 부문의 우수사례 홍보 철저** 2019 국제 보안기기 박람회 참가를 비롯한 정보화 부문의 우수사례를 시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스마트시티 모니터요원 정규직화 지속 추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모니터요원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추진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범죄예방 위급상황 알림 서비스 개발**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위급상황 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연결하는 서비스를 안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개발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여성 밤길 치안 안전 지도앱 개발** 여성 및 시민의 귀갓길 안전을 위한 여성 밤길 치안 안전 지도앱 개발을 추진하기 바람(서울시 벤치마킹).	김영희 의원
〃	■ **제목 : 드론 교육문화 사업 추진 활성화** ① 시청 광장 드론 체험장 확대 설치 ② 드론 교육과 지도자양성과정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 ③ 운천고를 비롯한 드론교실 학생들 실력향상, 대회 참여 등 지원 ④ 각종 행사시 시에 등록된 드론 관련 단체 및 강사를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확대**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콜센터 설치 추진 철저** 콜센터 설치를 최초 2015년에 계획하고 4년이 지났음.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 문제점과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방향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방범용 CCTV를 신호등이나 전신주 등에 설치 검토** 방범용 CCTV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교통신호등이나 전신주 등 기존 시설에 함께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신도시 방법용 CCTV 설치 비용 LH에 부담** 신도시에 신규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는 사업비를 LH에서 부담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복지교육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20건)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사후관리 철저**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회계교육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재난 및 화재대응 훈련 방법 개선** 종합사회복지관 재난 및 화재대응 훈련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함께 참여하는 실제훈련이 되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소방장비가 충분한지 확인 및 확충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자동문 설치**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장애인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동문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설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율 제고 노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실적이 저조하니 자격기준완화 제도 개선 건의, 적극적인 홍보 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평화공원 준공 전에 구초전비 이전 완료** 구초전비 이전은 UN평화공원 준공 이전에 완료하도록 빠르게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UN평화공원 연중 개방** UN평화공원은 휴원일 없이 365일 연중 개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UN평화공원 공원담당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 조치** UN평화공원 운영 및 관리를 공원담당부서에서 주관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조치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증설 조속 추진**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현재 계획 중인 주차장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유료화 검토**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족과 관련하여 주차요금 유료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니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UN초전기념관 우측 건물 활용방안 강구** UN초전기념관 우측 건물 1층을 창고로 방치하고 있으니 보훈관련단체 사무실 또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 **제목 : 희망복지과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희망복지과 직원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검토**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10만원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으니 인상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거주형태가 열악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거주형태가 열악한 여인숙,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대상자 발굴 및 조치한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복지대상자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복지대상자 발굴·지원 업무추진 과정 및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복지대상자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현충탑 주출입로에 경사로 설치** 현충탑 주출입로(계단)에 장애인·어르신·휠체어사용자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설치를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일반인 급식 관련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일반인 급식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관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UN평화공원 개원 기념식 초청 관련** UN평화공원 개원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식 초청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노 인 장애인과 (20건)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입구 도로 노약자 보호구역 지정**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입구 도로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1472살핌 사업 다각적 홍보 실시** 1472살핌 사업을 실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회복지법인 승우재단에 지원된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사회복지법인 승우재단에 지원된 보조금 환수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적법한 조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노 인 장애인과	■ **제목 :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조속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서동(로뎀실버텔) 부지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치료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보호 및 치료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서동에 계획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치료센터를 설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독거노인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물품 지원 확대** 독거노인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물품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실버케어센터 셔틀버스 확대 운행** 실버케어센터 셔틀버스 노선을 개편했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니 셔틀버스 운행 확대를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실버케어센터 목욕탕 새벽시간 일반인에게 개방 등** 실버케어센터 셔틀버스 운행 확대와 주차장 확충, 새벽시간 노인 외 일반인에게 목욕탕 개방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지곶동 공동묘지 관련 민원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지곶동 공동묘지와 관련한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유지관리 신청 및 지원 방법과 절차 개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신청 및 지원 방법과 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7.26.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니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전문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을 대부분 단순하고 일회성 일자리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요양보호사 등 지속참여 가능한 전문인력의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경로당 운영상황에 따른 양곡 차등 지원** 경로당 쌀 지원에 있어 현재 경로당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하고 회원수와 급식형태 등의 운영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종합운동장 내 미등록경로당 지원 방안 검토 보고** 종합운동장 내 지체장애인과 농아인을 위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노 인 장애인과	■ **제목 :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노인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로당 등록회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노인복지 시책에 반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누읍동 컨테이너 경로당 신축 또는 시설 개선** 누읍동 컨테이너 경로당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신축 또는 시설 개선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추진 철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성심동원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결과 조치 철저** 성심동원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후속조치와 사후관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적기에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 추진 철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 위원회 운영이 아직 추진이 미흡한 바,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세교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복지관 이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규 설치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가족보육과 (9건)	■ **제목 : 현실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시책 개발** 출산율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시책 개발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보육타운 조성을 위한 미래숲어린이집 매입 관련** 보육타운 조성을 위한 미래숲어린이집 매입과 관련하여 탁상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의심은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라는 명분으로 매입하는 것은 개인적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특혜라고 판단되므로 찬성할 수 없으며,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미래숲어린이집 행정처분 이후 매입 가능여부 재확인** 미래숲어린이집은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예상되는데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위하여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급기관에 재확인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가족보육과	■ **제목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 철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변경되므로 이에 따른 업무 추진과 평가인증 관련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업무추진비 지출처리 철저** 가족보육과 업무추진비 사용일과 품의일에 상당기간 차이가 나는 건들이 있는데 앞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처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학교여자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비치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각급 학교 여자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생리대 비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국공립어린이집 유아반 중심으로 운영 검토**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국공립어린이집은 유아반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혼자 사는 여성 범죄예방 시책 추진**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여성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철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이 없음. 경찰서와 협조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아동청소년과 (11건)	■ **제목 : 난독증과 ADHD질환 아동 치료와 지원 확대** 난독증과 ADHD질환 아동 치료와 지원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함께자람센터 지상층에 설치** 함께자람센터 1호점이 지하층에 설치되어 환경이 열악하니 2호점과 향후 추가설치 시에는 가급적 지상층의 쾌적한 환경에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함께자람센터 2호점 운영 준비 철저** 함께자람센터 1호점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해서 2호점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돌봄 시설 학교안 우선 설치**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돌봄 시설은 가급적 학교 안에 우선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안에 유휴공간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청소년 축제 행사시간을 고려한 계획 수립** 제3회 청소년 축제는 행사시간이 너무 길어 참여인원이 적었음. 향후에는 행사시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아동청소년과	■ **제목 : 아이러브맘 카페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교실 활용** 아이러브맘 카페를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사회단체를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식당 운영**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이 부족한 지역은 새마을부녀회 등 사회단체를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식당 운영을 검토하고 시험운영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시설과 지역아동센터 통합 운영**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시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합해서 소외계층아동과 일반아동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조례에 의한 사무 이행 철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오산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오산시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 조례」관련 업무 등 개별 조례에서 정한 사무 추진이 부진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있어 대상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교실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운영**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함.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평생교육과 (6건)	■ **제목 :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 제작 관련**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재 제작 시 오산지역 학교의 역사를 함께 수록해서 제작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진로박람회 상·하반기 각각 개최** 진로박람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개최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 제출** 「오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해 수립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서울지역 오산시 장학관 설치** 서울지역으로 통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오산시 장학관 설치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초·중·고 학년별 차등 교육프로그램 실시** 초·중·고교 학생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교육의 수준과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타지역 고등학교 진학생에 대한 대책 강구**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330명임. 교육도시에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 자 리 정 책 과 (15건)	■ **제목 : 중장년층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운영** 노인인구 증가에 비해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실정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오산대학교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마케팅 강화 등**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포인트제도 운영 등의 마케팅 강화 방안과 부스별 간이막 설치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초기 지원 철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된 기업 활동을 위하여 초기 몇 년간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취약계층 여성의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취약계층 여성의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지원을 오산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가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운영 철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강좌반 일부 폐강과 관련한 문제는 수탁자의 운영 부실, 강사의 자질부족, 담당부서의 지도감독 미흡이 복합적 원인이라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등의 수강신청 시간 조정** 근로자종합복지관 문화강좌 등의 수강신청을 근무시간 외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취업상담사 배치**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활동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장애인 취업 지원 시책 개발 추진** 장애인 구인·구직과 관련하여 상담알선에 비해 알선충족율이 매우 낮음. 장애인과 기업체 연결, 장애인 취업 사업장(기업체)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 취업을 위한 시책을 관련 부서(노인장애인과, 지역경제과)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종합평가 및 문제점 분석**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은 예산 대비 수익의 문제, 보조금 정산 문제, 수익금의 귀속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자리정책과	■ **제목 :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홍보 철저**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 검토**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청년근로지원금 시행 준비 철저** 청년근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인 바, 신청 이후 자격기준 실효에 대한 확인 등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입** 시청 각 부서와 산하단체 및 산하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각종 행사용품과 기념품 등을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입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구입 실적을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일자리 창출 업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활용** 일자리 창출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가장산업단지 화장품 전시·판매·홍보가 가능한 종합시설 설치** 가장산업단지에 화장품 완제품 생산 기업이 많으니 근로자 종합복지관 또는 가장산업단지에 화장품 전시·판매·홍보가 가능한 종합시설(전시관)을 설치하고, 오산시 뷰티정책과 관내 관광자원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지역경제과 (23건)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 기능 수행 철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관련 업무 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니,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뷰티도시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가장산단에 아모레퍼시픽을 유치하고 입주하면서 뷰티와 관련된 정책을 시작했지만 추진이 부진함. 뷰티도시를 위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확충부터 내실 있게 마련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지역화폐 홍보 및 마케터 인센티브 지급** 오산시 지역화폐의 본래 목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화폐 출시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라며, 마케터 활동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지역경제과	■ **제목 : 지역화폐에 택시비 결재와 교통카드 기능 탑재** 지역화폐 카드가 택시비 결재와 교통카드 기능이 가능하도록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지역화폐 불법사용 등에 대한 조치 철저 등** 지역화폐 사용자의 불법행위와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 조치하고, 종이지역화폐는 불법 유통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 후 발행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지역화폐 IC카드 사용가능 가맹점 확인 서비스 시행** 지역화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IC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홍보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과 다른 지역 상권의 상생 방안 검토 추진** 오색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맥축제가 정착됨에 따라 다른 지역 상권은 상대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 양면성이 있지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문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유지관리 철저** 오색시장의 '할머니집' 앞까지 아케이트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미 설치된 아케이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사업 철저** 오색시장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설치는 가능한 많은 상점에서 참여하도록 설득과 홍보를 실시하고,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등록 지원** 오산장터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고 도와주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오산지회 설립 진행상황 보고**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오산지회 설립에 대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 내실 있게 추진**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는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부진함. 국가정책의 문제라 한계는 있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 운영 방법 개선**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는 관련 직종 은퇴자와 자격증 보유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부산동, 외삼미동 지역 도시가스 보급 조속 추진** 부산동과 외삼미동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롯데마트 주차장 유료화 취소 적극 협의** 오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상생협약 체결 시 롯데마트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유료화로 전환하였음. 유료화 취소를 롯데마트에 요구 및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장3산업단지와 세마일반산업단지 관련 민원 적극 대응** 가장3산업단지와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민원 발생에 적극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가장3산업단지 악취 관련 민원 대응** 가장3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산업단지와 악취발생의 연관성 및 악취발생이 다른 지역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마일반산업단지 추진 철저** 세마일반산업단지는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며, 오히려 교통체증이 예상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확대 등**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오색시장내 상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도시가스배관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하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등을 설치할 때 도시가스배관을 함께 설치하는 방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가장산업단지에 화장품 특화 뷰티거리 조성** 경기도 공모사업인 뷰티거리 지정은 문화의 거리 보다는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관광자원과 연계가 가능한 곳으로 추진해야 함. 화장품 업체가 집중된 가장산업단지에 화장품 특화 뷰티거리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뷰티관련 사업분야 다양하게 확대 추진 등** 뷰티도시 건설을 위한 뷰티관련 사업분야를 도시 디자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확대해서 추진하고, 뷰티스트 컴페스타 미용경진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24건)	■ **제목 : UN초전기념관 앞 관광안내도 정비** UN초전기념관 앞 관광안내도가 낡고 훼손이 심하니 정비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사편찬위원회 집필위원 선정 및 과업지시 철저 등** 문화원·문화재단·예총 등 현직 임직원이 시사편찬위원회 집필위원으로 선정된 건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직업 등 자격이 검증된 사람을 집필위원으로 선정해서 계약하기 바라며, 집필위원에게는 집필을 위한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를 제시해서 집필 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사편찬위원회 관련** 시사편찬위원회 집필위원 및 저작물 사용 관련 계약관계 이행 철저 및 관계법 참조. 시사편찬과 관련한 것인만큼 시민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 제공필요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근무상황 관리 철저 등**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근무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사람이 집필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노거수와 보호수에 대한 스토리 관리** 관내 노거수와 보호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에 대한 고증과 자료수집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문화유산으로 관리 및 홍보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독산성 서문주차장 환경정비 사업 추진 철저** 독산성 서문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은 매점건물 철거와 화장실 급수 시설(관정)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독산성 서문주차장 역사 경관 광장 조성 관련** 독산성 서문주차장 역사 경관 광장 조성은 주차장 입구 철제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독산성 불법 묘지 정리** 독산성 내에 불법으로 매장한 묘지를 정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독산성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위원회 기능 수행 철저** 독산성 복원 추진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관련 업무 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니, 독산성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재검토**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성벽 복원이 관련 기준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니 실현가능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 **제목 : 발굴 문화재·유적 관리 철저 및 소규모 전시부스 설치** 공공사업현장에서 발굴되는 문화재와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존하고, 발굴지에 건축되는 공공시설에 소규모 전시부스을 만들어 보존·전시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위치 조속히 선정 후 사업추진 철저** 시립역사박물관 건립이 몇년째 위치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위치 먼저 선정하고 부지확보와 예산 반영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사무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문화재단 직원채용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의 정관·규정, 직원채용, 업무추진상황, 지시사항이행 등 사무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상임이사 "성과계약 및 평가"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창작예술촌 업무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 오산장터 창작예술촌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문화체육관광과로 업무 이관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예총 사무실 재이전", "문화예술회관 증축" 추진 철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예총 사무실 재이전"과 "문화예술회관 증축 검토"는 추진된 사항이 부진하니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사업예산 지원 보조금으로 변경** 문화재단 축제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국민체력인증센터 위탁 의회 동의 대상여부 재검토**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위탁이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검토한 변호사 자문서를 제출하고, 동의 대상 사무인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 방법 개선", "오산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재검토" 추진 철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 방법 개선"과 "오산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재검토"는 추진된 사항이 없으니 조치현황에 '완료'처리를 '추진중'으로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체육관광과	■ **제목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금 신청서류 사실 확인 철저** 배구동호회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위한 회원명부 조작 및 명의 도용과 관련하여 사후에 진행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신청서류 사실 확인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체육회와 스포츠클럽 통합 관련 제도개선 건의** 오산시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의 통합을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통합은 불합리 하니 관련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민스포츠리그 온라인서비스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내용 보고** 2019 오산 시민스포츠리그 온라인서비스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체육회 인사 관련** 오산시체육회 2014년 10월 ○○과장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직권면직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 직권면직한 사람을 2018년 11월에 ○○과장 직위를 신설해서 다시 채용하고 채용 후 지급한 인건비 예산의 문제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스포츠센터 등의 어린이 수송차량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지정** 스포츠센터와 스포츠종목학원 등의 어린이 수송차량을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농식품위생과 (11건)	■ **제목 : 영동군 자매도시 체험교육 저소득계층 배려 및 홍보 철저** 자매도시인 영동군 체험교육 신청은 쿼터제 시행으로 저소득 계층을 배려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에 대한 관련법령 긍정적 검토**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모범음식점 등급제 전화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 모범음식점 지정을 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향후 시행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1번국도변 철도소음 방음 가능한 나무 식재** 국도변 꽃단지 조성은 초화류 식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짐. 철도소음 방음이 가능한 나무 식재를 대안으로 제시하니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농 식 품 위 생 과	■ **제목 : 반려동물 공원과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니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오산천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유기견 보호 관리 기간 연장 등** 유기견 보호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지 않고 반환과 입양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업무 추진 철저** 길고양이 쉼터, 중성화수술 지원 등 관련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바, 적극적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 기능 수행 철저** 오산시도시농업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관련 업무 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니,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저수지 주변 안전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 서랑저수지를 제외한 5개 저수지는 주변 안전시설이 매우 부실하니 저수지 주변 안전시설을 일제점검하고 정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음식점 간판 정비** 독산성 음식문화거리에 음식점 간판이 제각각이므로 시에서 디자인을 제시하고 통일된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관련부서 및 상인회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서동저수지 불법낚시터 철거 및 준설 추진** 서동저수지 불법낚시터를 조속히 철거하고 동시에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토지정보과 (2건)	■ **제목 : 도로명주소 표기의 단순화 관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도로명주소 표기의 단순화에 대한 조치결과가 의도와 다르게 작성되었음. 도로명주소를 외국어 표기가 용이하도록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사용하자는 의미였으니 향후 변경이나 신규 지정 시에는 발음과 표기가 쉬운 단어로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규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중국인 소유 토지 및 건물 증가와 관련하여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검토하고,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문제점을 분석해서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시정책과 (9건)	■ **제목 :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 두곡동과 벌음동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벌음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재검토** 벌음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세교2지구와 인접해 있음에도 주민의견 수렴 없이 허가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관련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공사중단 조치 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계성제지 부지 개발 진행상황 의회 보고** 계성제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오산시 검토내용 및 결과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택지개발 빠르게 추진** 세교2지구택지개발이 계획보다 진행이 지체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공동주택 층수제한 확대 긍정적 검토** 세교2지구에 공동주택 층수제한을 25층에서 40층으로 확대 요청이 있었음. 세교2지구는 아파트 면적과 층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니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이행 인센티브 상향 조정**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이행에 따른 해당지역의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통학생 안전확보 방안 강구**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학생 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나 육교 설치는 무리가 있으니,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등 통학생의 안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참여**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분야 전문가 이외에 시민을 대표하는 일반인의 위촉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초평동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철저** 초평동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초평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미래사업과 (8건)	■ **제목 : 신속집행 추진 철저** 오산시 신속집행 실적이 경기도 최하위인 바,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 등 신속집행 예산액 20억원이상 미래사업과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과 신속집행에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에 박물관 건립 및 버드파크 이전**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중 유보용지에 오산시박물관 건립과 버드파크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잭슨나인스와 MOU체결 재검토 및 대안 강구**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유보용지 개발을 위한 잭슨나인스와 MOU체결은 오랜시간 끌어온 공유재산부지 개발에 대한 압박감으로 시급하게 결정했다고 판단되니,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MOU 취소와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미니어처 테마파크 부대시설 관련** 미니어처 테마파크 부대시설로 유라시아횡단철도가 통과하는 나라의 전통음식이나 축제음식의 시식과 판매가 가능한 소규모 부스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재산권 보호 철저**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체계적인 복합개발로 추진하되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운암뜰 도시개발 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 철저** 운암뜰 도시개발은 개발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고 일단 방향이 결정되면 중간에 변경되지 않도록 최초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각종 대규모사업 설계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 여러가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고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사업추진에 있어 가급적 설계변경 없이 계획한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복합문화체육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검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시 건물외벽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도 로 과 (30건)	■ **제목 : 물향기 지하보도 원점에서 합리적 대안 마련** 물향기 지하보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확장 등의 방법이 모두 문제가 있으니,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리치빌 빌라 진입도로 정비** 금오터널 공사현장 인근 리치빌 빌라 진입도로가 경사가 매우 심해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니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 정비를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금오터널 공사 관련 민원 적극 해결** 금오터널 공사로 인한 리치빌 주민들의 피해와 이와 관련한 민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최대한 해결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람.	이성혁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서부우회도로 공사 관련 보행자 도로 우선 통행조치** 가장산업단지 맞은편 서부우회도로 공사에 따른 보행자 통행로 폐쇄로 인해 우회하려면 적지 않은 거리를 돌아가야 하니, 보행로라도 먼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화성초등학교 옆 육교 정비** 화성초등학교와 수청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육교에 조명고장, 바닥 보수가 필요하니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필봉터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철저** 필봉터널 공사 현장 터널사면이 방치되어 우기시 토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고 LH와 협의 및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 특화거리 노점 위치 변경 등**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 특화거리는 노점을 광장 안쪽 가장자리(무대좌측)로 옮기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라며,「오산시 노점판매대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노점단속의 객관적 기준 마련 및 노점 합법화 대안 마련** 오산역환승센터 노점 특화거리 조성은 다른 지역의 노점상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특혜라고도 할 수 있음. 노점상 단속을 생계형·비생계형으로 구분하지 말고 단속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노점상 거리(지역) 지정을 통해 합법화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2018년~2019년 노점상 단속 실적 세부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 특화거리 관리** 오산역환승센터 노점상 특화거리 조성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대원로 15번길 인근 상가의 도로점용 및 노점 등 조치** 오색시장 안전선 확보는 비교적 정착이 되었으나, 길건너 남쪽 상권 상가의 노점과 무단도로점용 또한 문제가 되니 오색시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인도에 유색 보도블럭 및 충전재 사용** 보도블럭의 투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수블럭과 규사를 충전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햇빛 반사로 보행자 눈부심을 유발하니 유색 자재를 사용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자전거도로 및 인도에 화분 등 설치 지양**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보행을 방해하는 화분과 화단(띠녹지)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가장동 옹벽 재가설공사 조속 추진** 가장동 옹벽 재가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되, 하자가 없도록 시공과 감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한전주지중화 사업 추진 철저** 2019년도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2020년도 사업대상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양산동 대림e편한세상 인근 보도 설치** 양산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병점 방향 보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남촌대교 경관개선사업 추진** 남촌대교 경관개선사업은 예산 요구시 용역비에 안전진단까지 포함된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판단됨. 2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신속집행 추진 철저** 오산시 신속집행 실적이 경기도 최하위인 바, 신속집행 예산액 20억원 이상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과 신속집행에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철저** 도로과 예산집행율이 매우 저조함. 먼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바라며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은계동 청운빌라 앞 삼거리 도로 확장** 은계동 청운빌라 앞 삼거리에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위험하니 시유지인 법면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주민의견 수렴과 설득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운암고가 방음벽 정비**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동부대로 소음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운암고가에 설치된 방음벽의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고 정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 추진** 서랑저수지 옆 도로가 안전하지 않고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022년 완공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 추진** 벌음동과 화성시 지역의 진입차량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니,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및 이행 철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정비 철저** 자전거주차장 관리가 안되고 있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세교터널과 금암터널 안전점검 C등급에 따른 조치 철저** 세교터널과 금암터널이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았음. 세교터널은 하자보수기간이 2021년까지 이므로 지적사항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요구하고, 금암터널은 LH와 협의해서 보완조치하기 바라며,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국도1호선 횡단박스 높이와 보도의 폭 확보** 국도1호선 횡단박스 설치에 있어 행사차량 통행과 유모차·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박스 높이와 보도 폭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출구방향 재검토**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는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장지리 또는 엘지전자 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필봉터널 4차로 확장 LH와 협의 추진** 필봉터널안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하는 필요성과 대안을 마련해서 LH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휠체어, 유모차 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일제정비** 휠체어, 유모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보행자도로를 일제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조치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현황도로 조사 및 지적선 정리 등 조치** 관내 현황도로를 일제조사하고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측량과 사유지 및 시유지에 대한 지적선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교 통 과 (33건)	■ **제목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오산시청 사거리, 스타벅스앞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에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경찰서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오산시청앞 사거리(대신증권앞)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 편의 도모 및 차량의 교통혼잡 감소 유도	한은경 의원
〃	■ **제목 : 횡단보도 안전 확보** 고원식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 및 초고휘 도료 재도색 등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인도에 지주형 교통표지판 등 실태조사 및 정비** 인도에 지주형 교통표지판 등으로 보행 불편은 물론 자전거 통행이 불가함. 실태를 조사하고 통합지주 설치 또는 이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정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보행자 신호등 버튼식 교통시스템 설치** 아파트 단지 앞이나 교통 혼잡하지 않은 곳의 보행자 파란색 신호등을 수동식으로 작동가능 하도록 버튼식 교통시스템 설치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세교1단지 앞 미사용 버스정류장 이전** 세교1단지 잔다리마을 앞 사용하지 않고 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이 필요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유리박스형 버스정류장 및 태양광발전시설 검토** 유리박스형 버스정류장과 정류장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양**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빛이 반사되어 인근 아파트단지 등에 피해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지양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 실시 및 차량상태 점검 조치** 시내버스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승차거부 등이 빈번하니 정기적인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버스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 정비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산교통 지도·점검 철저** 오산교통 시내버스 난폭운전, 신호위반, 승차거부 등의 원인이 배차간격과 시간의 문제라고 판단됨.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점검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버스 준공영제 추진 관련 완전공영제 비교 검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하여 준공영제와 완전공영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버스준공영제 효율성 분석 및 필요성 재검토**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운전기사 주52시간 근무로 운전기사 50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예산이 24억원이 소요됨. 비용 대비 효율성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버스준공영제가 꼭 필요한지 재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부산동, 원동 지역 광역버스 운행** 센트럴푸르지오, 시티자이, 대원아파트, 한양수자인아파트 등 부산동과 원동 지역에 광역버스 운행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저상버스 운행 확대** 휠체어, 유모차, 노약자 이용 편의 도모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저상버스를 추가 확보하고 운행을 확대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개구리식 주차구역 확대 설치** 수청동에 설치한 개구리식 주차구역은 효율성이 있으니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하고 확대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신설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공영주차장은 지하화가 바람직하니, 향후 신설하는 공영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기간동안 주변 노상주차장 유료화**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기간동안 주변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영주차장 신·증축 시 시설관리공단과 소통 철저** 신·증축하는 공영주차장은 운영 및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예상됨.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운영·관리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니 공영주차장 신·증축 시 최초 설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아파트주차장 공유 방안 검토**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아파트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주차장을 낮 시간 동안 시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검토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LH부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 우미아파트 옆 성당 인근 LH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철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유지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강제 수용까지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대역 환승주차장 입구 확장 방안 강구** LH에서 기부채납 받은 오산대역 환승주차장은 주차장 입구가 매우 좁아 진·출입이 어려우니 확장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버스터미널 출구 이정표에 목적지와 거리 등 표시** 오산역환승센터 버스터미널 출구에 설치된 방향표시 이정표에 목적지와 경유지를 거리까지 함께 표시하기 바람(출구별로 목적지에 '시청'은 모두 다 표시하고, 오색시장 경유가능 표기도 필요시 할 것).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에서 구)국도까지 보행자 이동 동선 개선** 오산역환승센터에서 나와서 구)국도까지 보행자 이동 동선이 연결되도록 횡단보도 위치 이동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환경개선사업 재검토** 오산역환승센터 외벽 판넬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 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니 재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신속집행 추진 철저** 오산시 신속집행 실적이 경기도 최하위인 바, 신속집행 예산액 20억원 이상 교통과 소관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과 신속집행에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 기능 수행 철저** 대중교통 심의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관련 업무 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니,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분당선 노선 연장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및 건의** 분당선 노선 연장은 사업추진이 부진함.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및 건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역-동탄 트램 연결 추진 철저 등** 오산역-동탄 트램 연결이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추진하고, 부산동 트램 기지창 설치 진행상황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삼익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설치** 수청동 삼익아파트 입구에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우미아파트 입구, 시립미술관 맞은편 상점가 입구 횡단보도 설치** 우미아파트 입구, 시립미술관 맞은편 상점가 입구에 횡단보도 설치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물향기지하차도 방향 좌회전 차로 직·좌차로로 변경** 퇴근시간대 세교9단지 물향기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이 많아 신호대기 시간이 오래 걸림.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이므로 좌회전 차로를 직진·좌회전 차로로 변경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산대역 명칭 사용에 따른 협약사항 미이행 관련** 오산대역 명칭 사용에 따른 협약사항 미이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서 학교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바라며,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건 축 과 (4건)	■ **제목 : 내삼미동 장례식장 관련 주민요구사항 사업자와 적극 협의** 내삼미동 문화 및 집회시설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불허가 관련 소송에서 오산시가 패하였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자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협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에어라이트 단속 철저** 시가지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야간단속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2018~2019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현황 및 계약서류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IC 사거리 교통섬에 설치한 지주형 행정게시대 철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오산IC 사거리 교통섬에 설치한 지주형 행정게시대 철거 또는 이전을 시행하지 않았으니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주 택 과 (8건)	■ **제목 : 외삼미동 포스코아파트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 외삼미동 포스코아파트 하자보수가 입주민의 입장에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중재하고,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 준공처리 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청호동 자이아파트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공동주택 전수조사 실시** 청호동 자이아파트 공동주택 경기도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사례 예방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을 전수조사와 지도하기 바라며,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조사라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수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원도급사에 시정명령한 12가지에 대해 현재 조치된 사항이 없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사항이 없음. 오산시 안전자문단와 공사 감리단에 안전점검을 요청하고, 원도급사의 시정 조치와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철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과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철저**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이며, 오산장터와 마찬가지로 자문비로 지급한 700만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자세한 자문내용과 자문비 지급 근거를 제출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주 택 과	■ **제목 : 건축 심의 시 현장 확인 철저** 구)오산종합시장 재건축 주상복합 신축에 따른 인접대지 통행로 폐쇄 및 안전 위협 등의 민원 발생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환경과에서 적극 대응은 했지만, 최초 건축심의에서 판단을 잘못한 결과라고 판단됨. 건축 심의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취소 소송 승소 홍보 등**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취소 소송에서 오산시가 승소하였음.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시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경일신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취소 청구소송에서 오산시의 패소는 사업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됨. 사업시행 변경계획 인가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보 건 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보건행정과 (6건)	■ **제목 :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 관련**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당시 의료인(전문의) 부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허가취소)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잘 마무리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 등 신중하게 처리**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하여 전결 규정에 의해 보건소장이 허가를 했지만 최종 책임은 기관장에게도 있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허가 업무는 사후 파급효과까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평안한사랑병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철저**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와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등을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했으나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중복조사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으니,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의혹과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의 사안 전반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구도심 등 해충 방역 철저** 구도심을 비롯한 취약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해충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방역활동을 의원님들이 함께하도록 조치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보건행정과	■ **제목 : 잠복결핵 환자 검사 및 치료 조치**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니 보육시설과 학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환자를 검사하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기 등 기증 문화 활성화 추진 철저**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4월에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으니, 이에 따른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건강증진과 (6건)	■ **제목 : 찾아가는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어르신·취약계층 및 의료시설 부족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와 교육 및 홍보 등의 서비스를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각 동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각 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장소 협소 등의 문제가 있다면 소규모로 센터의 기능 수행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와 오산대역에 흡연부스 설치** 오산역환승센터와 오산대역 주변에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법에 의한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안에 별도로 심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오산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법령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및 위원 정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심사 내용이 부실하고 변호사인 심사위원은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시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중요사항, 정신질환자 입퇴원과 인권보장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위촉위원을 정비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마약환자 관련** 마약환자 실태조사와 타기관과의 연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또한 오산은 외국인들이 많으니 마약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환경사업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9건)	■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조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를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상가연합회 및 상인회 의견수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상가연합회 및 상인회와 간담회 등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 가능한 사항은 적극 해결해 주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증원에 비해 단속 효과는 부족해 보임.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재활용의류수거함 관리 철저 등** 재활용의류수거함에 의류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오산시재활용의류협회에 협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사현장 소음, 먼지 등 민원 적극 해결** 공사현장 소음과 먼지 등에 대한 민원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반복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소음·악취민원 처리를 위한 주말 및 휴일 근무자 배치** 공사현장 등의 소음민원과 악취발생 민원에 있어 주말 및 휴일에도 현장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및 근무자 배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음식물쓰레기 외부위탁비용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비용보다 적지만 비용보다 처리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니 음식물자원화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수리,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신광빌라 민원에 대한 대안 마련** 성호대로 93번길 신광빌라 쓰레기 거점배출에 따른 주민 갈등과 클린하우스 설치 민원에 대하여 내집앞 배출과 문전수거가 가능하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신광빌라 클린하우스 성호초등학교 울타리쪽에 설치 검토** 신광빌라 클린하우스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성호초등학교 울타리쪽에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학교 측과 협조해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수 도 과 (1건)	■ **제목 :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 확대** 노후관 교체 예산을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체공사를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하 수 과 (1건)	■ **제목 : 밀머리길, 성산초등학교 인근 우·오수관 분리 조속 추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원동 밀머리길과 남촌동 성산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우·오수관 분리가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하천공원과 (15건)	■ **제목 : 사유지 등산로 사용에 대한 대안 마련** 등산로 사유지 사용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소유주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니, 재정여건상 매입이 불가하다면 재산세 감면이나 숲길 지정고시 후 협의매수 등의 대안을 강구하고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활동 철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독산성과 같은 문화유산 주변은 좋은 예방약재를 사용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원일몰제 관련법령 개정 건의** 미집행 공원시설 지정을 해제하는 공원일몰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 대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아래뜰공원 88올림픽 기념조형물 안내문 설치** 구)오산호텔에서 아래뜰공원에 이전 설치한 88올림픽 기념조형물은 설치이유와 이전배경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아래뜰공원 명칭 변경** 월남참전기념탑, 6·25참전기념탑이 위치한 아래뜰공원은 명칭이 부적절하니,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의미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UN공원 시설물 점검 및 정비** UN공원 시설물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참전국 국기, 광장 무대바닥, 벤치, 데크 계단 등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정비와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UN공원 활용도 제고** UN공원 광장 무대에 공연장 시설을 구축하고 소규모 공연 실시, UN초전기념관 방문객이 UN공원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의 UN공원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꿈놀이터 대상지 선정 시 지역 형평성 고려** 꿈놀이터 조성 대상지 선정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하천공원과	■ **제목 : 제18회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준비 철저** 전국단위 행사인 제18회 한국 강의 날 오산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사로 인해 오산천 잔디와 산책로 등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천 위험 수목 제거 및 관리 철저** 오산천에 식재된 교목, 하천내 버드나무 등은 오산천 범람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천 자연보존 및 수질관리 철저** 오산천에서 수달 흔적 발견은 고무적인 일이며 수달서식지 복원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수질을 관리하는데 더욱 신경을 쓰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천 낚시행위 단속 및 유입지천의 수질개선** 오산천 수질오염의 원인중 하나인 낚시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15개 지천의 수질이 개선되어야 오산천 수질이 개선되니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천 느티나무 식재 및 동물놀이터 조성** 성남시 탄천을 벤치마킹하고 오산천에 산책로 느티나무 식재, 동물놀이터 조성을 검토하고 추진하되,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인도에 화분, 띠녹지 등 설치 지양** 시청앞 인도에 띠녹지 설치는 가로환경 개선의 효과는 있겠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있어 보행방해, 안전위험 등의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인도에 화분이나 띠녹지 설치를 지양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남촌오거리~가수동 구간 느티나무 가로수 이식** 세교2지구 사업지구내 남촌오거리~가수동 구간 느티나무 가로수를 이식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LH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중앙도서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중앙도서관 (11건)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악기 기증자 인센티브 부여 검토** 소리울도서관 악기 기증자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도서관에 랩(Lab)실 설치 검토** 각 도서관에 외국어 미디어 시청을 위한 랩(Lab)실 설치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중앙도서관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수유실 앞 바닥 정비** 소리울도서관 수유실 앞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니 확인 후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방화셔터 공간 안전 확보 조치** 소리울도서관 각층 방화셔터 공간 안쪽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분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산책로 조성시 발생한 사유재산 훼손 복구** 소리울도서관 외곽 산책로 조성 과정에서 화홍운수 휀스와 나무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악기대여료 및 대여기간 보완 추진** 금번 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시 지적된 악기대여료 및 대여기간 등의 문제는 개관 후 실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구시가지 및 오래된 공동주택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주차장 입구 조형물 관련** 소리울도서관 주차장 입구 벽면에 설치하는 책모양의 조형물은 재질이 드라이비트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불연재 도포 또는 재질변경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재난 및 화재 대응훈련** 소리울도서관 개관에 즈음하여 재난 및 화재 대응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소리울도서관 중앙홀 구조적 보완 검토** 소리울도서관 층별 중앙이 오픈되어 복도와 휴게공간의 소리가 위로 올라가 소음이 될 수 있고, 위층에서 아래로 물건 등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소리울아트리움 장애인석 위치 조정 및 경사로 설치** 소리울도서관 소리울아트리움에 장애인석을 관람석 뒷열로 옮기고, 측면 외부 계단을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한은경 의원

◈ 차량등록사업소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동행정 복지센터 (1건)	■ **제목 : 지역상황보고 철저 및 의원과 소통 강화** 각 동의 각종 행사, 사건·사고, 기타 공유가 필요한 내용 등 지역상황보고를 철저히 하고,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시설관리 공 단 (9건)	■ **제목 : 스포츠센터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스포츠센터 헬스장에 교체가 필요한 노후된 운동기구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운암공영주차장 1일권 사용방법 개선** 운암공영주차장 증축공사로 인한 월정기권 사용 불가와 관련하여 1일권(12시간) 사용 차량이 출차 후 재입차 할 경우 1일권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12시간 범위 안에서 출·입차를 자유롭게 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교통과 협의).	한은경 의원
〃	■ **제목 : 노상주차장 주차권 사전 발급기기(무인시스템) 도입** 프랑스의 노상에 설치된 주차권 사전 발급기기(무인시스템) 벤치마킹하여 도입추진(교통과 협의). – 운전자의 노상주차요금 정산 시 주차요금 담당인력 찾는 시간 소비 등 불만 일부 해소 가능	한은경 의원
〃	■ **제목 : 이사장 취임에 따른 미션 및 비전과 경영전략 변화** 2019.2.15. 공단 이사장이 취임했으니 신임 이사장의 경영마인드를 반영해서 공단의 미션 및 비전과 경영전략에 변화를 주어 새로이 마련하고, 공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등 결원 충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공석과 정원 대비 직원 13명 결원으로 업무에 공백이 우려되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누수발생 점검 및 보수** 종합운동장 노후시설 누수발생에 따른 점검을 일부만 실시하지 말고 37개실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시설관리 공 단	■ **제목 :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 철저** 스포츠센터 수영장 시계를 고장상태로 6개월 동안 방치하였다가 교체하였음. 시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경상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시설관리공단 경상수지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경상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 철저**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오산문화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 산 문화재단 (8건)	■ **제목 : 도서관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공연·전시 추진** 오산시민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여가생활을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길 오픈** 문화재단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길 오픈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직원 채용 관련**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직원채용 공고문을 공고기간 이후에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전체 채용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라며, 학력 및 경력 등의 자격조건을 비롯한 채용 전반에 있어 관계법령과 자체인사규정 등에 부합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문화재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관련** 지난 3월 무기계약직 3명 일반 7급 전환한 건 관련하여, 면직처리 불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아울러 퇴사, 입사 일자 등 재검토 필요함. 위 건 3명의 보수(급여)의 하향에 따른 불만족 사항 및 고용부에 질의를 통한 보수하향 근로계약 여부 위법사항 재확인 필요.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임원 임기와 관련한 경과조치 부칙으로 제정** 인사규정 개정 시 전임 상임이사와 신규 상임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정의가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경과조치로 정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오 산 문화재단	■ **제목 : 오산장터 예술촌 사업 및 입주작가 관련** 오산장터 예술촌 입주작가 계약을 연단위로 추진하고, 입주 미선정 작가에게 주소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 바라며, 국도비 지원사업을 지원함은 공정성 훼손 여지 및 특혜성으로 보일 소지가 있으니 지양하기 바람. 본 건과 관련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승격 30주년 기념 오산중·고 출신 작가 기획전시회 추진** 시승격 30주년 기념 오산중·고 출신 작가 “1948전” 기획 전시회를 추진하기 바라며, 미래 오산의 자랑과 자산이 될 수 있는 의미를 담는 전시회가 되도록 세심함을 기울여 주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미술품 구입 관련** 예산을 이월하여 금년에 계획된 미술품 구입은 가치 있는 작품을 구입하도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선택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오산교육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 산 교육재단 (5건)	■ **제목 : 오산의 미래교육 비전 수립** 혁신교육지구 선정 후 10여년이 지났음. 지금까지의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오산시 미래교육 10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 프랑스 참여 조치** 미래교육오산국제포럼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평생교육, 공교육, 보육분야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니 차기에는 프랑스를 참여국에 포함하여 선정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교육재단 인력 충원 검토** 오산교육재단 업무량에 비해 직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인력충원이 시급하니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교육재단 이전 검토** 오산교육재단이 상가건물에 있으나 위치가 적절하기 않으니 신축하는 남촌동복합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성적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성적우수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에 있어 고등학교 입학성적(중학교성적)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학년별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특정학교에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제3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0. 6. 17. ~ 6. 26.(10일간)

3. 감사대상부서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 5국 :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 2관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1직속기관 : 보건소
○ 3사업소 :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 6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혁신교육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장 : 김영희 의원
○ 감사위원 :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용수, 행정7급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차혜진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부 서	비 고
6.17.(수) 10:00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민원여권과)	1국(5과)
6.18.(목) 10:00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1국(5과) 1재단
6.19.(금) 10:00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농식품위생과), **오산문화재단**	1국(5과) 1재단
6.22.(월) 10:00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국(5과) 1직속기관(2과)
6.23.(화) 10:00	**시민안전국**(안전정책과~정보통신과), **차량등록사업소**	1국(4과) 1사업소
6.24.(수) 10:00	**환경사업소**(환경과~공원녹지과), **중앙도서관**	2사업소(7과)
6.25.(목) 10:00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중앙동~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3관 6동 1공단
6.26.(금) 10:0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6.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처리요구사항

◈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홍보담당관 (10건)	■ **제목 : 언론 보도자료 언론사별 시차를 두고 배포** 시정에 대한 언론 홍보자료를 일시에 모든 언론사에 배포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지속적인 노출을 위해 언론사별로 시차를 두고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언론 보도 노력** 허위·왜곡된 보도에 대한 정정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실에 대해 문제점에 대한 언급 없이 호도해서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언론 보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언론 및 홍보담당관 본래 목적과 역할에 충실**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자연생태체험관 관련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정에 대한 치적 홍보 뿐만 아니라 건전한 비판도 언론의 역할임. 언론이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고 홍보담당관 또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홍보예산 적기 집행** 홍보예산 집행이 연말, 연초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언론사에 나누어 주기식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됨. 홍보가 필요할 때 적기에 실질적인 홍보와 그에 따른 홍보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 철저**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조례 정비를 추진하되 개정안을 사전에 협의하기 바라며, 별도로 시민기자단 운영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객관적인 행정홍보비 집행기준 마련**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행정홍보비 집행기준 마련과 관련해 조치내용을 완료로 작성했지만,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을 보면 언론사별 구독수량에 편차가 심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등.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객관적이고 명확한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을 금년 안에 마련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SNS민원 처리 철저** 「오산시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SNS민원은 행정안전부 SNS 소통 민원 창구 운영 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SNS민원에 대한 처리가 없으니 SNS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홍보담당관	■ **제목 : 기업체, 민간단체 등의 오산시 상징물 사용 권장** 기업체, 민간단체 등의 오산시 상징물 사용은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오산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으니 민간의 오산시 상징물 사용 권장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활동 가능하고 인지도 있는 홍보대사 위촉** 오산시 홍보대사는 실제 활동 가능하면서 인지도 있는 관내·외 인사 중 적임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위촉을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야립간판을 이용한 오산시 문화·관광자원 홍보**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시 경계 전광판을 활용해 독산성 등 오산시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감사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감사담당관 (5건)	■ **제목 :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위한 대책 마련** 민간위탁사무 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2019년도에 71개 민간위탁사무 중 11개 사무만 감사를 실시했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면 민간위탁사무 감사 전담조직 신설 등의 대책을 관련 부서의 협조를 구해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수사기관의 범죄·비위사실 통보에 대해 조치 철저** 수사기관의 범죄·비위사실 통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처리기간 정해져 있으나, 2018년도에 수사기관의 통보일로부터 처분까지 1년6개월 이상 소요된 건이 다수 있음.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임.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 집행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관련** 2020년도 보조금 집행실적 특정감사 지적사항 중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된 어린이집 안전공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보조금으로 보전한 것에 대하여 시 전체 부서에 사례전파를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관련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2013.11.18. 시행)」에 따른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민감사관 위촉 조례에 부합하도록 운영**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사관 중 전문가는 7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8명을 위촉하고 있으니 조례에 부합하도록 시민감사관을 위촉 및 운영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기획예산 담 당 관 (7건)	■ **제목 : 빅데이터 일반인 활용 방안 강구** 빅데이터 구축 시 다양한 관계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폭넓게 확보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축한 자료를 단순 공개가 아닌 관내 기업체나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별, 상권별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회 현황 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위원회 현황에 소송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와 같이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였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포함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관련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직무발명보상 심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운용 철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시행하였음. 조례에 따른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 관련** 오산시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정수와 민간 전문가에 대한 상세 구분, 오산시 직제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보조금 심의 시 지원 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반드시 제척 조치하고, 보조금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철저** 지방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실적이 미흡하니,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계속비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 계속비 이월이 약 1,300억원으로 지나치게 많음. 건전한 재정 운용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계속비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25건)	■ **제목 : 동 주민자치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동 주민자치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일부 동만 채용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6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통장 수당 지급 적정성 확인** 통장 수당 지급일 현재 통장 현원과 수당지급 인원의 차이, 재위촉(연임) 통장의 수당 지급 시 동장의 위촉 지연에 따른 일할계산 적용 사례에 대하여 확인 후 사유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라며, 6개동 통장 수당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전보인사 시 필수보직기간 준수 노력** 잦은 전보 인사로 인하여 업무파악을 위한 행정력 낭비,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보인사 시 필수보직기간(2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근무성적평정 부서장 평가결과 사전 공개 검토** 근무성적평정 시 부서장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사전에 공개 및 소통함으로써 본인의 업무 능력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발의 기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재난·재해 자원봉사자 간식(비) 지급 검토** 코로나바이러스19 등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간식(비)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재난기본소득 기준일 후 전입자 지급 방안 마련**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인 2020.3.23. 후 전·출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지급 및 중복지급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지급 후 필요시 다른 시·도와 중복지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수조치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공무직노조 임금교섭 시기 조정**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교섭에 있어 당해연도 임금을 당해연도 중에 결정하지 말고 전년도에 교섭을 통해 결정하도록 임금교섭 시기를 조정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자매(우호)도시 실효성 검토 및 조치**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활동 및 실익 등 교류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과감하게 결연해제 또는 적극적인 교류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선임 관련**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공석에 따른 향후 새로운 이사장 임명은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중립적이며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후보자 선정에 신경을 써주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및 관리 철저** 지방보조금 지원 후 사업 추진 자체를 못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사례를 비롯해 보조단체의 목적 및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위원 실태 파악 및 정비** 오산시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된 위원은 자칫 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 경우 거수기의 역할에 불과할 수 있으니 여러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성과 전문성 등을 평가해서 정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 관련** 청소사무를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환경미화원 정년을 보장하되 더 이상 채용은 않고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채용한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임. 전·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사무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을 의도적으로 12월31일로 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일제히 만료된 후 재위탁 등을 위한 업무량의 부담이 발생할 것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사무 감사 및 성과평가 주기 조정 관련**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매년 감사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업무량 부담 등으로 감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상 근거 마련** 사무의 위탁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구분됨. 현행 오산시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으니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오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위원회 회의록 서식 통일**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정확한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서식을 통일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현충일 가로기(태극기) 게양 검토** 현충일에 가로기(태극기) 게양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자치분권 관련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자치분권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음.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과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철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주민자치센터 프리랜서 강사 및 운영실장 지원**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중단에 따라 프리랜서 강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방범단체 통합 지원 방안 강구** 각종 방범단체를 독립적으로 인정해 주되 새마을단체의 경우와 같이 방범단체 연합회를 결성하고, 각 단체의 지원을 연합대를 통해 형평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공공용지 확보** 세교2지구에 경찰관서(지구대), 소방파출소 등의 공공용지 확보를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대원동 분동 조속히 추진** 대원동의 인구 증가, 동사무소 민원인 및 업무량 증가, 동사무소 주차장 부족 등으로 대원동 분동이 시급하니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시청사 출입자 관리 지속 추진**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되었지만 시청사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 등의 관리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조직개편시 스마트시티관제센터 부서승격 검토**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서 한 부서 이상의 인력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과 또는 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직개편에 반영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세 정 과 (2건)	■ **제목 : 지방세 부과 후 미수액 최소화 노력** 2019년도 지방세 부과 후 미수액이 16억원임. 지방세 부과 후 미수액 발생으로 체납이 증가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로 미수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재산세 감면 홍보 및 추진 철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하여 임대료 인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홍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징 수 과 (2건)	■ **제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각종 사용료수입 시금고 입금 방법 개선** 스포츠센터 등에서 징수한 사용료수입을 현금으로 시금고에 가지고 와서 직접 입금하고 있으나, 분실 등의 위험과 부담이 있으니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회 계 과 (14건)	■ **제목 : 따숨마스크 구매 계약현황 제출** 따숨마스크 구매 계약현황을 별도 제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수의계약 건 관내업체 우선 계약** 수의계약 시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내업체와 우선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자연생태체험관 공사현장 안전조치 철저** 자연생태체험관 공사현장 옆으로 시민과 차량이 계속해서 통행하고 있으니 크레인 회전반경 조정, 진입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청 내 공사로 인한 소음 관리 대책 추진** 시청 내 자연생태체험관 및 구내식당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각하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평화의소녀상 관리** 시청에 설치된 평화의소녀상 관리를 설치 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평화의소녀상을 청사 내 공공조형물로 시에서 관리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정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남촌동복합청사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 매입 추진** 남촌동복합청사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 매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가가 상승할 것을 고려해서 조속히 매입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초평동행정복지센터 금년 완공 추진** 초평동행정복지센터는 금년 안에 완공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용차량(중장비) 증가 사유 등 보고** 환경사업소 공용차량(중장비) 증가 사유와 중장비 운행 기사 현황을 별도 제출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사로 인한 평화의소녀상 훼손 주의** 자연생태체험관 공사로 인해 평화의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 **제목 : 자연생태체험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추진** 자연생태체험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니 향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1. 오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8,19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음. 2.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오산시와 ㈜버드파크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버드파크에 유리하게 체결되었음. 3.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을 위한 주차장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시청 주차면수는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건축물 기부채납 이전에는 소유주가 ㈜버드파크이므로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해야 함. 임대는 불가하고 건축주 소유의 토지이어야 함. 4. 기부채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 후 계획 변경(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토지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5. 오산시(갑), ㈜우리은행(을), ㈜오산버드파크(병) 간의 금융협약서 제3조제2항에 “을”이 본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병”에게 대출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갑”의 책임하에 오산버드파크 시설의 감정평가액 한도 내에서 대출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변제 후 남은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병”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 6. 기부채납 후 운영권을 주는 것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를 받을 수 없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웨딩의 전당 임시주차장 임대료 낭비 관련** 시청사 별관 건립계획에 따라 웨딩의 전당과 1년9개월간 임시주차장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19.4.15.~12.31.까지의 사용료를 일시 납부하고, 이후 별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 4천7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은 예측행정을 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오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010년 4월에 제정하고 2013년 4월에 폐지하였으나, 지방계약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어야 함. 또한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위원회이어야 함. 이에 따른 규칙 제정, 규칙 폐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및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 **제목 : 관내 건설업체 보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 보호 육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청 내 주차공간 확충** 시청 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자연생태체험관 공사로 인해 더욱 부족하게 되었음. 향후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시에는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미리 주차공간 확충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민원여권과 (6건)	■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수수료 카드납부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수수료 납부가 현금만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야간민원실 운영 검토** 민원실 직원의 중식시간 보장을 위해 중식시간에 민원실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직장인들을 위해 주1회 야간민원실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원실 민원인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 민원실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대앞 민원인 자리에 칸막이 설치와 대기하는 다른 민원인과의 거리 확보를 위해 바닥에 대기선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원서비스 평가등급 상향 노력** 민원서비스 평가등급이 “다”급이고 평가항목 중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가 등급이 “라”급으로 특히 저조함.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친절도 향상 노력** 친절도 평가 결과에 대한 부서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교육 실시 등으로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및 확대 운영** 중식시간 민원실 업무중단에 따라 각 동마다 다중집합장소 등 수요 조사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 및 확대 운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복지교육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14건)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철저** 코로나바이러스19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적생활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지원 철저**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관내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저소득층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2019년도 결산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시간과 성적 기준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자활근로사업 기준 완화 제도개선 건의** 2019년도 결산에서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음. 보건복지부의 사업기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사업실적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한부모가족 지원 자격 홍보 및 안내 철저** 성년 자녀가 포함된 한부모가족의 지원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에게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및 감사 철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감사부서와 협조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국가보훈자 예우 및 지원 현실화 등** 1.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훈대상자 현황이 일관되지 않고 통계자료마다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현황과 사유를 별도 보고하기 바람. 2. 보훈수당 연령별 지급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고, 현행 30만원인 사망위로금을 현실화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되,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과 협의하기 바람. 3. 보훈단체에 차량을 1대 지원했으나 기사가 없어 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무·시설 점검 지적사항 관리 철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무·시설 점검 결과 후원금 관리 미흡,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 참여율 제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에 참여자가 8명으로 사업 실적이 부진하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라며, 청년자산형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근속율 제고 방안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직원의 근속율 지표에 점수가 낮게 평가되었음. 직원의 잦은 이직은 업무의 전문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직원 복지와 처우개선 등 근속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유료화 검토결과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유료화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진행상황이 없음. 빠른 시일 안에 가·부를 검토하고 결과 및 대안을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 지속 추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거주형태가 열악한 복지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7건을 발굴하고 지원하였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그룹홈 퇴소 청소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연계 추진** 그룹홈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청소년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지원을 받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을 위한 쉼터 조성** 본 의원이 발의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을 위한 독립적공간으로 쉼터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노 인 장애인과 (24건)	■ **제목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신축 사업 철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신축 부지 및 기존건물에 쓰레기와 기타 물품 등이 적치되어 있으니 정리하기 바라며, 사업기간이 8개월 지연된 바, 2021년 8월 이전에 완공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양산동 경로당 증축 조속 추진** 양산동 경로당 증축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착공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자연부락 경로당 시립경로당 전환 추진** 내삼미동 경로당 등 자연부락 경로당의 민원 해결과 시립경로당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공동주택 근처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장기적 방안 마련** 지곶동, 내삼미동 공동주택 근처 공동묘지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장기적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하되,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 필요성 검토 및 조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와 기초연금 이의신청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음. 해당 위원회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활성화 또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와 통폐합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노 인 장애인과	■ **제목 :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설치** 건립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설치하되, 오산시 수요를 충족하도록 시설규모를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하다고 판단됨. 현재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라며,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누읍동 컨테이너경로당 이전 신축 추진 철저** 누읍동 컨테이너경로당 이전 신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전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성심동원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후속조치 철저** 성심동원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직 신임 시설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시설장이 선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자격 등 확인 철저** 장애인 활동보조인력이 소속된 수행기관에 대하여 활동보조인력의 등록 및 자격증 유무 확인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회복지법인 승우재단 보조금 환수** 사회복지법인 승우재단 보조금 환수를 위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노인장애인과 직원 증원 필요성 요청** 노인장애인과 업무량 대비 직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업무의 조직 분리 또는 부서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분석해서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경로당 활성화 방안 마련**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로당 이용 회원수는 감소하고 있음. 경로당 지원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 등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실버케어센터 4층 활용방안 검토** 실버케어센터 4층 공실 활용은 물리치료실 설치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노노케어' 사업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는 전문성이 필요 없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확대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경로당 도우미 지원 시간 조정 검토** 경로당 도우미 운영은 시간단위로 지원하지 말고, 경로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지원하도록 운영 시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참여인원 확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사업장별 참여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지원활동 사물인터넷 연계**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지원활동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노인일자리 사업방향 다변화** 노인일자리사업을 공익적 단순 노무활동에서 고학력 전문직 출신이 전공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질 좋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폐지 줍는 노인 안전장비 지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은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을 위한 장비 위주로 지원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따른 대체 지원 추진**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중단에 따라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부진 분야 개선**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외부자원 개발, 운영법인 자부담 비율, 후원금 관리, 직원 근속율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통적으로 부진함.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이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증축과 확대 운영** 오산시는 장애아재활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관내 장애아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다니고 있음. 장애아재활치료센터 증축과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추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2019.7.19. 공포 및 시행되었으나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조속히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조치와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가족보육과 (15건)	■ **제목 : 어린이집 종사자 및 대체인력 성범죄경력 조회 철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해 대체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지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가족보육과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명칭을 변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 등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지적사항 사후 조치 철저**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시 지적된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사후 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다자녀 지원 기준 두자녀로 변경** 다자녀를 세자녀 이상으로 정의하고 셋째아부터 다자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를 두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1개소이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14개소로 부족한 실정이니 장애아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통합**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 지원에 관한 관계법령 제정 이후 현행 각각 존치하고 있는 두가지 조례를 통합해 제정하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상급 기관에 조속한 관련법 제정을 건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및 감사 철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감사부서와 협조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교육공간 마련**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없으니, 아이들 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한국어교육과정 활성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시설 점검 결과 한국어 교육과정 과다편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은 별도의 공간을 찾아 활용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니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현황 예산액 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현황에서 지원 예산 금액에 오류가 있으니 확인 후 별도 보고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장소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2021년 예정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당하니 설치 대상지 선정 시 공동주택은 배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관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이 오산에 없으니 관내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여성용 위생용품 공공시설 비치 확대 운영** 여성용 위생용품 공공시설 비치를 공중화장실 전체와 초중고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혼자 사는 여성 안심호루라기 지원** 작년 행감에서 요구한 혼자 사는 여성 범죄예방 시책 마련은 귀가길 안전대책과 함께 안심호루라기 지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시 강의실 최대한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교육공간(강의실)이 부족하니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시 강의실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아 동 청소년과 (11건)	■ **제목 : 오산여자단기 청소년쉼터 CCTV 설치 재검토** 오산여자단기 청소년쉼터 CCTV 설치 계획과 관련해 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온종일생태계 구축 관련** 초등학생 온종일돌봄 시설은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 우선해서 설치하여야 하며, 함께자람센터 민간위탁은 함께자람센터를 폐원어린이집 원장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정위탁하고 공동주택내 폐원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사례관리 철저** 아동학대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통장을 활용한 주민신고 강화, 아동학대 신고전화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홍보를 통한 예방사업과 사후 사례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조례에 의한 사무이행 철저의 건 중간보고 및 추진 철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조례에 의한 사무이행 철저의 건에 대하여 진행상황 중간보고와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및 감사 철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과 성과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감사부서와 협조해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개소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작년에 개소했는데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음. 개소 사실과 역할 등에 대하여 홍보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아동청소년과	■ **제목 : 버스회사 청소년증 학생할인 홍보 등 조치** 학생들이 버스 이용 시 학생할인을 위해 학생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증을 버스 기사님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음. 버스회사에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세교지구 추가 설치**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건물과 시설이 노후되었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과 장기적으로 세교지구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아동위원협의회 존치여부 검토 및 조치** 「오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지만 현재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음. 관련법규와 필요성을 검토해서 유사 기능 위원회와 통폐합하거나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청소년 자해흔적 지우기 프로젝트 확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자해흔적 지우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시행하고 있음. 좋은 시책이니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해 청소년 문신 지우기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청년희망통장 등의 정책사업 안내** 청소년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청년희망통장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평생교육과 (8건)	■ **제목 : AI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진행상황 보고 등** 세교2지구 AI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의회와 소통을 통해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학생 1인 1악기 통기타 강사 재능기부 자원 활용** 학생 1인 1악기 통기타 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되니, 전문강사 보다는 지역사회 내 재능기부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위원회 공무원인 위원의 비율 조정**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인 위원의 비율이 높아 심의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 검토하고 차기 위원 위촉 시 개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배달강좌 런앤런 무료 운영 관련** 배달강좌 런앤런과 관련해, 같은 평생교육 사업임에도 런앤런은 무료이고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는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형평성에 맞게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평생교육과	■ **제목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검토**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해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니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문화예술회관 설민석 강연 관련** 오산문화예술회관 설민석 강연 시 티켓 배부와 예산 지원이 문제가 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이는 시 행정의 실수라고 판단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교육재단 점검 결과 시정 및 후속조치 철저** 2018, 2019 오산교육재단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후속조치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장학관 설립 추진 및 보고 철저** 오산시 장학관 설립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고 재원은 애향장학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자리 정책과 (14건)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연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의 이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자립·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업(상품) 개발 및 컨설팅, 디자인 개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되,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시의 지원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안정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고용복지+센터 시설비 내역 보고** 고용복지+센터 예산 중 시설비 내역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경력단절여성 자동차정비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철저**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취약계층 여성의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에 대하여 오산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자동차정비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사업의 모니터링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수료 후 100% 취업될 수 있도록 취업까지 연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자리 정책과	■ **제목 : 유잡스 이전 검토** 유잡스 이용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침. 위치와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구 국도변 상가를 임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공동판매장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후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는데는 시의 책임도 있음.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취업상담사 확충을 위해 중·장년층을 취업상담사로 채용** 동 행정복지센터 취업상담사 배치가 2개동에 공석으로 있음. 취업상담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 중·장년층을 취업상담사로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 적극 추진** 상급기관 및 관련기관의 일자리 관련 공모사업이 많이 있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위원회 운영 철저** 노사민정협의회와 오산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계획 수립, 2019.12.20. 시행된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거나 추진이 미흡함.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 재검토** 「오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3조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공공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정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관련'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장애인 취업 지원시책 개발 추진은 추진 철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장애인 취업지원시책 개발 추진은 추진사항이 부진함에도 조치현황을 완료로 작성하였음. 지속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관내 저수지 관리인력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관내 저수지에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일자리정책과 주도하에 관련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자리 정책과	■ **제목 : 협동조합 관련사항 검토 보고** 국공립어린이집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상위법과의 관계 및 지원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별도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지역경제과 (17건)	■ **제목 : 지역화폐 사용안내 문자전송 시 잔여금액 표시** 지역화폐 사용안내 문자전송 시 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잔여금액까지 표시해 주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이외에 별도로 오산시 차원의 시비 지원이 없음. 시의 재정상황에 따른 것이겠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담당부서로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버스정류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빛 반사로 주변 아파트나 상가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 검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오색시장이나 인근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가장3일반산업단지 승인 조속 추진** 가장3일반산업단지가 결정이 되어야 금암동로타리~세마승마장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 산업단지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확장** 오색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안1. 현재 화장실을 소유주(상인회)와 협의해서 매입 후 복층으로 증축 안2.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일부에 화장실 신축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아케이트 연장 설치** 오색시장 아케이트 보수 시 조명의 조도(밝기)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기 바라며, 오산장터 방향으로 아케이트 연장 설치를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테니스장 앞 난전 이전** 복합문화체육센터 건축으로 테니스장앞 난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들을 오산장터로 유도해서 오산장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물류센터 방역지침 준수 점검 및 지도 철저**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관내 물류센터 방역지침 준수 등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지역경제과	■ **제목 : 지역화폐카드 종류 단일화** 현재 지역화폐카드 두종류를 발급하고 있으나, 일반카드는 발급을 중지하고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서 한가지로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권역별 상권 조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를 권역별로 구획하고 권역별 상권을 조직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상점 카드결재 거부 관련** 오색시장 내 카드결재 거부 또는 별도로 카드수수료를 요구하는 상점이 있다는 민원이 있으니, 상인교육과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 운영 철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 관련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2018.12.26.「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뷰티산업 자문위원회 미설치 등 관련 업무 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니 조례에 의한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 조치**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분야의 문제를 환경과와 협조해 사전에 예측하고 입주기업의 종류 제한, 오염 저감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환경 및 기능 개선**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센터 내 어린이집 이전과 어린이집 자리에 아이들 놀이방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부산동과 외삼미동 도시가스 보급 조속 추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요구한 부산동과 외삼미동 도시가스 보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문화예술과 (11건)	■ **제목 : 오산문화원 원사, 시립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과 시립 역사박물관 건립은 예산절감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건립 위치를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죽미령 평화공원 경관 등 보완사항 개장식 이전에 조치** 죽미령 평화공원의 양쪽 경계 울타리, 데크길 하부, 정상 폐타이어 등 경관과 시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개장식 이전에 완벽하게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예술과	■ **제목 :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 장소 재검토** 오산문화원 원사를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건립 장소를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죽미령 평화공원 개장기념 유료시설 무료운영 검토** 죽미령 평화공원 개장을 기념하고 홍보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유료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철저** 「오산시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오산시 유엔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유물 수집 심의위원회와 유물 평가 위원회, 기념관 및 평화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유물 수집과 평가 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니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 시사편찬 방법 개선** 금번 오산 시사편찬에 있어 위원회 운영과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 위원회 운영을 포함해 시사편찬 방법전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각종 문화예술행사 취소여부 조기 결정** 코로나바이러스19로 상반기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었고 하반기 개최도 불투명함. 하반기에 계획된 문화예술행사 취소 여부를 조기에 결청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창작예술촌 사업 추진 철저** 오산창작예술촌은 현재 규모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업무자체를 문화재단이 아닌 오산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창작예술촌 유휴공간 재생 공사 빠른 추진** 오산창작예술촌 유휴공간 재생 공사는 오산장터 광장과 커뮤니티센터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주요 공정을 먼저 시행해서 오산장터 광장 및 커뮤니티센터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 향토유적 발굴과 지정, 보호·관리 철저**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2019.3.11.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오산시에 금암거북놀이, 외미걸립농악보존회, 구)유엔초전비 등 향토유적 지정 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향토유적 지정 또한 전혀 없는 실정임. 향토유적 발굴과 지정,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예술과	■ **제목 : 시립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철저** 시립역사박물관과 오산문화원 원사 건립을 함께 추진하면 좋겠지만,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된다면 분리해서 각각 추진할 필요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박물관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체육관광과 (19건)	■ **제목 : 2023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준비 철저** 2023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신청과 관련해, 대회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등의 인프라 확충, 숙박시설,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하반기 각종 체육행사 취소여부 조기 결정** 코로나바이러스19로 상반기 각종 체육행사가 거의 취소되었고 하반기 개최도 불투명함. 하반기에 계획된 체육행사 취소 여부를 조기에 결정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국민체육센터 건립 조기 완공 노력** 오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하 검토** 오산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인근 시군에 비해 비싸니 적정 가격으로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직장운동부 롤러스케이트팀 활성화** 직장운동부 롤러스케이트팀이 2019년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갈등을 극복하고 활성화되도록 지도자, 선수 영입 등에 노력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회 분리, 관련 조례 개정 등 조직과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현재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체육지도자 학교 배치 이외에 추진사항이 없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정부의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관련**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하되,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건립 후 장애인용 저상버스를 셔틀버스로 운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드라마 '더킹' 세트장 활용방안 다각적 검토** 드라마 '더킹' 세트장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오산시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치 또는 교육과정 운영를 검토하고 평생교육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체육관광과	■ **제목 : 파크골프 경기장 조성**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중 파크골프는 오산에 경기장이 없어 동탄에서 연습과 경기를 하고 있으니, 시 관내에 파크골프 경기장 부지 조성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람석 아케이트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람석에 그늘이 없으니 금번 보수공사 시 설계변경으로 아케이트를 추가로 설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니 현재 미설치 되어 있으니 조례에 의한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장애인체육회장 민간인으로 선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오산시 체육회장은 민간인으로 선출하였였으나 장애인체육회장은 여전히 오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 장애인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록**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1종목 밖에 없음. 가맹단체 등록을 않으면 각종 대회 출전과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다른 종목에 대하여 가맹단체로 조속히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조직 구성** 장애인체육회 분리 독립하였으나 사무국 조직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음.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팀 신설 등의 조직을 갖추도록 시에서 지원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공체육시설 공공위탁 절차 적정성 확인**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임. 위탁을 위한 사전·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철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급방법 개선', '오산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재검토 추진'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 관리 철저** 종합운동장 입주사무실, 창고 등의 시설 보수와 청결유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애인 탁구단체 죽미체육관 사용 지원** 장애인 탁구단체 활동 및 연습을 위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니 죽미체육관 사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농식품 위생과 (8건)	■ **제목 : 서동저수지 낚시터 철거 추진** 서동저수지 낚시터 철거와 관련해, 철거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관정(대공) 폐공 시 지하수 오염 방지** 관내 설치된 관정(대공)을 폐공할 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길고양이 쉼터 설치 관련**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길고양이 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길고양이 쉼터로서 위치가 적절하지 않음. 캣맘모임 등의 고양이 관련단체와 연계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도심 내에 쉼터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맛집 블러그 운영현황 보고** 오산시 맛집 블러그 운영현황에 대해 별도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국도변꽃단지 사업 효율성과 필요성 재검토** 국도변꽃단지 사업은 시민들의 접근성도 좋지 않고 예산투입대비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사업비 중 인건비 비율이 75%로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사업의 효율성과 유지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재검토 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제목 : 광견병 예방접종 연중 실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현재 일년에 두차례(봄,가을) 접종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기간을 정하지 말고 연중 원하는 때 언제나 접종할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권역별 소규모 반려동물 공원 조성**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소규모 공원(놀이터)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시청 홈페이지 유기견 안내 및 분양 코너 운영** 시청 홈페이지에 유기견 안내 및 분양 코너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시정책과 (7건)	■ **제목 : 의회 접수 민원 처리 철저** 의회로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첩되는 민원에 대하여 검토 및 결과 보고를 철저히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성산초등학교 정문 위치 이전** 성산초등학교 정문이 도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계성제지 부지 개발에 따른 통학로 개설과 연계해서 정문 위치 이전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시정책과	■ **제목 : 연구용역비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 예산집행 내역 중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에 대해 예산현황과 집행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계성제지 부지 개발 적극 추진** 계성제지 부지 개발이 몇 년째 진행이 안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임.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사업자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개발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유기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재작성 제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 자료 중 '유기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제목과 내용, 처리결과와 사유를 각각 똑같이 작성해 민원의 내용을 알 수가 없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 사항은 재작성 해서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더본냉장 개발행위 허가 관련** 더본냉장 개발행위가 중단되어 방치된 상태로 건축허가 변경만 계속되고 있음. 개발행위기간 만료가 2021.12.31.까지 이므로 더 이상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벌음동 자원화시설 사업자 주민 고소 관련** 벌음동 자원화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오산시가 승소했지만, 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임.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에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중재 또는 지원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미래도시 개 발 과 (12건)	■ **제목 : 서부우회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관련** 서부우회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과 관련해 광역교통계획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LH에서 변경 신청 시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의회 보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과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내 획지 분리도로 확장**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내 획지 분리도로 개설은 필봉터널과 연결되는 도로의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노선은 도로폭 확장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비율 최소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 하여야함. 개발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을 적정 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미래도시 개 발 과	■ **제목 :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주 재산권 보호 노력**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후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에 있어 최대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미니어쳐 테마파크 등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조치** 미니어쳐 테마파크, 복합안전체험관 건축공사에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더본냉장과 운암뜰 개발에 따른 개설 도로 사전에 조정** 더본냉장 개발과 운암뜰 개발에 따라 기부채납 될 각각의 도로가 상호 상충되어 조정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시에서 대행개발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죽미령 평화공원 울타리 등 보완사항 조치** 죽미령 평화공원의 군부대 경계 울타리, 데크길 하부 철제 기둥, 정상 헬기장 페타이어 등 경관과 시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우수 오산천 방류시설 정비 등** 세교2지구 우수 오산천 방류를 위한 현재 시설은 배출관로가 작아 역류하는 문제가 있고, 신규 시설은 진흙이 차있으니 준설하고 조속히 신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수과 및 LH와 협의·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운영** 「오산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지만 현재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음. 관련법규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더본냉장 부지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 편입 검토**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었던 더본냉장 부지를 사업에서 제척한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해당 부지를 다시 사업에 포함하여 편입하는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인계인수 시 확인 점검 철저** 향후 세교2지구 LH로부터 인수·인계 시 도로시설,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한 후 인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와 신궐동 연결도로(대로1-5호선) 종단경사 조정** 세교2지구와 신궐동 연결도로(대로1-5호선)의 고저 차이로 인해 경사가 급격해 위험하니 종단경사 조정을 관련부서 및 LH와 협의하고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건 축 과 (7건)	■ **제목 :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율관리협정 등의 업무 추진이 미진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 자연생태체험관 건축허가 관련** 오산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과 관련해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조차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연생태체험관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건축허가 업무 추진 철저**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옆 오산동 258-14번지 건축허가 및 인접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확인 후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건축허가 시 현장 확인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주인없는 광고물 정비 추진** 주인없는 광고물(간판) 정비 실적이 없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더본냉장 건축허가 취소 검토** 더본냉장은 2018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건축허가 변경만 수차례 해오고 있으며 2020년 11월 건축기간이 만료됨. 건축허가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아가 건축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구)1번국도변 간판개선사업 추진** 남촌동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 향후 구)1번국도 중원사거리~오산대교 구간의 간판개선사업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도로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정비** 세교지구 도로 위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조립식판넬, 비닐하우스 등)을 확인하고 정비를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주 택 과 (11건)	■ **제목 : 원3구역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자료제출** 원3구역 지구단위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우기시 사업현장에 토사기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조합원아파트 불법행위 피해 관련** 내삼미동 조합원아파트는 해당 지역에 아파트가 불가능함에도 사업자의 조합원 불법 모집 등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에서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대응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됨.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기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주 택 과	■ **제목 : 오산장터 광장 가장자리 화단 관련** 오산장터 광장과 인접한 민가와의 경계에 설치한 화단의 블록방향으로 인해 시에서 설치한 화단이 민가의 것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해제로 인한 매몰비용 관련** 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해제로 인한 매몰비용 지급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됨. 최대한 시에 유리하도록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 매몰비용 산정위원회 심의 시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남촌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비 지급 관련** 남촌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또한 오산장터와 마찬가지로 자문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상 인건비 성격의 잘못된 예산 지출 사례가 있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철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음. 위원회 구성과 본래의 기능 수행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및 조치 등** 궐동 지역 방쪼개기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건축물 정비와 관련된 업무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동주택 보조사업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 공동주택 보조사업 공모 시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조치하고 우선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현황 제출** 2020년도 공동주택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 지원현황을 별도 제출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철저** 세교5단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 사항임.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공동주택 관리·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관련** 공동주택 관리·운영실태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가 다른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토지정보과 (3건)	■ **제목 : 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 철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음. 위원회 본래의 기능 수행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부적당한 도로명 일제조사 및 정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명칭의 도로명 주소 등 부적당한 도로명을 일제조사하고 정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지적공부 오류사항 정비**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지적공부 오류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시민안전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안전정책과 (12건)	■ **제목 : 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 철저** – 「오산시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오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에서 각각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며, –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2011.12.28.시행)」, 「오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5.4.25. 시행)」, 「오산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3.6.17.시행)」에 따른 안전도시 협의회와 각각의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고 있음. – 법령과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의 통폐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료 제출** 시민안전보험 가입 진행상황과 보상내역, 보험약관 등 관련 자료를 전 의원에게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검토** 시민안전보험은 스쿨존, 무면허·음주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찾아가는 안전교육 통합 운영**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같은 내용으로 교육명과 대상만 달리하고 있음. 유사한 기능의 교육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안전정책과	■ **제목 : 재난안전관리 기금 현황 및 증빙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27p 2020년도 기금조성현황표 금액에 오류가 있으며, 28p 기금운용 지출액과도 일치하지 않음. 정확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예치금 해지내역, 현재 잔고 증명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기 바라며, 기금 운용에 있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유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2020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 세부내역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 28p 2020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액 82억원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 물품구입' 단일 건으로 작성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세부내역 작성이 필요한 건에 대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돌발성 집중호우대비 자동차단시설 설치 우기 이전에 완료** 돌발성 집중호우대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을 미집행한 상태임.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과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보육시설 및 학원 등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공공시설 안전관리 정기점검 결과 "불명" 관련** 공공시설 안전관리 정기점검 결과 등급이 "불명"으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 내용과 사유를 별도 보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폭염대비 시책 발굴 추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되었으나 우리시는 도비 보조사업(1억원) 이외에 폭염관련 종합대책에 별도의 시비 사업이 없으니, 폭염 대비 시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수청동 저류지 체육시설로 변경** 수청동 612번지 저류지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보건소 선별진료소 텐트 교체 등**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19 선별진료소 텐트가 낡았으니 즉시 교체 조치하고 더불어, 텐트 안에 근무자 휴식을 위한 독립 공간을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교 통 과 (30건)	■ **제목 :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확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 설치 효과를 분석하고 확대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물향기수목원 앞 상가지역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물향기수목원 앞 상가지역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요구 민원과 관련해 경찰서와 적극 협의 및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국)1번국도 중원사거리 버스정류장 설치** 구)1번국도 중원사거리에서 수원방향에 버스정류장이 없으니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은계동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 은계동 영산아파트 아래 금성타운 방향 도로에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국도변 꽃단지 부근 LH부지 화물차량주차장 재협의** 국도변 꽃단지 부근 LH부지를 임시화물차량주차장으로 사용했으나 현재 폐쇄하였으니 다시 화물차량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LH와 재협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8번, 201번 막차 시간 연장 등 조치** 8번, 201번 버스 막차 시간 연장, 출근시간대 배차간격 준수를 업체와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제2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내삼미동제2공영주차장 끝부분 법면이 장마철 강우시 토사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조속히 안전조치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준공 이전이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분개방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관련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 각 위원회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시간 점검** 오산시 관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시간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유림사거리 부근 도로 주차라인 및 안전지대 철거** 유림사거리 부근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된 주차라인과 안전지대를 없애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조해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대원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추진 철저** 대원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에 대해 반대 민원도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되니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임시 사용**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을 공사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버튼형 보행자신호등 확대 설치** 부산동 시티자이아파트 앞 버튼형 보행자신호등 안내판 위치 조정과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 후 시 전체로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버스승강장 유리 천장 정비** 버스승강장 천장이 투명유리로 된 것은 필름부착이나 코팅 등의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좌회전 금지 구역 해제** 중원사거리, 신양아파트 앞, 오산역환승센터 앞 좌회전 금지를 해제하고 허용하도록 필요성을 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호텔 부지 오색시장 임시주차장 폐지** 오산호텔 부지 임시주차장 임대사용은 당초 오색시장 제2 공영주차장 준공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또한 현재 오색시장 임시주차장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 7월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말고 폐지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일대 노상주차장 철거** 오색시장 제2공영주차장 일대 노상주차장 철거는 오산경찰서 심의에서 타당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오산시에서는 철거 불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조속히 철거를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철저 등** 신장동행정복지센터, 운암고등학교, 유림사거리, 세교롯데마트사거리 부근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량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분당선 노선 연장 등 세교지구 연결 추진** 분당선 노선 연장, 오산~동탄 트램, GTX 노선 연장은 반드시 세교지구를 지나도록 협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세마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통학을 위한 대책 마련** 세마초등학교 졸업생이 매홀,세마,문시중학교로 배정됨. 통학을 위해 버스 노선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입체화 추진 등** LH의 서부우회도로 평면교차로 변경에 대하여 기존 계획대로 입체화로 추진하도록 LH에 우리시의 입장과 타당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세교지구 주민간담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하기 바람. 또한, 본설계가 4차선임에도 교통영향평가를 6차선으로 실시해 V/C가 낮았으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4차선으로 재평가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교 통 과	■ **제목 : 개구리식 주차구역 추가 설치** 개구리식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업을 홍보하고 추가 설치 지역을 신청을 통한 방법으로 모집해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노상주차장 자동관리시스템 도입** 노상주차장 자동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공영주차장 만차시 차단기 미작동 개선** 공영주차장 만차 시 차단기 미작동으로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해서 나오거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연장 등**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연장과 구역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세교 19단지 앞 상가지역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세교 19단지 앞 상가지역 주차장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더퍼스트 오산타워 건설 교통영향평가 관련** 더퍼스트 오산타워 건설 관련 교통영향평가 결과 법정주차 면수가 1,094면, 1일 교통발생량이 7,822대로 오산천 주변 도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이니 사업부지 안쪽으로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 부담에 대해 재협의 필요가 있음.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세교6단지 주변 횡단보도불필요한 보행자 신호등 개선** 세교6단지 주변 횡단보도에 불필요하게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1지구 광역버스 운행 확충** 세교1지구 광역버스 운행 확충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마을 진입도로 개설** 내삼미동 141-1번지 일원에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도 로 과 (17건)	■ **제목 : 오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유자전거 사업,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지원, 자전거수리센터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도입의 조례산 근거를 마련했으니 운영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오산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공사현장 인도 점거 확인 조치** 양산동 대림아파트 삼거리 건축현장에 인도를 점거하고 자재 등을 쌓아놓고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관련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2009.1.2.시행)」, 「오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2004.10. 2.시행)」, 「오산시 지하 안전 위원회에 관한 조례(2018.12.16.시행)」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지하안전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 각 위원회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뱅뱅사거리에서 구)오산극장 방향 도로 노점상 정비** 뱅뱅사거리에서 구)오산극장 방향 도로에 노점상 정비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사업 추진 철저** 동부대로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사업은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것이 아니라, 시공과 보상을 별개로 동시에 진행해야 함. LH에 적극 요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역 자전거 주차장 활성화** 오산역 자전거 주차장 이용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특히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자전거대여소 노후자전거 교체 추진** 자전거 대여소 대여용 자전거는 수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노후된 자전거를 교체하여야 함. 전수조사하고 교체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가로등 에스코사업 하자보수 철저** 가로등 에스코사업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자보수 대상을 전수조사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교량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관 개선 철저** 오산철교 하부 배수관 정비, 남촌대고 하부 콘크리트 부식 및 상부 철제 구조물 녹 제거 등 교량시설물 유지보수 및 경관 개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서부우회도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 검토** 서부우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임에도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대안 마련 또는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서부우회도로 부채도로(통학로) 기부채납으로 확장 조성** 동일하이빌 지구단위계획지구~가수초등학교 구간 서부우회도로 부채도로(통학로)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에게 4m를 기부채납 받아 확장해서 조성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중앙분리대 부분보수로 예산 절감 등** 중앙분리대를 부분보수가 가능함에도 전체 철거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울러 중앙분리대를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설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시 제설전진기지 이전 검토** 오산시 제설전진기지가 도로위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벌음삼거리 차량 병목과 정체 해소** 벌음삼거리 100번버스 차고지 앞 도로 차량 병목과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남촌동복합청사~오산대교 도로 개설** 남촌동복합청사 건립 후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남촌동복합청사에서 오산천변으로 오산대교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좌회전 검토** 서부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세교3,4,6,7단지 방향으로 가려면 아래로 13단지까지 상당한 거리를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으니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정보통신과 (6건)	■ **제목 : 정보통신 유지보수 현황 자료에 예산증감 사유 기재** 정보통신 유지보수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건별 전년대비 예산 증감 사유를 함께 기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드론교육체험장 재이전 검토** 드론교육체험장을 시청광장에서 청구아파트앞 공원으로 이전한 것은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부적절하니 다른 장소로 재이전을 검토하기 바라며, 앞으로 공원 안에 공공시설물 설치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관련 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2010.3.18. 시행)」,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2011.6.13. 시행)」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공간정보 운영협의회를 각각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 각 위원회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정보통신과	■ **제목 :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조속 추진**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9.11. 17. 시행되었으나 콜센터를 아직도 설치하지 못했음.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사물인터넷 시정 추진에 활용 확대** 오산시 사물인터넷 전용망 서버를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로 이전하고, 독거노인 보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사물인터넷을 시정추진에 확대하도록 활성화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스마트시티 관제센터에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를 증축하고 민원상담 콜센터를 관제센터 안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보 건 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보건행정과 (1건)	■ **제목 : 기저질환자 자가격리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 중 기저질환자에 대한 별도의 격리 또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건강증진과 (2건)	■ **제목 : 초평동행정복지센터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신축하는 초평동행정복지센터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선별진료소 근무자 개인보호장구 착용 철저** 하절기 더운 날씨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선별진료소 근무자 개인방호장구 착용을 규정대로 철저히 시행해 근무자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환경사업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12건)	■ **제목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실내 공기질 관리 추진** 현재 시내·마을버스를 제외한 철도와 시외버스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음. 일반시민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도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 북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극 추진** 가장산단 악취배출업소, 화성시 신대한정유산업, 아모레퍼시픽 폐수슬러지 등으로 인한 지곶동과 세교동 지역의 악취 발생과 관련해 오산 북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 **제목 : 공사장 소음측정기 운영 시스템 개선 등** 신동아1차아파트 인근 도로공사장과 영무파라드공사장에 설치한 소음측정기는 주민들이 환경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과에서 직접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라며, 관내 대규모 공사장은 시행사에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시간 조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를 아침시간대에 운행하고 있으나, 가급적 출근시간 교통혼잡 시간대를 피해서 운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확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은 일반가정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시내버스 등 매연단속 철저** 시민이 제보한 오산교통 8번버스(경기74자9151) 매연배출 영상과 관련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친환경연료 버스로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버스 매연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 시비 추가 지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은 신청에 의해 추진하는데 처리비용에 비해 지원액이 많이 부족해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 이외에 추가로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100% 교체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건축공사 현장 발생 슬레이트 처리 관리·감독 철저** 공동주택 건축 등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레이트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개방형화장실 청결유지 지도 및 관리 철저** 개방형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하도록 청결유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생태계 교란식물 전수조사 및 제거 추진** 1번국도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관련해 오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관련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11.14. 시행되었으나 조례에 의한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를 2020년 5월에서야 구성했으며,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2010.7.15.시행)」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않고 있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 **제목 : 세교1지구 도로인접 아파트단지 소음방지 대책 추진** 세교1지구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단지 소음 피해와 민원이 심각하니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청소자원과 (18건)	■ **제목 : 음식물자원화시설 전면 지하화 추진** 음식물자원화시설 전면 지하화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제목 : 재활용품 선별 분리장 근무환경 개선** 재활용품 선별 분리장에 방충 및 방향 시설 설치와 수시로 방역을 실시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단순화 검토** 2018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품목 단순화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정부에 건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 시범사업이라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각종 대행사업 계약기간 연장 조정** 각종 대행사업 계약기간이 1년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니 계약기간 연장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음식물쓰레기 대행과 자체처리 비용 비교 분석**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과 관리위탁으로 자체 처리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하 검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용에 비해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고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재활용품 선별 외부대행 방법 비교 검토** 재활용품 선별 외부대행은 오산시의 경우 처리단가가 높은 대신 매각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화성시의 경우 처리단가가 저렴한 대신 매각대금을 업체의 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음. 어떤 방법이 우리시에 유리한지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집수정 설치** 쓰레기적환장 시설 개선 시 침출수 집수정 설치를 포함해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화성소각장 반입 불가 대책 마련** 화성소각장 하반기 정기점검에 따른 쓰레기 반입 불가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 효율적 운영**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은 하절기와 동절기 세척 횟수를 조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청소자원과	■ **제목 :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기기 수리 관련**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기기 고장 시 즉각 수리 등의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지하화 부지매입 우선 추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및 쓰레기적환장 완전 지하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사업을 준비한다면 토지 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생활쓰레기 오산에 있는 민영소각장 이용 검토** 생활쓰레기 즉시 처리를 위해 오산에 있는 민영소각장으로 일부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관련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방법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부여 대상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인 평가라는 의미라고 판단됨.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평가방법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클린하우스 인근 주민이 관리하도록 조치** 클린하우스 청결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업체나 단체에 맡기지 말고 인근 주민에게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는 구도심 지역을 우선 선정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 관련**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해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하여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사항이 한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행정안전부 질의 답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며,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에 관한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법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이 열악함. 동절기 방한복과 작업 안전장구 등의 지급을 철저히 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지급을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수 도 과 (5건)	■ **제목 : 초평배수지 가동 조속 추진** 누읍동 지역 상수도 이물질 민원과 관련해 초평배수지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수 도 과	■ **제목 : 부산동 배수지 신설 사업설명회 개최 등** 부산동 산5번지 배수지 신설과 관련해 배수지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업시행 이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노후상수관 교체 예산 확대 및 사업추진 철저**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노후상수관 교체 예산 확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노후상수관 교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상수도요금 인상 시기 신중 검토**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는 동의하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시민생활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행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화성국민주택 상수도 보급 조속 추진** 화성국민주택에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하 수 과 (8건)	■ **제목 : 동일하이빌 지구단위계획의 우수처리계획 확인** 동일하이빌 지구단위계획의 우수처리계획을 관련부서에 확인하고 별도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하수처리수재이용수 수요처 확보** 현대더테라타워 복합형지식산업센터, 서탄산업단지, 누읍공단에 하수처리수재이용수 공급을 적극 협의하는 등 하수처리수재이용수 수요처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하수도 맨홀 뚜껑 디자인 변경** 하수도 맨홀 뚜껑을 야광표시 등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는 디자인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반려동물 테마파크 무료 운영 검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체험 등 유료가 불가피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시급**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오산시 북부 도시개발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증가할 것이니 세마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함.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시 재정사업 중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관련업무 추진 철저**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5.27.시행)」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 위원회와 「오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2002.5.27.시행)」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하 수 과	■ **제목 : 밀머리길과 성산초등학교 인근 우·오수관 분리 추진 관련** 201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밀머리길과 성산초등학교 인근 우·오수관 분리 추진에 대한 조치가 없음.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지역주민에게 설명(홍보)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불법 사용 관련**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지만 이에 대한 시민 홍보와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생태하천과 (9건)	■ **제목 : 가장동 습지공사 하자 개선 및 가로등과 CCTV 설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가장동 습지공사 하자 개선 및 가로등 설치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CCTV설치를 포함해 조속히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보조사업 예산편성 확인 및 보조금 심의 철저**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2019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 중 후생복리비와 사무실임대료 등 마이너스 집행과 관련해 향후 보조사업 예산편성 확인 및 보조금 심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사업예산 기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사업예산을 반드시 기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신속집행 추진 철저** 생태하천과 신속집행율이 저조하니 신속집행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천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사업 추진 철저** 오산천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사업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 조속히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천 잔디밭 광역수도공기변 관련** 오산천 잔디밭에 광역수도공기변이 흉물스럽게 설치되어 있음.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있으니 경관에 어울리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천 내 수목정리 등에 관한 용역 추진** 오산천 내 수목정리와 치수 전반에 대한 용역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천 연꽃단지 사진명소와 관광자원으로 조성** 오산천 연꽃단지 빅토리아연꽃 지역을 확대해서 사진명소와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자연친화적 오산천 유지관리** 오산천은 더 이상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공원녹지과 (13건)	■ **제목 : 세교2지구 갑골산 주변 공원조성 관련** 세교2지구 갑골산 주변 공원조성은 공사시작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에 가로등이 없으니 설치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벌음동 팽나무 보호수 지정** 벌음동 184-1번지 팽나무는 수령이 470년 이상으로 오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임. 보호수로 지정해 보호하고, 주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아름다운 나무 및 보호수 지정·관리 철저**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계도 및 단속 철저** 공원 이용 중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부산동 왕버드나무 보호수 지정 관리 등** 부산동 왕버드나무를 보호수로 지정·관리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바라며, 인접한 ㈜롯데 부지에 소규모 공원 조성을 검토하고 롯데와 협의해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마을정원사, 꼬마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과 관련해 마을정원사, 꼬마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추진이 어렵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나눔목공소 계획 변경 관련** 나눔목공소 운영이 당초 의회에 보고한 바와 다름. 장소 이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고, 당초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나눔목공소 야간프로그램 운영** 나눔목공소 운영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시간 이후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검초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맑음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관중석 햇빛가림시설 설치** 맑음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관중석에 햇빛가림시설이 없음. 체육관광과에도 요구했지만 공원 유지보수 및 관리 차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체육관광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가로수 보식 철저**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 및 교육청 구간 도로에 가로수를 철거하였음. 해당지역 가로수 보식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공원녹지과	■ **제목 : 필봉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 위한 매설물 관련** 필봉산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매설물이 방치되어 있음. 산 소유주와 등산로 철거 소송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유아숲체험원 운영 철저** 유아숲체험원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으니 환경정비를 실시하기 바라며, 운영 및 종사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어린이공원 내 바닥블럭 재질 관련** 어린이공원 내 바닥블럭을 인도용 보도블럭과 다른 재질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블럭으로 조성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중앙도서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중앙도서관 (2건)	■ **제목 :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에 따른 도서관 운영방법 변경**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속 거리두기에 따라 도서관 운영방법 또한 변화할 필요성이 있음.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전자책 활성화 노력** 전자책 확보 노력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도서관 전자책 보유현황과 대출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차량등록 사 업 소 (1건)	■ **제목 :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처리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후 방치되는 차량이 많으니 무단 방치차량 견인 및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동행정 복지센터 (2건)	■ **제목 : 의원과 소통 강화** 각 동의 행사 개최 및 변경과 취소, 민원발생, 주민건의사항, 동 관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사고 등에 대해 의원과 소통을 강화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한은경 의원
〃	■ **제목 : 통장 위·해촉 현황 관리 철저** 통장 위·해촉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산시 시설관리 공단 (11건)	■ **제목 : 청렴감사실 업무분장 재조정** 조직개편 컨설팅을 통해 청렴감사실을 신설하였으나 청렴감사실에서 감사업무 이외에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감사실은 고유의 감사 기능에 충실해야 하니 팀 간 업무분장을 재조정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내부감사 지적사항 경위서 및 확인서 제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내부감사와 관련해 지적사항에 대한 경위서와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공석으로 있는 본부장 임용 조속 추진** 2019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본부장이 공석이었으나,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지율 제고 노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간(2019.5.~2020.4.)동안의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 사업수지율이 68.8%로 2020년도 경영목표 수지율로 설정한 78%에 한참 부족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수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사업수지율 제고 방안 강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지율은 종량제물품 판매사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종량제물품 판매사업 이외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미납 주차요금 발생 및 체납 방지 대책 마련** 미납 주차요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미납 주차요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광고·홍보비 집행 관련** 광고·홍보비 집행이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스포츠센터 미사용 지하주차장 입구 출구로 변경**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 입구를 출구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체육시설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 등** 체육시설 계단 및 경사면 미끄럼 방지와 장애인화장실 자동문 설치를 검토하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산시 시설관리 공단	■ **제목 :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등 조치** 스포츠센터 시설 개선 등을 검토하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하고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 주차장 진입 도로 로타리 교통 개선, 주차장 진입도로 바닥 차량 진행방향 표시선 개선, 오산천 산책로 입구 볼라드 철거, 주차장 등 화물차량 밤샘 불법주차	이상복 의원
〃	■ **제목 :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검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2015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

◈ 오산문화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산문화재단 (5건)	■ **제목 : 문화행사 및 축제 비대면식 방법 검토**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하반기에 문화행사 및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온라인 컨텐츠, 영상제작 등의 비대면식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광장 및 커뮤니티센터 인수 시 점검 철저** 오산장터 광장과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문화재단에서 인수를 받을 때 시설물 상태와 하자 등을 보완·보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인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비대면 온라인 전시·공연 추진**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문화재단의 전시·공연이 불가하므로 이를 비대면 콘텐츠로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전시 또는 공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시립미술관 전체 휴관 지양** 시립미술관 보수 공사 시에는 공사기간동안 미술관 전체를 휴관하지 말고 층별 또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와 관계없는 나머지 시설은 운영을 함으로써 휴관을 최소화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미술작품 구입 시 작품의 수준 및 가치를 우선 고려** 미술작품 구입은 작품의 수량 보다 작품의 수준을 우선 고려해서 보다 가치가 높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오산교육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산교육재단 (5건)	■ **제목 : 장학금 신청 미달 분야 추가선발 관련** 2019년 대학생 장학생 선발을 분야별 신청학생이 계획보다 적은 경우 미달 분야의 잔여금액을 우수인재 분야에 추가로 선발해서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적극적인 홍보와 재공고를 통해 미달 분야에 신청을 추가로 받아 계획인원만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뮤지컬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검토** 뮤지컬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오산문화재단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중복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교육지원센터 현황 작성** 오산교육재단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일반현황에 오산교육지원센터 현황을 포함해 작성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장려금 지급 관련** 오산교육재단 정관 제4조제3호에서 교육재단의 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교육재단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대신 장려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음. 장려금을 장학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 및 인성 교육 추진** 오산교육재단에서 오산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별도의 한국어 및 인성 교육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제4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감사기간

2021. 6. 16. ~ 6. 25.(10일간)

3. 감사대상부서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행정복지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

○ 5국 :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 3관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 1직속기관 : 보건소
○ 3사업소 :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 6행정복지센터 :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혁신교육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 감사위원장 : 이성혁 의원
○ 감사위원 :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한은경 의원
○ 사무보조 : 전문위원 박용수, 행정7급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차혜진

5.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부 서	비 고
6.16.(수) 10:00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민원여권과)	1국(5과)
6.17.(목) 10:00	**복지교육국**(희망복지과~평생교육과), **오산교육재단**	1국(5과) 1재단
6.18.(금) 10:00	**경제문화국**(일자리정책과~농축산정책과), **오산문화재단**	1국(5과) 1재단
6.21.(월) 10:00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 **보건소**(보건행정과~식품위생과)	1국(5과) 1직속기관(3과)
6.22.(화) 10:00	**시민안전국**(안전정책과~스마트교통안전과), **차량등록사업소**	1국(5과) 1사업소
6.23.(수) 10:00	**환경사업소**(환경과~공원녹지과), **중앙도서관**	2사업소(7과)
6.24.(목) 10:00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중앙동~초평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3담당관 6동 1공단
6.25.(금) 10:0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6.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 처리요구사항

◈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홍보담당관 (6건)	■ **제목 :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 등록 기준 마련** 오산시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가 330개로 작년 대비 45개 증가하였음. 언론의 역할은 공정한 정론집필이라고 생각함.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 등록 기준을 마련해서 활동이 없는 오산시 출입기자 및 출입언론사를 정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출입기자 및 언론사 정기 간담회 개최** 오산시 발전과 시정 홍보를 위한 출입기자 및 언론사 정기 간담회 개최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신문 보도 내용 오산시 SNS 공유 방안 검토** 신문 보도 내용 중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안은 오산시 SNS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정홍보와 더불어 시민생활에 관한 홍보 노력** 오산시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소통 또한 중요함. 시정홍보 이외에 오산시의 모습과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람.	김영희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홍보시설물(시 경계 조형물) 설치 부적절** 시 경계 조형물 설치를 시청 광장으로 변경해 설치하였음.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며, 오산시 조형물을 자연생태체험관 앞에 설치해 준 것 또한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예산 집행내역을 포함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방법 시민 홍보 실시** 오산TV, 오산소식지, 오산시 SNS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및 대응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감사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감사담당관 (6건)	■ **제목 : 민간위탁사무 감사 전담인력 충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민간위탁사무 감사 대책 마련에 대해 조직개편을 통해 조치를 했지만,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됨. 관련부서와 협의해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민간위탁사무 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체감사 필요성 검토 및 조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행정사무에 대한 지적사항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감사담당관	■ **제목 :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 자치행정과 이관 검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업무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위원 연임 관련**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운영에 있어 2018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된 후 약 2개월간 위원 위촉 없이 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11월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고, 현재 한차례 연임을 하였지만 2018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된 후 11월에 다시 위촉된 위원은 사실상 두차례 연임을 한 결과가 되었음. 2018년 11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한 위원을 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을 계속 연임하기 위하여 의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확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인권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약자 등의 현장에서 대변하고 대표성 가진 실무경험 많은 사람 참여도 필요하며, 정치적 민감한 단체나 정치적 민감한 관여 인물은 위원회 위원 선정 지양하기 바람. 2018년 9월 임기가 만료된 경우, 11월 위원 위촉은 연임으로 볼 수 없음. 연임용어정리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운영 내용 되도록 수정 추가할 수 있기를 바람. 위원회 위원 위촉 조례 개정시 입법예고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 감사 진행 촉구**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에 대한 감사 시작 이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게 마무리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기획예산담당관 (9건)	■ **제목 : 의존재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시장 직속조직 설치 검토**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8.3%이고 재정자주도는 52.5%로 매년 낮아지고 있음.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해야함. 이와 관련해 의존재원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시장 직속조직 설치를 제안하니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기획예산 담 당 관	■ **제목 : 신속집행 추진 철저**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가 1,933억원, 집행실적이 1,431억원으로 목표대비 74%이며 경기도에서 29위로 하위권임. 신속집행 부진으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예산 편성 후 각 분야별로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을 의회에 기 보고되지 않은 대상단체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음.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 절차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관련 사항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예술인 재난지원금 9천여만원 중 2천만원 내로 사용을 한 상황이면 집행이 적게 된 사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으니 결과를 보고하고, – 예산의 사용을 의회도 모르게 특정인 간담회로 의회 7명 의원들에게 보고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일 없도록 할 것.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설관리공단 프리랜서 강사 휴업수당 지급 관련**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프리랜서 강사에게 코로나19로 휴무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음. 코로나19 당시 계약의 합의적 변경기회 갖지 못함 아쉽고, 타 소속 강사들과 불공평 선례가 남음. 이와 관련해 오산시 전체 다른 분야의 강사의 경우까지 조사해서 함께 적정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주민참여예산 적극 반영 노력**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5% 미만으로 매우 적음. 주민참여예산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법정 기금 외 임의설치 기금 존치 필요성 검토 및 조치** 예·적금 이자율은 점점 낮아지고 오산시 재정은 열악한 실정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정 기금 이외에 임의로 설치한 기금은 기금 운용 상황과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존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폐지 및 일반회계로 전출 등을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고정비용 사업 분석 및 관리 철저** 고정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율재원은 감소하게 됨. 문제가 심각함. 예산 편성에 있어 고정비용 사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였음. 재정상황이 열악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기금은 설치하고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담당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예산담당부서로서 적극 협조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 마련** 오산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시기임. 오산시 지리적·역사적 환경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먹거리 개발 등 용역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입안에 반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15건)	■ **제목 :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단체보험 등) 운영 개선**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가입금액 및 보장 내용 등을 공단과 재단 등 시 산하기관과 비교해 형평성을 검토하고, 단체보험 가입 시 직원별 연령,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가입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과 단체보험이 직원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후생복지 지원의 개선 방안 및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신속집행을 위하여 복지포인트를 6월까지 사용하도록 한 지시는 부당하므로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공무원 외 채용신체검사 비용 채용기관에서 부담** 공무원 외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과 시 산하기관의 인력채용에 있어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비용을 응시자 개인 부담이 아닌 채용기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위원회 중복위원 정비와 연임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오산시 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이 많으니 실태 조사 후 정비하기 바라며, 전체 위원회에 대한 조례상 위원의 연임규정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적정하게 정비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운영 실적 없는 위원회 운영 철저 조치** 오산시에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적지 않음. 위원회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임기제공무원 일반직 또는 공무직 전환 검토** 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고용 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자리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일반직 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운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정적 인건비 증가 및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로드맵 또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운영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 및 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율 제고** 오산시의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고, 시 산하기관(복지관 등)도 장애인 고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의회에 조례안 제출 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 또는 배경이 있는 조례안은 의회 제출 이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최대한 충분하게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자치행정과	■ **제목 :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 철저** 대원동, 신장동 분동을 최초 검토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성과나 추진된 실적이 없으니 문제 해결 노력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합리적인 행정구역 및 법정동 경계 조정 추진** 합리적인 행정구역 및 법정동 경계 조정이 필요하니 대원동, 신장동 분동 추진과 더불어 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시청사 이전 검토** 시청사 사무공간 포화 상태, 주차장 부족, 의회 독립청사 건립 필요성 등의 문제 해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시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계획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방범활동 봉사단체 지원의 형평성 검토 등** 방범활동을 하는 봉사단체가 여럿 있는데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있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동등한 지원을 검토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는 화재위험이 높으니 소방 장비 설치를 지원하기 바라며, 심장제세동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정비**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에 이미 폐지된 새마을문고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으니 정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새마을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 지원의 형평성 검토** 새마을교통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는 관리 기관은 다르지만 동일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운전경력의 가점 혜택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 강화**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세 정 과 (1건)	■ **제목 : 착한임대료 재산세 감면 제도 홍보 철저** 코로나19에 따른 착한임대료 재산세 감면을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징 수 과 (2건)	■ **제목 :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체납액 징수 철저**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체납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이 약 20%로 매우 낮음.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11건)	■ **제목 :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정형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 형태가 기형적임. 부지 정형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시청 정문과 주차장 연결 조기 개통 노력** 시청사 별관 공사로 인한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인하 검토** 오산시청 자연생태체험관은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가 있었으나 반드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경관 심의 당시보다 입장료를 높게 책정한 바, 향후 입장료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청 부설주차장 민원인 무료 이용시간 연장 검토**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감면받아야 함. 민원인 무료 이용시간 연장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청 자연생태체험관 건립 관련 문제점** 오산시청 자연생태체험관은 현재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건축 과정과 기부채납 및 무상 사용수익허가 등에 있어 문제점을 제시함. 1. 감정평가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경주버드파크와 규모, 인건비 등 운영비, 이용자수 등 비교 결과 감정평가 부적정) 2.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정의 부적정(사용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 부지사용요율 5%를 적용해야 하나 4%를 적용) 3. 당초 온실정원과 연결하고자 했던 자이언트 트리는 온실정원이 버드파크로 변경되면서 그 쓰임의 제한과 예산의 낭비 문제 4.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납부(2020년에는 기부채납 시 취득세 완전 면제, 금년에는 50% 약 1억 7천만원 신고 납부)	이상복 의원
	5. 시청 주차장 주차 문제 발생(직원들의 외부 주차장 이용 불편, 운암공영주차장 정기주차요금 차이로 인한 일반 사용자와 형평성 문제)	김명철 의원
	6. 최초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변경된 면적 증가 및 사업비 증액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회 계 과	■ **제목 :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대책 마련** 오산시청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영업 손실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 등의 경우까지,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자이언트 트리 조기 운영 적극 검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시청 광장 자이언트 트리 조기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시청사 옥상정원 유리온실 조성사업 계약해지 소송 관련** 오산시청 옥상정원 유리온실 조성 사업은 버드파크 민간투자 기부채납 계획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선금 반환 요구에 대해 4년째 소송중에 있음. 규정 상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상황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하며, 또한 즉시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가 2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니 계약 해지의 시점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상복 의원
〃	■ **제목 : 임대 주차장(웨딩의 전당) 아스콘 포장 관련 적법성 검토** 웨딩의 전당 주차장을 직원 임시주차장으로 임대해 사용하면서 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해 주었음. 공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적법성 및 아스콘 포장한 부지 일부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창작예술촌 조성 공사 하도급 문제 관리 철저** 오산창작예술촌 조성 공사의 비정상적인 하도급과 원도급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조성**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기금을 조성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민원여권과 (4건)	■ **제목 : 중식시간 민원실 미근무 재검토** 중식시간 민원실 미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 재검토하고 교대로 근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 건물 외부 설치** 무인민원발급기는 야간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기는 외부로 이전 설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야간민원실 운영 조속 추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야간민원실 운영은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으나 시민들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민원서비스 평가 등급 상향 노력** 민원서비스 평가 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으나 2020년도 평가에도 '다'급을 받았음. 민원 친절도 향상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복지교육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희망복지과 (3건)	■ **제목 : 화재피해 등 발생 시 긴급지원** 지난 5월31일 세교3단지 화재로 피해주민들이 임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음. 신속한 긴급지원이 필요했지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안전정책과와 협조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 조치하기 바라며, 소득 기준에 못 미쳐 제도적 지원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이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향후에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독립유공자의 3대째 국가유공자 가족 예우 및 가족묘 지원 방안 검토** 독립유공자의 3대가 국가유공자이며 오산에서 활동하신 독립유공자 공○○ 선생님의 묘지가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가족묘를 오산으로 모셔 와서 예우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지난 3월24일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 했는데 심의위원인 본 의원에게 3월29일에 서명을 받기 위하여 심의자료를 가지고 왔음. 또한 사망하신 분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더라도 사전에 위원에게 심의자료를 배부하고 충분한 검토와 소통이 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시 평소에 위원들과 소통을 반드시 하기 바람. 서면심의 지양, 심의 시 배척위원 없도록 심의에 모두 참여하도록 심의 기회 공정히 적용할 것.	한은경 의원
노 인 장애인과 (16)	■ **제목 : 성심재활원 시설폐쇄에 따른 입소자 지원 등 조치 철저** 시설 종사자의 잘못으로 성심재활원 시설폐쇄명령을 처분했지만, 그 피해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돌아감. 오산시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거주인에 대한 자립지원, 시설 전원 조치 등 사후 조치 및 지원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 건의와 관선이사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성심재활원 최종 폐쇄 기한 연장 검토** 성심재활원은 시설폐쇄명령 처분하고 최종 폐쇄 기한을 2022년 12월까지로 정했음. 거주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하여 최종 폐쇄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후속조치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장애인 활동보조사 활동보조시간 확대** 자립주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사는 꼭 필요함. 활동보조시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노인 장수수당 지급 부적정 개선** 노인 장수수당 지급 대상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보건복지부의 중복 유사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노인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장수수당을 폐지하기 바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기준을 변경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가급적 80세 오산시 전체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하나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민원 처리 관련** 장애인 복지시설(하나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마을 주민의 민원(도로확장,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조례 개정 등)과 관련해 타당성이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해결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울타리 설치를 요구하는 등 장애인 차별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지나치거나 과도한 민원은 거부하되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해하도록 조치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노인요양시설 총량제 시행 관련** 오산시에 장기요양 인정자수 대비 정원수를 80%로 제한하는 노인요양시설 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오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요양시설의 난립과 기획부동산과의 유착 우려 등의 문제는 이해하지만,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노인일자리 배치인원 탄력적 운영** 노인일자리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는 학교 주변 환경과 지역 상황에 맞게 배치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 및 조치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하나울복지센터에 설치 검토**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을 하나울복지센터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의 불편함을 고려해 이동 지원 방안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경로당 설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를 위한 경로당 설치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와 통합**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음. 오산시 인권보장위원회와 통합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노 인 장애인과	■ **제목 :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활성화** 노인 돌봄을 위한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장애인 고용율 제고**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에 직원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수익금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치료에 필요한 교구 등이 부족한 실정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아울러 재활치료사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휴업기간 인건비 지급 부적정** 보조금은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는 민간위탁을 한 사업이므로 운영비, 인건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해야 함.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휴업기간에 대한 재활치료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 또한 부적절함.	이상복 의원
	재활치료사는 프리랜서로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휴업기간 인건비를 보존해 주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선 지급한 비용을 환수해야 함.	한은경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경로당 시립경로당 전환** 내삼미동 자연부락 경로당을 시립경로당으로 전환을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공동주택 인근 공동묘지 철거** 공동주택 인근 공동묘지 철거에 대해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추진을 못하고 있음. 쉼터공원으로 이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가족보육과 (11건)	■ **제목 : 보육타운 공간 활용 조정 검토** 보육타운 조성은 최초 설계와 다르게 변경된 부분이 많음. 조리실 위치 변경, 후면의 공간 활용, '나무처럼' 작업공간 이동 등 전체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 및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계 및 합계 표시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별책으로 제출한 어린이집 예·결산서 자료에 소계와 합계가 표시되지 않았음. 내년부터는 개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가족보육과	■ **제목 :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지적내용 중 '교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미실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조치하고, '회계처리 미흡'은 회계처리에 관한 교육 또는 회계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의 방법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만의 출산장려 정책 개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며 시민들은 출산과 관련해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가장 힘들다고 함. 오산시만의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신규 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업하는 신규 보육교사의 보육시설 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난감 대여점 운영 활성화** 장난감 대여점은 예산을 확대해서 장난감 확보와 그 운영을 활성화 하고, 유모차 등 유아용품 대여까지 사업 확장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근무 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근무 지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혼선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검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여성용 위생용품 공공시설 비치 확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의원이 요구한 여성용 위생용품 공공시설 비치는 일부 시행중에 있지만 추가로 확대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직장운동부(수영팀) 성추행 사건 조사 철저** 오산시청 직장운동부(수영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어린이집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아동청소년과 (5건)	■ **제목 :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시책 개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지원 대책 등 자립지원을 위한 오산시만의 별도의 시책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함께자람센터 운영 철저** 함께자람센터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니 이에 대하여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거점형 센터 운영도 필요하니 함께 검토하기 바라며, 수탁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그룹홈 운영 지원 확대 등** 오산시에서 그룹홈을 3개소 설치하고 있으나 운영이 매우 열악함. 예산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그룹홈)이 없으니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시 아동복지시설 컴퓨터, 태블릿PC 확충**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함께자람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컴퓨터와 태블릿PC 등을 확충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청년 관련 정책 추진부서 일원화** 청년 관련 정책을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고 있음. 전체를 총괄해서 한 부서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평생교육과 (5건)	■ **제목 : 오산평생학습관 2층에 장애인 전용 공간 마련** 청학동 에듀타운(예정) 내 소방서 건물에 설치하는 오산평생학습관 2층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장애인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철저** 고교학점제를 교육부는 202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오산형 고교학점제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어 시행착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면 시행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간혁신 사업에 시설비 분야 추가 지원** 공간혁신 사업은 학교별로 준수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추가로 시설비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초·중등학교 신설 및 증축 추진 등(교육청 협조)** 1. 양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화성시 병점 소재 진안중학교로 가고 있음. 양산동 지역에 중학교 신설 또는 증축 조속히 추진 2. 문시초등학교 증축 예산이 반영되었으니 빠르게 추진되도록 조치 3. 문시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4. 세마초등학교에 놀이터 없으니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조치	김영희 의원
〃	■ **제목 :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시행** 아이들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함.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경제문화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 자 리 정 책 과 (15건)	■ **제목 : 오산 창업해봄센터 건립 부지 재검토** 오산 창업해봄센터 조성 부지가 협소함. 117억의 예산 대비 장소 협소로 인해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서 넓은 부지에 조성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판단되니 검토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근무지, 거주지 기준 고용율 제고 노력** 오산시 근무지 기준, 거주지 기준 고용율이 전국 최저임. 오산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문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서랑동 문화마을 활성화** 서랑동 문화마을에 지금까지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사업 실패라고 생각됨. 오산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저수지 상부의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 후 연계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서랑동 문화마을은 특정 수익사업을 고집하기보다 마을 자체를 아름다운 마을로 가치를 창출하고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서랑동 문화마을은 수익 창출보다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전환이 필요함. 전문가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분석해서 대안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지속 고용 가능한 일자리 창출 노력**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하였음. 일회성 공공형 일자리보다 지속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일자리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공공형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음. 일자리의 숫자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중요함. 상공회의소, 관내 기업 등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 철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진하고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 운영은 당초 기대보다 성과가 못 미친다고 생각됨. 유잡스 1호점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잡스 2호점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바람.	김명철 의원
	유잡스 1호점 운영 성과가 부진해서 아쉬움. 2호점 설치 후 1호점과 2호점의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운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유잡스 2호점 설치 후 1호점은 필수노동자 및 이주노동자 지원으로 방향을 설정해 운영하되, 사전에 관련 기관·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자리정책과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철저**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접수방법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근로자종합복지관 온라인강좌 장비 등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비대면 온라인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스튜디오)을 마련해서 온라인강좌 운영을 지원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일자리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일자리센터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센터 교육프로그램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 시민들이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특성화고 청년인턴 사업 취업까지 확대** 특성화고 청년인턴 사업과 관련해 단순히 시청 인턴 체험으로 마치지 말고 오산정보고 졸업 미취업 학생들의 취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대학생일자리 사업 등 신청대상 확대** 대학생일자리 사업과 청년인턴 사업 신청대상을 대학교 휴학생과 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청년인턴 일자리지원사업에 휴학생이 참여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근무기간이 4개월로 짧다는 의견이 있으니 근무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시청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디자인, 포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디자인, 포장 지원을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판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경력단절여성 자동차정비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 운영 확대** 경력단절여성 자동차정비 오피스마스터 양성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경력단절여성 이외에 한부모가족여성까지 사업 확대를 검토하기 바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일 자 리 정 책 과	■ **제목 : 세교19단지 공원 프리마켓 지원 검토** 매월 1,3째주 토요일 세교19단지 도원공원에서 프리마켓이 열리고 있음. 햇빛을 막아주는 천막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지역경제과 (11건)	■ **제목 : 오색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화장실 설치** 오색시장 공영주차장의 안전진단, 바닥정비 등 시설개선이 시급하니 대중교통과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고, 사유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매입 협의가 안되면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설치**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함. 별도 설치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철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 철저** 오색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에 누수 발생 등 정비가 필요함.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임인력 충원 지원**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에 오색시장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임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상인회와 협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오색시장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고객지원센터에 전임인력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교통문제 대안 마련** 가장3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교통 대란이 예상되니 관련 부서와 함께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일자리창출 시책과 연계** 오산대와 한신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일자리정책과의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시책과 연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 아름다로' 뷰티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시행한 '오산 아름다로' 뷰티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해당기관에 협조를 구해 제출하기 바라며,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원동 단풍나무거리 상인회(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추진 상황과 예산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오산 아름다로` 뷰티특화거리에 시비로 가로등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까지 당초 사업비 10억에 포함되었어야 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뷰티특화거리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필요함.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지역경제과	■ **제목 :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조속 추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복 의원님이 요구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를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 바라며, 진행상황을 보고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관내 물류센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 관내 물류센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지도·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 뷰티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뷰티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고 운영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문화예술과 (10건)	■ **제목 : 오산문화원사 디자인 재검토** 오산문화원사 건립은 디자인이 주변 건물과 경관상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문화원사 건립 위치 변경** 오산문화원사 건립 위치가 부적절함.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문화원사 건립 조속히 추진** 오산문화원은 2018년도에 철거해서 아직도 건립을 못하고 있음. 제8대 의회 임기 안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현가능성 검토**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실현가능성을 신중하게 분석 및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독산성 KT철탑 위치 이전** 독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독산성에 위치한 철탑 이전을 관련기관(KT)와 협의해서 위치 이전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목적에 맞도록 운영**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관리부서는 주택과이고 커뮤니티센터의 원래 목적은 주민공동체 시설인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위탁받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박물관 건립 추진 철저** 오산에서 출토된 문화재 및 유물이 오산에 박물관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고 있음.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지만 추진이 부진하니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향후 오산에서 출토된 문화재 등을 다시 찾아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문화예술과	■ **제목 : 오산학연구소 연구위원 자문비 지급 부적절** 오산문화원 직원 중 주임은 아무런 수당도 받지 못하는 반면,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을 겸임한 오산학연구소 연구위원을 매월 자문비를 받았음. 부적절 하다고 판단됨.	이상복 의원
〃	■ **제목 : 궐리사입구 궐동 683-2 토지 매입 가격의 부당성** 2017년에 궐리사입구 궐동 683-2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였음. 소유주가 경매로 매입한 금액이 5억원이고 시에서 매입한 금액은 7억원으로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호지역이라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토지주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2억원을 증액한 것이라고 함. 정신적 피해보상이 적정한지? 매입이 부적절하고, 매입 과정 또한 불투명하며, 심지어 매입 이후 아직까지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공공미술 뉴딜 프로젝트 사업 조사(감사)** 오산장터 커뮤니티 센터 일대 공공미술 뉴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감사)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체육관광과 (10건)	■ **제목 : 오산시 체육회 사무국장 계약 등 문제점** 오산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음. 체육회 사무국장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기 바람. 1. 사무국장 최초 임용 이후 중간에 계약기간 만료되고 2개월 동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하고 보수가 지급되었음. 2.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성과평가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 3. 임용약정서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4. 체육회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임원인 사무국장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5. 규정상 사무국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임용계약기간은 2년으로 모순이 있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 운영 및 지도·관리 소홀 등**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은 업무협약을 통해 체육회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수영팀 감독과 선수 추천의 권한도 있음. 체육회의 수영팀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해 지적함. 1. 수영팀 감독 채용의 투명성이 의심됨(사무국장이 면접관으로서 특정 후보를 편파적으로 평가) 2. 차량운행일지, 훈련일지 작성 부적정, 차량운행일지와 훈련일지 불일치 3. 훈련비, 전지훈련비 부당 지급 4. 선수별 연가를 사용한 실적이 전무함. 5. 훈련환경이 보다 양호한 오산스포츠센터가 아닌 광주, 용인에 소재한 수영장에서 훈련 6. 실제 훈련과 수영장 대관료 납부 불일치 7. 훈련시 법인카드 아닌 감독 개인카드 사용과 사용금액 미청구 8. 공휴일과 일요일에도 훈련한 것으로 일지를 작성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체육관광과	■ **제목 : 오산시청 직장운동부 수영팀 성추행 사건 관련** 현재 조사 중에 있지만 체육회의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조사 결과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수영팀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수영팀 존치 여부까지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체육회 직원 인건비 등 중요 예산 관련 사항 사전 보고** 오산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연봉 인상의 건이 의회에 필수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의회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부분이니 인건비 등 중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G-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 관련**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G-스포츠클럽과 사설클럽에게 형평성 있게 개방 및 지원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확보 등** 세교2 실내배드민턴장은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라인 및 점수판 등 내부 시설 설치는 사용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드라마세트장 계약 종료 후 활용방안 강구** 드라마세트장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 활용계획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기 바라며,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철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미사용에 대한 지원금은 반환 받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금년에 일부 지급한 학교 현황을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파크골프 경기장 부지 검토** 파크골프 경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사설 체육시설업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풋살장을 비롯한 사설 체육시설업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농축산정책과 (1건)	■ **제목 :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 관련**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아이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달 과정에서 일반학생과 구분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도시주택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시정책과 (6건)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종료 후 조치 철저** 오산동 228번지(웨딩의전당)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이 2017.10.31.까지이며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4년이 경과되었지만 허가취소나 사업기간 연장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 관리 소홀이라 판단됨. 이에 대한 진행경과 및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인 위원 참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인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도로 선형 변경 부적정 재검토(지방도 314호선 및 국지도 82호선)** 벌음삼거리와 정남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 옆에 건축물 공사 중에 있음. 이 도로는 당초에 건축물 공사 부지를 지나는 직선도로였으나 선형이 변경되어 옆으로 비껴서 곡선으로 도로가 나고 당초 직선도로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것이고, 심지어 건너편의 남부대로는 경사가 심한 내리막이어서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커졌음. 또한 국지도 82호선 도로도 선형이 기형적으로 변경되었음. 도로 선형 결정(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경기도 및 도로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원동 성호고 앞 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하부 터널박스 확장** 원동7구역 지구단위계획이 1,824세대이고 원동3구역 등 주변 공동주택까지 포함해 6,451세대나 되며, LG전자와 진위산업단지 출퇴근 차량까지 더하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임. 성호고 방향 경부고속도로 하부 터널박스를 확장하고 풍농까지 도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니 한국도로공사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반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에 있어 교통문제 우선 고려**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행위 허가 등에 있어 교통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입안 및 허가 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관내 등산로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추진** 필봉산 등 관내 등산로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공원녹지과와 협조해서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미래도시 개발과 (11건)	■ **제목 :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 운암뜰 도시개발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과 주주협약 동의안 의회 의결 지연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우려, 보상가격 미결정 상태에서 토지주의 사업시행 사전 동의 문제, 개발사업이 공동주택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락할 염려,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당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대한 토지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도시개발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TF팀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를 비롯한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 바라며,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토지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지금까지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니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하고, 사업시행동의는 법적인 기준보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미래도시 개발과	■ **제목 : 세교2지구 변전소 설치 반대 적극 추진** 세교2지구 변전소 설치 반대의 건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협의를 지속 진행하되, 한전과 시민들과의 갈등 및 오산시의 입장을 상급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중재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공동주택 분양 시 변전소를 전기공급설비로 표기함으로써 사전에 주민들이 변전소 설치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오산시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됨. 주민들 의견이 관철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세교2지구 변전소는 오산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으로도 전기를 공급하게 됨. 오산시 전기 공급이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변전소 추가 설치는 필요성과 타당성, 시기적인 시급성이 부족함. 주민들의 의지대로 설치 반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미니어처 빌리지 동적 요소 보완 추가** 미니어처 빌리지 구성이 다소 정적이므로 시공사와 협의해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장 이전에 동적인 요소를 보완 및 추가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미니어처 빌리지 주차장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수정** 미니어처 빌리지 주차장에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를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 맞도록 수정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미니어처 빌리지 전시물 및 내부시설 등 개선 조치** 미니어처 빌리지 전시물(미니어처 모형) 위치 및 재질과 핸드레일 및 발판, 인트로스페이스 영상 방향, 음향 등 내부 시설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초평동 공사구간 임시 자전거도로 설치 추진 철저** 2019.6.14. 현장방문 시 장인수 의원님이 지적한 세교2지구 초평동공사구간 아이들 통학로 임시 자전거도로 설치 추진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검토** 예비군훈련장 이전 후 해당 부지가 민간투자로 아파트 개발이 되지 않도록 미리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국방부와 협조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시에서 매입 검토** 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광역교통개선사업 중 경부선철도횡단도로 우선 추진 LH와 협의**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관련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이 세교3지구 지정 취소 시에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재원배분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오산역환승주차장보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주차장 예산을 변경해 경부선철도횡단도로를 우선 추진하도록 LH와 협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미래도시 개 발 과	■ **제목 :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 위치 변경 검토**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설치는 현재 IC지역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현동 외곽으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세교2지구 각종 시설물 설치의 안정성 등 조사 및 조치** 세교2지구 내 보행자 음향신호기 설치,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는 위치에 설치된 신호등 이동, 버스정류장 버스정차 구역 설치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전수조사하고 개선토록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건 축 과 (5건)	■ **제목 : 수청동 611-3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수청동 611-3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이후 3차례에 걸친 변경 과정에서 건축법 및 소방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건축주의 불이익과 분양자의 재산권을 고려해 시에서 사용승인을 한 행정행위로 불법건축물이 되었음. 화재 등 안전상의 문제 발생 시 오산시가 책임을 면할 수 없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연찬과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오산시 제설전진기기 불법 여부 확인 등** 세교2지구에 오산시 제설전진기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로위에 설치되었으므로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신도시 지역 신규설치 간판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 구도심 간판개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 지역에 신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구국도 중원사거리~오산대교 구간 간판개선 정비사업 검토** 구국도 중원사거리~오산대교 구간 간판개선 정비가 필요하니 향후 간판개선 정비사업 대상으로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철저** 인도 및 차도에 방치된 에어라이트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공공기관, 정당, 사회단체 등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도 단속하고 정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주 택 과 (10건)	■ **제목 :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 새장터 어울터 화목마을 뉴딜사업,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은 문화사업이 되어서는 안 됨.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남촌마을맞춤형정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관련** 남촌마을맞춤형정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매입한 주택은 용도가 불분명하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주 택 과	■ **제목 : 남촌마을맞춤형정비사업 대체주차장 부지 재검토** 남촌마을맞춤형정비사업 관련 현재 선정한 대체주차장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성이 떨어지고 인근 상가의 사용에 편의성도 부족함.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다른 부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검토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앞 광장 미스트트리 관련**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앞 광장에 설치된 미스트트리를 조화로 꾸몄으나 부적절하니 대안을 마련하고 교체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하자보수 철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하자보수 기간 안에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하자 리스트를 제출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영구임대아파트 확충 검토** 오산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확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	■ **제목 : 신규 공동주택 지역난방 사용 권고** 앞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을 사용해야 함. 공동주택 주택사업 승인 시 사업자에게 지역난방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조치 조속 추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불법건축물 전수조사 및 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궐동천 옆 불법 노후주택 문제 해결방안 검토** 궐동천 옆 궐동 16-1, 575-19(구거) 국유지에 건축된 불법 무허가 노후 주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검토** 앞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정책적인 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시민안전국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안전정책과 (4건)	■ **제목 : 우기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우기철 대비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지속 관리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성길용 의원
〃	■ **제목 : 폭염 저감 그늘막 지역별 균형 있게 설치** 관내 지역별로 폭염저감을 위한 그늘막 설치 수량에 차이가 있으니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고, 그늘막 설치 사업을 확대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시민안전보험 등 홍보 철저**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화재사고 등 발생 시 피해자 및 이재민 지원 방안 마련** 관내 화재사고 등 발생 시 사회재난 지정에 필요한 법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이재민에게 재난 상황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호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대중교통과 (21건)	■ **제목 : 문화의거리 임시공영주차장 관련** 오산역환승센터 앞 부지를 임대해 조성한 임시주차장은 3년간 시설비와 임대료를 약 11억원 이상 투자했으나 토지 매매로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임대가 불가한 상황이 되었음. 주차면수 78면을 3년간 사용한 것에 비해 지나친 예산이 소모되었다고 판단됨.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문화의거리 임시공영주차장 만차 시 운영 개선** 오산역환승센터 앞 문화의거리 임시공영주차장 은 만차 시 차단기 앞에서 회차 또는 대기하는 차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만차 시에는 차단기를 열어두고 인근 다른 주차장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세교지구 여객터미널 설치 추진** 세교지구에 여객터미널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터미널 부지에 오산시에서 여객터미널을 직접 건립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니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도록 행정절차 등을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KTX 오산역 정차 추진**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를 관련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속 추진하고 관철시키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광역버스 노선 관련** 양산동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한신대학교 학생 밖에 수요가 없으니 더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위해 수요조사를 통해 남부권에서 출발하도록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광역버스 1311, 1311B 운행횟수 증가 및 증차 검토** 오산~강남 광역버스 1311, 1311B 노선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이 있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운행횟수 증가 및 증차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 유료화 검토**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건설이 보류되었음. 현재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옆 주차장을 장기주차 방지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 관련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이 세교3지구 지정 취소 시에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재원배분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오산역환승주차장보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니 LH의 주차장 예산을 변경해 경부선철도횡단도로를 우선 추진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상급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대중교통과	■ **제목 : 오산역~세교2지구 연결도로(교량) 우선 추진** 오산역환승주차장 건설에 우선해 동·서를 연결하는 연계도로(교량) 건설이 완료되어야 함. 두 사업을 함께 진행하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LH 및 관련부서와 협조해 진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광역버스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고 판단되니 차량 증차 등 배차간격 단축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C2버스 증차 검토** C2버스 학생들 이용이 많으니 증차를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 철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대중교통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음.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확보 및 추진 등**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설계까지 마쳤으나 예산의 문제로 사업비 확보를 못해 늦어지고 있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 진입을 위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을 절선하고, 간판은 잘 보이는 곳으로 이전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버스(시내·마을·광역) 지도점검 철저 등** 버스(시내·마을·광역) 예산 지원에 비해 시민 불편 민원이 많다고 판단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민원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고 조치결과까지 확인 및 관리하기 바라며, 제출 자료 중 예산지원 현황과 비수익노선 및 적자노선 보전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오색시장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및 시설물 보수** 오색시장 공영주차장 안전진단 및 점검, 시설물 보수를 빠른 시일 안에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관내 거주자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가산점 부여**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오산시 관내 거주자에게 가산점 부여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제목 : 오산시 택시종사자 면허 사무처리 기준 변경개정 필요성** 오산시 택시종사자 면허 사무처리 기준을 오산 장기거주자 기사에게 우선 순위 부여되도록 오산시 자체 규정을 개정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교통 시내버스 매연 점검 및 조치** 오산교통 시내버스 매연 배출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차량은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대중교통과	■ **제목 : 8번, 201번 버스 지체 확인 및 조치** 아침 등교 및 출근 시간에 8번, 201번 버스 지체가 심하다는 민원이 있음. 확인 후 배차간격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버스 사용기한 연장 시 확인 철저** 영업용 버스의 차령이 9년이며 2년의 연장이 가능함.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연장 허가 시 정비내역과 차량 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데크 관련** 내삼미동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데크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가장3산업단지 내 노상주차장 설치** 가장3산업단지 아모레퍼시픽 3공장 아래쪽에 주차난이 심각함.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도 로 과 (25건)	■ **제목 : 서부우회도로 부채도로 도로폭 확보** 서부우회도로 부채도로는 폭이 좁아서 농로의 기능밖에 안됨. 기본적인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LH와 협의하고 조치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역~세교2지구 연결도로 및 교량 건설 추진 철저** 오산역~세교2지구 연결도로 및 교량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LH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위치 재검토**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는 오산이 아닌 인근 평택이나 화성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산시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벌음삼거리 차량 병목과 정체 해소 조속 추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벌음삼거리 차량 병목과 정체 해소를 추진 중에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지방도 314호선 오산구간 자전거도로 및 보도 설계 반영** 남부대로 벌음삼거리와 연결되는 지방도 314호선 오산구간에 자전거도로와 보도 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니 관계기관과 협조해 반영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한전주 지중화 3차사업 대상 검토** 한전주 지중화 3차사업 대상으로 롯데마트~남촌오거리 또는 운동장사거리 일원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남촌대교 경관개선 사업 재검토** 남촌대교 경관개선 사업 예산이 30억원임. 현재 열악한 오산시 재정상황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고 판단됨.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사업규모와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과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 관련** 동부대로 연속화 사업은 LH와 오산시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난하며, 청호동 대원지하차도 또한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공기 단축을 위해 양쪽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는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며, 동부대로 한전주 지중화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행이 안되고 있음. 이제 전략적인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시기임. LH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해서 관철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원동고가 철거 및 지하차도 설치는 LH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난함. 국회의원 등 지역의 정치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국도1호선 횡단박스 교체 공사 관련** 국도1호선 횡단박스 교체 공사로 운동장사거리 차선이 변경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공사기간동안 중앙분리대, 시선유도봉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터널박스와 양측 간의 레벨 차이가 있으니 배수처리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대로2-11호선 기존 현황도로와 연결 등** 지곶동 도시계획도로(대로2-11호선)를 연장해서 기존 현황도로(독산성로)와 연결하고 기존 현황도로에 보도가 없으니 한쪽만이라도 보도를 설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도로 선형 변경 부적정 재검토** 벌음삼거리와 정남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 옆에 건축물 공사 중에 있음. 이 도로는 당초에 건축물 공사 부지를 지나는 직선도로였으나 선형이 변경되어 옆으로 비껴서 곡선으로 도로가 나고 당초 직선도로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것이고, 심지어 경사가 심한 내리막이어서 선형이 변경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커졌음. 또한 국지도 82호선 도로도 선형이 기형적으로 변경되었음. 도로 선형 결정(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경기도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재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시 공유전기자전거 운영 관련**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니 오산시 공유전기자전거 이용자 안전모 착용 방안을 업체와 협의해 마련하고, 공유전기자전거 거치대는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스타벅스로 인한 북오산IC 고속도로 진입 문제 관련** 북오산IC 진입로 부근 스타벅스 이용차량으로 인해 고속도로 진입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서부우회도로(금암~세교터널) 구간 방음터널 설치 요청 민원 처리** 서부우회도로(금암~세교터널) 구간 방음터널 설치 요청 민원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 금암 터널 하자보수 철저** 세교, 금암 터널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까지이므로 하자를 조사해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조치되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6단지 앞 교차로 개선** 서부우회도로에서 오산대역로로 연결되는 램프구간에서 6단지 등 세교지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차로 개선을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제설전진기지 주변정리 및 경관 개선** 오산시 제설전진기지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으니 주변정리와 경관 개선을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경부선 철도 지하보도 사회적 약자 이용 지원** 남촌동 경부선 철도 지하보도는 출입구 계단의 경사가 급하고 위험하니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이용 지원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업무 철저** 오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계획수립과 위원회 운영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도로유지보수 예산 추가 확보**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30억원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됨.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서동로,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 추진** 서동로와 벌음동 도시계획도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해 사업이 시급함.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구 의원과 협의 및 추진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청호동 휴먼시아아파트 삼거리 교통섬 관련 민원 적극 해결** 청호동 휴먼시아아파트 삼거리 교통섬 관련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현대테라타워 남부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 현대테라타워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대란 해결방안으로 남부대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을 제안하니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도 로 과	■ **제목 : 대로3-12호선 조기개통** 필봉약수터~화성초등학교 구간 교통정체가 극심함. 삼미터널 개통 이전에 이 부분 도로를 먼저 개통하도록 LH와 협의해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오산대역 보도 육교 연결 조속 추진** 물향기 지하보도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산대역 보도 육교 연결로 사업을 변경하였음.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정보통신과 (5건)	■ **제목 :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추진 철저**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는 2019년도에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으나 진행이 안 되고 있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운영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김영희 의원
〃	■ **제목 : 드론교육문화 사업 담당부서 일원화** 드론교육문화 사업을 평생교육과와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담당부서와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일원화하기 바라며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별도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드론과 관련 사업 활성화** 드론교육사업과 및 드론과 관련된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해 활성화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사물인터넷 시스템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철저** 사물인터넷 시스템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단말기 등 장비 보급 이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원** 관내 공원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스 마 트 교통안전과 (12건)	■ **제목 : 세교2지구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세교2지구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도록 LH에 요구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앞 교통체계 개선**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앞 일방통행 도로 좌회전 불가 등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있으니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방범용CCTV 설치 장소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방범용CCTV 설치 장소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오산장터 광장 등 특정지역에 설치가 집중되어 촬영구역이 겹치거나 반드시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한 것은 다른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한은경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스 마 트 교통안전과	■ **제목 : 방범용CCTV 모니터링 인력 충원 검토** 방범용CCTV 설치 수량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음. 모니터링 인력 충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무분별한 교통신호등 설치 지양** 교통신호등(보행자 및 차량) 설치는 해당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경찰서와 협조해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장산업단지 이면주차장 설치** 가장산업단지에 이면주차장 설치를 대중교통과와 협조해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 철저**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 속도위반 단속장비를 예외없이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영상정보 탐색과 마스킹 처리 장비 및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탐색과 마스킹 처리 장비 및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BIS시스템 오류 점검 및 조치** BIS시스템과 실제 버스 운행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업무 철저** 견인이 필요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을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화성초등학교 앞 교통신호 운영 관련** 현충공원~화성초등학교 구간과 화성초교 앞 삼거리에 교통신호 운영 이후 교통체증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였음. 반드시 교통신호 운영이 필요한지 검토 및 대안을 마련해 경찰서에 적극 요청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민원인 접견 공간 마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니 민원인을 위한 별도의 접견 공간을 마련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보 건 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 해당없음

◈ 환경사업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12건)	■ **제목 : 공사장 살수차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등 사용 조치**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는 하천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염된 물을 사용해 마르고 나면 미세먼지를 오히려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 공사장 살수차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나 하수처리수를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 **제목 : 미세먼지 흡입 처리 장비 운영 검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음. 미세먼지를 흡입해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변경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확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 밀집지역을 조사해서 해당 지역에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고, 매년 설치 사업량을 확대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 철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음.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관련 업무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건축물 철거 시 석면 불법처리 방지 대책 마련**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시 공동주택 소음발생 정도 일제조사 및 관리** 오산시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비롯한 내부 소음 발생 정도를 일제조사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소음 및 악취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 충원 조치**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소음 및 악취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 충원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오산역환승센터 택시승강장 철도분진 조치** 오산역환승센터 택시승강장에 철도먼지(분진)이 심각함. 철도청과 협조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경유버스 매연 배출 전수조사 및 관리 철저** 경유버스 매연 등 배출을 전수 조사해 적발 차량은 개선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시 악취 해소 성과와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 및 홍보** 오산시 악취 발생 억제 시책 추진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됨.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 측정 데이터를 지속 관리하고, 오산시 악취 해소 성과 및 객관적인 데이터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세교지구 도로소음 문제 적극 해결 노력** 세교3,4,6단지 서부우회도로 소음(특히 모터바이크 소음)이 심각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소음 발생의 원인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환 경 과	■ **제목 :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비상벨 운영방법 개선**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은 경찰서와 연결하면 거리가 있으니 출동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 주변 지구대나 방범초소 등 가까운 곳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청소자원과 (13건)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전면 지하화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전면 지하화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폐기물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함께 지하화해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지하화에 소각시설 반영 검토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지하화는 폐기물 소각시설 반영을 검토하고, 사업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리비 수탁자 부담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위탁으로 시설물 고장·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하였으나 계약서에 수탁자 수리비 부담의 범위 및 한계가 명확하기 않으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산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완전 퇴비화 후 외부 공급**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방식임. 완전하게 퇴비화 하지 않고 전처리(탈수)만 해서 외부에 공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위탁 시 의회 동의 문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위탁과 관련해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사무의 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위탁은 사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수탁자의 사용수익 관련**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사용수익을 위한 외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는 오산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관외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운영 철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지금까지 시설 장비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음. 관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판단됨.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청소자원과	■ **제목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음식물류폐기물은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적환장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적환장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화성소각장 증설에 따른 향후 오산시 투자 관련** 화성소각장 증설에 따른 향후 화성시와 협약 시 오산시가 불리하거나 상호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협상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지분 확보 및 투자를 검토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화성소각장 오산시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관련** 화성소각장 인근 주민감시원 등에 의한 오산시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와 관련해 화성시는 오산시와 협약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오산시는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 향후 이러한 사유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5개 업체에 대한 구역배분을 효율적으로 재검토하고, 업체 지도·점검은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기 바라며,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업체는 페널티 부여를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관련** 오산시 청소사무를 대행했으니 환경미화원 정년을 보장하되 신규채용을 하지 말라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완료처리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환경미화원을 신규채용 하였음. 관련 자료를 별도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수 도 과 (4건)	■ **제목 : 부산동배수지 상부 공원 조성 등** 부산동배수지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조성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설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추진 철저** 오산시 상수도 누수율이 10%에 가까움.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수도관망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확보 및 사업 확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확보 및 사업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없음. 2022년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수 도 과	■ **제목 : 코로나19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 한시적 유예 검토**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제2항에 근거해 코로나19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하 수 과 (9건)	■ **제목 :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조속 추진** 세마하수종말처리장은 92% 가동 중이며, 북부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량 급격한 증가로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시급함.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되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분뇨처리장 화성시 분뇨 반입 관련** 화성시 소각장 오산시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문제가 지속 반복될 경우 오산시 분뇨처리장 화성시 분뇨 반입에 대한 문제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청소자원과와 협의해 검토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요처 확보 노력**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처리용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 100% 가동을 하지 않고 있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요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재이용수 사용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 검토** 코로나19로 경제상황과 기업의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움.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요금 감면 또는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 징수 관련**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하수관로가 없음에도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음.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밀머리길, 성산초등학교 인근 우·오수관로 분리** 구도심 밀머리길, 성산초등학교 인근 우·오수관로 분리를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였으나 진행이 안 되고 있음.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실패 시 대안까지 마련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물의 재이용 사업 추진 및 활성화 검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재순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물의 재이용 사업 추진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벌음동 저수지 배수 및 하수관로 설치** 벌음동 하나울복지센터 인근 저수지에 배수 및 하수관로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하 수 과	■ **제목 : 우기대비 배수시설 등 일제정비 등** 장마철 대비 오산시 관내 싱크홀, 빗물받이, 배수시설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또한 빗물펌프장 및 상습침수지역을 점검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성길용 의원
생태하천과 (10건)	■ **제목 :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에 충실**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립의 주요목적은 오산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임. 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원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김명철 의원
〃	■ **제목 :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운영 방법 및 운영비 부담**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이후 환경 관련 3개 단체(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오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자연보호 경기도 오산시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면 예산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 이를 검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6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공동 부담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건립 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남촌대교 하부 좌안에 설치한 시설물 관련** 남촌대교 하부 좌안에 경관개선 사업으로 설치한 의자 등의 시설물로 인해 홍수 시 유속에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검토하고 조치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공사 중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오산시 관리 구간과 LH 관리 구간이 연계되도록 협조하고, 사업 내용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 조치하기 바라며, 유지용수공급시설은 오산천에서 저수지 상류까지 펌핑해 내려오도록 설치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가장천 습지 공사 하자 개선과 가로등 및 CCTV 설치** 가장천 습지 조성 공사 하자 개선과 가로등 및 CCTV 설치를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였으나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음.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오산천 정원 등에 스프링쿨러 설치** 오산천에 조성한 정원 등에 가뭄을 대비해 스프링쿨러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궐동천 중류 구간 등 정비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반영** 포스코 더샵 인근 궐동천 중류 구간과 아래쪽으로 주차장 부근 복개된 구간의 악취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하천 종합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생태하천과	■ **제목 :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 협의 조치** 한강~평택호 자전거도로 연결은 오산시 구간은 완료되었으나, 용인~신갈 구간이 미개설 상태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연결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반딧불이 복원사업 관련 반딧불이 서식환경 검토** 가장천 습지 반딧불이 복원 사업과 관련해,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장소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천 전체 안내판 설치 관련** 오산천 전체 안내도(조감도)는 추천장소 소개, 현 위치에서 도착지까지의 도보거리 표기, 도보 이미지를 추가 포함하고, 최대한 크게 제작해서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공원녹지과 (14건)	■ **제목 : 갑골산 공원 당초 설계대로 조성 철저** 갑골산 공원 조성을 LH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진행이 부실함. 가로등, 띠녹지, CCTV, 운동기구, 공원 내 수목 식재, 산책로 조성 등 당초 설계대로 시행되도록 관련부서 및 LH에 요구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맑음터공원 캠핑장 운영** 맑음터공원 캠핑장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지정해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자가격리 인원이 많지 않으니 관련부서와 협의해 캠핑장 운영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의회 의견 반영 철저**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진출입 도로 개선, 주차장 설치 등 오산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동물놀이터 설치 관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를 조례 개정으로 허용했지만, 관내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이외에 또 다른 동물놀이터가 설치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부산동 왕버드나무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소규모 공원 조성** 부산동 왕버드나무는 보호수 지정기준에 못 미치니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해 관리하고, 인접한 ㈜롯데 소유 부지에 소규모 공원 조성을 롯데와 협의해 추진하기 바라며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 대비 효과 부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사업비를 14억원이나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예산 대비 효과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상복 의원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공원녹지과	■ **제목 : 고인돌역사공원 녹음수 식재** 고인돌역사공원 내 그늘 조성을 위한 녹음수 식재를 검토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꿈 놀이터 조성 시 유아 놀이시설 설치** 향후 놀이터 개선 사업은 유아를 위한 놀이시설을 포함해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여계산 등산로 침목 정비** 여계산 등산로에 설치된 침목은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검토해 제거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비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보도에 설치된 화단 개선** 13단지와 수청초등학교 사이 보도에 설치된 화단으로 인해 보행방해, 야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가로화단(띠녹지) 조성 부실 보완 조치** 금년에 실시한 가로화단(띠녹지) 조성사업은 식재한 사철나무 상태가 매우 불량함. 현장을 확인하고 보완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관내 등산로 공원 지정 단계별 추진** 관내 등산로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추진을 못하고 있음. 예산의 문제로 전체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없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 및 조치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필봉산 등 등산로 시설물 철거 관련** 필봉산 등산로와 내삼미동 산12-1 등산로 운동기구 등 시설물 철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시설물 철거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 **제목 : 등산로 입구 에어건 사용시간 탄력적 운영** 등산로 입구 에어건은 동절기와 하절기 사용시간을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이성혁 의원

◈ 중앙도서관 : 해당없음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차량등록사업소 (1건)	■ **제목 :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관련** 무단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부지 궐동 산 48-3 7,747㎡ 중 5,069㎡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남겨둘 이유가 없음. 필지 전체를 사용 가능하도록 사업량 변경을 검토하고 잔여 부지까지 정비하기 바라며, 보관소 이전 부지 정비와 함께 인근에 방치된 시유지를 정비해 관리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 6개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없음

◈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시설관리공단 (9건)	■ **제목 : 무기계약직(공무직) 일반직 전환 추진 등**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무기계약직(공무직) 일반직 전환은 추진 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 안에 전환되도록 오산시와 협의 및 추진하고, 전환과 관련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조직과 관련해 일반직 직원의 직렬 구분을 검토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이성혁 의원
〃	■ **제목 : 직원 구내식당 운영 검토** 직원 구내식당 운영을 검토하되, 스포츠센터 안에 설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시간대별 운영방법 검토**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은 낮 시간대에 비해 저녁시간에는 주차 차량이 적으니 인근 상가에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종합운동장 대관 시간 조정 검토** 종합운동장을 4시간 단위로 대관하고 있으나, 2시간 단위로 대관을 원하는 민원이 많으니, 방법을 검토하고 오산시 담당부서와 협의해 시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내구연한 경과된 물품·장비 전수조사 후 교체** 고객의 편의 증진과 직원의 업무 능률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장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 교체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무료주차 확인 방법 개선** 오산시청 부설주차장은 무료주차권 이용차량으로 인해 출차 차량이 정체되니 무료주차 확인 방법 개선을 검토하고 시행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을 법정 고용율보다 높게 자체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바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오산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철저** 오산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치 및 개선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 **제목 : 공영주차장 임차료 공단의 지출로 산정하는 문제 확인** 공단 수지율 계산과 관련해 공영주차장 임차료를 공단의 지출로 산정하는 문제의 가·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토 결과와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이상복 의원

◈ 오산문화재단

소관부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오 산 문화재단 (6건)	■ **제목 : 오산시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 철저** 오산문화재단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성길용 의원
〃	■ **제목 : 전시팀장 공석에 따른 후속 조치 등** 휴직으로 공석인 전시팀장 직을 다른 팀장이 대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공모를 통해 충원하기 바라며, 전시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시팀 직원을 문화도시센터로 파견 보내는 것 또한 부적절함.	한은경 의원
	전시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충원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청소용역 예산 추가 확보 검토**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근로자 인원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기 바람.	한은경 의원
〃	■ **제목 : 시립미술관 작품전시 관련 문제점 지적** 시립미술관 작품전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함. 1. 2019년부터 동일한 한 명의 작가(신○○)의 작품을 계속해서 전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2. 소장품 전시회에 재단 소장품이 아닌 다른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3. 작품 도록을 전시 이전까지 제작하지 못하고 전시기간 중에 제작 4. 같은 작품을 6개월 이상 전시하고 있음.	김영희 의원
〃	■ **제목 : 작품전시 지원 관련 일관성 있는 기준 이행** 특정작가의 작품전시 시 액자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작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렇게 지원할 필요도 없음.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기 바람.	김명철 의원
〃	■ **제목 : 공공미술 뉴딜 프로젝트 사업 추진 부적정** 오산장터 커뮤니티 센터 일대 공공미술 뉴딜 프로젝트에 35명의 작가가 참여해 1인당 270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비용이 지급되었음. 비용 지급 기준이 모호하고, 오산 지역 작가가 아닌 분들도 상당하므로 관내 지역작가를 위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음. 또한 작품 설치도 작가들이 직접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재단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음.	김명철 의원

◈ 오산교육재단 : 해당없음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제4장 시정질문 및 답변

제1절 제239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2절 제241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3절 제252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4장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1절 제239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질문일시 : 2019년 2월 19일(화)**
□ **질문의원 : 1명 (이상복 의원)**
□ **질문건수 : 4건**
□ **질문내용**

의원명	질 문 요 지	답변자
이상복	**오산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1. 자문비 지급 내용과 적법성 여부? 2. 오산시 오산동 382-1, 382-2, 382-4 번지의 대지일부(국-기획재정부)를 오산동 353-8(대)번지의 소유자가 수년간 사용한 바, 컨츄리매너블럭담장 설치를 지적도선(경계선)에 재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3. 조경공사(광장)의 각각의 시설물, 포장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현재 시공 상태는? 4. 조경공사(광장) 설계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공종의 유지, 삭제, 신규추가의 주체는 누구이며 언제 왜 했는지	시 장

□ 이상복 의원 질문 및 답변

▷ **질문요지 1**

○ 자문비 지급 내용과 적법성 여부?

▷ **답 변**

○ 오산장터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 된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임.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자문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출한 사항으로 2018년 9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지적하신 사항임. 이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자문비에 대한 지급을 중지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조례 제정 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림. 오산장터 사업 같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장터 주변 노령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행정업무 수행 및 마을 주민 소식지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워드프로세스가 가능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주민협의체에서 활동 할 수 있어야 했음. 그래서 2016년 이후 수원시, 시흥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타 지자체의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그 중 시흥시의 경우 인건비로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였음. 주거환경관리사업 선도 도시인 시흥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련한 조례가 없이 마을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지출을 하였으며 수당은 우리시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규정을 준용하여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한 바 있음.

▷ **질문요지 2**

○ 오산시 오산동 382-1, 382-2, 382-4 번지의 대지일부(국-기획재정부)를 오산동 353-8(대)번지의 소유자가 수년간 사용한 바, 컨츄리매너블럭담장 설치를 지적도선(경계선)에 재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 **답 변**

○ 현재 광장 경계 부지에 설치된 컨츄리매너블럭 담장은 광장 부지 경계인 오산동 353-8번지에 기존 건축물과 담장이 있었던 상태에서 광장의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시설물이었으며, 오산동 353-8번지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되었고 부지는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담장은 기획재정부 부지인 오산동 382-1번지 외 2필지의 경계에 일부 저촉되어 있는 상태임. 따라서 광장의 미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지내 사유 담장 철거를 담장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광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지경계에 재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임.

▷ **질문요지 3**

○ 조경공사(광장)의 각각의 시설물, 포장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현재 시공 상태는?

▷ **답 변**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설물과 포장공사 등의 금액은 공사발주 전에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2017년 9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원가 및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계약 심사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음. 본 공사는 주민참여형 정비사업으로써 공사 착공 후 지역주민과 주민협의체로부터 일조권 및 주차 등 주민 거주환경 개선 요구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변경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중에 있음. 공사 도중 계획 및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공사 시행 중 시계탑 등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었는바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로써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 등을 통해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중임.

▷ **질문요지 4**

○ 조경공사(광장) 설계심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공종의 유지, 삭제, 신규추가의 주체는 누구이며 언제 왜 했는지

▷ **답　　변**

○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경기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주거환경 관리사업 공사에 대한 계약의뢰 전에 경기도에 원가 및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의 과정을 거쳐 공사발주 하였으며, 질의하신 광장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처인 우리 시에서 2018년 9월 12일 공사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물량 증·감과 주민 거주환경개선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공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음.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써 오산장터 본연의 기능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이 발생하여 다소 변경되기도 했음. 앞으로 일부 부분은 주민과의 의견소통이 필요한바 더욱 세밀하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면 성공적인 오산장터가 될 것임.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제2절 제241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질문일시 : 2019년 5월 3일(금)**
□ **질문의원 : 1명 (김명철 의원)**
□ **질문건수 : 3건**
□ **질문내용**

의원명	질 문 요 지	답변자
김명철	**에스코 사업 소송비 집행 관련하여** 1. 오산시는 LED(에스코) 사업과 관련 개인 명의의 소송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답변바람. 2. 개인명의 소송에 시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횡령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는 바, 시가 부적절하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였다면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3. 오산시 LED(에스코)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첫째 시의회의 의결 없이 편법으로 계약했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셋째 긴급입찰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으며 부실한 현장 시공상태가 드러났음. 이 사안에 대하여 언론사가 취재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그 결과 곽상욱 시장과 공무원 A씨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민·형사상 고발하였음. 이 소송 자체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진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음. 곽상욱 시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소송을 진행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금이라도 LED(에스코) 사업의 정확한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바람.	시 장

□ 김명철 의원 질문 및 답변

▷ **질문요지 1, 2**

○ 오산시는 LED(에스코) 사업과 관련 개인 명의의 소송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지원했는지 답변바람.

○ 개인명의 소송에 시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횡령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는 바, 시가 부적절하게 소송비용을 지원하였다면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답　　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에 소송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소송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에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명의의 소송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근거 규정은 없음.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번 소송비 지출에 대한 적법성 판단의 핵심은 소송의 명의가 아니라 소송의 내용이라고 생각함. 이 소송은 곽상욱이라는 개인과 전)도로정비 팀장 개인의 사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임. 비록 불가피하게 개인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오산시의 LED 가로등 교체 사업 업무추진과 관련된 100% 공적인 소송으로, 실추된 오산시 행정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오산시의 소송이었기에 소송비용 또한 예산으로 집행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적절하게 진행된 소송비용은 환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오산시 대부분의 고문변호사는 공무와 관련된 소송이므로 오산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음.

▷ **질문요지 3**

○ 오산시 LED(에스코) 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첫째 시의회의 의결 없이 편법으로 계약했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셋째 긴급입찰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긴급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으며 부실한 현장 시공상태가 드러났음. 이 사안에 대하여 언론사가 취재를 하여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그 결과 곽상욱 시장과 공무원 A씨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민·형사상 고발하였음. 이 소송 자체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가진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음. 곽상욱 시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소송을 진행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금이라도 LED(에스코) 사업의 정확한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답　　변**

○ 먼저, 소송제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 에너지 절약사업은 예산절감과 시민에게 쾌적한 야간환경 제공을 위해 시행한 사업임. 사업자 선정과정은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였으며, 입찰자의 자격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ESCO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였고, 용역수행능력은 ESCO사업 수행 실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언론매체인 미디어와이는 오산시가 사업시작 전부터 자격이 없는 업체와 유착하여 사업자 선정에 특혜를 주는 밀실행정과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1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마치 오산시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음. 이로 인해, 오산시의 명예는 물론 시정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등, 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사업자 선정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했음. 감사결과, 사업추진상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사용전 안전점검 등 사업의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기관주의 처분만 받았을 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어떤 특혜도 없었음이 명백히 검증되었음.어린아이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듯이, 언론인의 공익이라는 허울아래 사실과 다른 지속적인 의혹제기 기사는 독자로 하여금 의혹을 사실인양 받아들이게 되어 상대방에게 치명적으로 다가 올 수 있음. 오산시 또한 오산시의 명예와 행정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었음. 10여 차례에 걸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기사에 대응하고자 오산시는 소명자료를 배포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여 미디어와이로부터 반론보도 자료를 게시하도록 조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반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와이의 의혹 기사는 계속되었음. 오산시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미디어와이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만은 없었음. 이에 따라 오산시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오산시 중요소송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산시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음. 오산시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오산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LED(에스코) 사업의 정확한 시공 상태 대해 말씀드리겠음. 본 사업에 대한 2018년 6월 감사원 특정감사에서청사초롱 램프 변화소켓 이탈문제가 지적되어 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현재 LED 가로등 및 보행등은 시방서에 따라 이상 없이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운영상에 특이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음. 사업의 결과, 2018년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가 사업 전에는 11억5천만원이던 것이 사업 후에는 4억9천만으로 6억 6천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으며, 쾌적하고 한층 밝아진 도로환경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향후에도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제3절 제252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질문일시 : 2020년 9월 11일(금)**
□ **질문의원 : 1명 (김명철 의원)**
□ **질문건수 : 4건**
□ **질문내용**

의원명	질 문 요 지	답변자
김명철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에 관하여** 1. 오산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테니스장 및 죽미공원 테니스장을 “공공용 체육시설[테니스장] 위·수탁 협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방식을 위탁으로 하였는지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2.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간에 13개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보면, 법과 조례에서 명시한 기한이 거의 대부분 끝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공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3.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오산시로부터 각각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업들의 수지율을 분석해보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도 경상수지 50%이상의 사업을 공기업이 맡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구조조정 또는 사업의 반납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은 아닌지 답변 바라며, 공단 평가에 있어서도 종량제 봉투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공단의 주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을 이관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4.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정원 170명의 직원으로 비대해지며, 인력의 재편성과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상욱 오산시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 장

□ 김명철 의원 질문 및 답변

▷ **질문요지 1**

○ 오산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테니스장 및 죽미공원 테니스장을 “공공용 체육시설[테니스장] 위·수탁 협약서” 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방식을 위탁으로 하였는지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답　　변**

○ 먼저, 오산시는「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과「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경제성·주민 복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음. 또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 제5항 및「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은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고 ‘오산시테니스협회’에 오산테니스장과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계약을 한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 **질문요지 2**

○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간에 13개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서 계약서를 체결한 날짜를 보면, 법과 조례에서 명시한 기한이 거의 대부분 끝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공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 **답　　변**

○ 먼저, 대행사업을 위해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협약서에서 법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음. 다음은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음.「지방공기업법」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오산시가 공단에 대행하게 한 사업이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상기 법령 적용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인「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계약기간, 공개모집, 공증’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을 말씀 드림.

▷ **질문요지 3**

○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오산시로부터 각각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업들의 수지율을 분석해보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도 경상수지 50%이상의 사업을 공기업이 맡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구조조정 또는 사업의 반납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은 아닌지 답변 바라며, 공단 평가에 있어서도 종량제 봉투 사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공단의 주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을 이관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답　　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인 '지자체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상수지 50% 이상 사업을 지방공기업에 맡길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경제성 제고'와 함께 '시민의 공공복리'도 함께 증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지난 2019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대행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업들의 경제성이 낮아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음.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처럼 2019년 기준 수지율 2,093%를 기록한 사업도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처럼 수지율 3.8%로 극히 저조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음.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오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공단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제외한 판매와 공급, 재고관리, 판매소 점검,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특히, 이 사업은 도내 15개 공사·공단 중, 1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을 만큼 각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공기업에 맡기고 있는 사업이기도 함. 만약 이 사업을 시로 이관할 경우, 사실상 별도 전담팀 신설 및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과 차량 확보 등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예상되며,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이관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을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수익 평가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경영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 드림. 앞으로도 오산시와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음.

▷ **질문요지 4**

○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정원 170명의 직원으로 비대해지며, 인력의 재편성과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상욱 오산시장께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고 계신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답 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9명의 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실 6팀, 정원 170명의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는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실도 함께 탄탄히 다져왔으며,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0위권 성적을 기록하였고, 2019년 경영평가에는 가등급, 전국 3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2018년,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1위라는 성적을 받으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또한 사랑의 헌혈활동, 마스크 제작 및 방역활동 지원, 오색시장과 상생협력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함께,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위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공단이 더욱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경영혁신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방안도 필요할 것임. 앞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산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림.

第8代 烏山市議會

議 政 白 書

2022년 11월 일 인쇄
2022년 11월 일 발행

발 행 처 : 오산시의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전화 : 031) 8036-8024, 8025
팩스 : 031) 375-2875

오산시의회
osancity council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Tel 031-375-2874, 8036-8024~5 (행정 8024~5)
Fax 031-375-2875
www.osancouncil.go.kr